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2025. 06.

양 천 구

목 차

❶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1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신청서

1. 계획의 개요 ····· 3
2. 현황분석 ····· 5
3. 계획의 기본구상 ····· 24
4. 부문별 정비계획 ····· 26
5. 소요사업비 추정 ····· 47

2 토지 및 건축물 조서

1. 토지조서 ····· 49
2. 건축물조서 ····· 49

3 기초 조사 · 확인 내역서 ····· 51

❷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63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64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70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79

3 건축계획

1 건축개요 및 배치도 ····· 88

4 계획 설명서

1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98
2. 계획의 범위 ····· 98
3. 정비계획 변경 절차 ····· 99

2 현황 및 여건분석

1. 대상지 ····· 100
2. 도시관리계획 현황 ····· 100
3. 토지 및 건축물 현황 ····· 101
4. 주변 개발현황 ····· 105

3 신속통합기획

1.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 106

3 부문별 계획

1. 정비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 108
2. 토지이용계획 ····· 109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110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112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115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115

7. 건축물에 관한 계획 ····· 116
8.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 121
9.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122
10.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 ····· 123
11.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 123
1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124

5 경관성 검토서

6 교통성 검토서

7 환경성 검토서

■ 별첨

1. 토지등소유자별 개별분담금 추정
2. 주민공람(관련부서 협의) 조치계획

1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1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신청서

2 토지 및 건축물조서

3 기초 조사 · 확인 내역서

1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신청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1. 계획의 개요

2. 현황분석

3. 계획의 기본구상

4. 부문별 정비계획

5. 소요사업비 추정

1. 계획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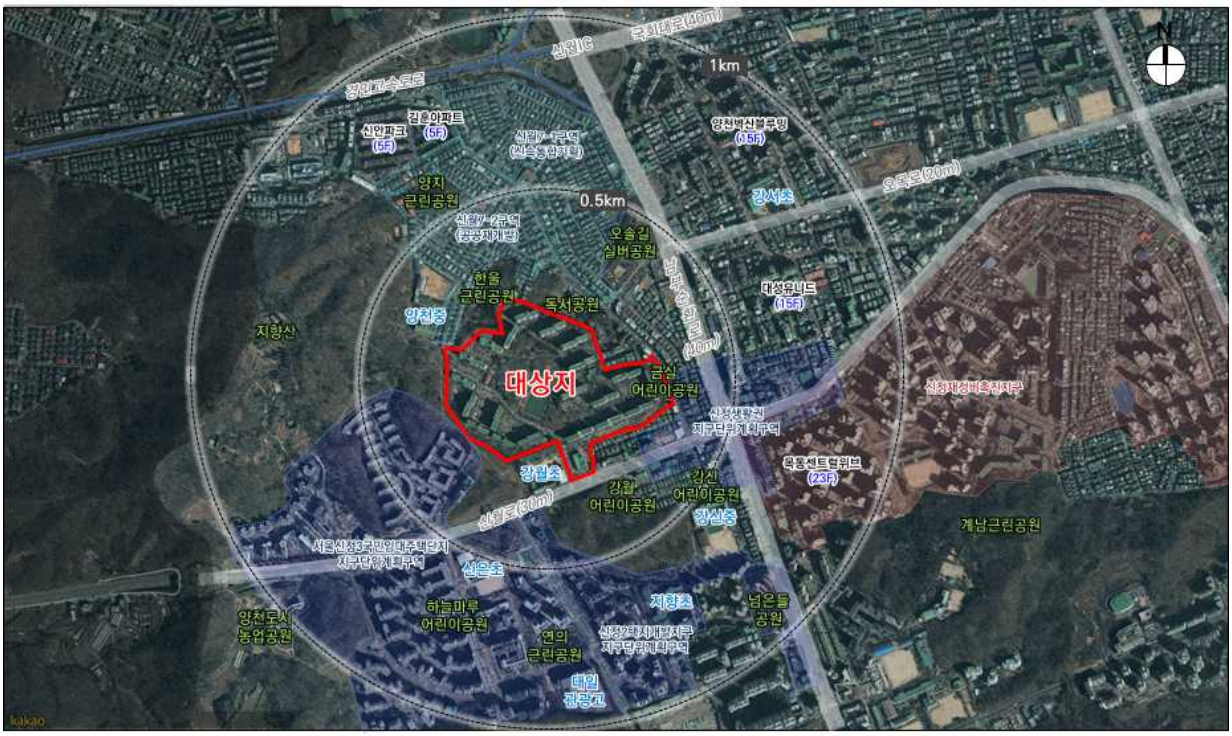
가.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대상지는 1984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서울시 고시 제331호)'되고 '신월지구 시영아파트 건립계획 변경(시장방침 제2635호)'되어 1988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준공(양천구 공고 제45호)'된 공동주택 단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임
- 신월시영아파트는 1988년 준공으로, 현재 37년 경과되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함에 따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 등을 반영하여 대상지 주변 여건 변화를 수용한 정비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나. 계획의 범위

-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87-1번지 일원
- 면적 : 153,213.6㎡
- 도시관리계획 현황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수평표면구역, 원추표면구역, 진입표면구역, 비오톱1등급지

< 위치도 >



다. 계획의 수립절차(과정) 및 추진현황

• 기존 건립계획 관련

1984. 06. 05.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331호)
1984. 09. 24.	◦ 시영주택 건립계획 확정(시장방침 제1851호) - 5층, 1,550가구
1984. 12. 23.	◦ 신월지구 시영아파트 건립계획 변경(시장방침 제2635호) - 12층, 2,256가구
1988. 08. 18.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준공(양천구 공고 제45호)

• 정비계획 관련

2023. 01.	◦ 신월시영아파트 안전진단 등급 : 재건축
2023. 05. 26.	◦ 주민설명회
2023. 07. 07.	◦ 신월시영아파트 신속통합기획(Fast-Track) 자문사업 접수(동의율 37.32%) -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13호, `23. 01. 16.)
2023. 08. 01.	◦ 총괄건축가 협의
2023. 08. 10. ~ 11. 02.	◦ 신속통합기획(Fast-Track) 접수에 따른 관련부서 사전협의 - 양천구 12개부서, 서울시 10개부서, 외부기관 3개부서 총 25개부서
2023. 12. 07.	◦ 신속통합기획(Fast-Track) 1차 자문 신청(양천구 → 서울시)
2024. 01. 24. ~ 02. 08.	◦ 공공건축가(MP) 자문
2024. 03. 05.	◦ 신속통합기획(Fast-Track) 1차 자문
2024. 06. 11.	◦ 신속통합기획(Fast-Track) 2차 자문
2024. 09. 25.	◦ 신월시영아파트 정비계획 주민 제안 (동의율 68.17%)
2024. 10. 10. ~ 11. 12.	◦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양천구 32개부서, 서울시 24개부서, 외부기관 6개부서 총 62개부서
2024. 10. 30.	◦ 신속통합기획(Fast-Track) 3차 자문
2024. 10. 31.	◦ 양천구의회 의견청취
2024. 11. 12.	◦ 주민설명회
2025. 04. 28.	◦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 : 수정가결

2. 현황분석

가. 주변지역 현황

- 대상지 주변 신월 7-1, 7-2구역 신속통합기획 추진 중이며, 남동측에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입지
- 대상지 서측으로 지양산, 북측과 동측에 공원이 위치해있고 대상지 반경 500m 이내 강월초, 양천중 인접
- 남측 신월로와 동측 지양로를 통해 남부순환로가 연결되어 있어 차량에 의한 접근성이 양호함
- 대상지 500m 이내 강월초, 양천중 등 학교(2개소), 한울근린공원, 독서공원, 금실어린이공원, 오솔길실버공원 등 공원(4개소)이 위치하고 있어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양호함

< 종합현황분석 >



도시관리계획 현황

- 제1종,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위·관련계획

-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 2030 서울 생활권계획
- 2023 양천구 공공시설 재편종합계획

건축물 현황

건폐율/용적률/층수		12%/132.42%/12층
동수		23개동
노후도		30년이상 23개동(100%)
용도	공동주택	20동
	근린생활시설	1동
	노유자시설	1동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동
세대수	합계	2,256세대
	60㎡ 미만 (43㎡, 50㎡, 59㎡)	2,256세대

토지 현황

전체 필지수	5필지 (153,213.6㎡)
사유지	1필지 (113,975.0㎡)
국·공유지	4필지 (39,238.6㎡)

나. 정비사업 구역 현황

<table>
<tr><td rowspan="4">도시 관리 계획 사항</td><td colspan="2">용도지역</td><td colspan="2">용도지구</td><td colspan="2">도시계획시설</td><td colspan="4">기 타</td></tr>
<tr><td colspan="2">종 류</td><td colspan="3">규 모</td></tr>
<tr><td colspan="2" rowspan="3">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td><td colspan="2" rowspan="3">-</td><td rowspan="2">도로</td><td>중로 1류</td><td colspan="3">폭원 : 20.0m
연장 : 140.0m</td><td rowspan="3">-</td></tr>
<tr><td>소로 3류</td><td colspan="3">폭원 : 6.0m
연장 : 470.0m(127.0m)</td></tr>
<tr><td>공원</td><td>근린공원</td><td colspan="3">면적 : 32,376.0㎡</td></tr>
<tr><td rowspan="4">토 지 현 황</td><td>구 분</td><td>계</td><td colspan="2">사유지</td><td colspan="4">국·공유지</td><td>비 고</td></tr>
<tr><td>계</td><td>국유지</td><td colspan="2">시유지</td><td>구유지</td></tr>
<tr><td>면 적(㎡)</td><td>153,213.6</td><td colspan="2">113,975.0</td><td>39,238.6</td><td>-</td><td colspan="2">35,096.3</td><td>4,142.3</td><td>-</td></tr>
<tr><td>필지수</td><td>5</td><td colspan="2">1</td><td>4</td><td>-</td><td colspan="2">2</td><td>2</td><td>-</td></tr>
<tr><td rowspan="4">건축물 현 황</td><td rowspan="2">구 분</td><td rowspan="2">계</td><td colspan="2">허 가 유 무</td><td colspan="6">용도별 허가유무별</td><td rowspan="2">비 고</td></tr>
<tr><td>유허가</td><td>무허가</td><td colspan="3">주 거 용</td><td colspan="3">비 주 거 용</td></tr>
<tr><td>동 수</td><td>23</td><td>23</td><td>-</td><td>20</td><td>20</td><td>-</td><td>3</td><td>3</td><td>-</td><td rowspan="2">-</td></tr>
<tr><td>호 수</td><td>191</td><td>191</td><td>-</td><td>188</td><td>188</td><td>-</td><td>3</td><td>3</td><td>-</td></tr>
<tr><td rowspan="3">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td><td colspan="3">거 주 가 구</td><td colspan="3">거 주 인 구</td><td colspan="5">권 리 자(토지등소유자)</td></tr>
<tr><td>계</td><td>가옥주</td><td>세입자</td><td>계</td><td>가옥주</td><td>세입자</td><td>계</td><td>토지·
건축물
소유자</td><td>토 지
소유자</td><td>건축물
소유자</td><td>지상
권자</td></tr>
<tr><td>2,256</td><td>1,095</td><td>1,161</td><td>6,385</td><td>3,099</td><td>3,286</td><td>2,266</td><td>2,265</td><td>1</td><td>-</td><td>-</td></tr>
</table>

주) 세대당 2.83인 적용 (2024. 9월 양천구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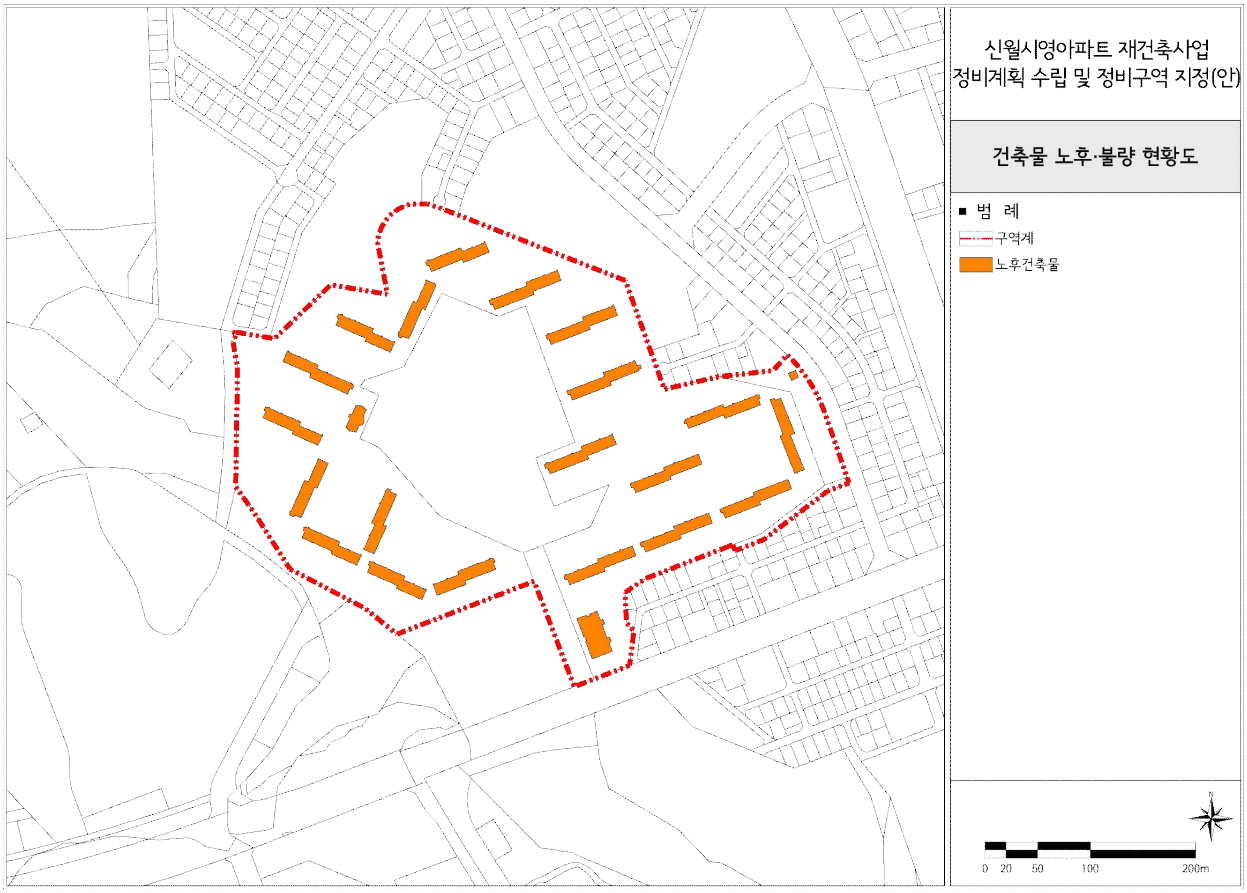
1) 건축물의 노후·불량 현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 및 [별표1]에 의거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구 분		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	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			
			계	구 조 상 불량동수	건축설비상 불량동수	기 타
구조별	합 계	100.0% (23/23)	23	23	-	-
	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95.7% (22/23)	22	22	-	-
	기타구조 (연와,석조,목조 등)	4.3% (1/23)	1	1	-	-
존치기간별	합 계	100.0% (23/23)	23	23	-	-
	10년미만	-	-	-	-	-
	10~19년	-	-	-	-	-
	20~29년	-	-	-	-	-
	30~39년	100.0% (23/23)	23	23	-	-
	40년이상	-	-	-	-	-
허가별	합 계	100.0% (23/23)	23	23	-	-
	유 허 가	100.0% (23/23)	23	23	-	-
	무 허 가	-	-	-	-	-

주) 신월시영아파트 일대 정비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라목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이상 판정을 받은 지역 : 입안대상지역(면적 153,213.6㎡) 내 총 23개동에서 신월시영아파트 22개동 안전진단 등급 판정

< 건축물 노후·불량 현황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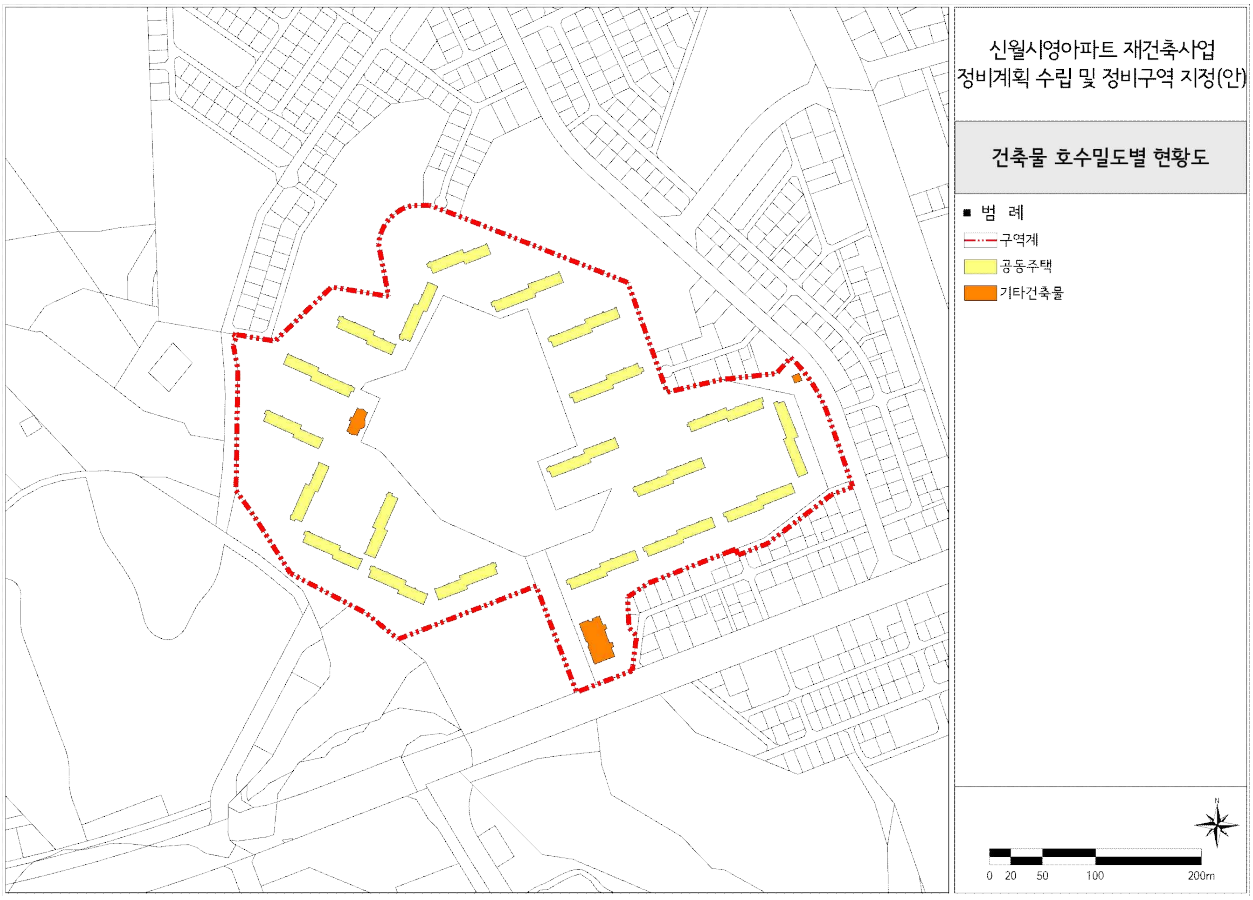


2) 호수밀도 현황

호수밀도 (호수/ha)	구역면적 (㎡)	건축물 호수				비고
		계	단독주택(동)	공동주택(호)	기타건축물(동)	
12.47	153,213.6	191	-	188	3	-

주)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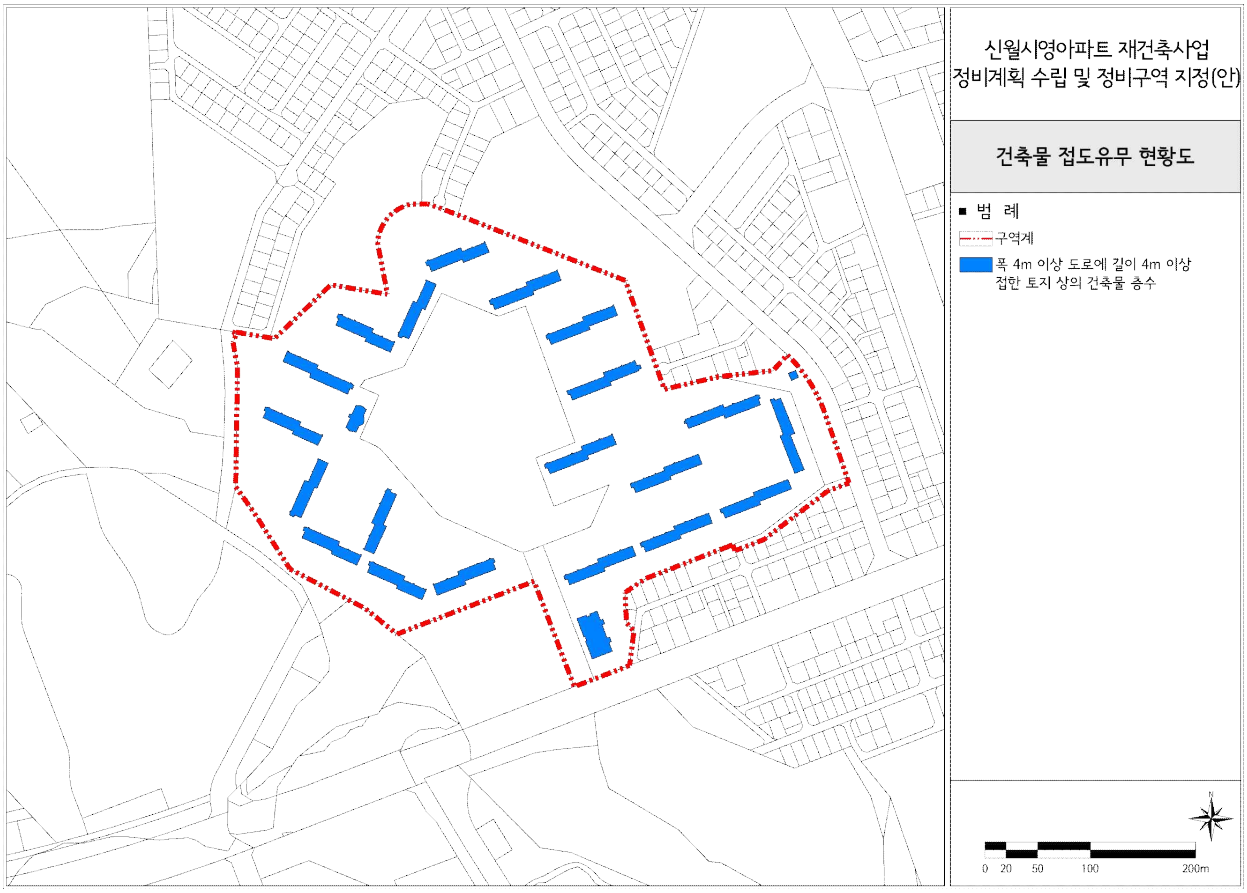
< 건축물 호수밀도 현황도 >



3) 주택접도율 현황

접도율 (%)	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	비고
100.0%	23	23	-

< 건축물 접도유무 현황도 >



4) 과소필지 현황

구분	구역안의 대상 총토지		과소필지(90㎡미만)		과소필지 비율 (%)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5	153,213.6	-	-	0.0%
일반토지	5	153,213.6	-	-	0.0%

다.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1) 상위계획

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 토지이용계획

계획 방향	기성시가지	◦ 보행일상권의 핵심거점인 역세권을 중심으로 자족기반 구축을 위한 집약적 토지이용 -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여 신속·편리한 대중교통환경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
		◦ 다양한 지역 특성을 유지하며 점진적 변화 유도 - 중심지와 역세권 이외의 기성시가지는 주변 자연경관, 도시조직, 지역 커뮤니티 등을 고려하여 주거 및 산업 환경을 개선·정비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조
	보존관리 대상지	◦ 보존관리대상지는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존·복구하여 양호한 자연환경· 경관을 시민과 공유
	경관관리	◦ 도시 경쟁력과 도시공간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정성적 높이관리체계로 전환** - 자연경관 및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서울시 스카이라인 조성을 원칙으로 도심 속 다양한 열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유연한 방식으로 높이를 관리** - 정비 및 개발 사업 추진 시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역특성과 대상지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 높이 계획을 수립한다.**
		◦ 정비지원계획추진과 연계한 공동주택 경관관리방안 마련 - 하나의 거대블록으로 조성되었단 하나의 단지를 여러개 중소블록으로 재구성하여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조성 등 주변 지역과 보행동선이 연계되도록 계획하여 단절성 극복 및 주변 소통 공간 조성

■ 단계별 실현전략

단계별 실현 전략	중·단기적 실현전략	◦ 급속하게 변화하는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경직된 도시계획의 대전환을 추진하며 용도지역제, 스카이라인 관리기준 등의 대대적인 개편 -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주거·업무·녹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도시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 구축
		◦ **서울 전역에 일율적·정량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기준' 삭제 및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 ◦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스카이라인 창출
		◦ 시민의 생활변화를 공간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도시 모습을 담아내는 미래형 도시관리체계로 변화하기 위한 '보행일상권' 실현
		◦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 뿐 아니라 도시계획체계 개편, 경관관리, 생활권계획 등 유기적인 노력
	중·장기적 실현전략	◦ 전 지구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공간계획 및 부문별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전략들을 지속적으로 실현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도시에 대한 노력은 모든 정책 판단에 있어 우선시되는 이슈가 되어야 하며,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다룸과 동시에 공간계획과의 유기적인 고려 필요
		◦ 기반시설 입체화와 미래교통 인프라 준비

■ 서남권 발전구상

서남생활권	
발전방향	“교육 ·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신산업 기반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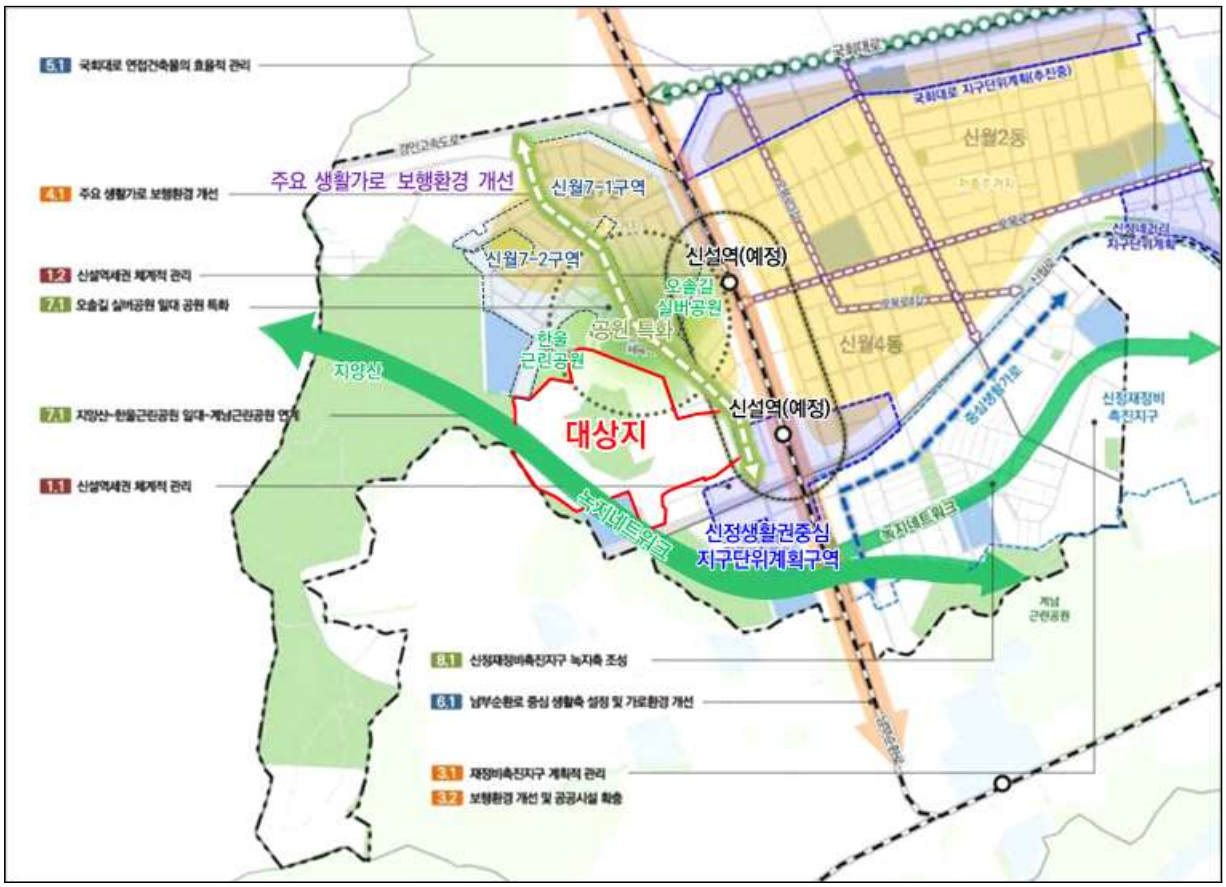
분야별 계획과제	도시공간	◦ 여의도·영등포 도심,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적 공간구조 구축
		◦ 가산대림 광역중심, 대규모 가용지를 활용한 혁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
		◦ 마곡 광역중심, 인접 지역과 연계한 지식기반산업 거점으로 육성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중심별 특화 육성 계획 수립
		◦ 역세권 중심지의 일자리·복합 기능 강화 및 관리방안 마련
	주거환경	◦ 노후 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 지원 강화 - **양천구 목동 등 대규모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정비사업 추진을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유도한다.**
		◦ G밸리 연계 직주근접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편익시설 및 다양한 주택유형 공급
	기반시설	◦ 지역 내 단절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추진
		◦ 권역 내 교통체계 개선과 연결성 강화
		◦ 도심첨단물류단지 중심의 서남권 생활물류체계 구축
	공원녹지	◦ 수경축 및 남북녹지축 연계와 공원·녹지 및 수변공간 접근성 강화
	지역특화	◦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공간 육성으로 권역 경쟁력 강화
		◦ 권역 내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문화축 육성



나) 2030 생활권계획(2018)

신월2 생활권	
미래상	“교통이 편리한 전원도시 신월2생활권”

목표1		◦ **경전철 신설역세권 정비를 통한 생활권 중심지 육성**
	전략1	◦ 경전철 신설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신설을 통한 중심성 강화
	전략2	◦ 신정네거리 일대 중심기능 강화방안 마련
목표2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종합적 계획관리 및 **중저층 주거지 정주환경 개선**
	전략3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추진에 따른 종합적 관리
	전략4	◦ **신월2,4,7동 중저층주거지** 생활가로 조성 및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목표3		◦ 국회대로 및 남부순환로 여건 변화에 따른 특색있는 가로환경 정비
	전략5	◦ 국회대로 상부 공원 조성에 따른 연접부 관리
	전략6	◦ 남부순환로의 중심생활축 설정 및 가로환경 개선
목표4		◦ **주요공원 개선 및 녹지간 연계를 통한 쾌적한 도시공간 형성**
	전략7	◦ 오솔길 실버공원 등 특화 및 **공원연계를 통한 산책로 조성**
	전략8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내 녹지네트워크 형성



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신월2 주거생활권	
관리방향	◦ 시계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으로 위요된 주거지 특성 관리**

주거환경관리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바우처 확대,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복지 프로그램 강화
생활기반시설	◦ 공공용지 및 사유지의 주차장 활용 등 **주차공간 확보방안 검토** ◦ 인접 생활권 내 지하철역과 연계성 등 대중교통체계 보완
생활가로	◦ 걷고싶은거리인 오목로3,4길 가로환경 지속적 관리 ◦ **어린이 및 노인을 위한 보차분리시설 확충 등 보행공간 안전성 제고**
특성관리	◦ 서울시계, 관문지역에 통일감 있는 고유 도로경관을 조성하여 시계경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서울 관물으로서의 인식 및 상징성 부여



[신월7동]	
주거환경관리	• 보차분리를 통한안전한 보행공간의 조성등 안전성 제고 • 사면재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함께 위험지역의 개발을 제어
기초생활인프라	• 단독·다가구 주택 밀집 내 주차시설확충 • 기존 국공립어린이시설의규모 확충
생활가로	• 지양로 대중교통관련 보행시설 개선 및 소규모 휴식공간확충 검토 • 신월7동 골목시장 인근지역의 가로경관 정비
특성관리	• 지양산으로의 조망 및 지형적 특성과의 조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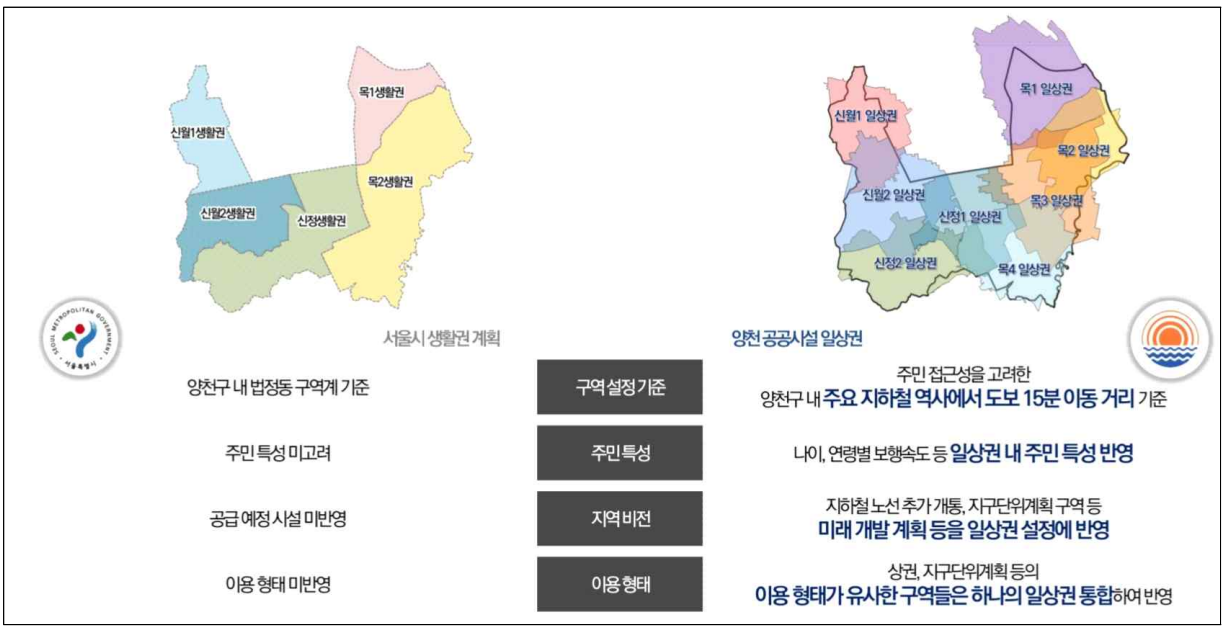
2) 관련계획

가) 양천구 공공시설 재편계획(2023)

■ 양천구 일상권 설정의 배경 및 필요성

배경	◦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로 생활기반시설 공급 및 주민 이용 중요성 대두 - 2040 도시기본계획을 통한 보행권내 일생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보행일상권 조성 계획 마련 - 저이용 공공자산을 활용한 지역 필요시설 확충 요구가 증가, 공공자산 활용한 생활기반시설 제공 필요
	◦ 관내 행정수요의 다양한 변화 예상되어 지역에 필요한 신규 공공수요 대응 및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종합적 마스터플랜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내 균형적 공공시설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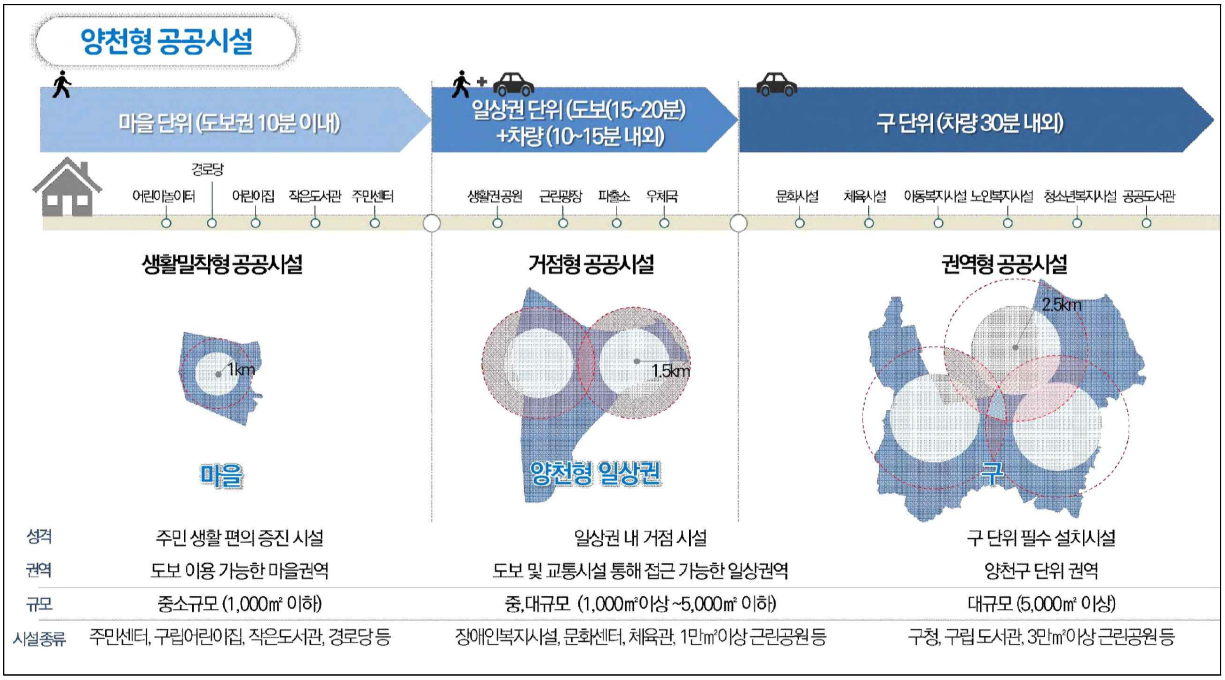
양천구 일상권 설정 필요성	◦ 기존의 일상권은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일상권으로, 양천구의 특성 반영이 미흡하고 사회적 여건 및 인프라 변화 반영이 부족 ① 양천구 특성 반영 미흡 - 생활권계획은 기본계획 특성상 서울시 도시구조 전체를 고려한 큰 계획으로서, 양천구 인구, 경제, 교통 등 여건 반영에는 미흡한 실정 ② 양천구 변화 미반영 - 생활권 결정 후 약10년 경과로 인하여 양천구 사회 여건 및 인프라 변화 등 반영 부족 ③ 공공서비스 생활체감도 향상 - 한정된 구재산을 기반으로 양천구의 사회경제 여건 등을 반영으로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체감 효과 증진 유도
양천구 일상권 설정 기대효과	◦ 상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이용 형태나 특성이 유사한 구역들은 하나의 일상권에 통합하여 반영함으로써 주민 편의성 고려 ① 사회여건 및 미래 공공수요 대응 등을 고려하여 주민 삶에 밀착할 수 있도록 양천구를 8개소의 일상권으로 세분하여 관리 ② 지하철 노선 추가 개통,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미래 개발 계획이나 그에 따른 지역의 위상 변화 등을 일상권 설정단계에서 반영함



■ 양천구 공공시설 유형화

기본방향	◦ 양천구 공공시설은 구민의 생활편의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 향유 - 시설의 위계, 규모, 접근성 고려한 기능 재편으로 구민 생활 편의성 확대와 파급효과를 제고하는 단위별 공간 분류 - 구, 생활권, 동단위의 공공시설 분류하여 양천형 주민맞춤 공공시설 재편 실현 - 접근성을 기반으로 유형화하고 시설의 규모, 성격, 이용대상자, 이용 편의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유형 세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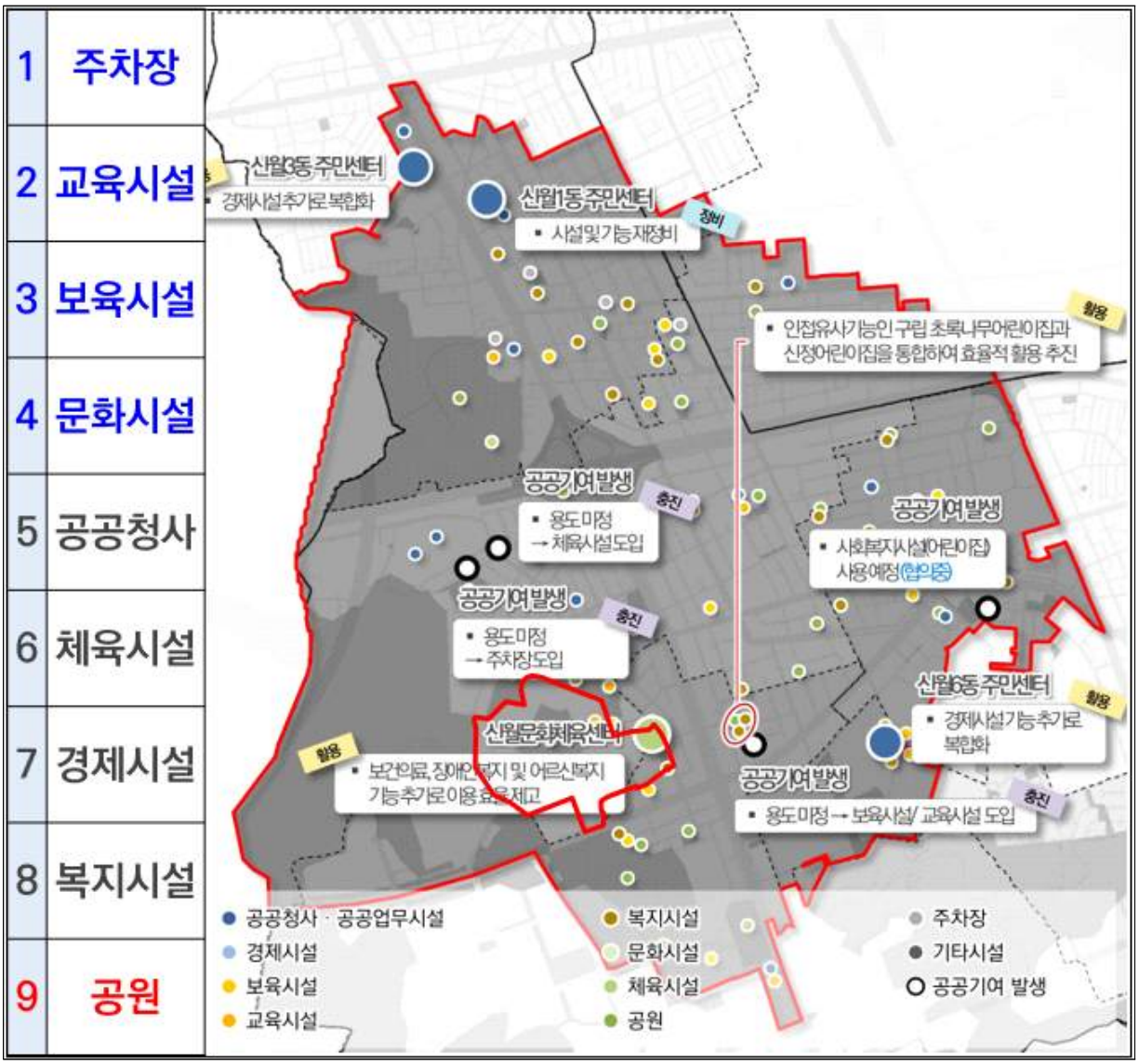
공공자산 유형화	◦ 구민 생활 편의성과 파급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위계, 규모, 접근성을 고려한 양천형 공공시설 재편 및 공급	
	시설분류	
	권역형 공공시설	◦ 권역형 공공시설은 차량 10분 내외(반경 5km)로 구 단위 필요시설, 법적 필수 설치시설 등 양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 ◦ 공공시설 법적 필수 및 권장 설치시설의 경우 권역형 공공시설로 분류
	거점형 공공시설	◦ 생활권형 공공시설은 거점형 공공시설로 일상권 및 2, 3개의 일상권 단위로 설치 필요한 시설로 구성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 마을형 공공시설은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로 동단위 시설로서 도보 5분~1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시설



■ 신월2일상권

분포 현황	구분	공공 청사	경제 시설	보육 시설	교육 시설	복지 시설	문화 시설	체육 시설	공원 시설	주차장
	권역형	2	0	0	0	3	0	1	2	0
	거점형	2	0	2	3	6	2	1	6	0
	생활밀착형	11	0	18	0	15	2	0	23	13
분석결과		타 일상권 대비 복지시설, 공원시설 등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경제관련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시설	우선순위	시설	우선순위	시설	우선순위
공공청사	6→5(생)	경제시설	1→7(거)	보육시설	4→3(생)
교육시설	3→2(거)(생)	복지시설	8→8(생)	문화시설	5→4(거)(생)
체육시설	7→6(거)	공원	9→9(생)	주차장	2→1(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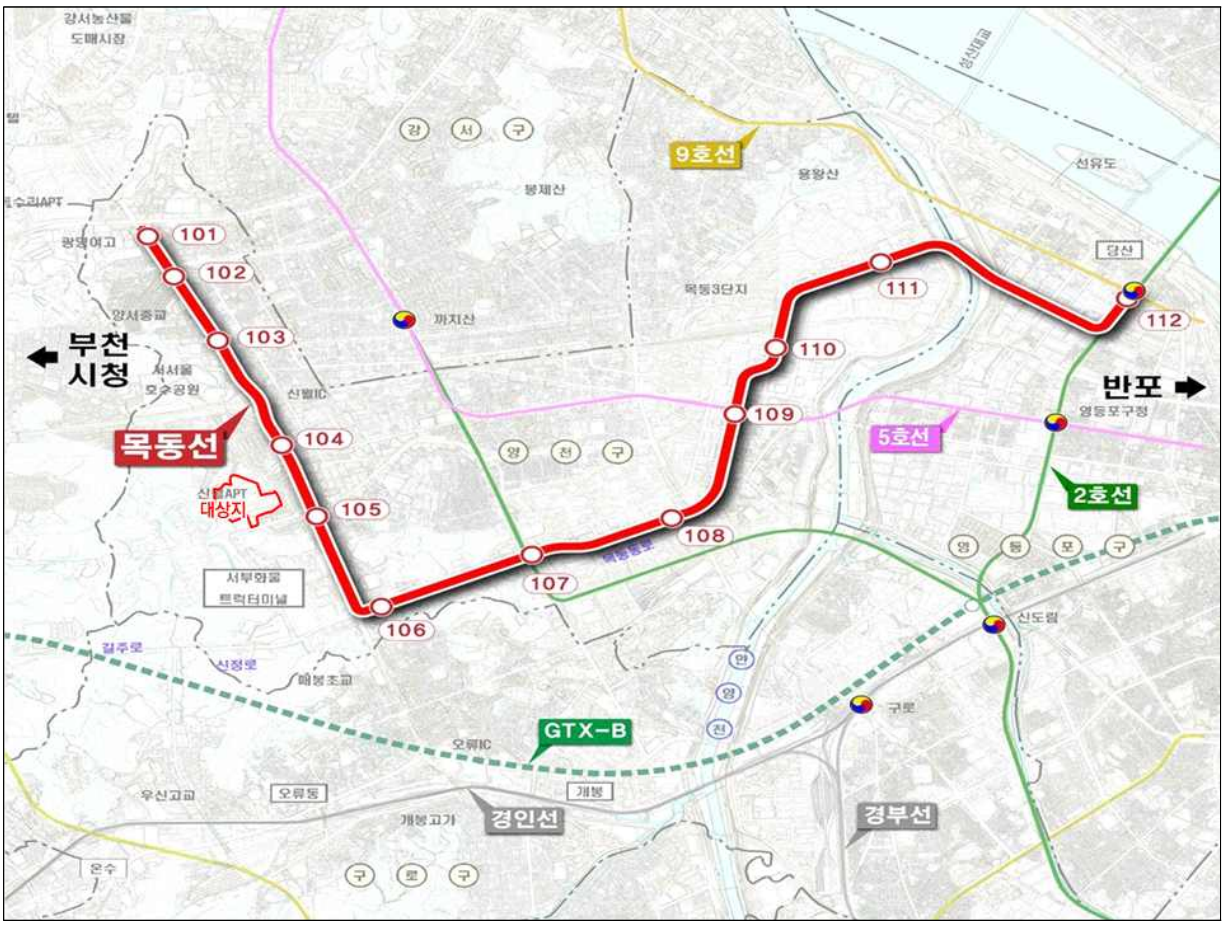


나)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목동선(신월~당산)

개요	◦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15」의 최적 단일 노선에 대해 수립 당시와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재검토함 ◦ 양천구의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철도 서비스 소외지역을 해소하는 노선

노선 길이(km)					정거장		총사업비 (억원)	비고
개착구간	터널구간	정거장	환기구	총길이	환승정거장	총정거장		
1.76	8.29	0.38	0.44	10.87	2개소	12개소	11,692.2	2015년 구축계획 변경 선정노선
주요 경유지		◦ 양천구, 영등포구						
주요 지장물		◦ 2호선, 5호선, 9호선 입체교차 ◦ 신월지하차도,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 등촌 지하차도, 목동지하차도, 안양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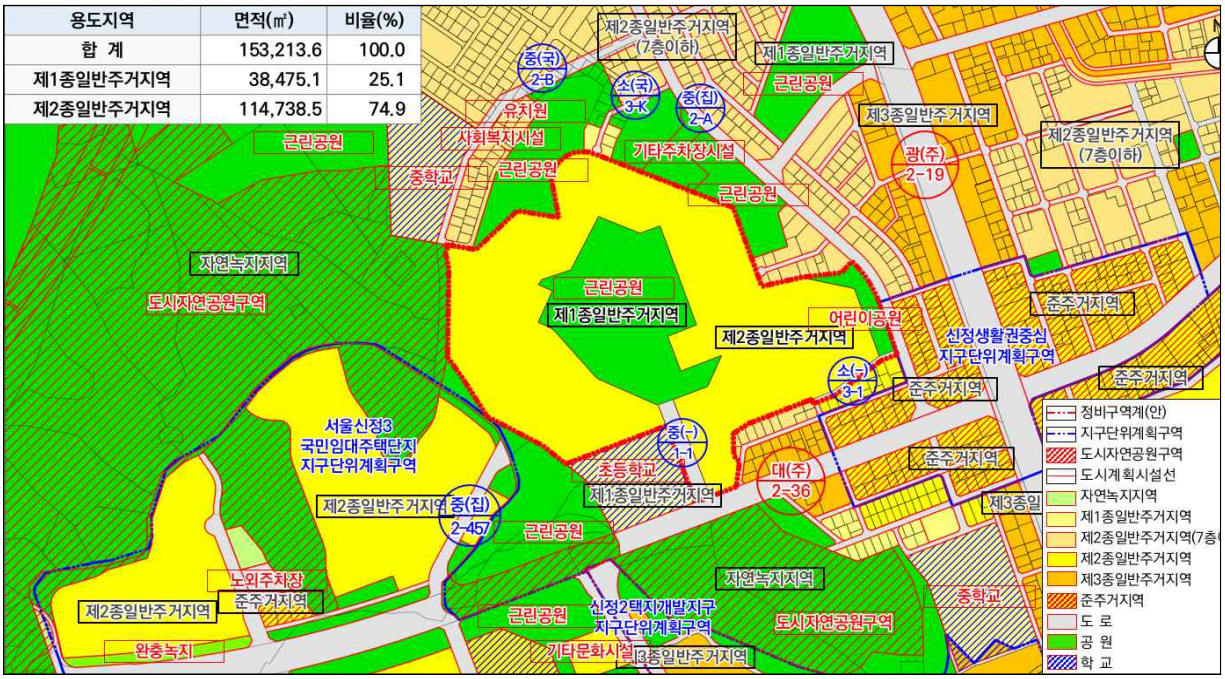


3) 도시관리계획 현황

- 대상지는 제1종,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며,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이 결정되어 있음

<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

용도지역	면적(㎡)	비율(%)
합 계	153,213.6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8,475.1	25.1
제2종일반주거지역	114,738.5	74.9



현황



라. 관련법규 검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법규	주요내용
정비구역의 지정	[법 제8조]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시행령 제7조] 기초조사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입안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 · 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3. 도시 · 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7. 그 밖에 시 ·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서울시조례 제7조]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 소유자·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기존 수목의 현황 9.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10.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1.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1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구성 단계 생략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의견
	[별표1] 입안기준 3.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가.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노후 · 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구 분	주요내용
정비구역의 지정	라. 셋 이상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 · 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정비계획의 내용	[법 제9조]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2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10. 정비사업을 통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목과 다목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의 범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 계획 나.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8조] ③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 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4.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6.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8.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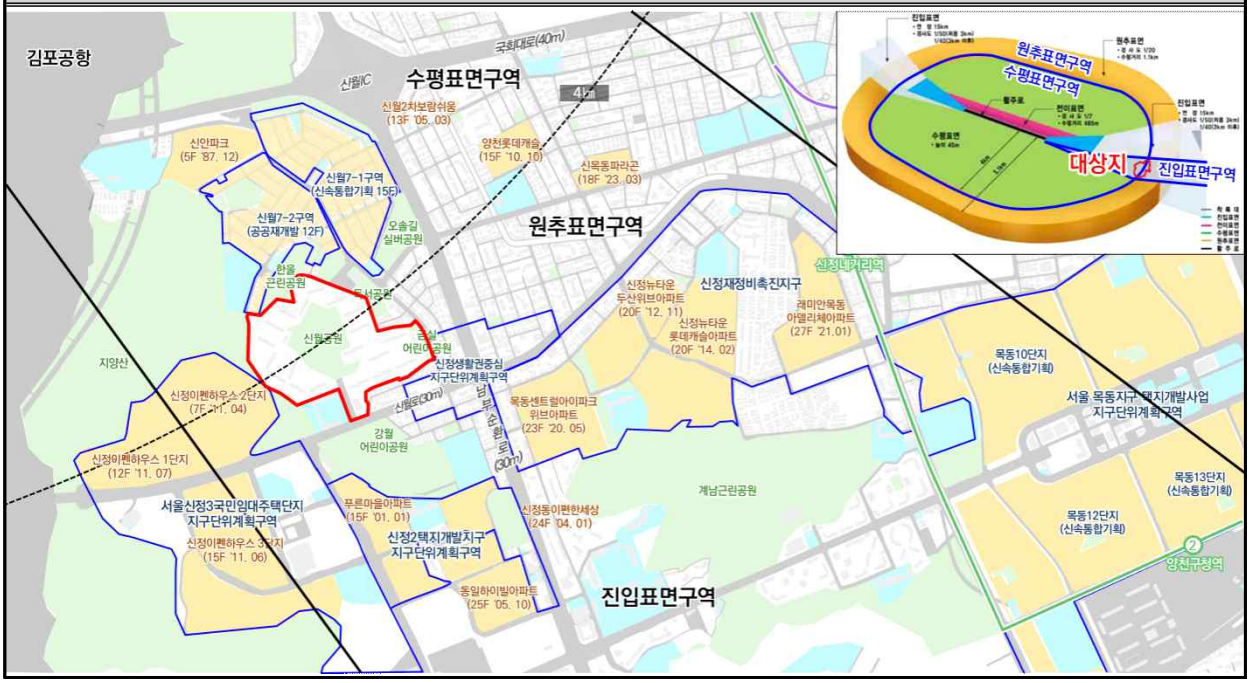
구 분	주요내용
정비계획의 내용	[서울시조례 제8조]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학 주변지역 및 역세권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대학생 및 청년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4. 환경성 검토결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6.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7.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8.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정비계획 입안 제안	[법 제14조] 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 5.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6.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7.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등	[법 제15조]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법 제16조]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마. 잠재력 및 개발전망 분석

- 정비구역은 주변으로 기개발 된 아파트 단지 및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중으로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
- 목동선(예정) 및 남부순환도로가 인접하여 경인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높으며, 반경 500m 내 학교 2개소 위치함에 따라 입지여건이 우수한 주거밀집 지역임
- 학교, 공원 등이 밀집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높은 학군을 보유하고 있어 우수한 주거지역임
- 현재 「공항시설법」 상 고도제한 적용 시 사업추진이 곤란하나, 지양산 등 주변 장애물 차폐이론을 적용하여 고도제한 완화

연번	사업유형	명칭	진행단계
1	신속통합기획	신월7-1구역	2025.01 고시
2	공공재개발	신월7-2구역	2024.03 고시
3	지구단위계획	신정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2022.1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4	국민임대주택	서울신정3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011.04~07 준공
5	택지개발	신정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2001.01 준공
6	재정비촉진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1-1지구	2020.05 준공
7	신속통합기획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목동10,12,13단지)	신속통합기획 진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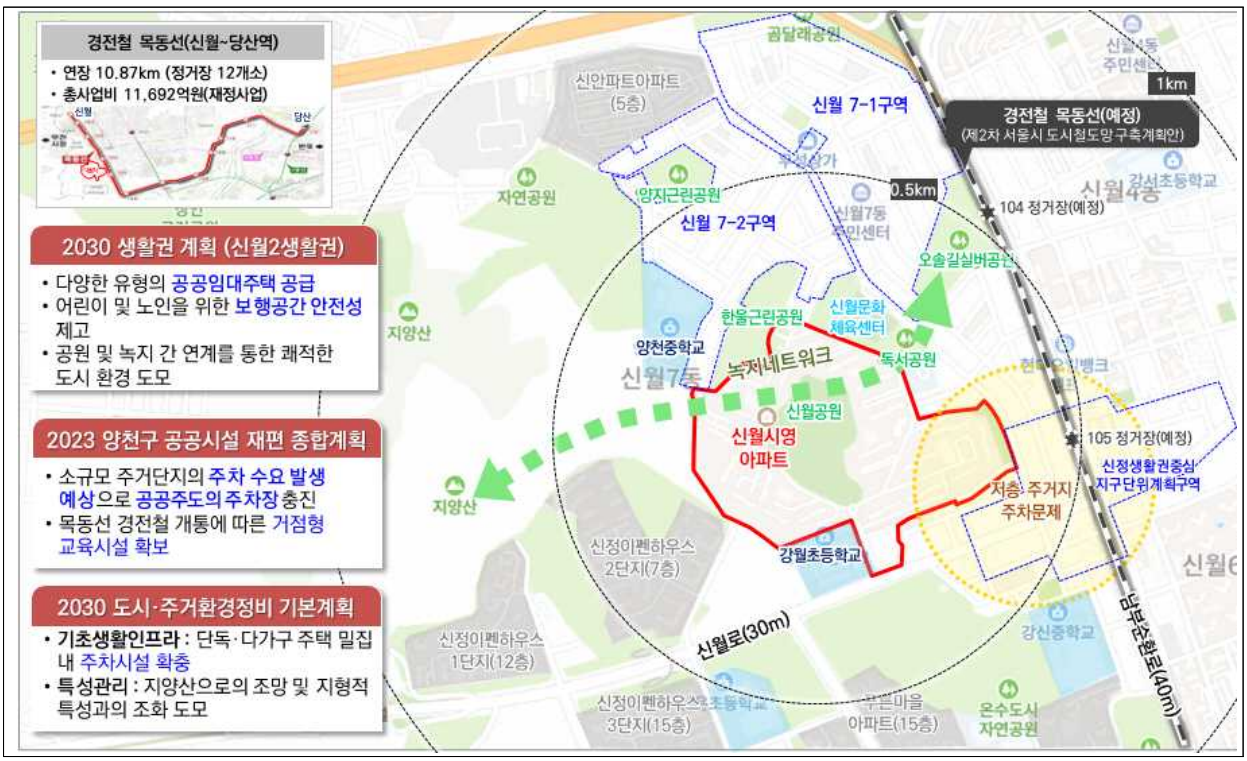
주변 개발 현황도



바. 종합분석

구분	현황분석	계획방향
입지여건	◦ 대상지로부터 1km 이내 목동선(예정) 위치 ◦ 지양산 및 한울근린공원, 독서공원, 신월문화체육시설 등 공공공간 연접	◦ 공동주택 재건축시 주변지역 연계 및 녹지네트워크를 살리는 건축배치 계획 검토
토지이용	◦ 대상지는 공동주택, 유치원, 상가 등으로 이용 중에 있음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서 대상지 내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 공간 다수 입지	◦ 단지 내 주민 및 지역 거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와 어우러지는 보행동선 등 검토
교통여건	◦ 대상지 북측(6m), 서측 (6m), 남측(20m)이 도로와 접하며 보도가 조성되어 있어 안전한 보행환경을 갖춤	◦ 기존의 교통 및 보행체계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 검토
건축물	◦ 구역 내 공동주택 20개동 및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각 1개동으로 주민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등이 다수 입지	◦ 주민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계획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검토

< 현황종합분석도 >



3. 계획의 기본구상

가. 기본방향

- 입지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지양산 및 한울공원, 신월문화체육시설 등 주요 공공공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
- 신월 7-1, 7-2구역 신속통합기획(안)과 연계한 공간계획 수립

< 기본구상도 >



구분	계획내용
공공보행통로	인접 정비예정구역과 연계된 보행축 조성 (신월 7-1, 신월7-2)
공원	그린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근린공원 북측 이동 배치
유치원	단지 내 유치원 학교 주변 이동 배치
도로	주진출입로 차로 수 확대(2차로 → 3차로)(폭원 20m) 부출입구 추가 확보

나. 주요 계획지표(인구지표 등) 설정

1) 계획의 인구 및 규모

구분	인구수(인)			세대수(세대)		
	현 황	계 획	증감	현 황	계 획	증감
대상지	6,385	8,912	증) 2,527	2,256	3,149	증) 893

주) 세대당 2.83인 적용 (2024.9월 양천구 통계연보)

2) 주택공급 지표 설정

가) 주택규모별 계획 설정기준

- 재건축 정비사업 기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6호, 2024.01.19.)
제5조(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사업규모	세대규모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건설비율	60% 이상		40% 미만

나) 주택규모별 계획

구 분	전용면적 (㎡)	계획 세대수			구성비 (%)	비고
		합계	분양	공공주택		
합 계	-	3,149	2,953	196	100.0	-
60㎡이하	소 계	2,317	2,159	158	73.6	97.6% (기준 이상)
	49	450	378	72		
	59	1,867	1,781	86		
60㎡초과~ 85㎡이하	소 계	756	718	38	24.0	
	84	756	718	38		
85㎡초과	소계	76	76	-	2.4	-
	108	76	76	-		

4. 부문별 정비계획

가. 계획의 수립방향

■ 입지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남부순환로, 신월로 등 간선변과 김포공항 고도제한 입지특성을 고려한 개발밀도 검토
- 지양산과 인접한 공원계획 등 주변지역과 조화·연계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 지양산 및 주변 공원, 신월문화체육시설 등 주요 공공공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

- 통경축 계획 및 오픈스페이스 계획으로 주변 기능과 연계
-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유도

■ 신월 7-1, 7-2구역 정비계획과 연계한 공간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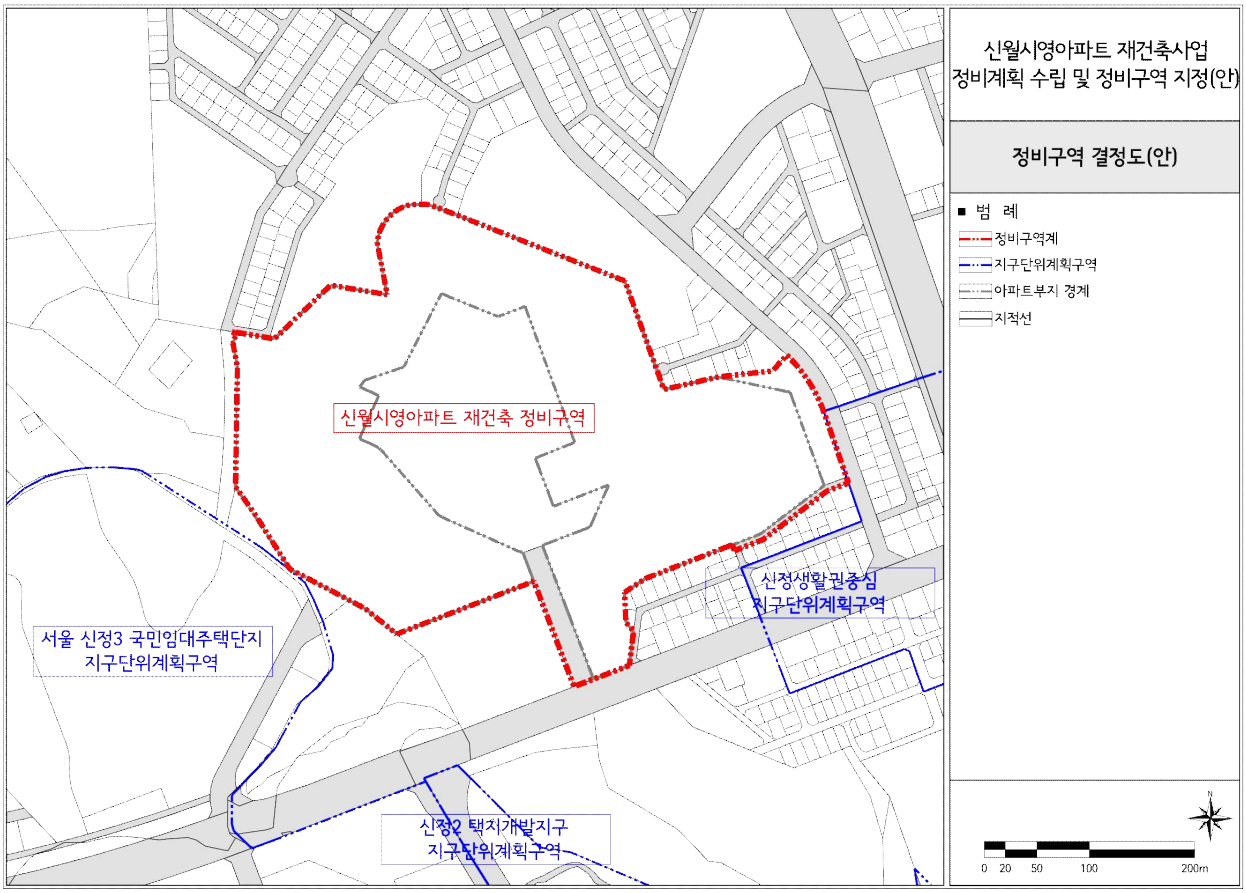
- 북측 공원 이동을 통해 그린네트워크 형성
- 연접 구역과 연계한 공공보행통로 계획으로 광역 통경축 및 보행동선 확보

나.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2" rowspan="2">정비구역 명칭</td><td rowspan="2">위치</td><td colspan="3">면적(㎡)</td><td rowspan="2">비 고</td></tr>
<tr><td>기 정</td><td>변 경</td><td>변경후</td></tr>
<tr><td>신규</td><td colspan="2">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td><td>양천구 신월동
987-1번지 일원</td><td>-</td><td>증)153,213.6</td><td>153,213.6</td><td>-</td></tr>
<tr><td colspan="2">시행방법</td><td>시행예정시기</td><td>사업시행 예정자</td><td colspan="3">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td><td>비 고</td></tr>
<tr><td colspan="2" rowspan="2">재건축 정비사업</td><td rowspan="2">정비계획 지정 후
4년이내</td><td rowspan="2">(가칭)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td><td>현황</td><td>증감</td><td>계획</td><td rowspan="2">-</td></tr>
<tr><td>2,256</td><td>증) 893</td><td>3,149</td></tr>
</table>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

< 정비구역 결정도(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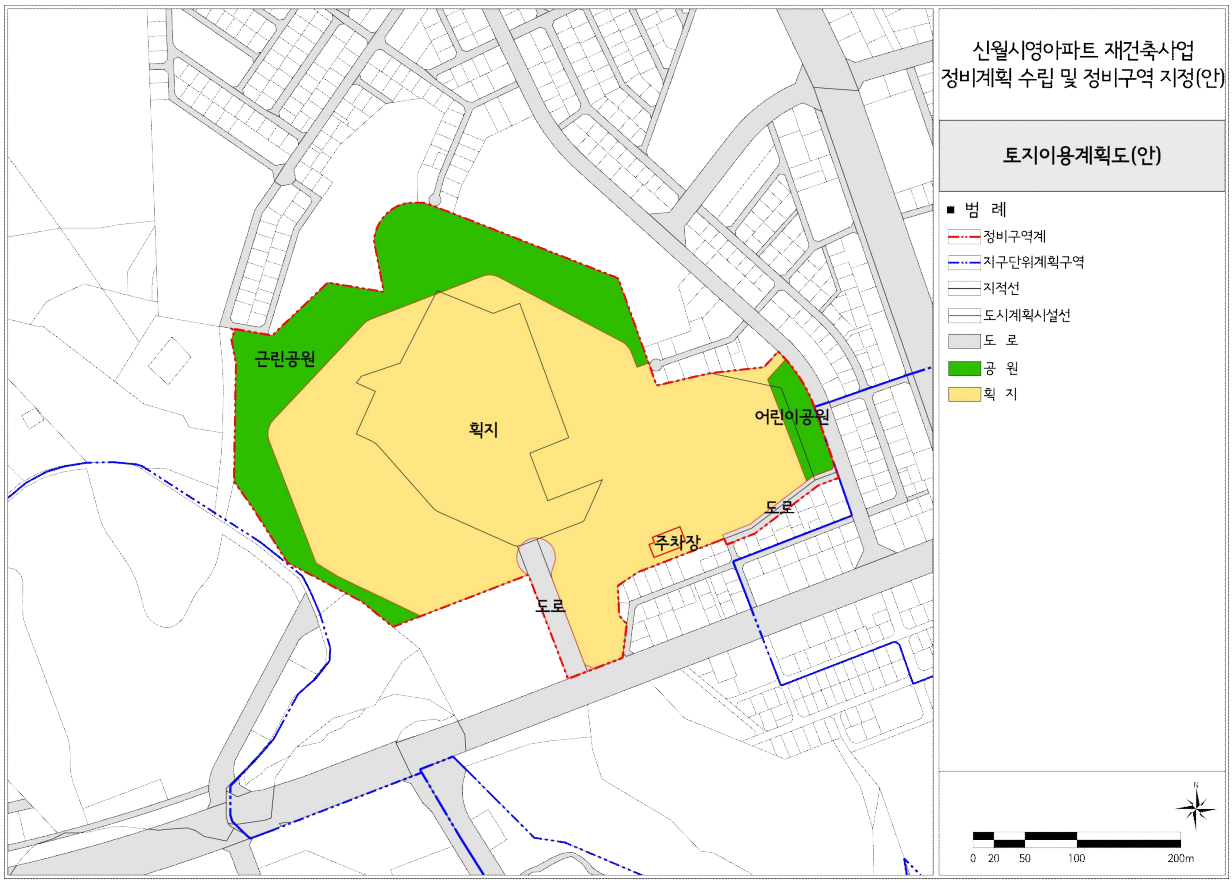


- 이 하 여 백 -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153,213.6	100.0	-
정비기반 시설등	소 계	40,204.6	26.2	-
	도 로	4,449.8	2.9	-
	근린공원	32,376.0	21.1	-
	어린이공원	3,378.8	2.2	-
	주차장	(580.92)	(0.4)	획지 내 입체적 결정
획지	소계	113,009.0	73.8	-
	획지1	113,009.0	73.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토지이용계획도(안) >



라.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소 계	153,213.6	-	153,213.6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38,475.1	증) 450.4	38,925.5	25.4	공원, 도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114,738.5	감) 450.4	114,288.1	74.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용도지역별 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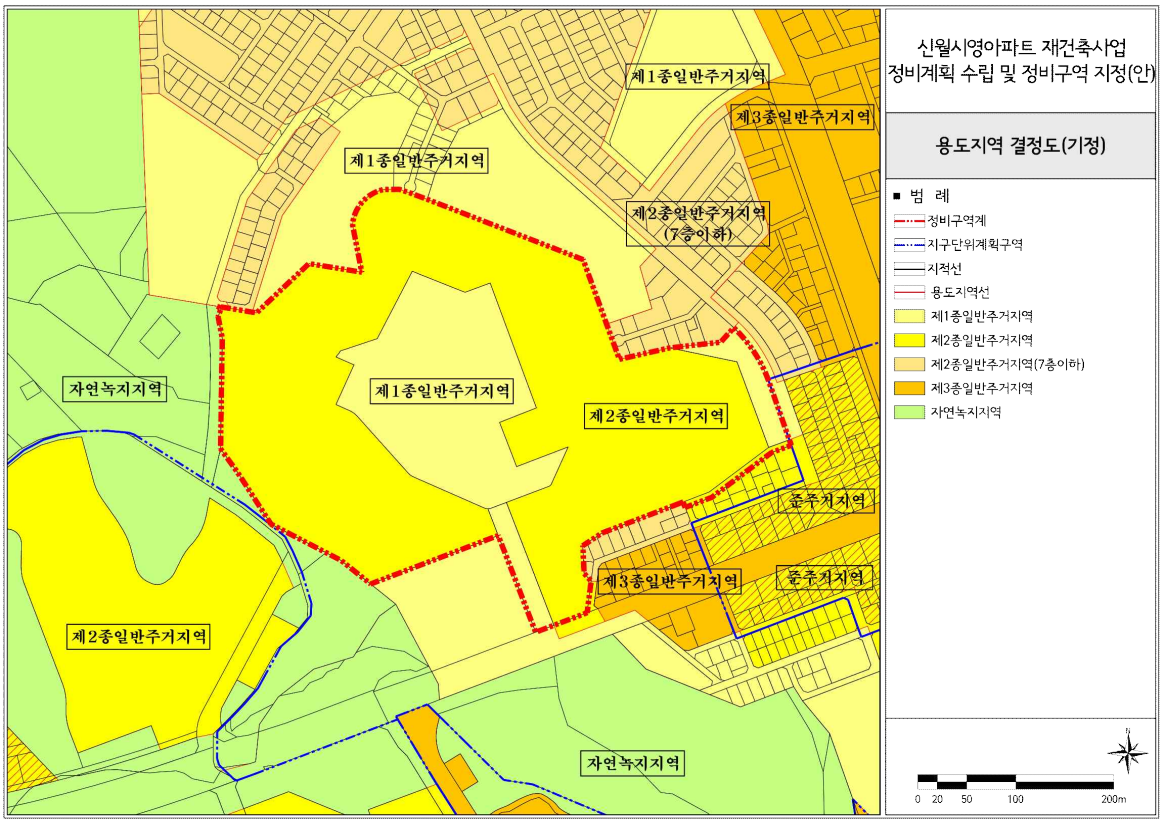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신월동 987-1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38,925.5 (증 450.4)	◦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 조정
-	신월동 987-2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14,288.1 (감 450.4)	◦ 공동주택 획지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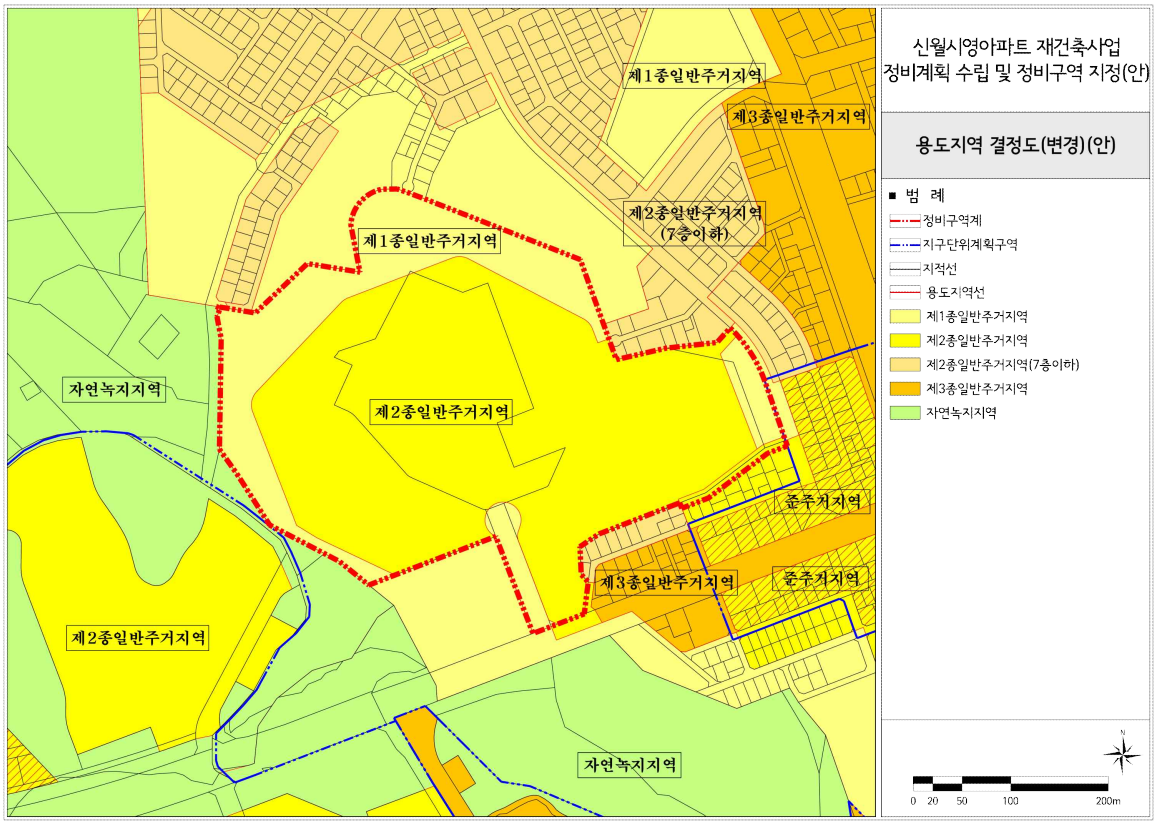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 이 하 여 백 -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안))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2	610 (267)	6,429.4 (4,449.8)	1	140	3,170.7	-	-	-	1	470 (127)	3,258.7 (1,279.1)
대로	-	-	-	-	-	-	-	-	-	-	-	-
중로	1	140	3,170.7	1	140	3,170.7	-	-	-	-	-	-
소로	1	470 (127)	3,258.7 (1,279.1)	-	-	-	-	-	-	1	470 (127)	3,258.7 (1,279.1)

※ ( )는 대상지 내 수치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	-	140	신월동 산154-6	신월동 산154-5	일반 도로	-	양천구고시 1988-21호 (88.08.18)	-
변경	중로	1	1	20	-	140	신월동 산154-6	신월동 산154-5	일반 도로	-	양천구고시 1988-21호 (88.08.18)	-
기정	소로	3	1	6	-	470 (127)	대 2-36	지구계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제475호 (82.12.29)	-
변경	소로	3	1	6~10	-	470 (127)	대 2-36	지구계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제475호 (82.12.29)	-

※ ( )는 대상지 내 수치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1	중로 1-1	◦ 형태 및 선형 변경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도로 형태 및 선형 변경
소로 3-1	소로 3-1	◦ 일부 도로 확폭 - 6m → 6~10m (4m 확폭)	◦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일부 확폭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신월동 987-1	-	증) 580.92	580.92 (입체적 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입체적범위 결정)

※ 580.92㎡는 수평투영면적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	주차장	신월동 987-1	층수	-	지하1층	-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	-	580.92		

■ 주차장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 주차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층수 : 지하1층 - 수평투영면적(㎡) : 580.92 - 주차장연면적(㎡) : 580.92	◦ 사업지 주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월로7길의 자율주차구획을 삭제하고 공동주택 획지 내 입체적 결정을 통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확보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총괄표

구분	행정구역 (㎡)				시가화구역 (㎡)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2	35,754.8	2	35,754.8	2	35,754.8	2	35,754.8
근린공원	1	32,376	1	32,376	1	32,376	1	32,376
어린이공원	1	3,378.8	1	3,378.8	1	3,378.8	1	3,3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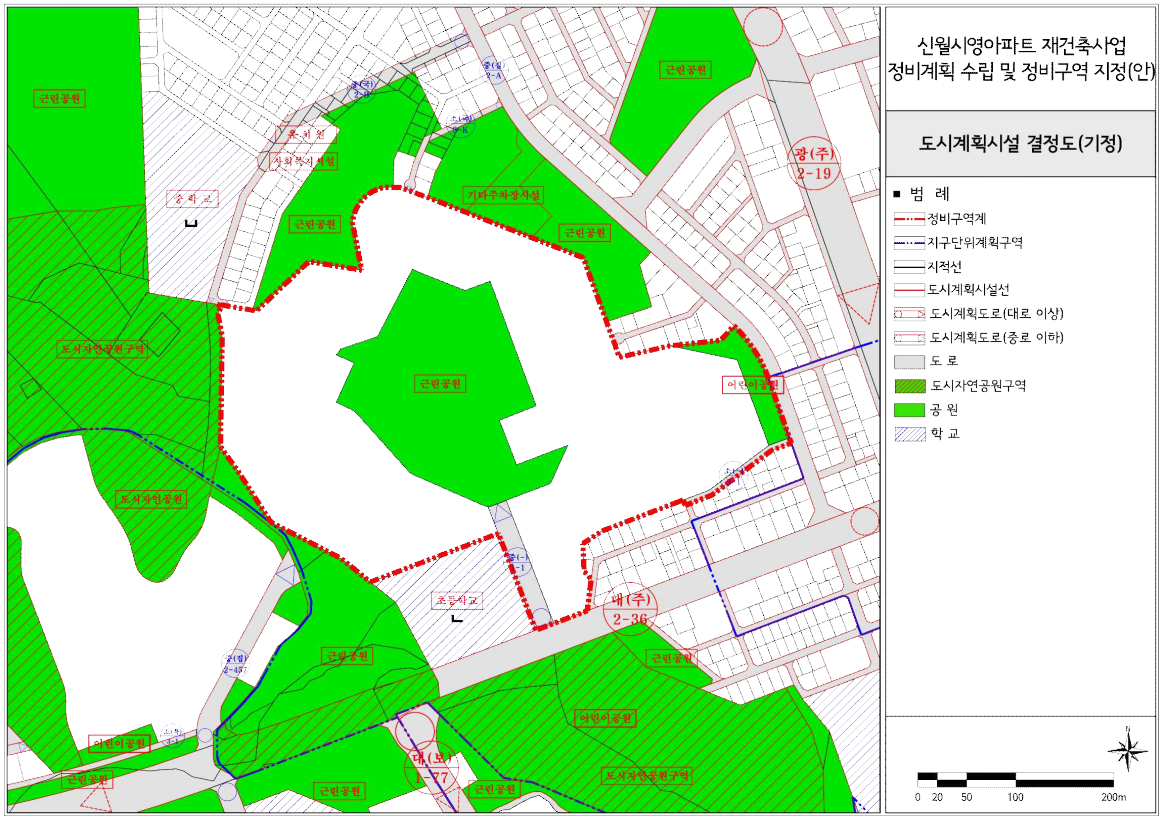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변경	-	신월공원	근린공원	신월동 산 154-5 외 7필지 --- 신월동 987-2	32,376	-	32,376	양천구고시 1988-21호 (88.08.18)	-
기정 --- 변경	-	금실공원	어린이 공원	신월동 985	3,378.8	-	3,378.8	건설부고시 제475호 (82.12.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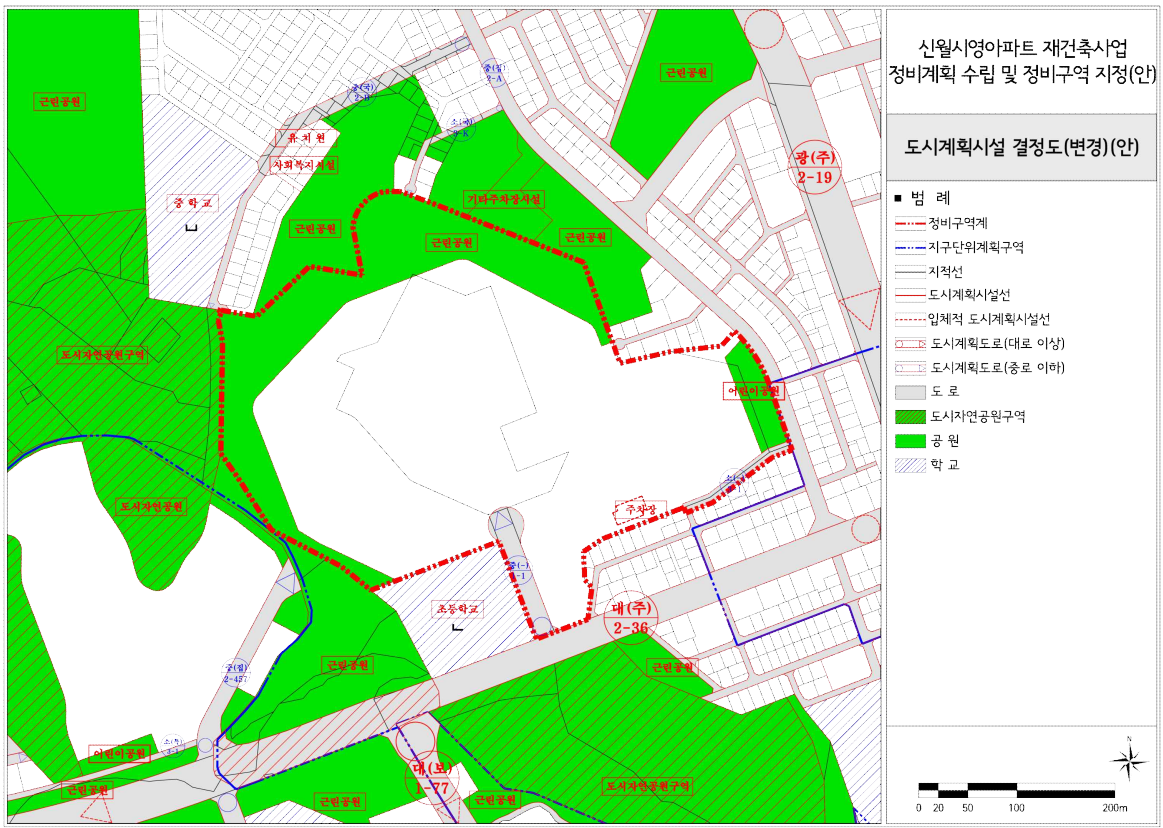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근린공원	◦ 위치 변경	◦ 주변 공원과의 연계를 위한 위치 변경
-	어린이공원	◦ 선형 변경	◦ 도로 확폭 및 공원 정형화를 위한 선형 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안) >



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면 적(㎡)		비고
		서울시 기준	계획(안)	
경비실		-	115.0	지상
관리사무소		164.95	200.0	지하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다함께돌봄센터	66.0	450.0	지상
	경로당	954.8	960.0	지상
	어린이집	954.8	960.0	지상
	작은도서관	412.9	420.0	지하
	주민공동시설	-	2,625.0	지하
	주민운동시설	-	2,125.0	옥외
	어린이놀이터	-	2,750.0	옥외
	소계	-	10,290.0	-
합계		-	10,605.0	-

※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따라 1,000세대 이상의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500㎡에 세대당 2㎡ 더한 면적의 1.25배 이상 확보 = (500㎡ + 3,149세대×2)×1.25 = 8,497.5㎡ 이상 < 10,290.0㎡ 계획

※ 향후 정비계획 결정 절차,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사.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53,213.6	획지1	113,009.0	신월동 987-1 일원	23	1	-	22	-	-

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에 의거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은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참고

자.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건폐율(%)</th><th colspan="4">용적률(%)</th><th rowspan="2">최고 높이 (층수)</th><th rowspan="2">비고</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h>기준</th><th>허용</th><th>상한</th><th>법적 상한</th></tr>
<tr><td>신규</td><td>신월시영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td><td>153,213.6</td><td>획지1</td><td>113,009.0</td><td>신월동 987-1 일원</td><td>공동 주택 및 부대 복리 시설</td><td>60 이하</td><td>190 이하</td><td>218.6 이하</td><td>221.37 이하</td><td>249.98 이하</td><td>63m 이하 (21층 이하)</td><td>-</td></tr>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13">◦ 주택공급계획 : 3,149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건립 : 97.6%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6">세대수</th></tr>
<tr><th colspan="2">소계</th><th colspan="2">분양</th><th colspan="2">공공</th></tr>
<tr><td>합 계</td><td>3,149</td><td>100.0%</td><td>2,953</td><td>93.8%</td><td>196</td><td>6.2%</td></tr>
<tr><td>60㎡ 이하</td><td>2,317</td><td>73.6%</td><td>2,159</td><td>68.6%</td><td>158</td><td>5.0%</td></tr>
<tr><td>60~85㎡ 이하</td><td>756</td><td>24.0%</td><td>718</td><td>22.8%</td><td>38</td><td>1.2%</td></tr>
<tr><td>85㎡ 초과</td><td>76</td><td>2.4%</td><td>76</td><td>2.4%</td><td>-</td><td>-</td></tr>
</table></td></tr>
<tr><td>심의완화사항</td><td colspan="13">◦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249.98% 이하 (완화용적률 28.61%)</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등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3">◦ 건축한계선 : 3~8.5m</td></tr>
<tr><td>기타사항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3">◦ 전면공지 : 3~6m(보도형), 2.5m(차도형)
◦ 공공보행통로 : 12m
- ‘공공보행통로 상부에 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며, 24시간 개방을 통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중앙광장 : 공공보행통로와 교차하는 통경축 확보구간에 개방형 공간 조성</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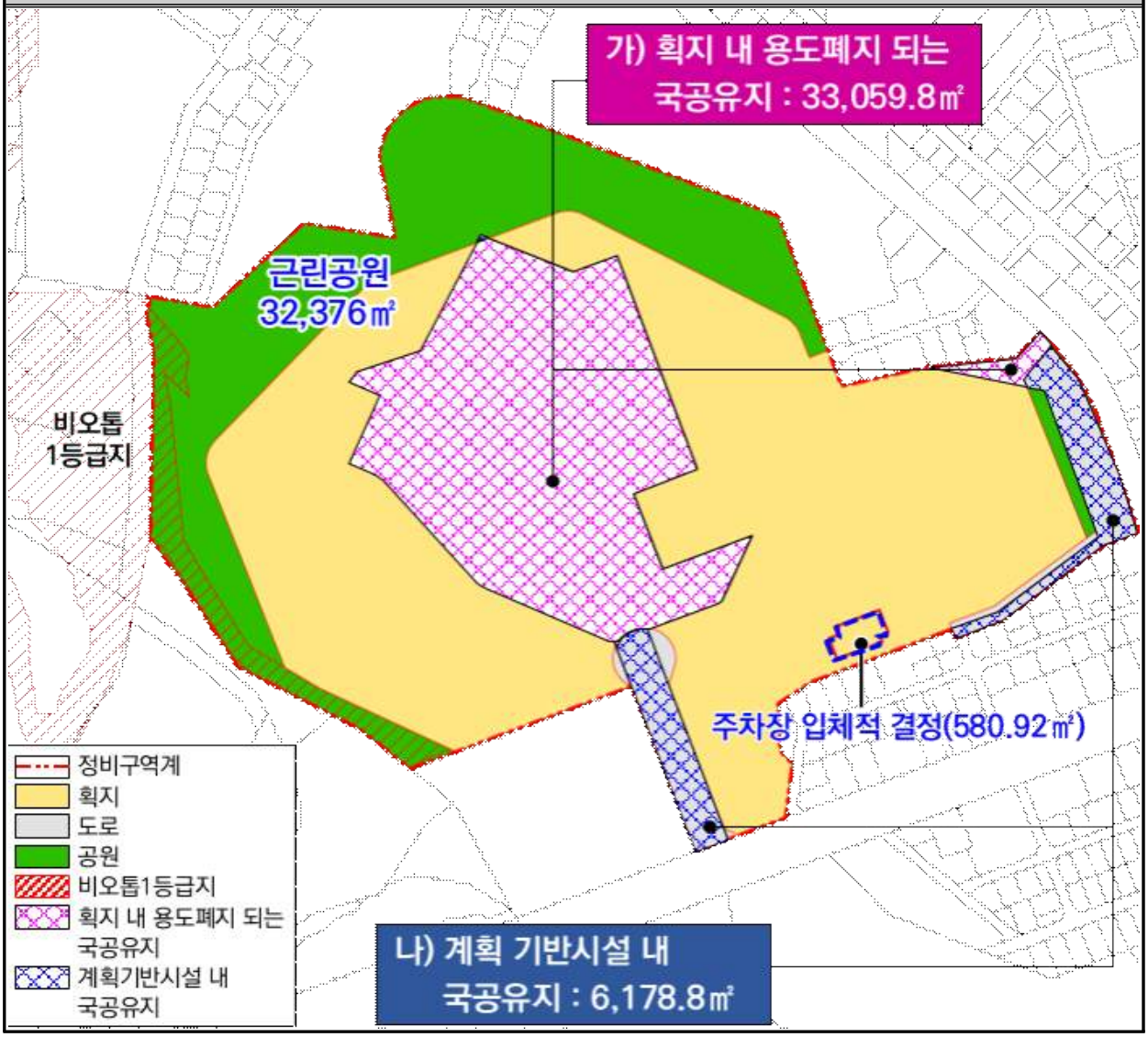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7">산정내용</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계획
(㎡)</td><td rowspan="2">구역면적</td><td rowspan="2">획지
(공동주택)</td><td colspan="3">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등</td><td rowspan="2">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 rowspan="2">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td></tr>
<tr><td>소계</td><td>정비
기반시설</td><td>현금·건축물
(환산부지)</td></tr>
<tr><td>153,213.6</td><td>113,009.0</td><td>40,416.5</td><td>40,346.6</td><td>69.9</td><td>6,178.8</td><td>33,059.8</td></tr>
<tr><td>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7">◦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등 제공면적-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40,416.5㎡ - 6,178.8㎡ - 33,059.8㎡ = 1,177.9㎡(구역면적의 0.77%)</td></tr>
<tr><td>공공시설등
부지(토지)면적</td><td colspan="7">◦ 40,346.6㎡
= (도로)4,449.8㎡ + (공원)35,754.8㎡ + (주차장 대지지분)142.0㎡ = 40,346.6㎡
※ 주차장 대지지분 : 대지면적 × (주차장 연면적 ÷ 전체 연면적)
= 113,009.0 × (580.92 ÷ 462,352.68) = 142.0㎡</td></tr>
<tr><td>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면적</td><td colspan="7">◦ 69.9㎡
: ((설치비용)540,783,709.1원 + (설계비)26,119,853.1원 + (감리비)6,056,777.5원) ÷ (부지가액)8,189,814.5원 = 69.9㎡
※설치비용 : 2025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지하층 건축비 1,024,000원의 부가세 10% 제외 금액(930,909원) × 건축연면적(580.92㎡)
※부지가액 : 2024년 1월 평균공시지가 4,094,907.2원/㎡의 2배
※설계비·감리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설계비·감리비 적용 (설계비 × 직선보간법에 따른 요율 적용)</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7">◦ 190.0%(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 준수)</td></tr>
<tr><td>허용용적률</td><td colspan="7">◦ 218.6%(허용용적률 최대량 계획 : 공공보행통로, 장수명주택, 방재안전 등 제공, 사업성보정계수 1.43 적용 시)
: 사업성보정계수 = 서울시 공동주택 평균 공시지가 ÷ 대상단지 평균 공시지가
= 7,192,285 ÷ 5,030,000 = 1.43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 × 사업성보정계수
= 190% + 20% × 1.43 = 218.6%
⇒ 허용용적률 218.6%
※2023 서울시 공동주택 평균 공시지가 : 7,192,258원/㎡
※2023 신월시영아파트단지 평균 공시지가 : 5,030,000원/㎡</td></tr>
<tr><td>상한용적률</td><td colspan="7">◦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a(토지)+(0.7×a(건축물)))
= 218.6%+(210%^{주)}x(1.3×1.0×0.00982)+210%^{주)}x(0.7×0.0062)) = 221.37%
⇒ 정비계획 용적률 221.37% 이하
※ 가중치 :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사업부지용적률 = 210%÷210% = 1.0
※ a(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제공면적÷공공시설등 부지(토지)제공 후 부지면적
= 1,108.0㎡÷112,867.0㎡ = 0.00982
※ a(건축물) : 공공시설 등 부지(건축물 환산부지)÷공공시설등 제공 후 부지면적
= 69.9㎡÷112,867.0㎡ = 0.00062
주) 상한용적률 산정 시 허용용적률은 사업성보정계수 미적용 수치임</td></tr>
<tr><td>법적상한 용적률</td><td colspan="7">◦ 249.98%</td></tr>
</table>

■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 면적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정비기반시설	① 토지	부지	도로	4,449.8	2.90	-
			근린공원	32,376.0	21.13	-
			어린이공원	3,378.8	2.21	-
		건축물 대지지분	주차장	142.0	0.09	획지 내 입체적 결정
	② 건축물(환산면적)		주차장	69.9	0.04	연면적 580.92㎡
	③ 순부담 산정시 제외면적(국·공유지)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내	6,386.8	4.17	-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32,851.8	21.44	-
	A 합 계(①+②-③)			1,177.9	0.77	-
B 현 금				-	-	-
순부담(A+B)				1,177.9	0.77	의무순부담 0.0%

순부담 계획도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인센티브량		적용	비고
공공 보행통로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등 조성(지역권* 설정)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a ※ a = 1이하 - 190%×(3,026.5㎡÷113,009.0㎡)×1=**5.09% ⇒ 5% 적용**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등기로 설정)	10%p 이내	**5%**	3,026.5㎡ 조성
우수디자인, 장수명	◦ 공동주택의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구조적으로 내구성 확보 및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건설 유도 - 기준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우수디자인 기준을 통과하고,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 최우수 15%, 우수등급 10%	15%p 이내	**10%**	우수등급 (80점 이상)
방재안전	◦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공동주택 시설성능개선 - 기준 : 시설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적용	5%p 이내	**5%**	의무기준 초과개선
합 계	최대 20%p 이내		**20% 적용**	

< 허용용적률 완화구간 >



자.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구 분	지점	개 선 방 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사업지 주변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7개소)
	-	○ 중로1-1호선 차로운영계획 재수립
	Ⓐ	- B=20.0m, L=140.0m(왕복2차로→왕복3차로)
		- 강월초교측 보도 설치 : 9.0m(식수대포함)
		- 근린생활시설 측 보도부속형전면공지 설치 : 6.0m
		○ 신월로7길 확폭 및 차로운영계획 재수립
	Ⓑ	- B=6.0→10.0m, L=127m(왕복2차로)
		- 사업지측 맞은편 보도 설치 : 2.0m
		- 사업지측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 : 3.0m
진·출입 동선	-	○ 차량진출입구 설치(4개소)
		- 남측 진출입구부 회전교차로 설치(1개소)
		- 동측 지양로(3개소)
		• 교차로운영 2개소
		• 우회전 진출입 1개소
	Ⓒ	○ 강월초등학교 전면 교차로 폐쇄 후 진출입동선 재수립
	Ⓓ	○ 유치원 앞 Drop-off 설치
	-	○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R=6.0m)
대중교통 및 보행	-	○ 사업지 전면 보행부속형 전면공지 설치(B=3.0~6.0m)
	-	○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	- 험프형 : 3개소
		○ 자전거보관소 설치
		- 법정주차의 20% 이상 확보
주차시설	-	○ 법정주차 : 2,883대
	-	○ 주차수요 : 3,515대(2031년 원단위법)
	-	○ 계획주차 : 4,458대
		- 법정대비 154.6%, 수요대비 126.8%
		- 장애인주차 법정주차의 3% 이상
		- 확장형주차 계획주차의 30% 이상
		- 가족배려주차 계획주차의 10%이상
	-	○ 사업지내 거주자주차공간 확보
교통안전 및 기타	-	○ 주차장 진출입구 차량경고등 설치(5개소)
		○ 과속방지턱 설치(2개소)
		○ 유색포장 설치
		○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

주 : 각 지점은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차.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 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재난방지	화재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수해	◦ 자연토양유지 및 공원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억제	
	교통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카.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 대상지 200m 이내에 강월초등학교, 양천중학교 위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에 의건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 정비계획·건축계획 검토 시 양천중학교의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건축배치 시 일조영향등을 고려한 층수계획 ◦ 향후, 동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의거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시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겠음	-

타.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가)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계	주거용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계	유허가	무허가
23	20	3	23	23	-

나)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 호수		거주 가구수			구역 내 거주 인구수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2,256	2,256	1,095	1,161	6,385	3,099	3,286	
단독주택	-	-	-	-	-	-	-	
공동주택	2,256	2,256	1,095	1,161	6,385	3,099	3,286	

※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구역내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 :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다)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구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계	단독	다가구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합 계		2,256	-	-	-	-	2,256	2,256	-	-	-
60㎡ 이하	소계	2,256	-	-	-	-	2,256	2,256	-	-	-
	30㎡초과~50㎡이하	792	-	-	-	-	792	792	-	-	-
	50㎡초과~60㎡이하	1,464	-	-	-	-	1,464	1,464	-	-	-
60㎡초과~85㎡이하		-	-	-	-	-	-	-	-	-	-
85㎡ 초과	소계	-	-	-	-	-	-	-	-	-	-
	85㎡초과~135㎡이하	-	-	-	-	-	-	-	-	-	-
	135㎡초과	-	-	-	-	-	-	-	-	-	-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분		계	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	공공주택 (국민규모주택)	비고
합 계		3,149	2,953	196	-
60㎡ 이하	소 계	2,317	2,159	158	-
	30㎡초과~50㎡이하	450	378	72	-
	50㎡초과~60㎡이하	1,867	1,781	86	-
60㎡초과~85㎡이하		756	718	38	-
85㎡ 초과	소 계	76	76	-	-
	85㎡초과~135㎡이하	76	76	-	-
	135㎡초과	-	-	-	-

파.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사항 없음

하.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착공전	착공 ~ 공사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 현재 추진준비위원회가 설립되어 사업 추진중으로 주민들 거주중	•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 방범용 CCTV 설치운영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규정 준수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공사비 계상	• 방법용 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거.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획 지	위치	면적(㎡)	비 고
신설	획지1	양천구 신월동 987-1번지 일원	113,009.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너. 공공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필요 시, 해당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계획기준	◦ 공공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

■ 공공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table>
<tr><td colspan="2">법적상한용적률
(건축계획)</td><td colspan="5">◦ 249.98% 이하</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td><td colspan="5">◦ 221.37% 이하</td></tr>
<tr><td rowspan="11">공공주택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산출근거</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5">◦ 249.98% - 221.37% = 28.61%</td></tr>
<tr><td>증가된 용적률의
50%</td><td colspan="5">◦ 28.61% × 50% = 14.305%</td></tr>
<tr><td>의무 연면적</td><td colspan="5">◦ 113,009.0㎡(대지면적) × 14.305% = 16,165.94㎡ 이상</td></tr>
<tr><td rowspan="10">공공주택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확보계획</td><td colspan="2" rowspan="2">세대규모</td><td rowspan="2">세대수</td><td rowspan="2">연면적</td><td rowspan="2">비고</td></tr>
<tr><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r>
<tr><td colspan="2">합계</td><td>196</td><td>16,171.20㎡</td><td>(의무)16,165.94㎡
이상 확보</td></tr>
<tr><td>49㎡</td><td>67.70㎡</td><td>72</td><td>4,874.40㎡</td><td>획지</td></tr>
<tr><td>59㎡</td><td>81.45㎡</td><td>86</td><td>7,004.70㎡</td><td>획지</td></tr>
<tr><td>84㎡</td><td>112.95㎡</td><td>38</td><td>4,292.10㎡</td><td>획지</td></tr>
</table>

- 이 하 여 백 -

더.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	비오톱	비오톱보전등급 향상	■	• 비오톱유형평가도 도로 및 1~4등급, 개별비오톱평가도 평가제외구역, 도로, 및 일부 2등급	• 대상지 내 녹지공간 확보	
2	생태 네트워크	녹지 · 수생태 연결성 확보	■	• 대상지 서측으로 지양산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주변으로 작동산, 신월산 등 녹지자원이 풍부함	• 대상지 내 녹지계획을 수립	
3	동 · 식물상	동 · 식물상 보호	-	• 도심지(대지)로 해당사항 없음	-	
4	자연환경 자산	자연환경 보전	-	• 해당 사항 없음	-	
5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현황 및 용도지역 조사	• 공원 및 공동주택을 반영한 종합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6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토양오염 발생하지 않음	-	
7	지형 · 지질	지형 · 지질영향 최소화	■	• 표고 24.44~51.08m, 평균 경사도 2.80°의 평탄지형	• 평지 형태로 지형변화는 경미하며, 건축터파기 공사로 부분적 지형변화 발생	
8	물순환, 수리 · 수문	자연물순환 유지	■	• 획지 내 조경녹지 계획	• 생태면적률 45.01%	
9	수질	수질오염 방지	■	• 지표 수질(안양천) 및 지하수질 현황 조사, 공사 중 토사유출 및 오수 발생	• 공사 중 수질저감 계획 수립 • 우수, 하수 처리방안 계획	
10	바람	바람길 및 미기후 개선	■	• 서울기상대 기상현황 조사 분석, 주풍향 등 검토	• 향후 세부 계획 시 바람방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녹지 수목 식재 통한 미기후 개선	
11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5층 이상 주거지, 공원 등 조경수목식재지, 불투수포장비율이 낮은 주거지,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4층 이하 주거지로 조사됨	• 투수포장과 충분한 녹지 조성으로 열환경 개선	
12	대기질 · 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장 장비가동 시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배출 영향	• 세륜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주기적인 살수 등 저감, 환경정화수종 식재	
13	악취	악취공해 해결	-	• 해당 사항 없음	-	
14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난방, 취사연료 사용과 차량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 대상지 내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 절감, 녹지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5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공사장 건설폐기물 발생 및 운영 시 생활 및 분뇨폐기물 발생	•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 감량	
16	에너지	에너지절약/ 효율 극대화	■	• 지역 에너지 소비현황 조사, 난방, 취사, 전력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이용량 증가	• 향후 에너지 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 검토 예정	
17	소음 · 진동	소음 · 진동 최소화	■	• 공사 시 장비투입에 따른 공사장 소음 유발, 운영 시 교통소음으로 인한 영향	• 공사 중 가설방음판넬,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녹지 완충공간 조성	
18	경관	주변경관과의 조화	■	• 시가화된 지역으로 인공경관이 주를 이룸	• 인근 주거지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해 지상 21층 이하로 계획 • 인접 주거지와 연결되는 안전한 가로 · 세로환경을 조성	
19	휴식 및 여가공간	양질의 휴식, 여가공간 확보	■	• 주변으로 한울근린공원, 독서공원, 오솔길 실버공원 등 위치	• 인접개발단지와의 보행연계 및 안전한 보행가로경관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배치계획 • 대상지 내 공원과 조화될 수 있도록 지상부 녹지공간 계획 및 확보	
20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 연평균 및 월별, 계절별 일조 시간 검토	• 최고 지상 21층 이하 규모의 사업계획 수립, 일조권 침해 수인한도 준수	
21	보행 친화공간	보행친화형 도시 조성	■	• 도로 확폭 필요	• 주택용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주요시설 연계 보행공간 확보 및 생활가로 활성화 도모	
22	전파장해	전파장해 영향 저감	–	• 해당 사항 없음	-	
23	인구	인구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 해당 사항 없음	-	
24	주거	주거 환경을 고려한 계획 수립	–	• 해당 사항 없음	-	
25	산업	산업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 해당 사항 없음	-	

러.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향후 대상지 내 분포하는 이식대상 수목을 조사하여 향후 정비구역 내 조성되는 공원(계획) 내 이식하도록 하겠음

머.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1)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 분	세대수			구성비 (%)	비고
	총계	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	공공주택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합 계	3,149	2,953	196	100.0	-
60㎡이하	2,317	2,159	158	73.6	-
60㎡초과 ~ 85㎡이하	756	718	38	24.0	-
85㎡초과	76	76	-	2.4	-

버.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 해당사항 없음

서.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어.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1) 정비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 결정도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결정도
6) 건축물의 배치 및 대지 내 공지 결정도
7) 정비계획 결정도

5. 소요 사업비 추정(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정비구역 결정도(안)

■ 범 례

- 정비구역계
- 지구단위계획구역
- 아파트부지 경계
- 지적선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정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Scale : 1/3,000

N

0 20 50 100 200m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범 례

- 정비구역계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선
- 용도지역선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Scale : 1/3,000

N

0 20 50 100 200m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안)

■ 범 례

- 정비구역계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선
- 용도지역선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Scale : 1/3,000

N

0 20 50 100 200m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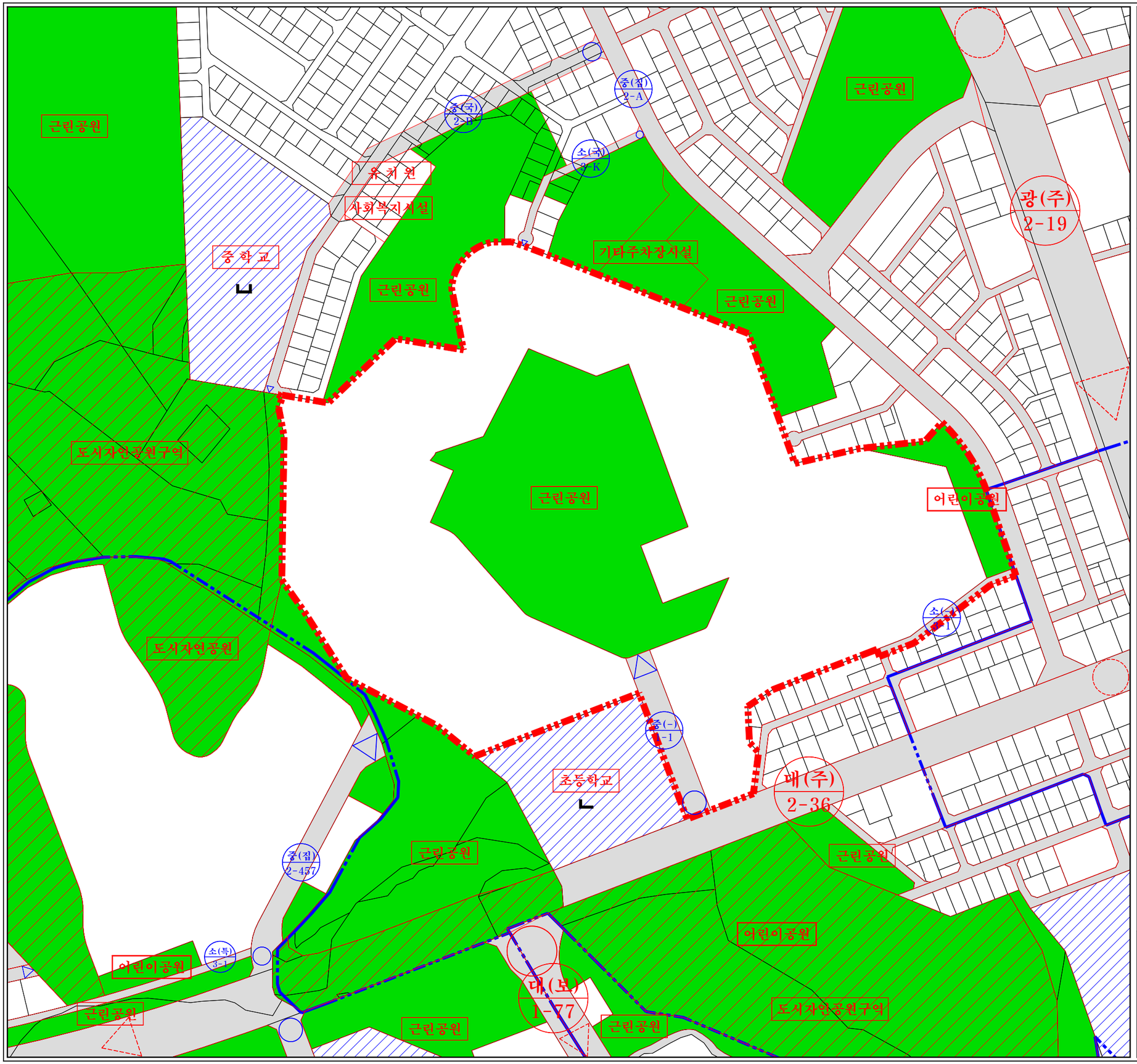
■ 범 례

- 정비구역계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선
- 도시계획시설선
- 도시계획도로(대로 이상)
- 도시계획도로(중로 이하)
- 도 로
- 도시자연공원구역
- 공 원
- 학 교

Scale : 1/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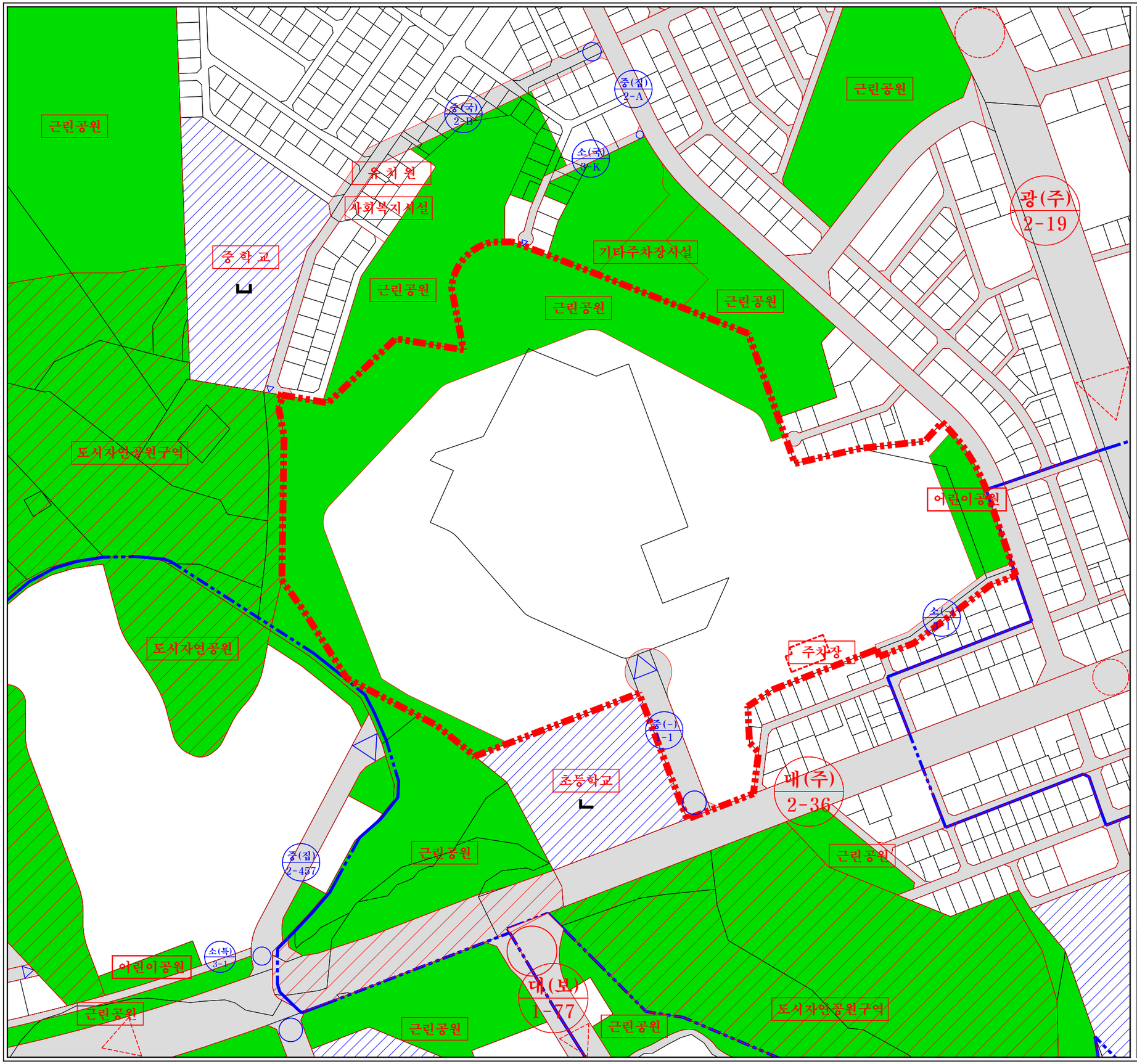
N

0 20 50 100 200m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안)



■ 범 례

- 정비구역계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선
- 도시계획시설선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선
- 도시계획도로(대로 이상)
- 도시계획도로(중로 이하)
- 도 로
- 도시자연공원구역
- 공 원
- 학 교

Scale : 1/3,000

N

0 20 50 100 200m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가구 및 획지 결정도(안)

■ 범 례

- 정비구역계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선
- 획지선
- 획 지

획 지
①

구 분	위 치	면 적(㎡)	주용도
①	신월동 987-1 일원	113,009.0	공동주택

Scale : 1/3,000

N

0 20 50 100 200m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결정도(안)

■ 범 례

- 정비구역계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선
- 획지선
- 획 지

건폐율	주용도
정비계획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	최고층수

획지 1

획 지	
6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21.37%이하 249.98%이하	63m 이하 (21층 이하)

구 분	위 치	면 적(㎡)	주용도
①	신월동 987-1 일원	113,009.0	공동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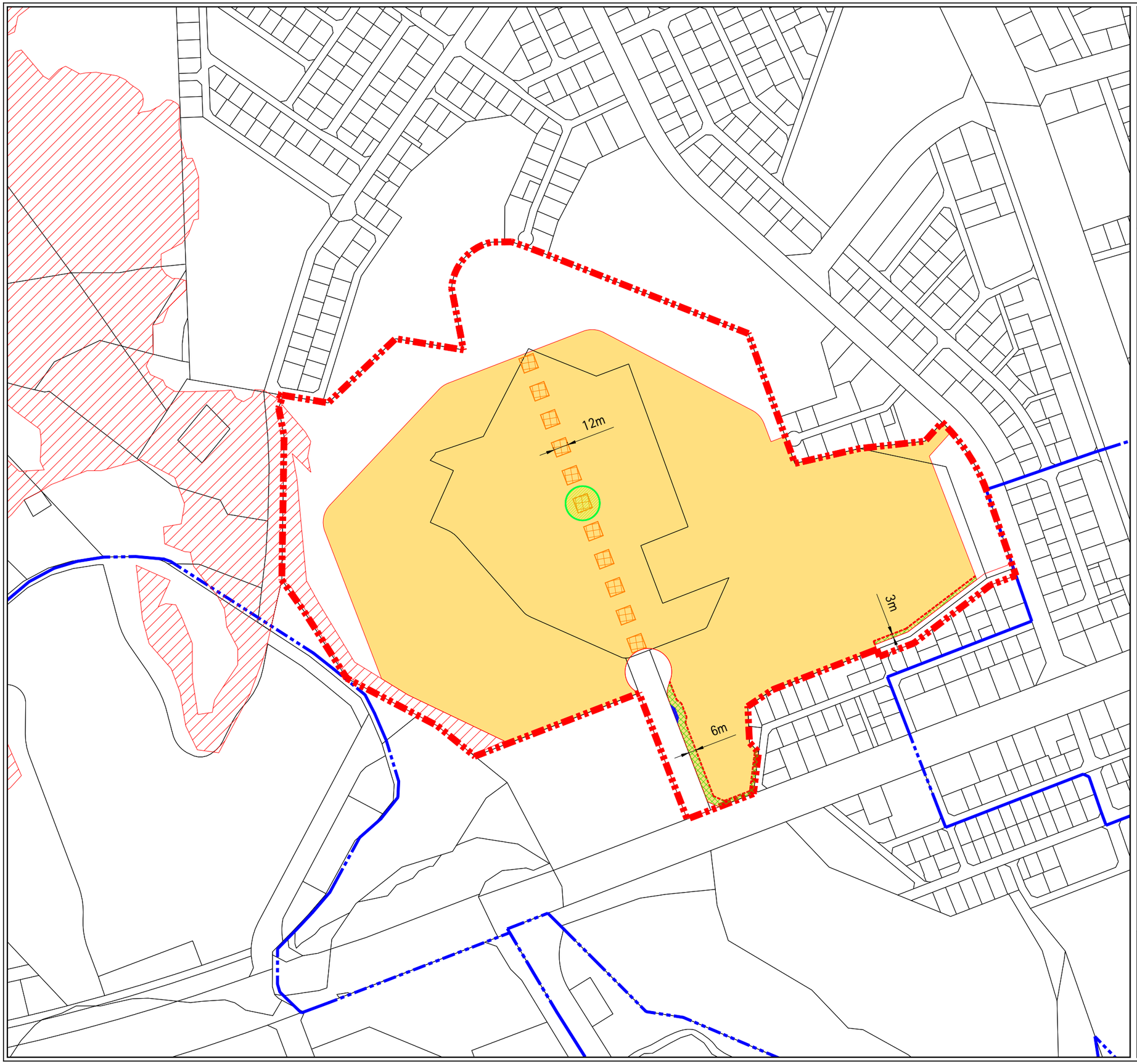
Scale : 1/3,000

N

0 20 50 100 200m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건축물의 배치 및 대지 내 공지 결정도(안)



■ 범 례

- 정비구역계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선
- 획지선
- 획지
- 건축한계선
- 전면공지(보도형)
- 전면공지(차도형)
- 중앙광장
- 공공보행통로
- 비오톱1등급지

Scale : 1/3,000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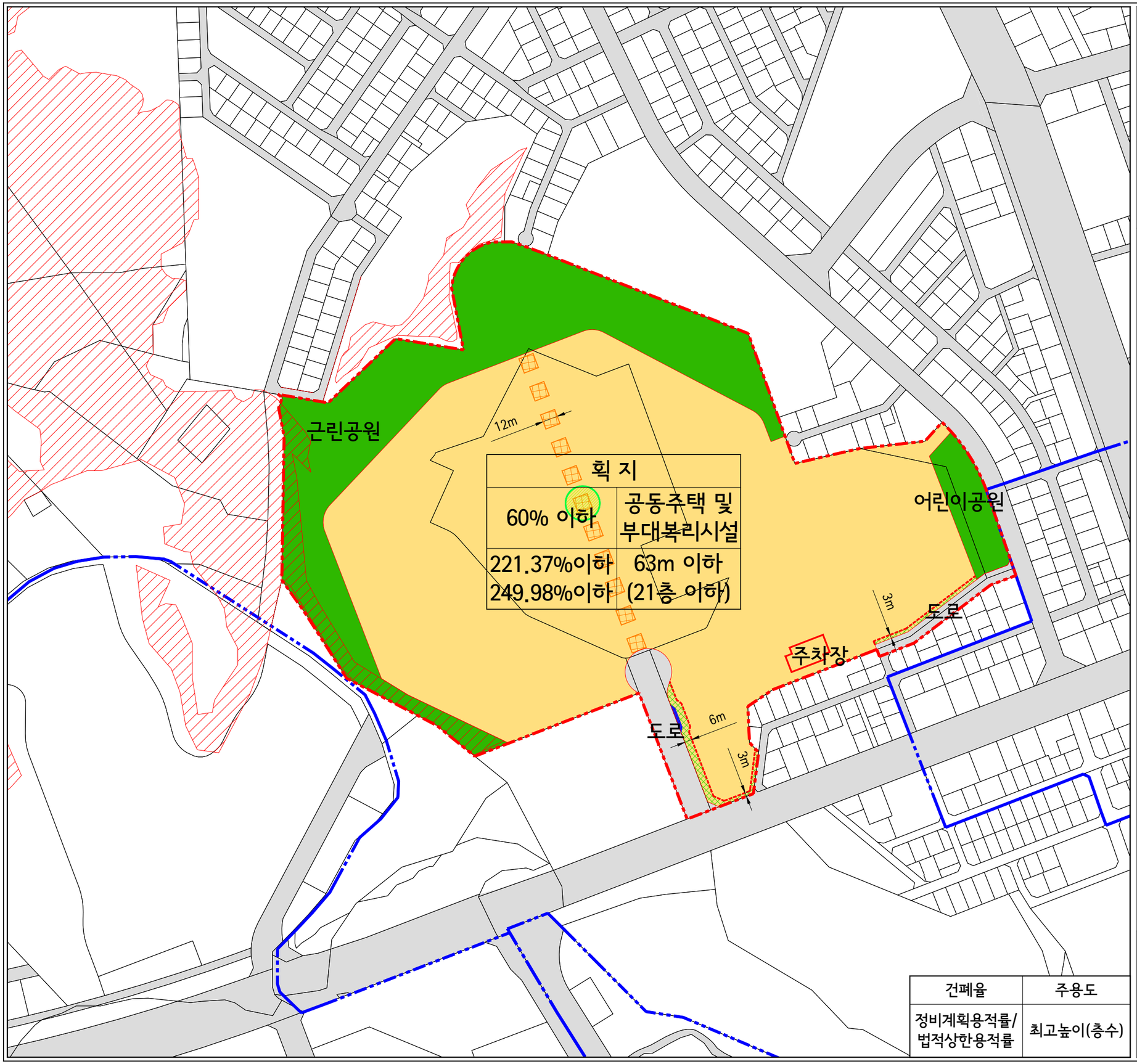
0 20 50 100 200m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정비계획 결정도(안)

■ 범 례

- 정비구역계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선
- 토지이용계획선
- 비오톱1등급지
- 도 로
- 공 원
- 획 지
- 건축한계선
- 전면공지(보도형)
- 전면공지(차도형)
- 중앙광장
- 공공보행통로



획 지	
6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21.37%이하 249.98%이하	63m 이하 (21층 이하)

건폐율	주용도
정비계획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최고높이(층수)

Scale : 1/3,000

N

0 20 50 100 200m

2 토지 및 건축물 조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 토지조서

연번	위 치	지 목	면 적(㎡)		용 도 지 역	용 도 지 구	도시계획 시설	소유주	용 도
			지적	편입					
계	양천구 신월동 일대	-	155,284.5	153,213.6	-	-	-	-	-
1	신월동 987-1	대지	113,975.0	113,975.0	제2종일반 주거지역	-	-	사유지	공동주택
2	신월동 987-2	공원	32,376.0	32,376.0	제1종일반 주거지역	-	근린공원	국·공유지 (서울시)	공원
3	신월동 987-4	도로	2,720.3	2,720.3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중로1류	국·공유지 (서울시)	도로
4	신월동 985	공원	3,378.8	3,378.8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어린이 공원	국·공유지 (양천구)	공원
5	신월동 980	도로	2,834.4	763.5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소로3류	국·공유지 (양천구)	도로

※ 단독주택 용지 : 0㎡, 공동주택 용지 : 113,975.0㎡

2. 건축물조서

연번	위치	용도	구조	동수	호수	세대수	준 공 년 도	규 모				노후불량 여부	비고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하	지상		
합계				23	191	2,256	-	13,593.11	158,964.91	-		-	-
1	신월동 987-1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1	11	132	1988-04-30	624.54	7,877.43	1	12	노후불량	-
2	신월동 987-1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1	11	132	1988-04-30	624.54	7,877.43	1	12	노후불량	-
3	신월동 987-1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1	11	132	1988-04-30	624.54	7,877.43	1	12	노후불량	-
4	신월동 987-1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1	11	132	1988-04-30	624.54	7,877.43	1	12	노후불량	-
5	신월동 987-1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1	11	132	1988-04-30	624.54	7,877.43	1	12	노후불량	-
6	신월동 987-1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1	11	132	1988-04-30	624.54	7,877.43	1	12	노후불량	-
7	신월동 987-1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1	10	120	1988-04-30	657.69	8,296.68	1	12	노후불량	-
8	신월동 987-1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1	10	120	1988-04-30	657.69	8,296.68	1	12	노후불량	-
9	신월동 987-1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1	10	120	1988-04-30	657.69	8,296.68	1	12	노후불량	-
10	신월동 987-1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1	10	120	1988-04-30	657.69	8,296.68	1	12	노후불량	-

연번	위치	용도	구조	동수	호수	세대수	준 공 년 도	규 모				노후불량 여부	비고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하	지상		
11	신월동 987-1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1	8	96	1988-04-30	577.05	7,266.90	1	12	노후불량	-
12	신월동 987-1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1	8	96	1988-04-30	577.05	7,266.90	1	12	노후불량	-
13	신월동 987-1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1	8	96	1988-04-30	577.05	7,266.90	1	12	노후불량	-
14	신월동 987-1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1	10	120	1988-04-30	657.69	8,296.68	1	12	노후불량	-
15	신월동 987-1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1	8	96	1988-04-30	577.05	7,266.90	1	12	노후불량	-
16	신월동 987-1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1	8	96	1988-04-30	577.05	7,266.90	1	12	노후불량	-
17	신월동 987-1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1	8	96	1988-04-30	577.05	7,266.90	1	12	노후불량	-
18	신월동 987-1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1	8	96	1988-04-30	615.93	7,768.74	1	12	노후불량	-
19	신월동 987-1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1	8	96	1988-04-30	577.05	7,266.90	1	12	노후불량	-
20	신월동 987-1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1	8	96	1988-04-30	615.93	7,768.74	1	12	노후불량	-
21	신월동 987-1	판매시설	철근 콘크리트	1	1	-	1988-04-30	365.94	445.64	1	3	노후불량	-
22	신월동 987-1	교육연구 시설	철근 콘크리트	1	1	-	1988-04-30	859.02	3,304.26	1	2	노후불량	-
23	신월동 985	노유자시설	연와조	1	1	-	1991-12-28	61.25	61.25	-	1	노후불량	-

주) 호수 산정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호수밀도 산정기준을 따름

※ 단독주택 수 : 0호, 공동주택 수 : 22개동, 2,256세대

3 기초 조사·확인 내역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전 체 인 구		가 옥 주		세 입 자		인구밀도 (인/ha)	호수밀도 (호수/ha)
주 민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2,256	6,385	1,095	3,099	1,161	3,286	416.74	12.47

	구 분	제 조 업	판 매 업	서 비 스 업	기 타
산 업	계	-	-	-	-
	구성비(%)	-	-	-	-

2. 토지 및 건축물 이용과 소유현황

토지	구 분	전 체 토 지						비 고
		합 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나대지	정비기반 시설부지	기 타	
	필지수	5	1	-	-	4	-	-
	면적(㎡)	153,213.6	113,975.0	-	-	39,238.6	-	-

건축물	구 분		동 수			호수밀도 (호수/ha)	건축면적 (㎡)	연면적 (㎡)
			전체동수	불량동수	불량비율			
	구조별	연와조	1	1	100.0%	0.07	61.25	61.25
		철근콘크리트조	22	22	100.0%	12.40	13,531.86	158,903.66
		조적조	-	-	-	-	-	-
		벽돌조	-	-	-	-	-	-
	용도별	다가구주택	-	-	-	-	-	-
		다세대주택	-	-	-	-	-	-
		단독주택	-	-	-	-	-	-
		연립주택	-	-	-	-	-	-
		공동주택	20	20	100.0%	12.27	12,306.90	155,153.7
		판매시설	1	1	100.0%	0.07	365.94	445.64
		교육연구시설	1	1	100.0%	0.07	859.02	3,304.26
		노유자시설	1	1	100.0%	0.07	61.25	61.25
	경과년수별	10년 미만	-	-	-	-	-	-
		10~20년 미만	-	-	-	-	-	-
		20~30년 미만	-	-	-	-	-	-
		30~40년 미만	23	23	100.0%	12.47	13,593.11	158,964.91
		40년 이상	-	-	-	-	-	-
	층수별	1층	1	1	100.0%	0.07	61.25	61.25
		2~4층	2	2	100.0%	0.13	1,224.96	3,749.90
		5~9층	-	-	-	-	-	-
		10층 이상	20	20	100.0%	12.27	12,306.90	155,153.7
	허가유무별	허가	23	23	100.0%	12.47	13,593.11	158,964.91
		무허가	-	-	-	-	-	-

가. 토지의 이용 현황

1) 토지 지목별 현황

구 분	계	대지	도로	공원	비고
면적(㎡)	153,213.6	113,975.0	3,483.8	35,754.8	-
구성비(%)	100.0	74.4	2.3	23.3	-

2) 토지의 소유자별 현황

구 분	계	사유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비고
면적(㎡)	153,213.6	113,975.0	-	35,096.3	4142.3	-
구성비(%)	100.0	74.4	-	22.9	2.7	-

3) 토지 규모별 현황

구 분	계	90㎡미만	90~500㎡미만	500㎡이상	비고
면적(㎡)	153,213.6	-	-	153,213.6	-
구성비(%)	100.0	-	-	100.0	-

나. 건축물 이용 현황

1) 건축물 용도별 현황

구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비고
동수(동)	23	-	20	1	1	1	-
구성비(%)	100.0	-	87.1	4.3	4.3	4.3	-

2) 건축물 층수별 현황

구분	계	1층	2~4층	5~9층	10층이상	비고
동수(동)	23	1	2	-	20	-
구성비(%)	100.0	4.3	8.6	-	87.1	-

3) 건축물 구조별 현황

구분	계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강구조	연와조
동수(동)	23	22	-	-	-	1
구성비(%)	100.0	95.7	-	-	-	4.3

4) 건축물 경과년도별 현황

구분	계	10년 미만	10~20년	20~30년	30~40년	40년 이상	비고
동수(동)	23	-	-	-	23	-	-
구성비(%)	100.0	-	-	-	1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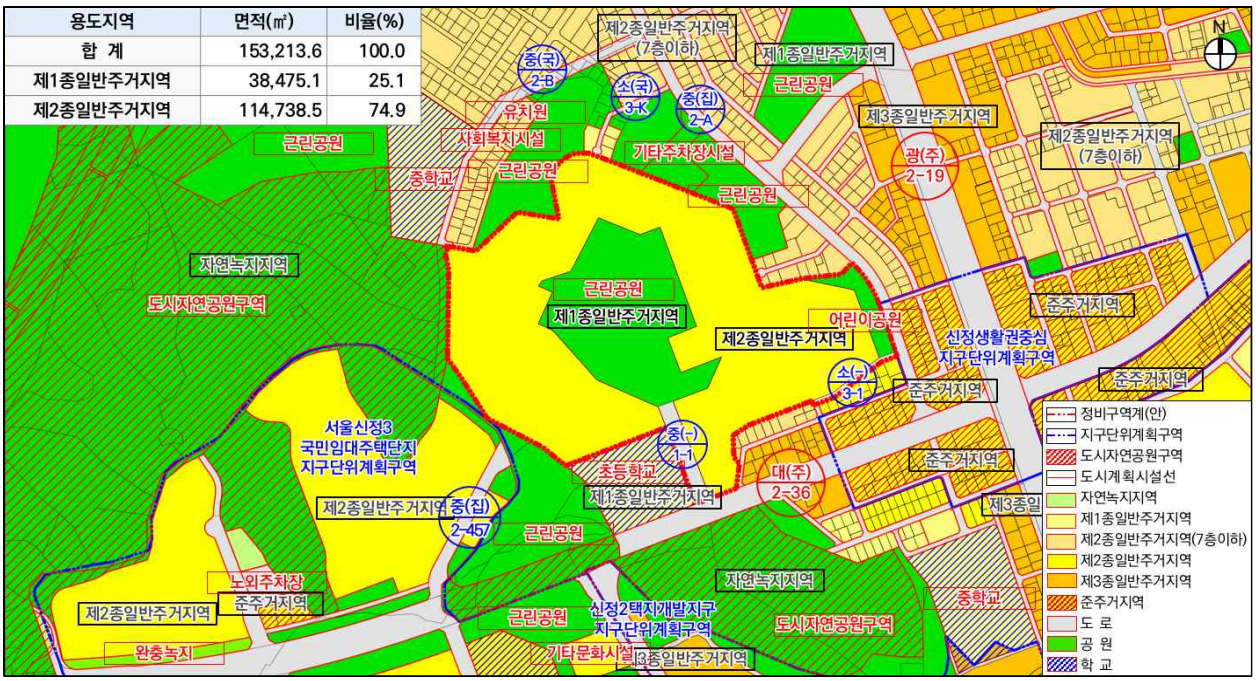
5) 건축물 허가 유무별 현황

구분	계	허가	특정무허가	신발생무허가	비고
동수(동)	23	23	-	-	-
구성비(%)	100.0	100.0	-	-	-

3.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규모			설치시설		
			기점	종점	폭원(m)	연장(m)	면적(㎡)	설치시기	설치근거	설치기관
교통시설	도로	중로 1-1	신월동 산154-6	신월동 산154-5	20	140	-	-	-	-
		소로 3-1	대 2-36	지구계	6	470	-	-	-	-
공간시설	신월공원	근린공원	신월동 산154-5 외 7필지		-	-	32,376	-	-	-
	금실공원	어린이 공원	신월동 985		-	-	3,378.8	-	-	-

<도시관리계획도>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 주변교통체계 현황 : 대상지 내 중로1류를 통해 남측에 신월로(25m)로 연결되며, 동측에 지양로3길(6m), 북측에 지양로5길(6m)과 접하고 있으며, 남부순환로(40m)로 연결됨
- 보행동선 현황 : 대상지 내 도로 및 신월로 도로에 보도가 조성되어 있으며, 신월공원 및 한울근린공원, 독서공원, 금실어린이공원, 지양산에 접하여 있음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 대상지 내 5필지의 평균공시지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당 4,094,907원임
- 현재('24.01.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용43㎡) 약 2.83억원, (전용50㎡) 약 3.28억원, (전용59㎡) 약 3.79억원으로 구역 내 전용 평당 평균 2.2천만원이며, 최근 매매 실거래가 4.3억~5.9억으로 형성되어 있음
- 임대차 현황은 전세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 전세거래가격 10건 중 최저가는 1억7천만원이며 최고가는 2.8억원으로 평균 2.2억원정도로 형성되어 있음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견

- 본 대상지는 현재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통해서 정비계획 입안 제안하는 사항으로, 향후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 시행을 예정으로 하고 있음. 이에 대한 절차는 별도로 진행 예정임

7. 정비구역안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 유 · 무형 문화유적 : 해당사항 없음
- 보호수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역 유래
  - 양천구 : 양천구의 양천은 '밝은 태양과 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고장'이라는 의미로 서울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동측 안양천을 경계로 영등포구와 접하고 서측으로는 경기도 부천시와 접하여 남측으로는 구로구, 북측으로는 강서구와 접하고 있으며, 1977년 9월 1일 목동, 신월동, 신정동이 영등포구에서 강서구로 분구된 후 1988년 1월 1일 강서구에서 양천구로 분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신월동 : 현재 주택가를 이루고 있는 드넓은 신월지역은 고종31년 갑오경장(1894년)으로 양천현(縣)에서 군(郡)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으며, 1914년 신월지역이 김포군에 편입되면서 김포군 양동면 신당리 행정구역이 변동되었음

8.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현황

구 분	토지등소유자	토지면적
권리유형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권리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
총 소유자수 (토지면적)	2,266명	153,213.6㎡
동의자수 (동의 토지면적)	1,545명	82,993.25㎡
동의율(%)	68.18%	54.17%

9. 기존수목의 현황

-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기존 수목현황을 조사하여, 양호한 수목등은 계획 공원 및 녹지 내 수목이식 할 수 있도록 수목 이식 기부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

10. 구역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 도시정비법 주민 제안 동의요건을 확보하여, 금회 정비계획 입안 제안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주민공람등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11.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 지속적으로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시행인가 시 확정

12.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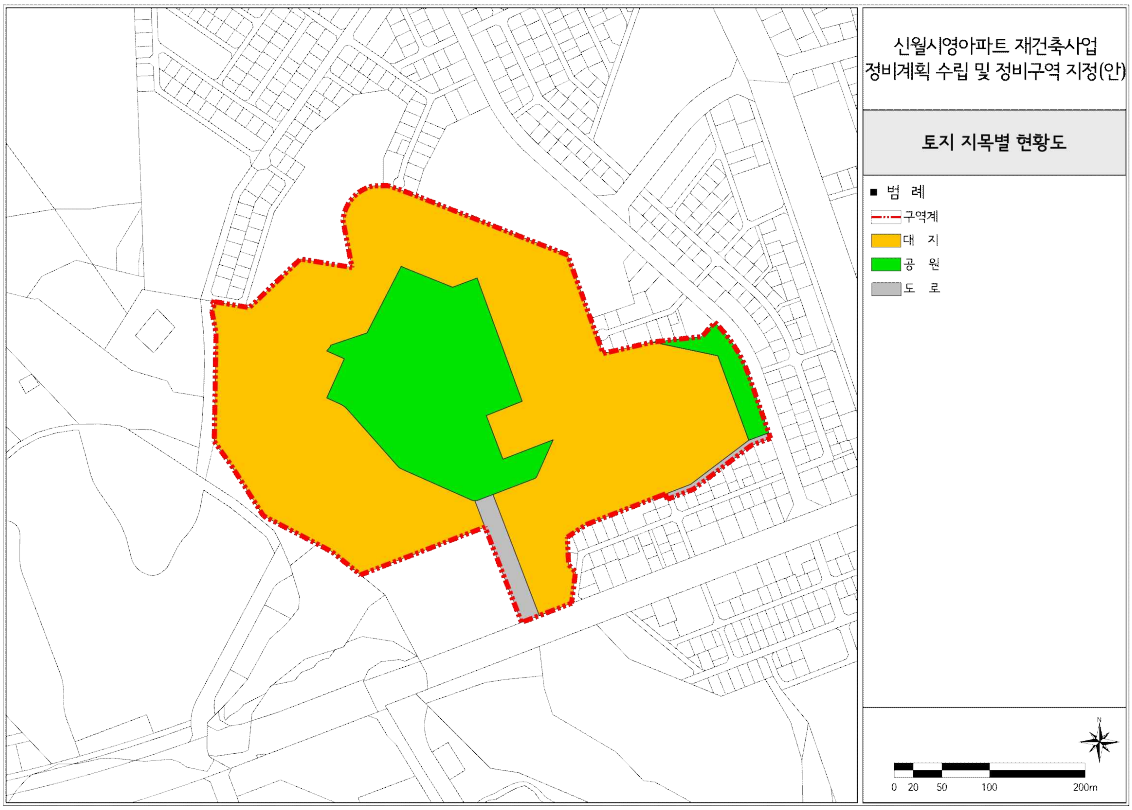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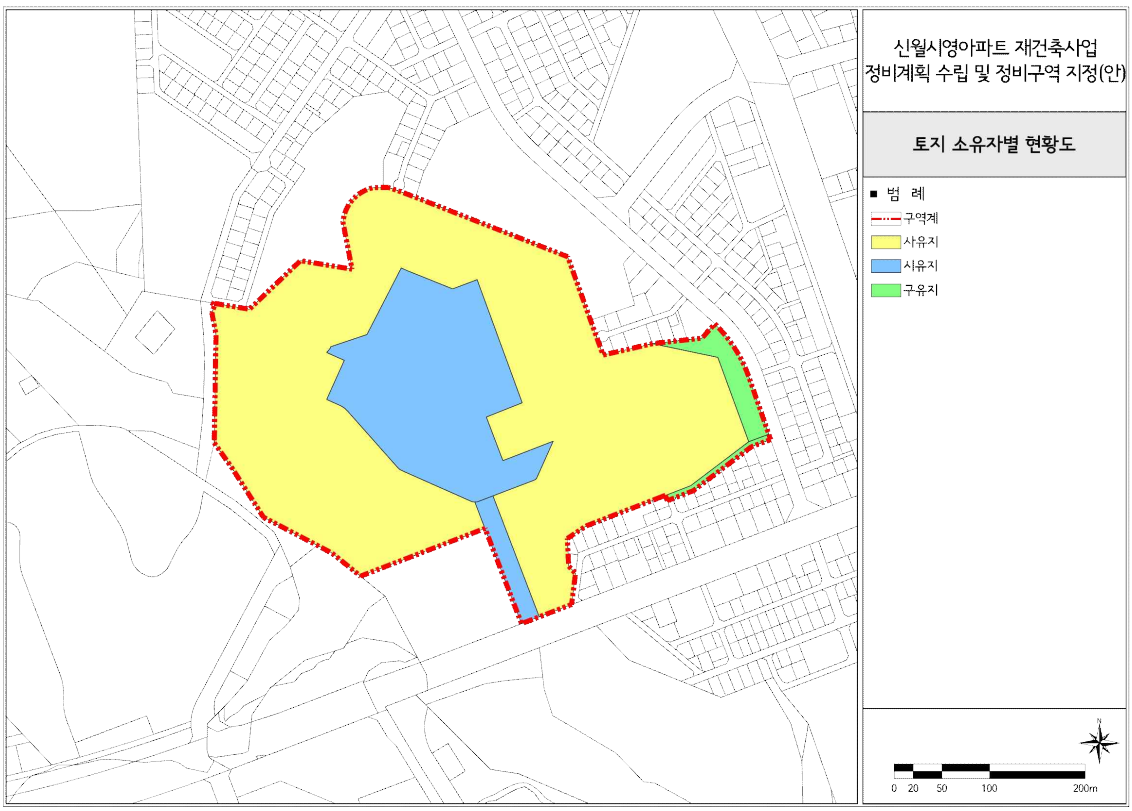
- 본 대상지는 현재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통해서 정비계획 입안 제안하는 사항으로, 향후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 시행을 예정으로 하고 있음. 이에 대한 절차는 별도로 진행 예정임

14. 기초조사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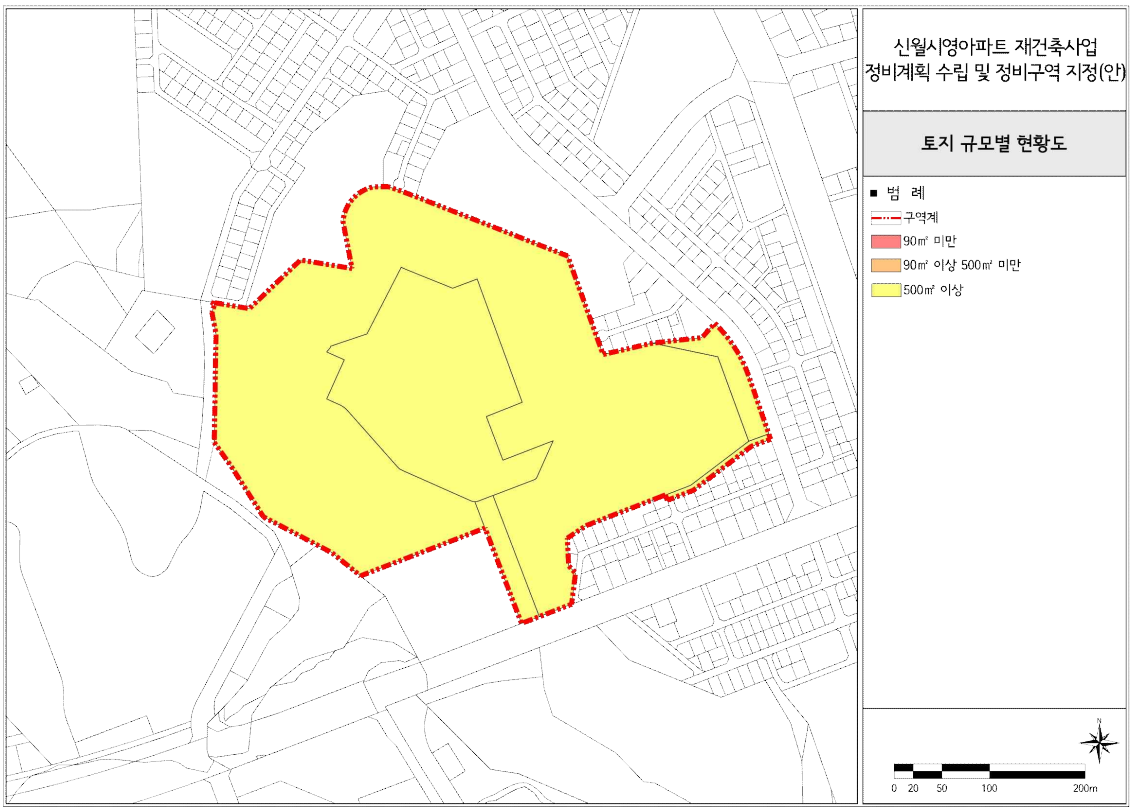
1) 토지 지목별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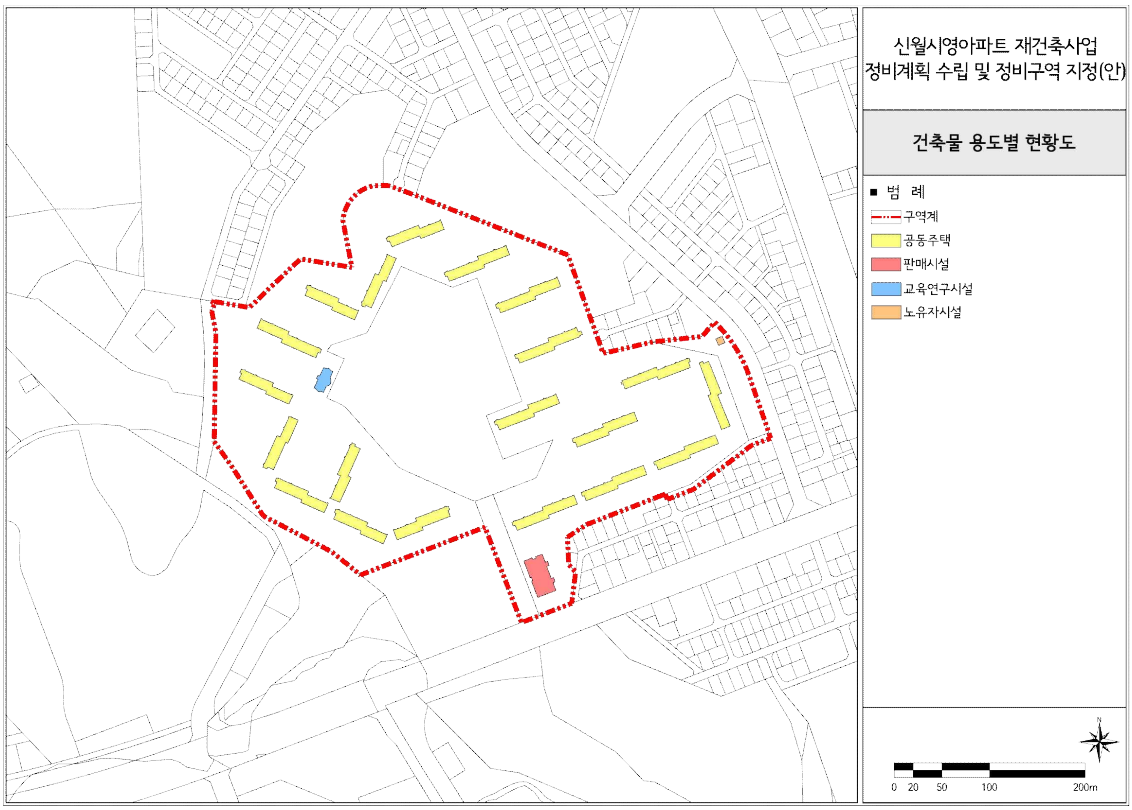
2) 토지 소유자별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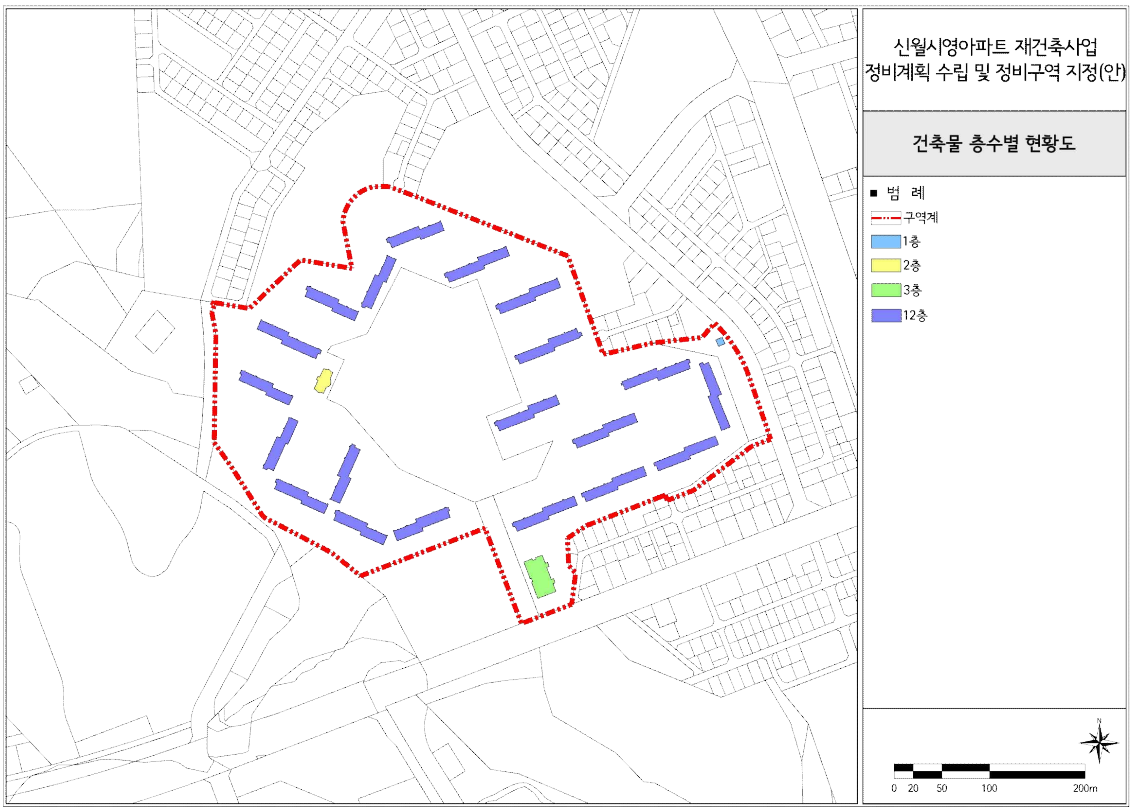
3) 토지 규모별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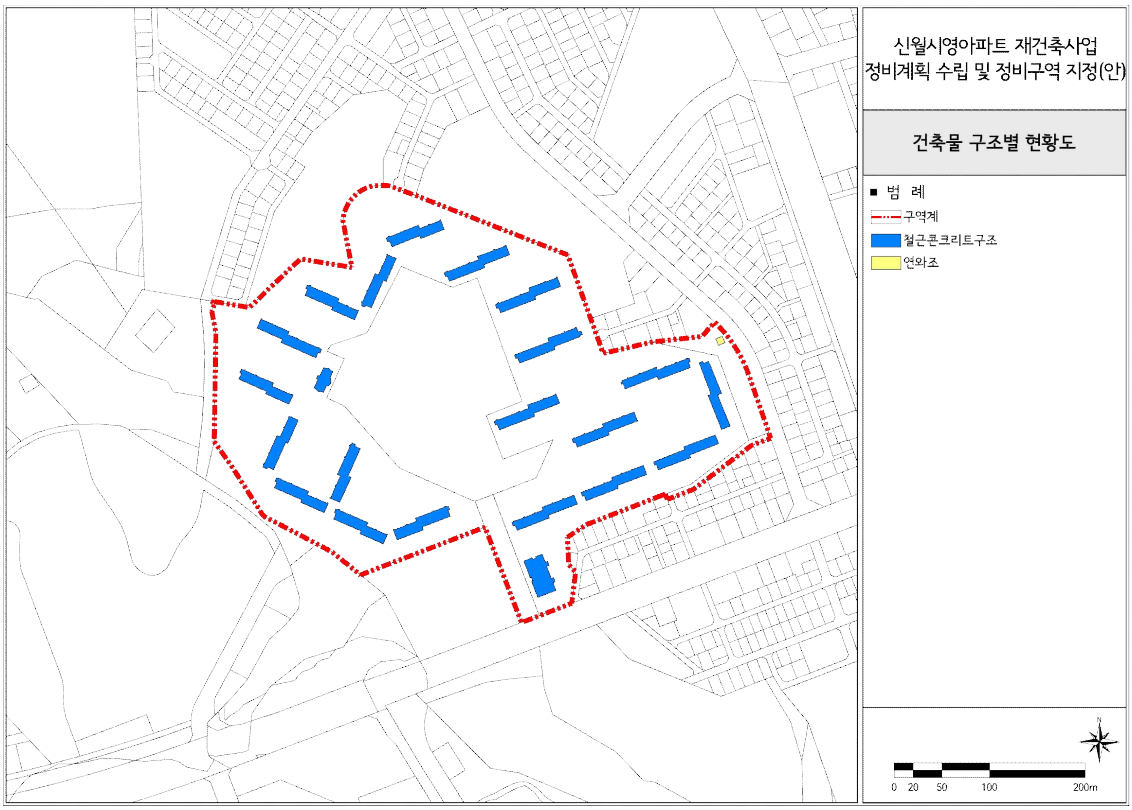
4) 건축물 용도별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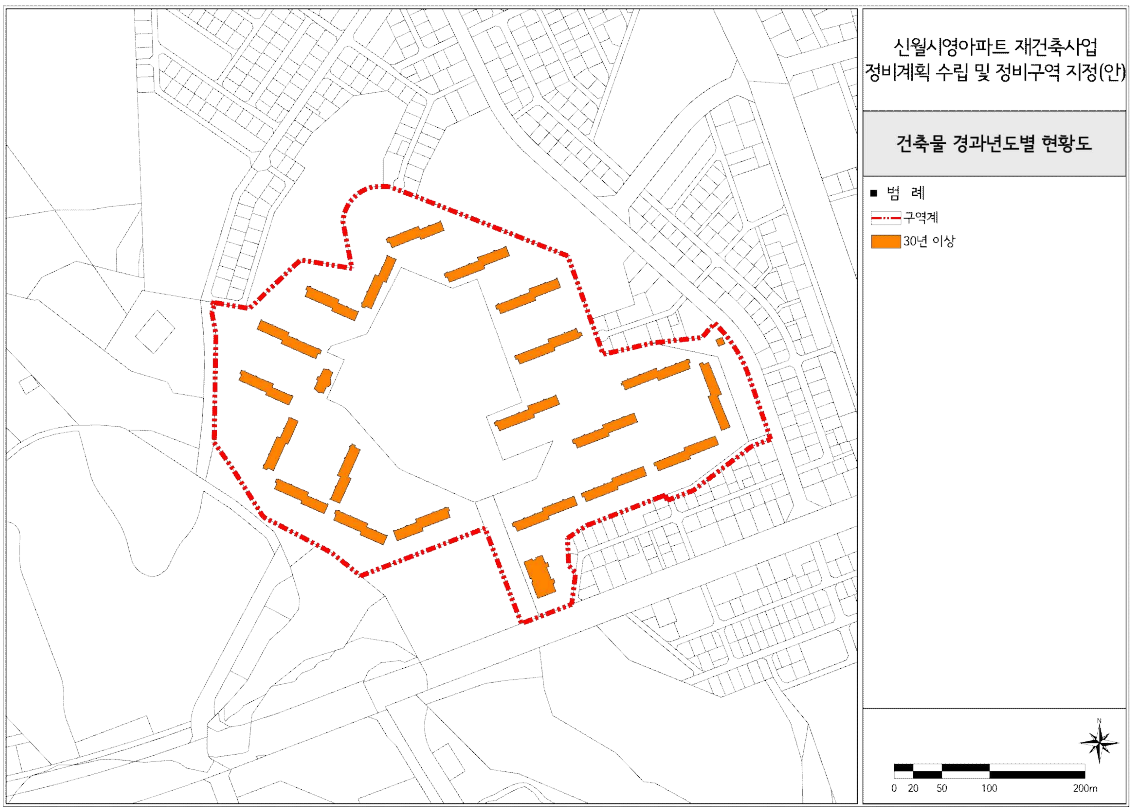
5) 건축물 층수별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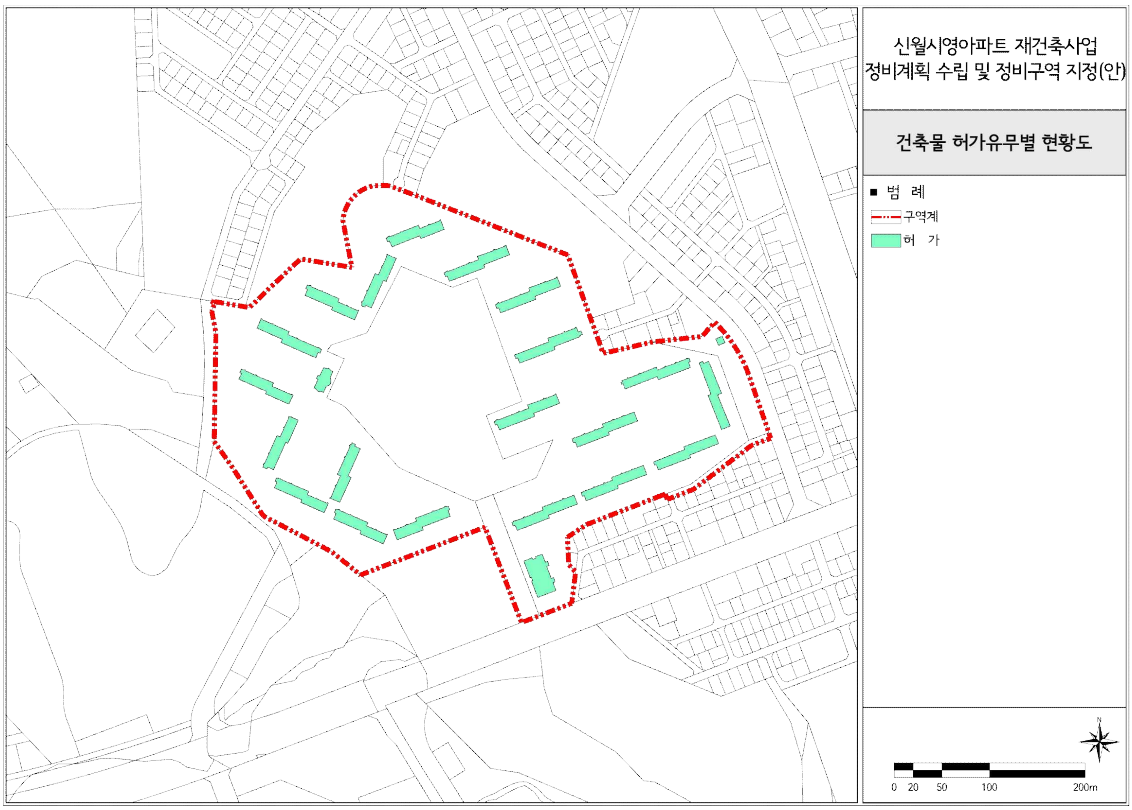
6) 건축물 구조별 현황도



7) 건축물 경과년도별 현황도



8) 건축물 허가유무별 현황도



2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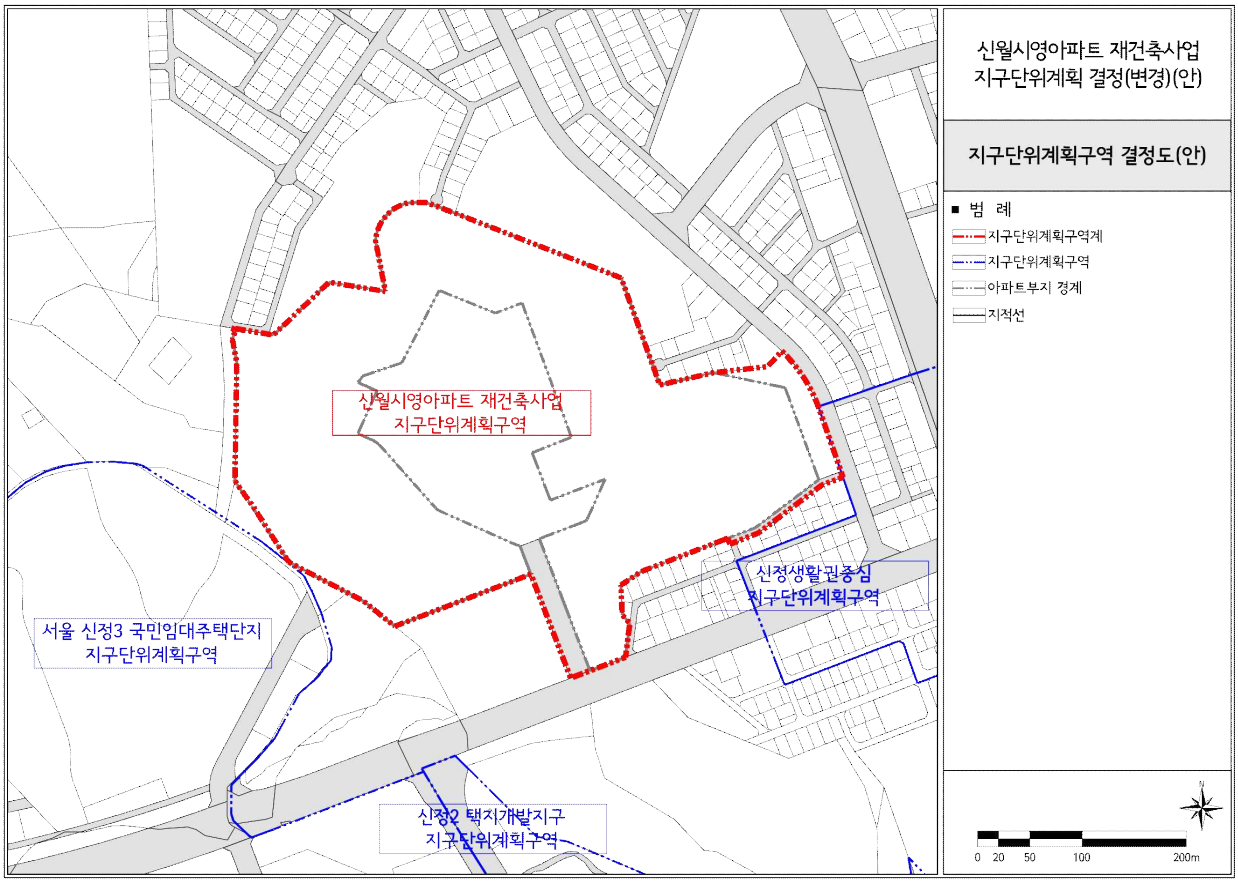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천구 신월동 987-1번지 일대	-	증)153,213.6	153,213.6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증)153,213.6	153,231.6	◦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소 계	153,213.6	-	153,213.6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38,475.1	증) 450.4	38,925.5	25.4	공원, 도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114,738.5	감) 450.4	114,288.1	74.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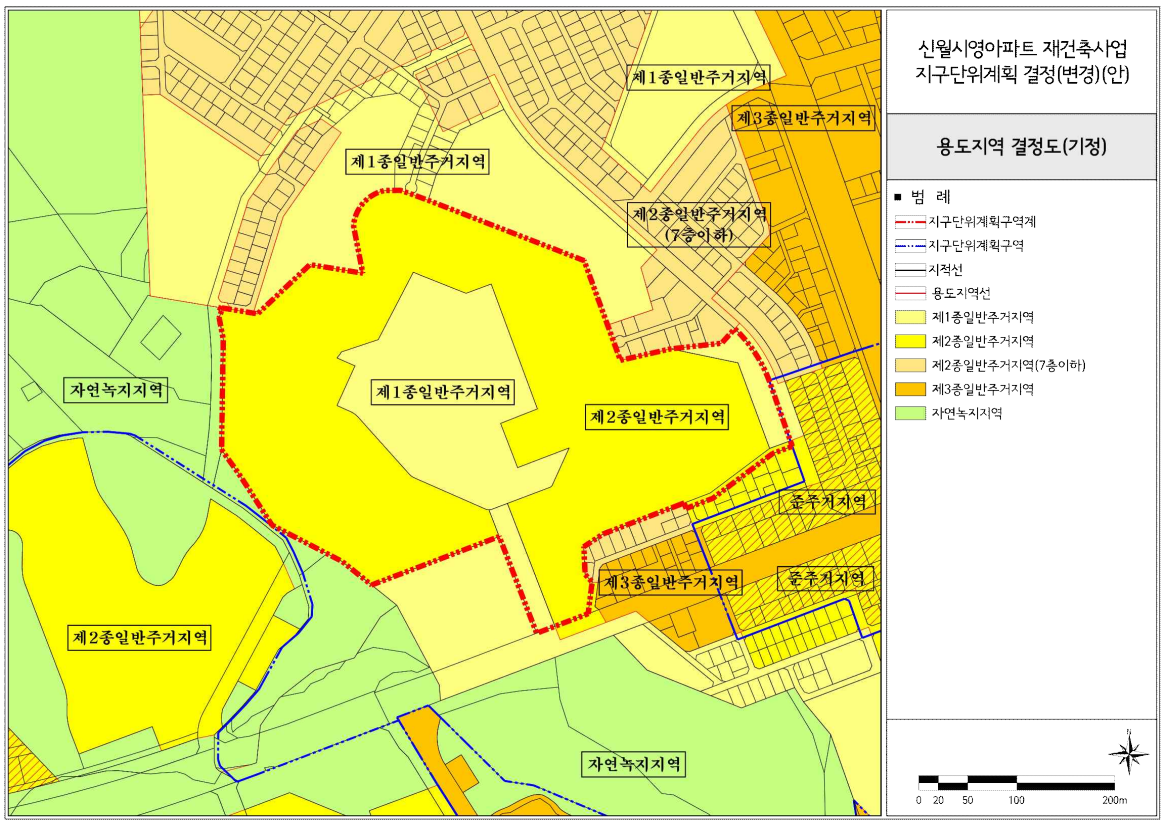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신월동 987-1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38,925.5 (증 450.4)	◦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 조정
-	신월동 987-1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14,288.1 (감 450.4)	◦ 공동주택 획지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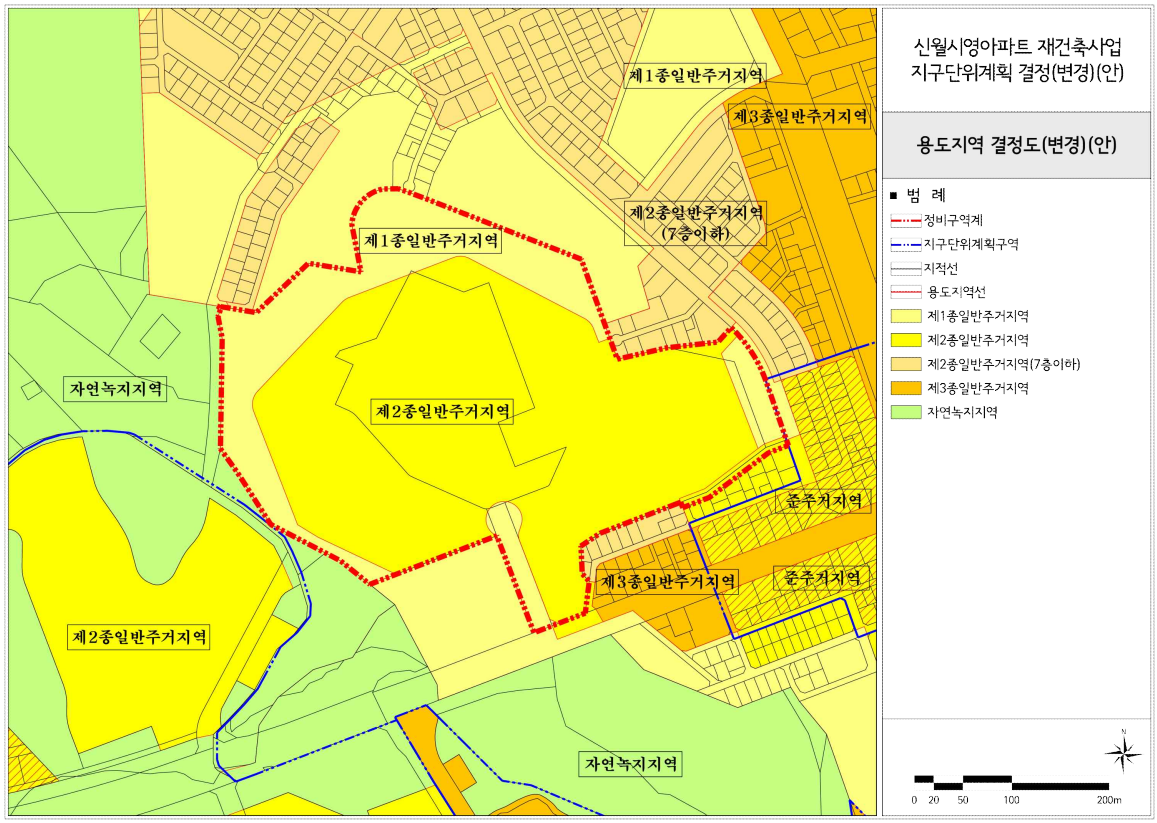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2	610 (267)	6,429.4 (4,449.8)	1	140	3,170.7	-	-	-	1	470 (127)	3,258.7 (1,279.1)
대로	-	-	-	-	-	-	-	-	-	-	-	-
중로	1	140	3,170.7	1	140	3,170.7	-	-	-	-	-	-
소로	1	470 (127)	3,258.7 (1,279.1)	-	-	-	-	-	-	1	470 (127)	3,258.7 (1,279.1)

※ ( )는 대상지 내 수치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	-	140	신월동 산154-6	신월동 산154-5	일반 도로	-	양천구고시 1988-21호 (88.08.18)	-
변경	중로	1	1	20	-	140	신월동 산154-6	신월동 산154-5	일반 도로	-	양천구고시 1988-21호 (88.08.18)	-
기정	소로	3	1	6	-	470 (127)	대 2-36	지구계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제475호 (82.12.29)	-
변경	소로	3	1	6~10	-	470 (127)	대 2-36	지구계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제475호 (82.12.29)	-

※ ( )는 대상지 내 수치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1	중로 1-1	◦ 형태 및 선형 변경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도로 형태 및 선형 변경
소로 3-1	소로 3-1	◦ 일부 도로 확폭 - 6m → 6~10m (4m 확폭)	◦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일부 확폭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신월동 987-1	-	증) 580.92	580.92 (입체적 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입체적범위 결정)

※ 426.24㎡는 수평투영면적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	주차장	신월동 987-1	층수	-	지하1층	-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	-	580.92		

■ 주차장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 주차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층수 : 지하1층 - 수평투영면적(㎡) : 580.92 - 주차장연면적(㎡) : 580.92	◦ 사업지 주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월로7길의 자율주차구획을 삭제하고 공동주택 획지 내 입체적 결정을 통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확보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총괄표

구분	행정구역 (㎡)				시가화구역 (㎡)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2	35,754.8	2	35,754.8	2	35,754.8	2	35,754.8
근린공원	1	32,376	1	32,376	1	32,376	1	32,376
어린이공원	1	3,378.8	1	3,378.8	1	3,378.8	1	3,3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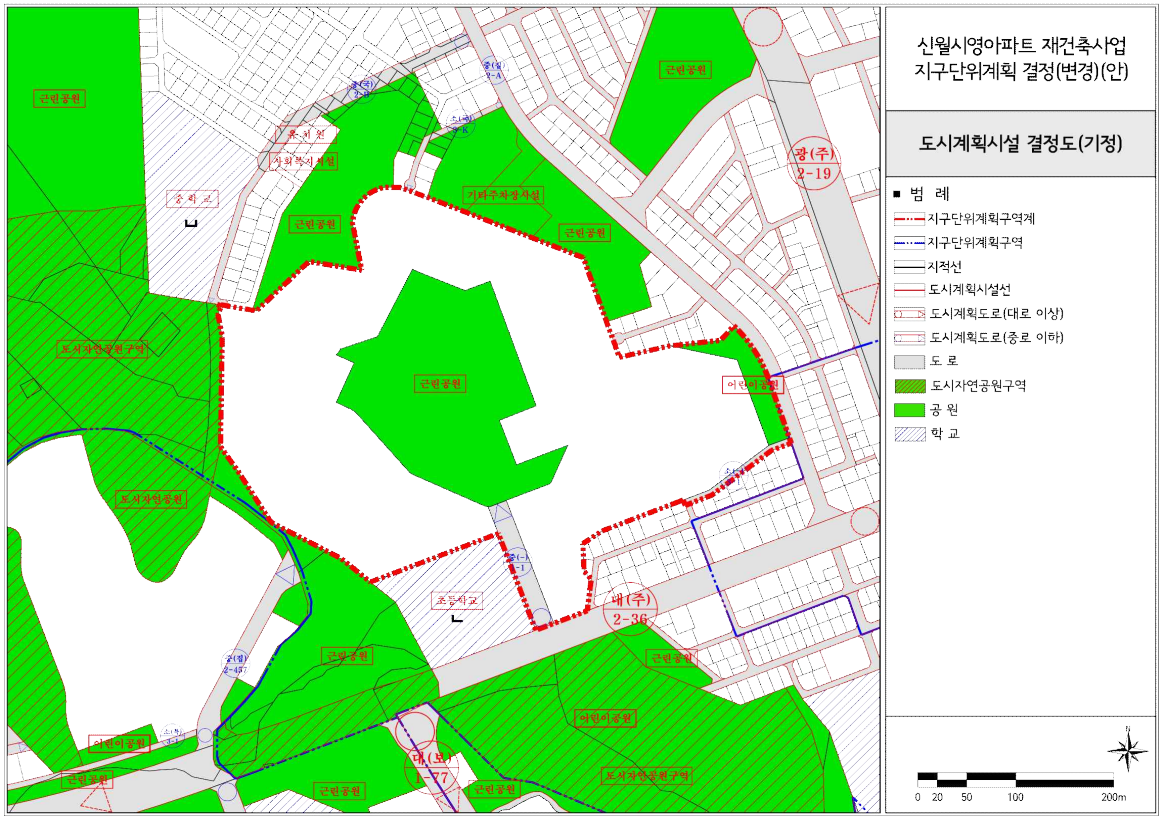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변경	-	신월공원	근린공원	신월동 산 154-5 외 7필지 --- 신월동 987-2	32,376	-	32,376	양천구고시 1988-21호 (88.08.18)	-
기정 --- 변경	-	금실공원	어린이 공원	신월동 985	3,378.8	-	3,378.8	건설부고시 제475호 (82.12.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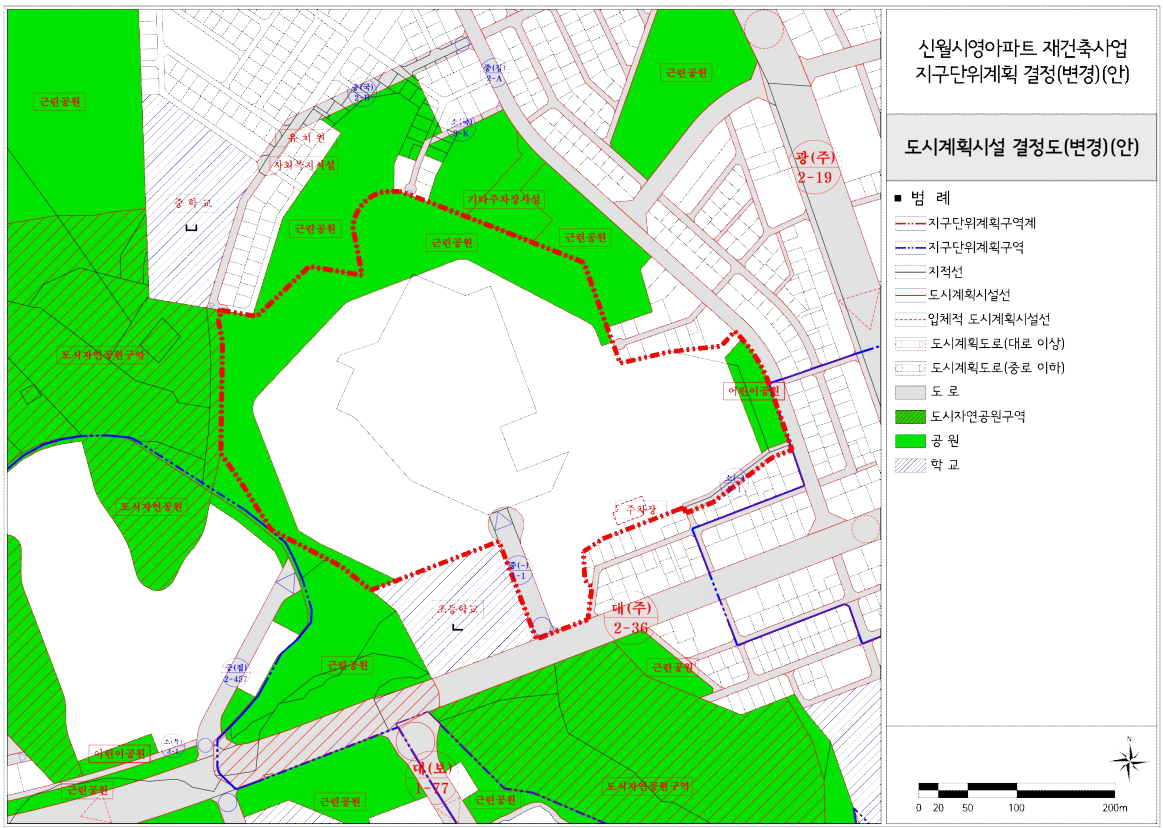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근린공원	◦ 위치 변경	◦ 주변 공원과의 연계를 위한 위치 변경
-	어린이공원	◦ 선형 변경	◦ 도로 확폭 및 공원 정형화를 위한 선형 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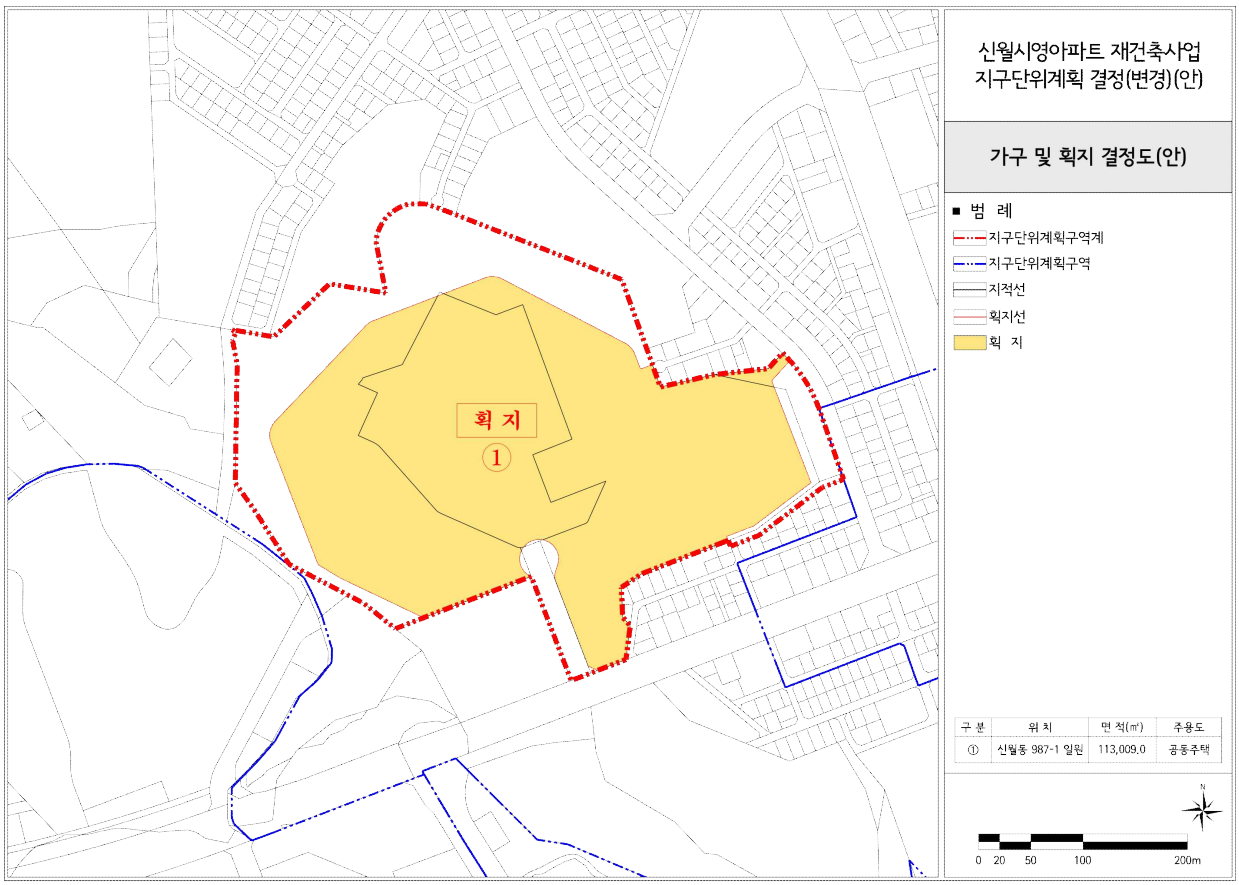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획지 결정조서

구분	획 지	위치	면적(㎡)	비 고
신설	획지	양천구 신월동 987-1번지 일원	113,009.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구	용 도	비 고
신설	허용용도	획지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 제13호·제14호,「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단지안의 부대시설·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지 역	계획내용	비고
신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신설	190%이하	218.6%이하	221.37%이하	249.98%이하	정비계획	허용용적률 218.6% 상한용적률 221.37% 법적상한용적률 249.98%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인센티브			비 고
	공공보행통로	우수디자인, 장수명	방재안전	
신설	5%	10%	5%	총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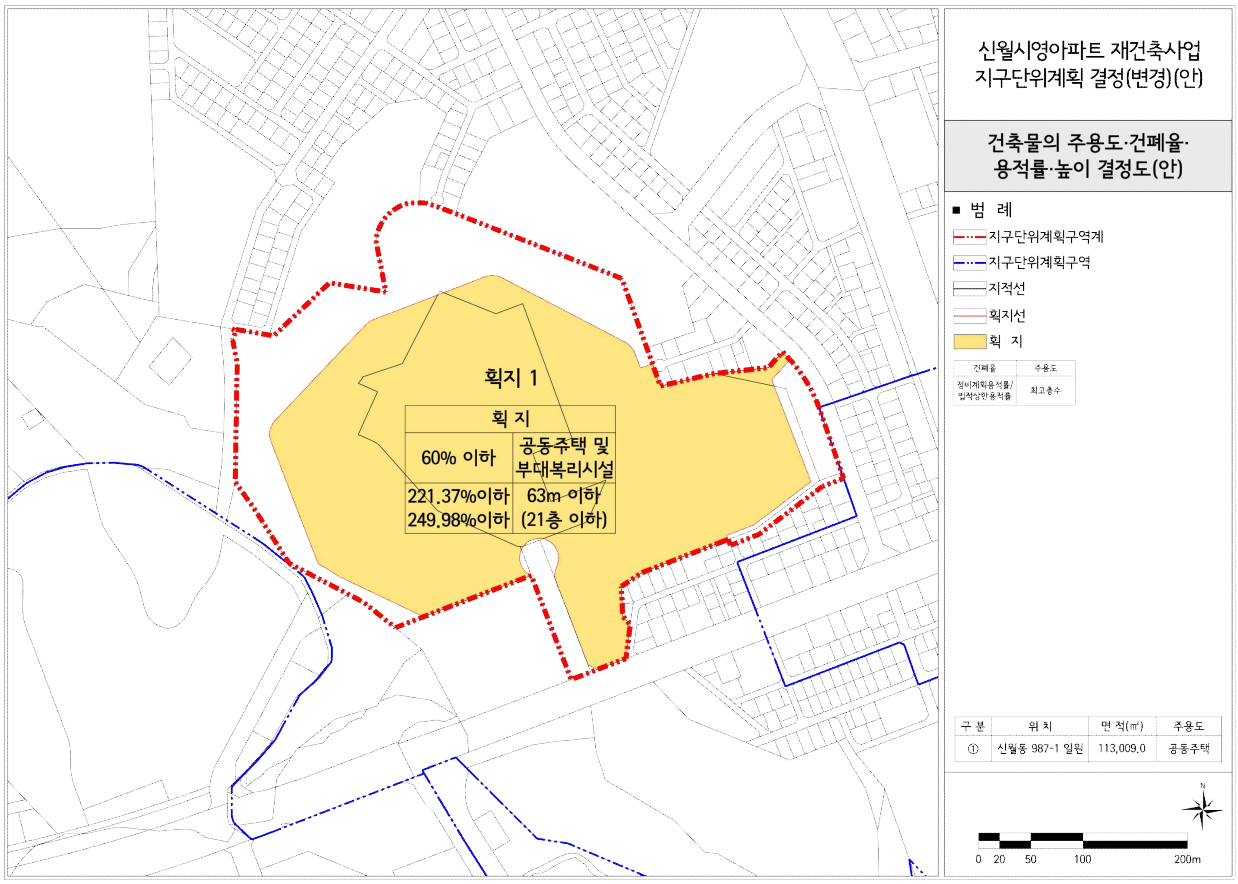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상한용적률)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법적상한용적률)	
신설	2.77%	28.61%	31.38% 완화

다) 높이 계획

구 분	지 역	계획내용	비고
신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63m이하 / 21층이하	-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도 >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신월로 및 주진입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8.5m 후퇴

라. 경관계획(배치·형태 포함)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물의 방향성	획지	◦ 일률적인 배치 지양, 가로경관을 고려한 입면계획 수립
부대복리시설	획지	◦ 단지내 보행로 주변으로 주민편의시설 배치 및 보행동선을 연결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커뮤니티 형성 ◦ 주동 사이 열린 공간 구성하여 주민공동시설 배치
건물 진출입구	획지	◦ 계획세대수와 주변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건물 진·출입구 설치
Eco-Ring	획지	◦ 공원과 연결되는 순환형 녹지네트워크 조성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물의 외부형태	획지	◦ 사선절제형 건축형태 금지 ◦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주변 건물과 조화를 유지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 ◦ 옥탑층 노출 금지 ◦ 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부속시설의 외부노출 금지
저층부 외관	획지	◦ 1층 개구부 높이 통일 ◦ 쇼윈도 설치 및 야간조명 설치
재료 및 색채	획지	◦ 반사설 재료 사용 금지 ◦ 외벽면 전체 페인트 마감 금지 ◦ 원색계열 재료, 도료 사용 금지
진입구 처리	획지	◦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가급적 지양 ◦ 접근로는 유효폭 1.8m 이상으로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 및 형태로 함 ◦ 접근로에는 가로등, 간판, 이동식화분 등 보행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3) 경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개방감	남북방향	◦ 통경축 확보
조명계획	획지	◦ 주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수치를 검토하여 조명 설치계획
스카이라인	획지	◦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마.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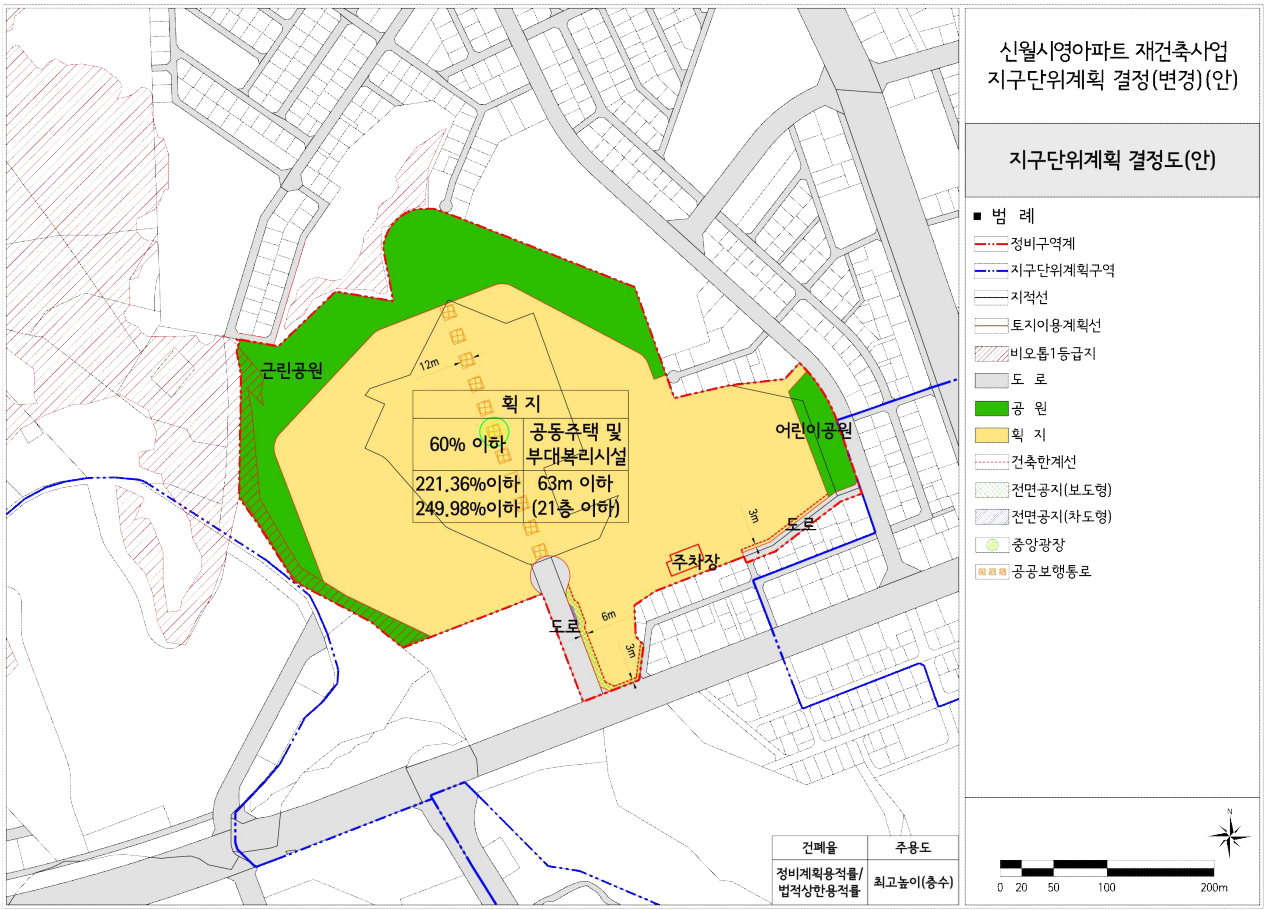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전면공지	도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차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공공보행통로	도면에 표기	◦ 인접 구역과 연계된 보행축 조성 - '공공보행통로 상부에 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며, 24시간 개방을 통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중앙광장	도면에 표기	◦ 공공보행통로와 교차하는 통경축 확보구간에 개방형 공간 조성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차량진출입구	신월로변	◦ 신월로에서 차량진출입구 1개소 설치
	신월로7길변	◦ 신월로7길에서 차량진출입구 1개소 설치
	지양로변	◦ 지양로에서 차량진출입구 1개소 설치
	지양로3길변	◦ 지양로3길에서 차량진출입구 1개소 설치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 이 하 여 백 -

3)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	비오톱	비오톱보전등급 향상	■	• 비오톱유형평가도 도로 및 1~4등급, 개별비오톱평가도 평가제외구역, 도로, 및 일부 2등급	• 대상지 내 녹지공간 확보	
2	생태 네트워크	녹지 · 수생태 연결성 확보	■	• 대상지 서측으로 지양산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주변으로 작동산, 신월산 등 녹지자원이 풍부함	• 대상지 내 녹지계획을 수립	
3	동 · 식물상	동 · 식물상 보호	–	• 도심지(대지)로 해당사항 없음	–	
4	자연환경 자산	자연환경 보전	–	• 해당 사항 없음	–	
5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현황 및 용도지역 조사	• 공원 및 공동주택을 반영한 종합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6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토양오염 발생하지 않음	–	
7	지형 · 지질	지형 · 지질영향 최소화	■	• 표고 24.44~51.08m, 평균 경사도 2.80°의 평탄지형	• 평지 형태로 지형변화는 경미하며, 건축터파기 공사로 부분적 지형변화 발생	
8	물순환, 수리 · 수문	자연물순환 유지	■	• 획지 내 조경녹지 계획	• 생태면적률 45.01%	
9	수질	수질오염 방지	■	• 지표 수질(안양천) 및 지하수질 현황 조사, 공사 중 토사유출 및 오수 발생	• 공사 중 수질저감 계획 수립 • 우수, 하수 처리방안 계획	
10	바람	바람길 및 미기후 개선	■	• 서울기상대 기상현황 조사 분석, 주풍향 등 검토	• 향후 세부 계획 시 바람방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녹지 수목 식재 통한 미기후 개선	
11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5층 이상 주거지, 공원 등 조경수목식재지, 불투수포장비율이 낮은 주거지,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4층 이하 주거지로 조사됨	• 투수포장과 충분한 녹지 조성으로 열환경 개선	
12	대기질 · 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장 장비가동 시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배출 영향	• 세륜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주기적인 살수 등 저감, 환경정화수종 식재	
13	악취	악취공해 해결	–	• 해당 사항 없음	–	
14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난방, 취사연료 사용과 차량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 대상지 내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 절감, 녹지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5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공사장 건설폐기물 발생 및 운영 시 생활 및 분뇨폐기물 발생	•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 감량	
16	에너지	에너지절약/ 효율 극대화	■	• 지역 에너지 소비현황 조사, 난방, 취사, 전력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이용량 증가	• 향후 에너지 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 검토 예정	
17	소음 · 진동	소음 · 진동 최소화	■	• 공사 시 장비투입에 따른 공사장 소음 유발, 운영 시 교통소음으로 인한 영향	• 공사 중 가설방음판넬,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녹지 완충공간 조성	
18	경관	주변경관과의 조화	■	• 시가화된 지역으로 인공경관이 주를 이룸	• 인근 주거지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해 지상 21층 이하로 계획 • 인접 주거지와 연결되는 안전한 가로 · 세로환경을 조성	
19	휴식 및 여가공간	양질의 휴식, 여가공간 확보	■	• 주변으로 한울근린공원, 독서공원, 오솔길 실버공원 등 위치	• 인접개발단지와의 보행연계 및 안전한 보행가로경관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배치계획 • 대상지 내 공원과 조화될 수 있도록 지상부 녹지공간 계획 및 확보	
20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 연평균 및 월별, 계절별 일조 시간 검토	• 최고 지상 21층 이하 규모의 사업계획 수립, 일조권 침해 수인한도 준수	
21	보행 친화공간	보행친화형 도시 조성	■	• 도로 확폭 필요	• 주택용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주요시설 연계 보행공간 확보 및 생활가로 활성화 도모	
22	전파장해	전파장해 영향 저감	-	• 해당 사항 없음	–	
23	인구	인구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 해당 사항 없음	–	
24	주거	주거 환경을 고려한 계획 수립	-	• 해당 사항 없음	–	
25	산업	산업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 해당 사항 없음	–	

4)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구분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임대주택 (국민규모주택)	공공임대주택 비율(%)
합 계		3,149	100.0	196	6.2
60㎡ 이하	소 계	2,317	73.6	158	5.0
	30㎡초과~50㎡이하	450	14.3	72	2.3
	50㎡초과~60㎡이하	1,867	59.3	86	2.8
60㎡초과~85㎡이하		756	24.0	38	1.2
85㎡초과		76	2.4	-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결정도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안)

■ 범 례

- 지구단위계획구역계
- 지구단위계획구역
- 아파트부지 경계
- 지적선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정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Scale : 1/3,000

N

0 20 50 100 200m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 범 례

- 지구단위계획구역계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선
- 용도지역선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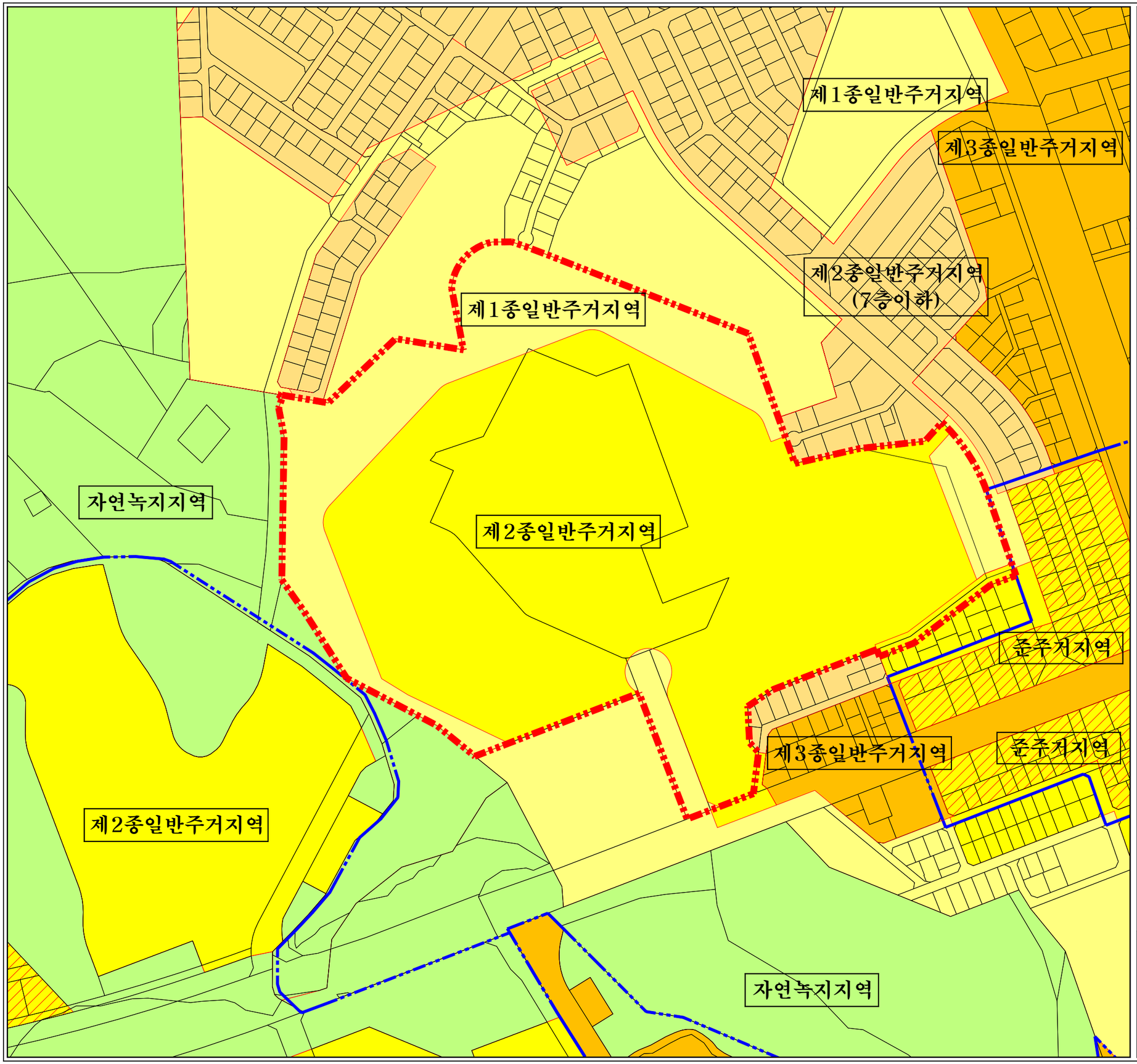
Scale : 1/3,000

N

0 20 50 100 200m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안)



■ 범 례

- 정비구역계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선
- 용도지역선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Scale : 1/3,000

N

0 20 50 100 200m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범 례

- 지구단위계획구역계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선
- 도시계획시설선
- 도시계획도로(대로 이상)
- 도시계획도로(중로 이하)
- 도 로
- 도시자연공원구역
- 공 원
- 학 교

Scale : 1/3,000

N

0 20 50 100 200m

근린공원
중(국) 2-D
중(집) 2-A
소(국) 2-K
유 치 원
사회복지시설
광(주) 2-19
중 학 교
기타주차장시설
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어린이공원
소(국) 1
도시자연공원
중(-) 1-1
초등학교
대(주) 2-36
중(집) 2-437
근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특) 3-1
어린이공원
대(보) 1-77
근린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안)

■ 범 례

- 지구단위계획구역계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선
- 도시계획시설선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선
- 도시계획도로(대로 이상)
- 도시계획도로(중로 이하)
- 도 로
- 도시자연공원구역
- 공 원
- 학 교

Scale : 1/3,000

N

0 20 50 100 200m

근린공원
유 치 원
사회복지시설
중 학 교
중(국) 2-D
중(집) 2-A
소(국) 2-K
광(주) 2-19
기타주차장시설
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
주차장
소(-) 1
중(-) 1-1
초등학교
대(주) 2-36
중(집) 2-437
소(특) 3-1
어린이공원
대(보) 1-77
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가구 및 획지 결정도(안)

■ 범 례

- 지구단위계획구역계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선
- 획지선
- 획 지

획 지
①

구 분	위 치	면 적(㎡)	주용도
①	신월동 987-1 일원	113,009.0	공동주택

Scale : 1/3,000

N

0 20 50 100 200m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결정도(안)

■ 범 례

- 지구단위계획구역계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선
- 획지선
- 획 지

건폐율	주용도
정비계획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	최고층수

획지 1

획 지	
6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21.37%이하 249.98%이하	63m 이하 (21층 이하)

구 분	위 치	면 적(㎡)	주용도
①	신월동 987-1 일원	113,009.0	공동주택

Scale : 1/3,000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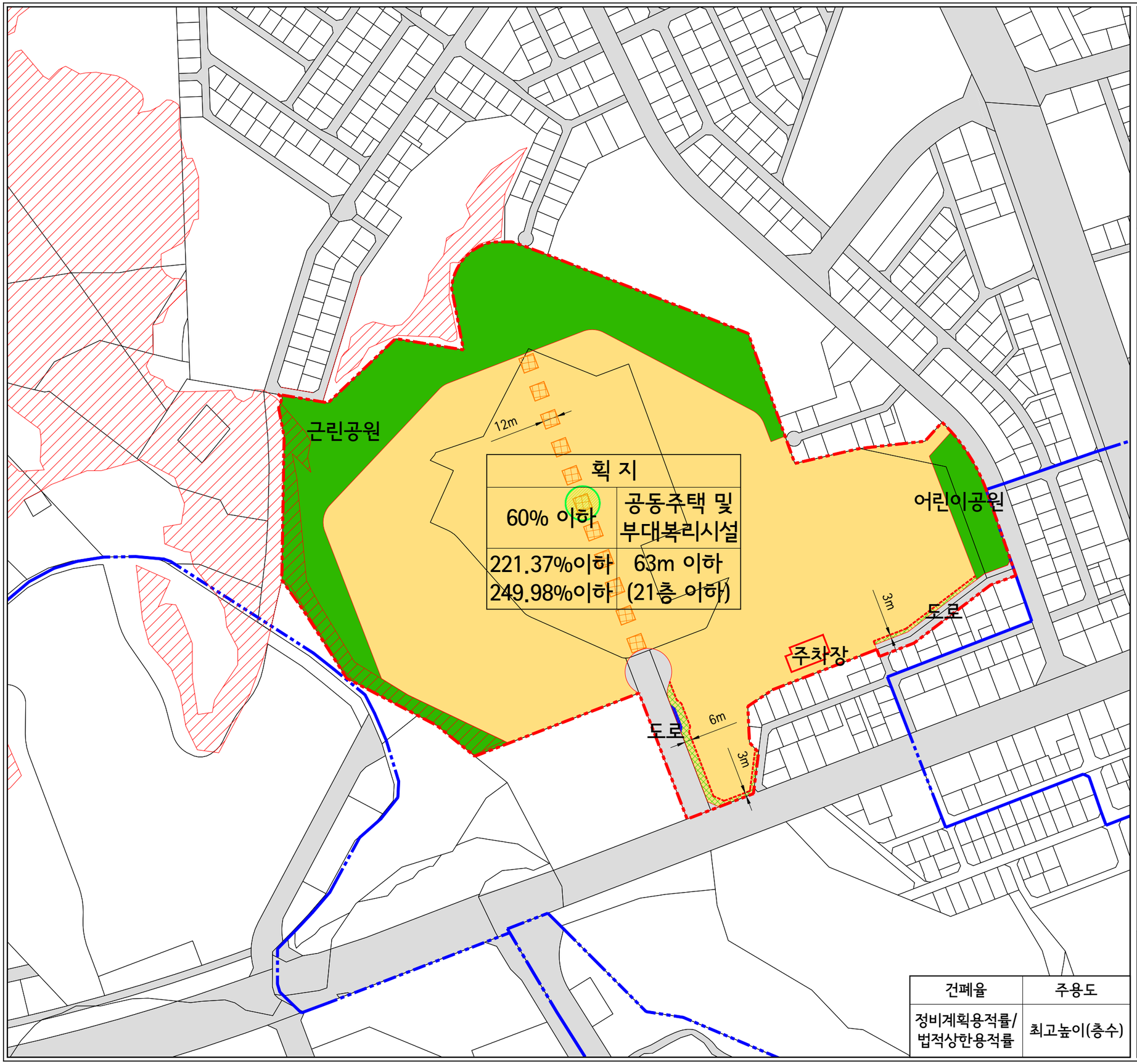
0 20 50 100 200m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안)

■ 범 례

- 정비구역계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선
- 토지이용계획선
- 비오톱1등급지
- 도 로
- 공 원
- 획 지
- 건축한계선
- 전면공지(보도형)
- 전면공지(차도형)
- 중앙광장
- 공공보행통로



획 지	
6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21.37%이하 249.98%이하	63m 이하 (21층 이하)

건폐율	주용도
정비계획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최고높이(층수)

Scale : 1/3,000

N

0 20 50 100 200m

3 건축계획

1 건축개요 및 배치도

1 건축개요 및 배치도

1. 설계개요
2. 단지배치도
3. 공용이용시설 배치도
4. 동선계획도
5. 지반층 배치도
6. 대지조성 계획도
7. 생태면적률 산정도
8. 대지종횡 단면도

설계개요

■ 설 계 개 요

사 업 명	서울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87-1번지 일원				
지 역 지 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 축 규 모	지상 21층 / 지하 4층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대 지 면 적	사업면적		153,213.60㎡	(46,347.11평)	100.00%
	제외면적	근린공원	35,754.80㎡	(10,815.82평)	23.34%
		도로	4,449.80㎡	(1,346.06평)	2.90%
		소계	40,204.60㎡	(12,161.89평)	26.24%
	실사용 대지면적		113,009.00㎡	(34,185.22평)	73.76%
연 면 적	구 분		계 획		비 율
	공동주택	지상	282,271.43㎡	(85,387.10평)	99.09%
		지하	172,271.80㎡	(52,112.21평)	
		소계	454,543.23㎡	(137,499.32평)	
	근린생활시설	지상	2,600.00㎡	(786.50평)	0.91%
		지하	5,209.45㎡	(1,575.85평)	
		소계	7,809.45㎡	(2,362.35평)	
	합계	지상	284,871.43㎡	(86,173.60평)	100.00%
		지하	177,481.25㎡	(53,688.07평)	
		합계	462,352.68㎡	(139,861.68평)	
건 축 면 적	32,156.75㎡			(9,727.41평)	(60% 이하)
건 폐 율	28.46 %				
용적률 산정 연면적	282,501.43㎡			(85,456.68평)	법적상한용적률
용 적 율	249.98 %				(250%이하)
조경면적	법 정		16,951.35㎡	(15.00%)	(대지면적의 15% 이상)
	계 획		17,177.37㎡	(15.20%)	
		(공동주택 :	16,871.23㎡)	(근린생활시설 :	306.13㎡)
비 고	② 사업성보정계수 추가 적용 190/218.6/221.37/249.98 = 법적상한 28.61% 중 임대 14.305%(임대 196세대)				

■ 부대복리시설

구 분	법적 설치기준 및 지침기준			0.00	비고	
진 입 도 로	2000세대 이상			20M도로		
관 리 사 무 소	10㎡ + (3,149세대 - 50세대) x 0.05㎡		164.95㎡이상	200.00㎡	(방재실, MDF포함)	
경 비 실				115.00㎡		
경 로 당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2,000세대 이상 (서울시 주택조례)	954.80 ㎡이상	960.00㎡	용적률 완화	
어 린 이 집			954.80 ㎡이상	960.00㎡	용적률 완화	
작 은 도 서 관			412.90 ㎡이상	420.00㎡		
다함께돌봄센터		500세대이상 의무설치	66㎡ 이상	450.00㎡	용적률 완화	
주민운동시설				2,625.00㎡		
주민운동시설(옥외)		500세대이상 의무설치		2,125.00㎡		
어린이놀이터(옥외)				2,750.00㎡		
총 량 검 토	(500㎡+세대당 x 2㎡) x 1.25이상 설치		8,497.50㎡이상	10,290.00㎡	총량제 면적 (관리사무소 제외)	
유 치 원	2,000세대 이상			800.00㎡		
조 경 시 설	대지면적 x 0.15		16,951.35㎡이상	17,177.37㎡	15.20%	

법정주차대수	구분	면적에 의한 산정	세대당 대수 산정	산출대수	합계
공동주택	전용60㎡이하	1,791.2 대	1,853.6 대	1,853.6 대	2,838 대
	전용60㎡초과 전용85㎡이하	856.3 대	756.0 대	856.3 대	
	전용85㎡초과	127.4 대	76.0 대	127.4 대	(세대당 0.9 대)
근린생활시설	134㎡당 1대	=(5,361.70+585.75)/134	44.38 대	45 대	45 대
주차대수	법 정	공동주택 2,838 대	근린생활시설 45 대	법정 2,883 대	(세대당 0.9 대)	(법정 x 1.01 대)
	계 획	공동주택 4,409 대	근린생활시설 49 대	계획 4,458 대	(세대당 1.4 대)	(법정 x 1.10 대)
	합 계		4,458 대			

구 분	전용면적	공급면적	평형	세대수	비율	총세대수
기존세대수	43.20㎡	59.34㎡	(17.95평)	792 세대	35.11%	2,256 세대
	50.67㎡	69.59㎡	(21.05평)	937 세대	41.53%	
	59.49㎡	81.70㎡	(24.71평)	527 세대	23.36%	

재건축 소형임대비율					
	{249.98%(적용용적률) - 221.37%(상한용적률))		/ 2	= 14.31%	= 16,165.94㎡이상	196 세대
		113,009.00 ㎡	x 14.31%	= 16,165.94㎡		
	49타입	72세대	x 67.70㎡	= 4,874.40㎡	= 16,171.20㎡	
	59타입	86세대	x 81.45㎡	= 7,004.70㎡		
	84타입	38세대	x 112.95㎡	= 4,292.10㎡		

■ 공동주택 분양면적표

구 분	세대수	세대비	주거전용	주 거 공 용 면 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소 계	계약면적	비 고
				벽체공용	코어공용	소 계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20 평형 49	72 세대	2.29% 36.73%	49.80㎡ (15.06평)	3.70㎡ (1.11평)	14.20㎡ (4.29평)	17.90㎡ (5.41평)	67.70㎡ (20.47평)	0.36㎡ (0.10평)	1.57㎡ (0.47평)	40.33㎡ (12.20평)	42.27㎡ (12.78평)	109.97㎡ (33.26평)	소형임대
24 평형 59	86 세대	2.73% 43.88%	59.95㎡ (18.13평)	5.70㎡ (1.72평)	15.80㎡ (4.77평)	21.50㎡ (6.50평)	81.45㎡ (24.63평)	0.43㎡ (0.13평)	1.89㎡ (0.57평)	48.56㎡ (14.68평)	50.88㎡ (15.39평)	132.33㎡ (40.03평)	
34 평형 84	38 세대	1.21% 19.39%	84.95㎡ (25.69평)	7.50㎡ (2.26평)	20.50㎡ (6.20평)	28.00㎡ (8.47평)	112.95㎡ (34.16평)	0.62㎡ (0.18평)	2.68㎡ (0.81평)	68.80㎡ (20.81평)	72.10㎡ (21.81평)	185.05㎡ (55.97평)	
소 계	196 세대	6.22% 100.00%	11,969.40㎡ (3,620.74평)	1,041.60㎡ (315.08평)	3,160.20㎡ (955.96평)	4,201.80㎡ (1,271.04평)	16,171.20㎡ (4,891.78평)	86.80㎡ (26.25평)	377.88㎡ (114.30평)	9,694.36㎡ (2,932.54평)	10,159.04㎡ (3,073.10평)	26,330.24㎡ (7,964.89평)	
20 평형 49	378 세대	12.00% 12.80%	49.80㎡ (15.06평)	3.70㎡ (1.11평)	14.20㎡ (4.29평)	17.90㎡ (5.41평)	67.70㎡ (20.47평)	0.36㎡ (0.10평)	1.57㎡ (0.47평)	40.33㎡ (12.20평)	42.27㎡ (12.78평)	109.97㎡ (33.26평)	
24 평형 59	1,781 세대	56.56% 60.31%	59.95㎡ (18.13평)	5.70㎡ (1.72평)	15.80㎡ (4.77평)	21.50㎡ (6.50평)	81.45㎡ (24.63평)	0.43㎡ (0.13평)	1.89㎡ (0.57평)	48.56㎡ (14.68평)	50.88㎡ (15.39평)	132.33㎡ (40.03평)	
34 평형 84	718 세대	22.80% 24.31%	84.95㎡ (25.69평)	7.50㎡ (2.26평)	20.50㎡ (6.20평)	28.00㎡ (8.47평)	112.95㎡ (34.16평)	0.62㎡ (0.18평)	2.68㎡ (0.81평)	68.80㎡ (20.81평)	72.10㎡ (21.81평)	185.05㎡ (55.97평)	
44 평형 108	76 세대	2.41% 2.57%	108.98㎡ (32.96평)	8.90㎡ (2.69평)	27.70㎡ (8.37평)	36.60㎡ (11.07평)	145.58㎡ (44.03평)	0.79㎡ (0.23평)	3.44㎡ (1.04평)	88.27㎡ (26.70평)	92.50㎡ (27.98평)	238.08㎡ (72.01평)	
소 계	2,953 세대	93.78% 100.00%	194,871.93㎡ (58,948.75평)	17,611.70㎡ (5,327.53평)	50,331.60㎡ (15,225.30평)	67,943.30㎡ (20,552.84평)	262,815.23㎡ (79,501.60평)	1,413.20㎡ (427.49평)	6,152.12㎡ (1,861.01평)	157,832.44㎡ (47,744.31평)	165,397.76㎡ (50,032.82평)	428,212.99㎡ (129,534.42평)	
합 계	3,149 세대	100.00%	206,841.33㎡ (62,569.50평)	18,653.30㎡ (5,642.62평)	53,491.80㎡ (16,181.26평)	72,145.10㎡ (21,823.89평)	278,986.43㎡ (84,393.39평)	1,500.00㎡ (453.75평)	6,530.00㎡ (1,975.32평)	167,526.80㎡ (50,676.85평)	175,556.80㎡ (53,105.93평)	454,543.23㎡ (137,499.32평)	

■ 근린생활시설 면적표

구 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 계	기타공용 (기전실+관리실)	지하주차장	합 계	비 고
근린생활시설	지상	1,820.00㎡ (550.55평)	780.00㎡ (235.95평)	2,600.00㎡ (786.50평)	0.00㎡ (0.00평)	0.00㎡ (0.00평)	2,600.00㎡ (786.50평)	
	지하	1,933.20㎡ (584.79평)	828.50㎡ (250.62평)	2,761.70㎡ (835.41평)	585.75㎡ (177.19)	1,862.00㎡ (563.26평)	5,209.45㎡ (1,575.86평)	
합 계		3,753.20㎡ (1,135.34평)	1,608.50㎡ (486.57평)	5,361.70㎡ (1,621.91평)	585.75㎡ (177.19)	1,862.00㎡ (563.26평)	7,809.45㎡ (2,362.36평)	

서울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단지 배치도

Scale : 1 / 2,000



■ 건축개요

구 분			세대수	비 율
임 대	20평형	49㎡	72 세대	2.25%
	24평형	59㎡	86 세대	2.76%
	34평형	84㎡	38 세대	1.21%
	소 계		196 세대	6.22%
분 양	20평형	49㎡	378 세대	12.04%
	24평형	59㎡	1,781 세대	56.53%
	34평형	84㎡	718 세대	22.80%
	44평형	108㎡	76 세대	2.41%
	소 계		2,953 세대	93.78%
합 계			3,149 세대	100.00%
용 적 률			249.98%	

서울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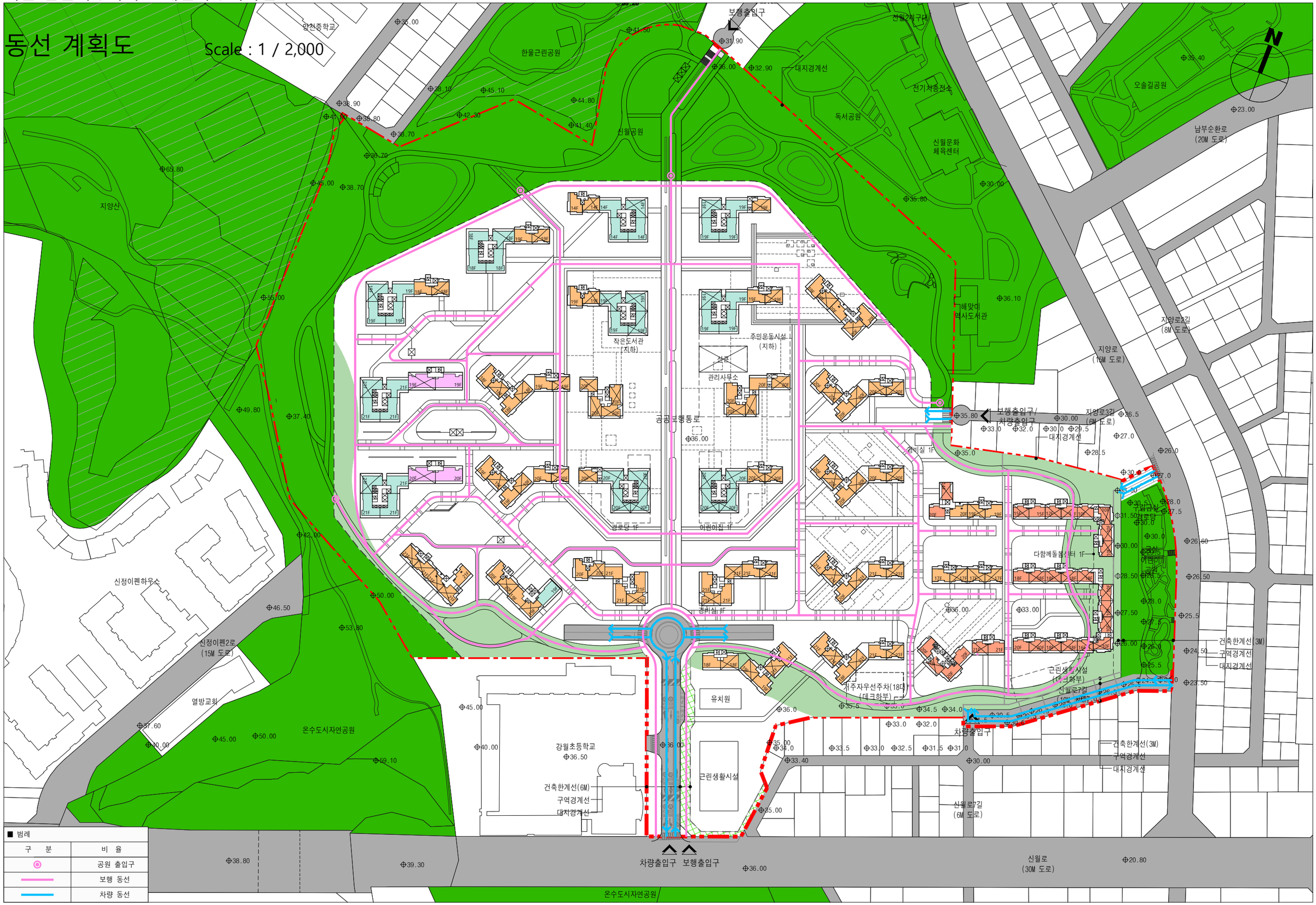
공용이용시설 배치도 Scale : 1 / 2,000



서울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동선 계획도

Scale : 1 /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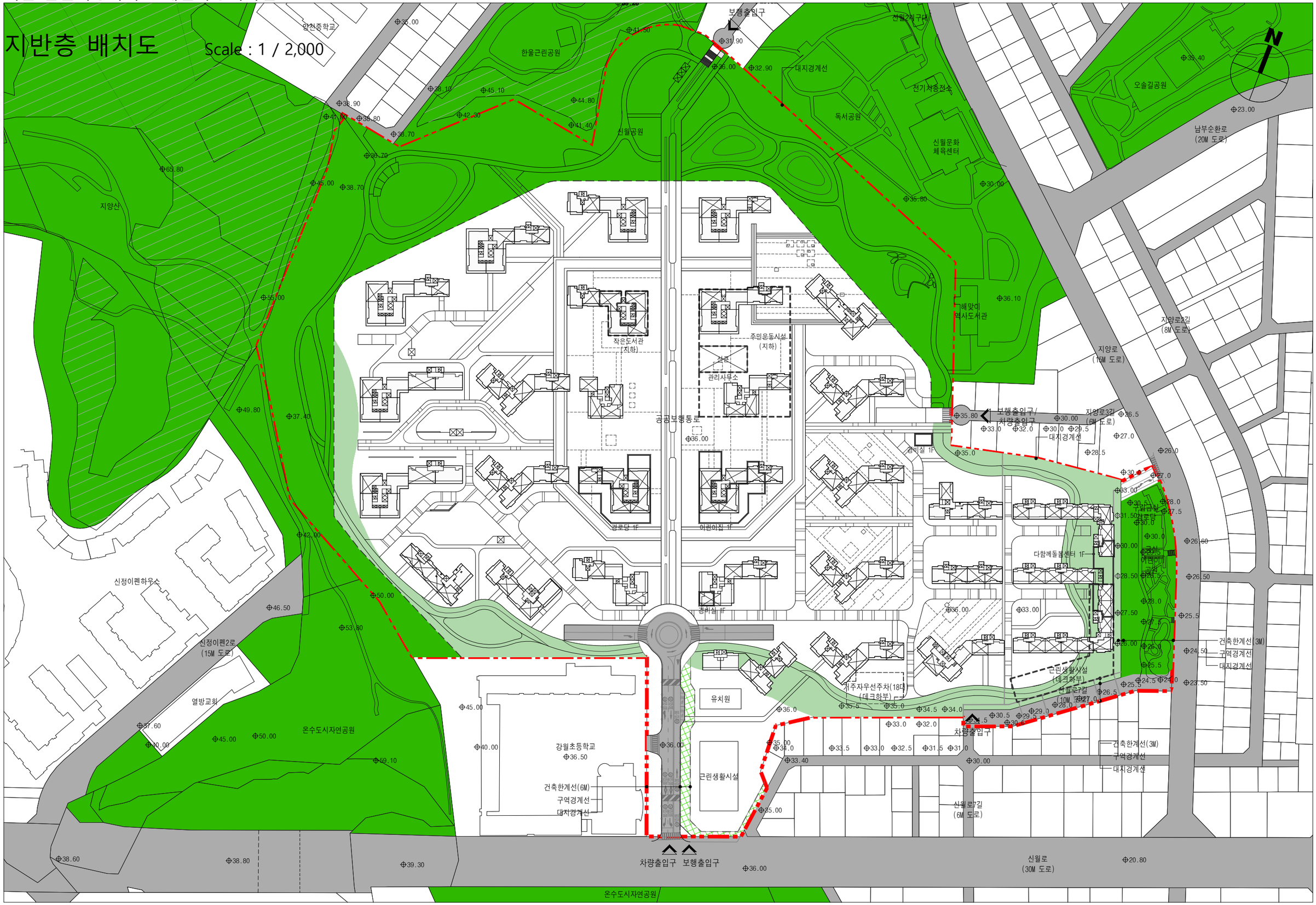
■ 범례

구 분	비 율
◉	공원 출입구
	보행 동선
	차량 동선

서울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지반층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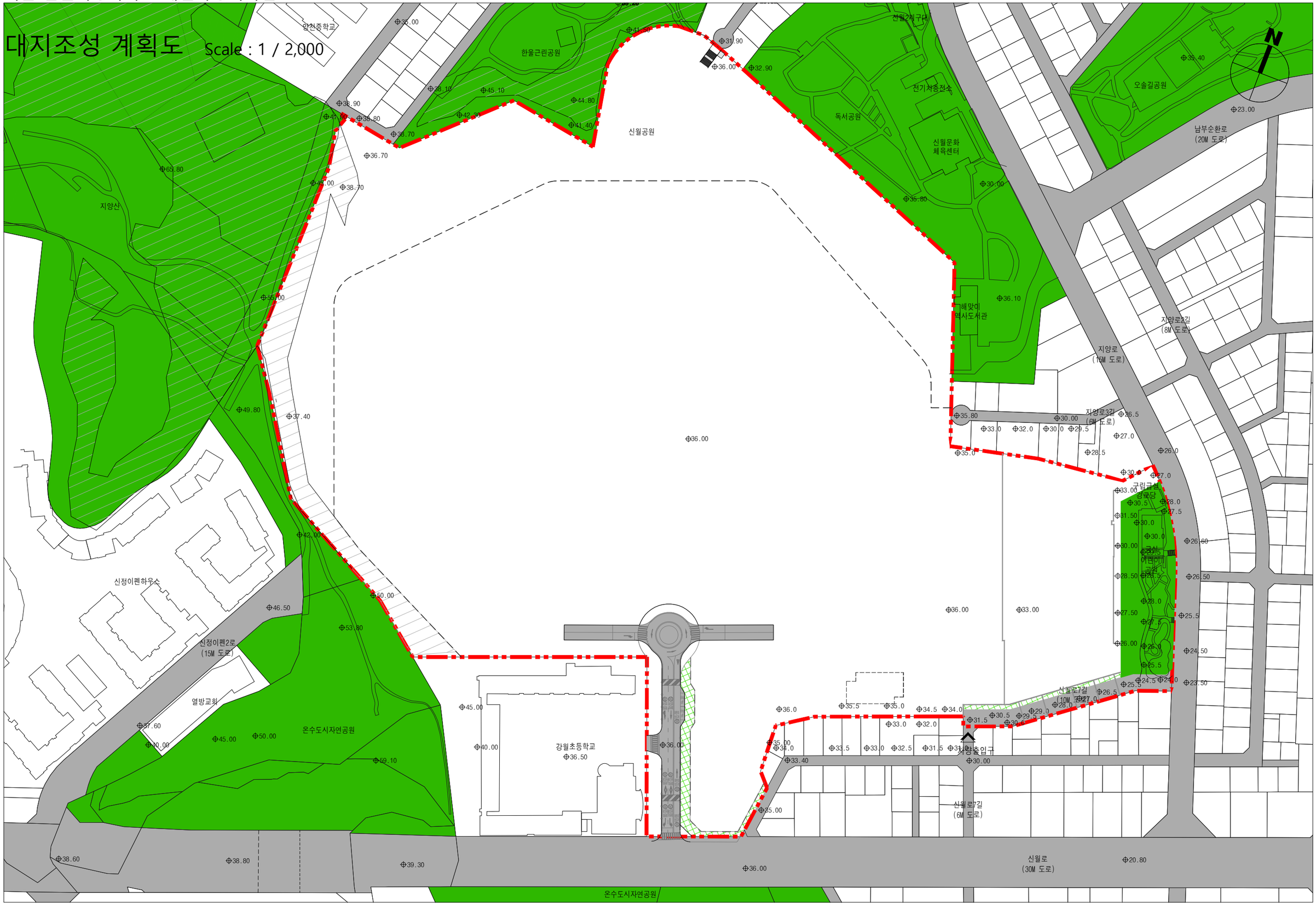
Scale : 1 / 2,000



서울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대지조성 계획도

Scale : 1 / 2,000



서울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생태면적률 산적도

Scale : 1 /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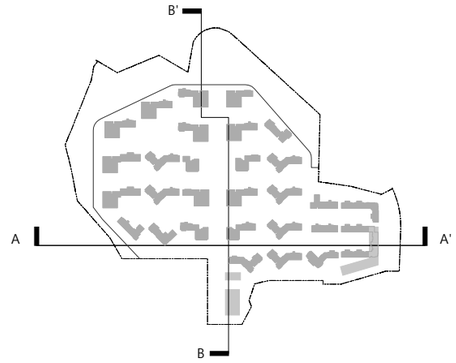


■ 생태면적률 산출표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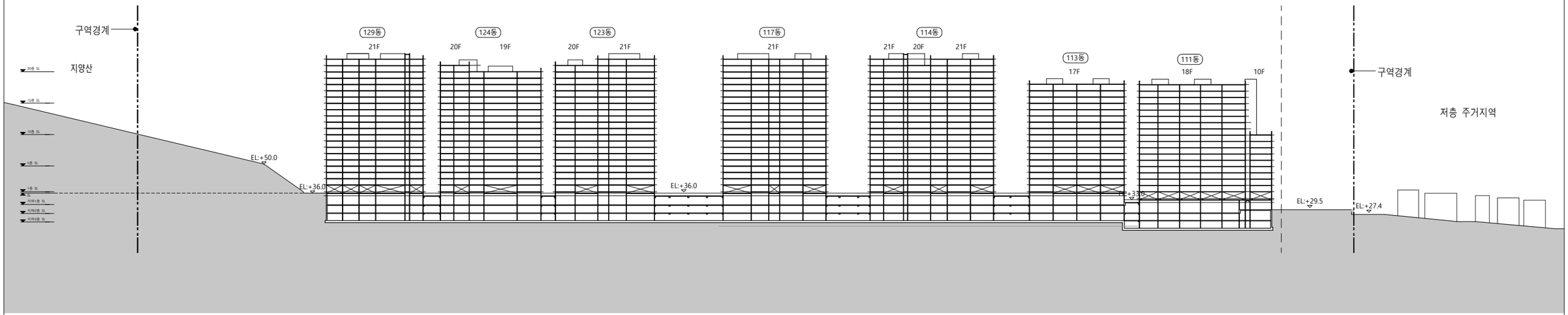
구 분			가중치	실면적	환산면적	비 고
자연지반녹지			1.0	20,351.51	20,351.51	
인공지반녹지		토심 90㎝이상	0.7	40,722.60	28,505.82	
옥상녹화		45㎝≤ 토심<90㎝	0.6	724.31	434.59	
투수포장	자연지반		0.2	2,359.69	471.94	식재면적 30%미만
	인공지반		0.14	7,869.45	1,101.72	식재면적 30%미만
합 계			50,865.58 ㎡			
대 지 면 적			113,009.00 ㎡			
생 태 면 적 률			Σ(공간유형별면적 X 가중치) / 대지면적 X 100			
			= 50,865.58㎡ / 113,009.00㎡ X 100%			
			= 45.01%			

대지종횡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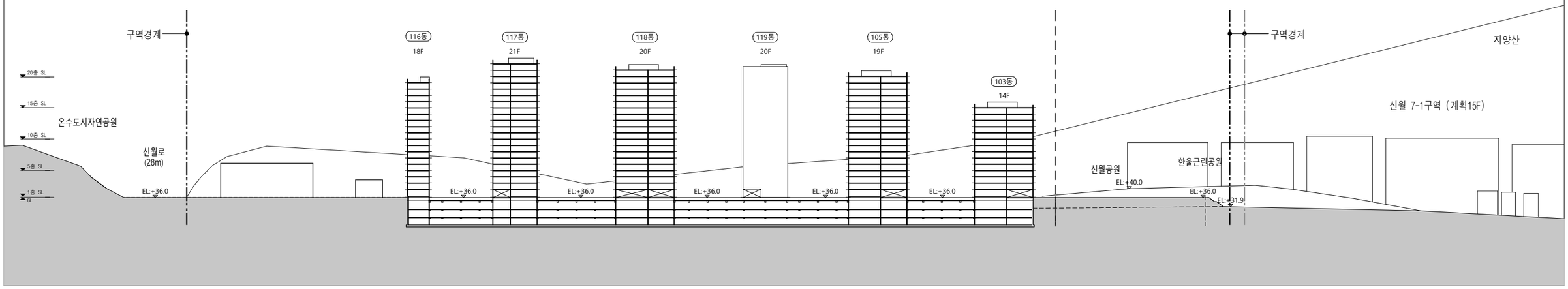
Scale : 1 / 1,800



<A-A' 단면>



<B-B' 단면>



4 계획 설명서

1 계획의 개요

2 현황 및 여건분석

3 부문별 계획

1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가.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대상지는 1984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서울시 고시 제331호)'되고 '신월지구 시영아파트 건립계획 변경(시장방침 제2635호)'되어 1988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준공(양천구공고 제45호)' 된 공동주택 단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임
- 신월시영아파트는 1988년 준공으로, 현재 37년 경과되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함에 따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 등을 반영하여 대상지 주변 여건 변화를 수용한 정비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2. 계획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87-1번지 일원
- 면적 : 153,2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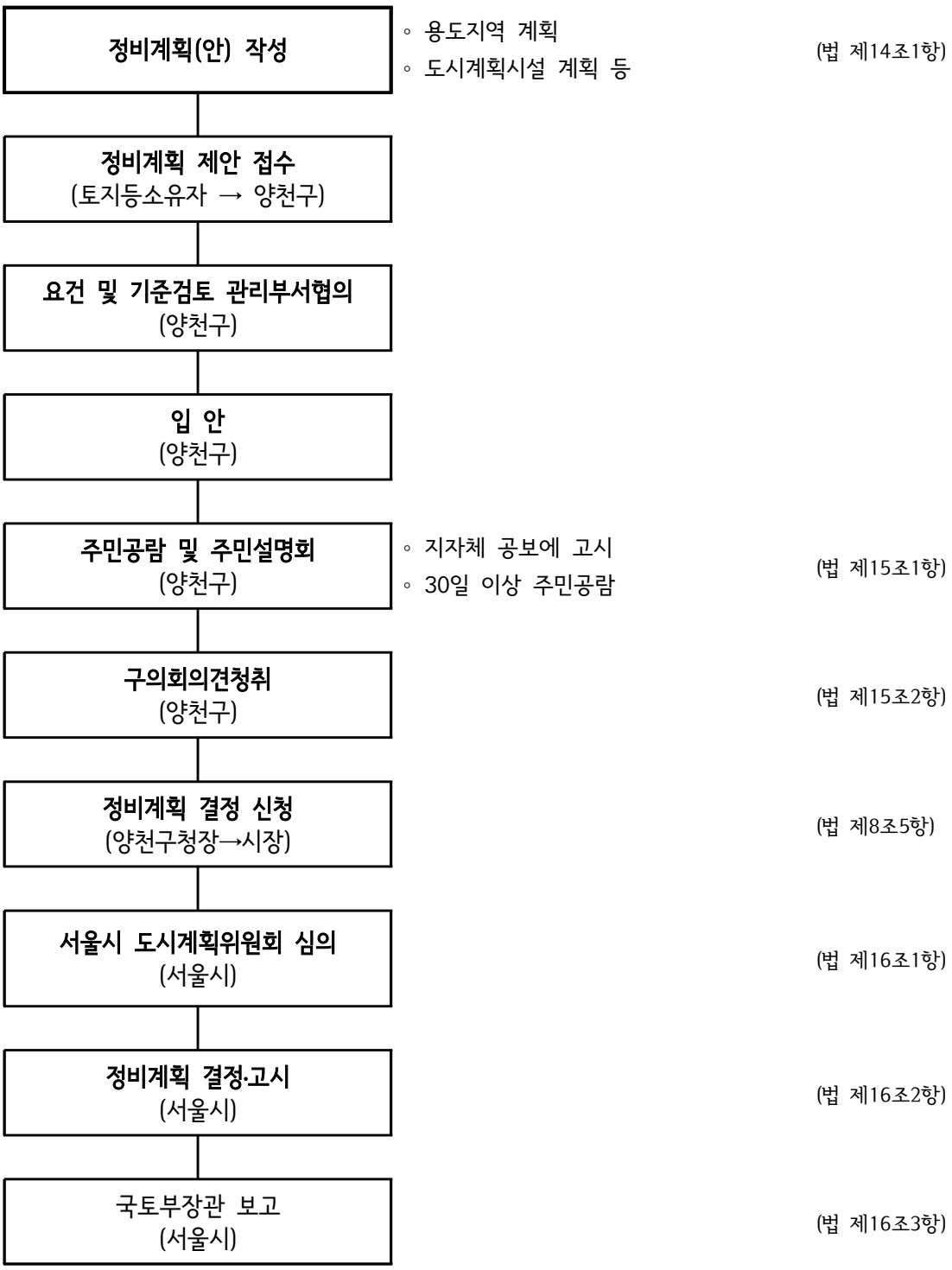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5년
- 목표년도 : 2030년

< 위치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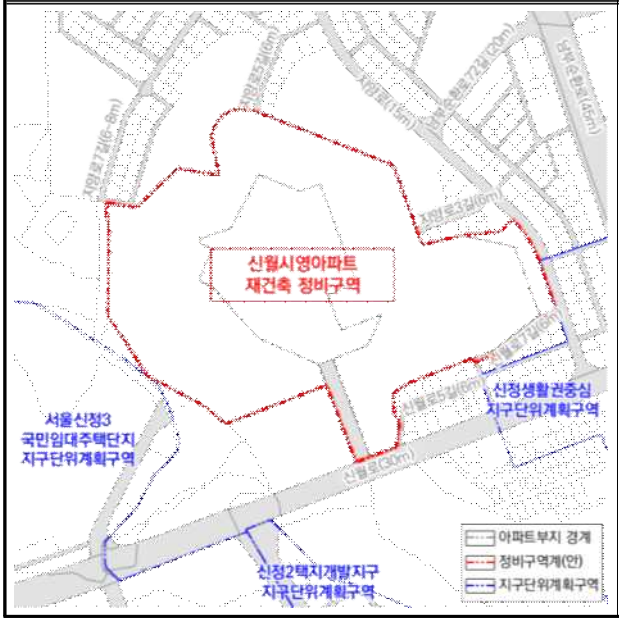
3. 정비계획 결정 절차


정비계획(안) 작성
◦ 용도지역 계획
◦ 도시계획시설 계획 등
(법 제14조1항)
정비계획 제안 접수
(토지등소유자 → 양천구)
요건 및 기준검토 관리부서협의
(양천구)
입 안
(양천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양천구)
◦ 지자체 공보에 고시
◦ 30일 이상 주민공람
(법 제15조1항)
구의회의견청취
(양천구)
(법 제15조2항)
정비계획 결정 신청
(양천구청장→시장)
(법 제8조5항)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서울시)
(법 제16조1항)
정비계획 결정·고시
(서울시)
(법 제16조2항)
국토부장관 보고
(서울시)
(법 제16조3항)

2 현황 및 여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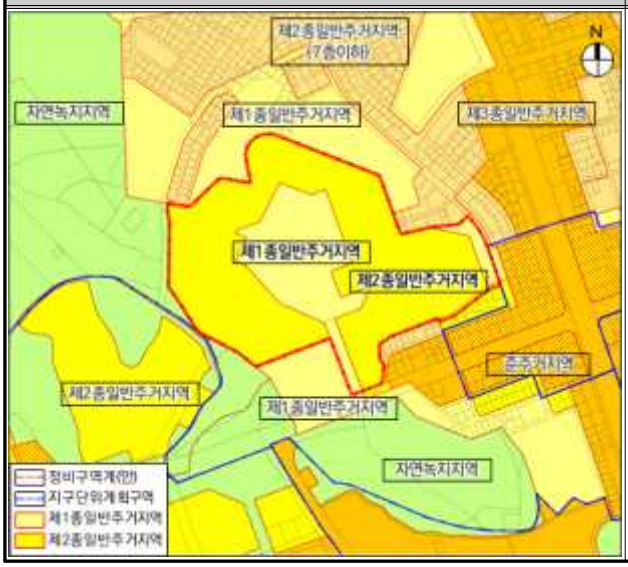
1. 대상지

- 대상지는 구역 내 23개동의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음

지적도	전경사진
	

2. 도시관리계획 현황

- 용도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도로 2개소(중로1류, 소로3류)

용도지역·지구 현황	도시계획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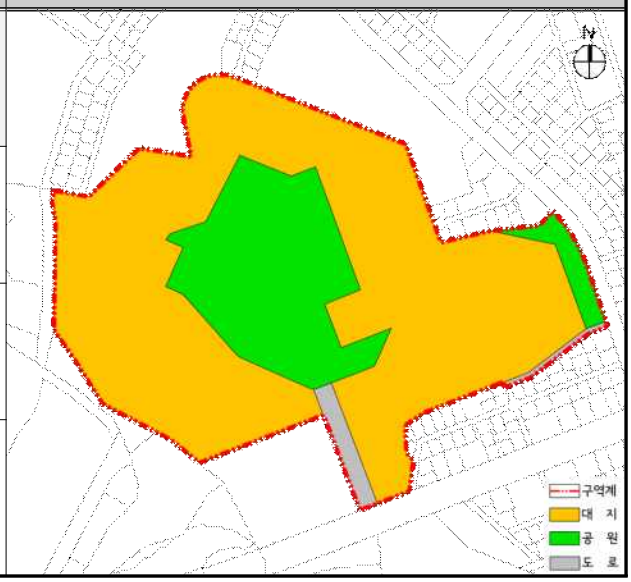
3. 토지 및 건축물 현황

가. 토지현황

1) 토지 지목별 현황도

• 대상지 내 총 5필지 중 1필지가 대지이며 구역내 도로 및 공원 등이 4필지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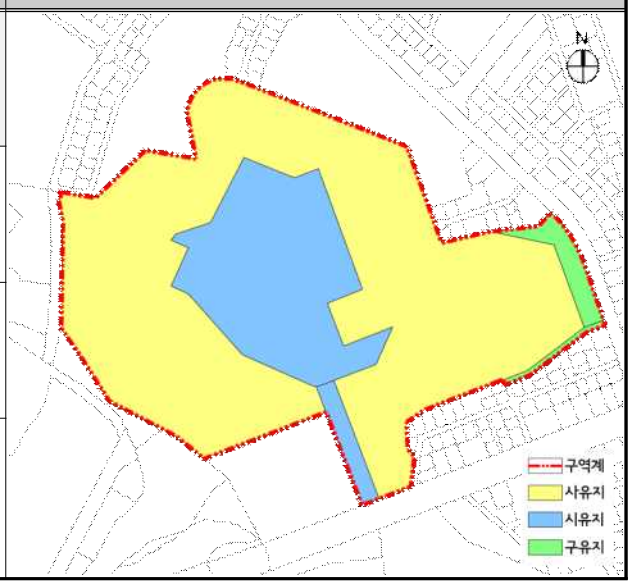
토지 지목별 현황					현황도면
구분	합계	대지	도로	공원	
면적 (㎡)	153,213.6	113,975.0	3,483.8	35,754.8	
구성비 (%)	100.0	74.4	2.3	23.3	
필지수 (개)	5	1	2	2	



2) 토지 소유자별 현황도

• 대상지 내 총 5필지 중 사유지는 1필지, 서울시 소유 2필지, 양천구 소유 2필지가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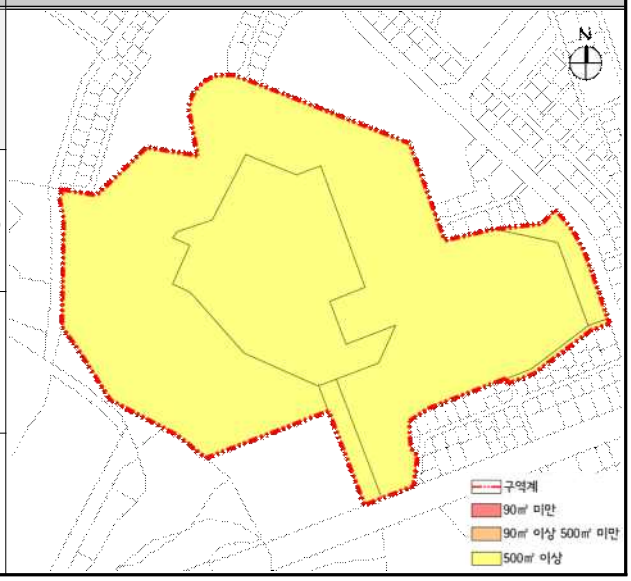
토지 소유자별 현황					현황도면
구분	합계	사유지	서울시	양천구	
면적 (㎡)	153,213.6	113,975.0	35,096.3	4,142.3	
구성비 (%)	100.0	74.4	22.9	2.7	
필지수 (개)	5	1	2	2	



3) 토지 규모별 현황도

• 대상지 내 총 5필지 중 5필지 모두 규모 500㎡ 이상이며, 구역 내 90㎡ 미만 과소필지는 없음

토지 규모별 현황					현황도면
구분	합계	90㎡ 미만	90㎡이상 500㎡미만	500㎡ 이상	
면적 (㎡)	153,213.6	-	-	153,213.6	
구성비 (%)	100.0	-	-	100.0	
필지수 (개)	5	-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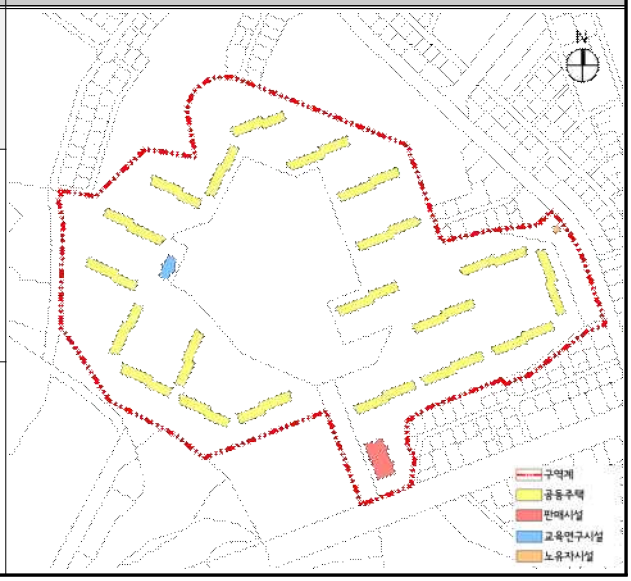


나. 건축물 현황

1) 건축물 용도별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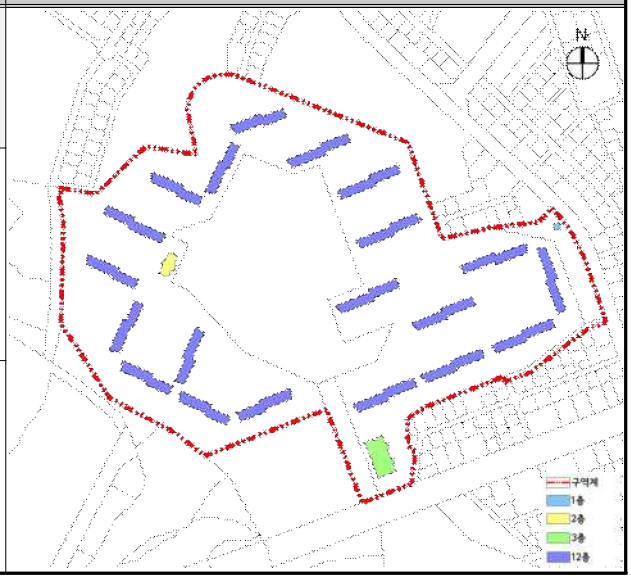
• 대상지 내 건축물 23동이며, 공동주택 20동, 판매시설 1동, 교육연구시설 1동, 노유자시설 1동으로 이루어져 있음

건축물 용도별 현황							현황도면
구분	합계	단독 주택	공동 주택	판매 시설	교육 연구 시설	노유자 시설	
동수 (동)	23	-	20	1	1	1	
구성비 (%)	100.0	-	87	4.3	4.3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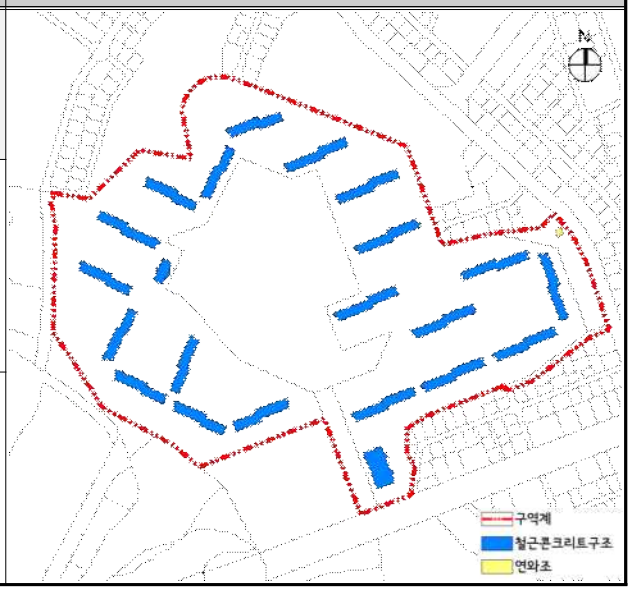
2) 건축물 층수별 현황도

• 대상지 내 건축물 23동 중 1층은 1동, 2~4층은 2동, 10층이상 20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건축물 층수별 현황						현황도면
구분	합계	1층	2~4층	5~9층	10층 이상	
동수 (동)	23	1	2	-	20	
구성비 (%)	100.0	4.3	8.7	-	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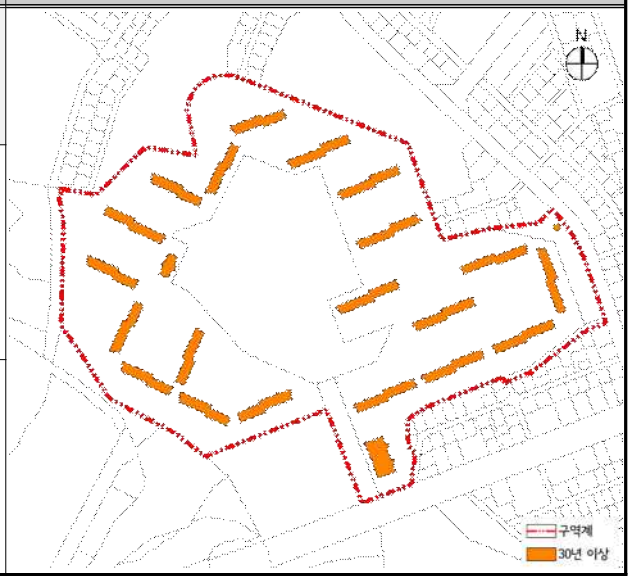
3) 건축물 구조별 현황도

• 대상지 내 건축물 22동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1동은 연와조임

건축물 구조별 현황							현황도면
구분	계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강구조	연와조	
동수 (동)	23	22	-	-	-	1	
구성비 (%)	100.0	95.7	-	-	-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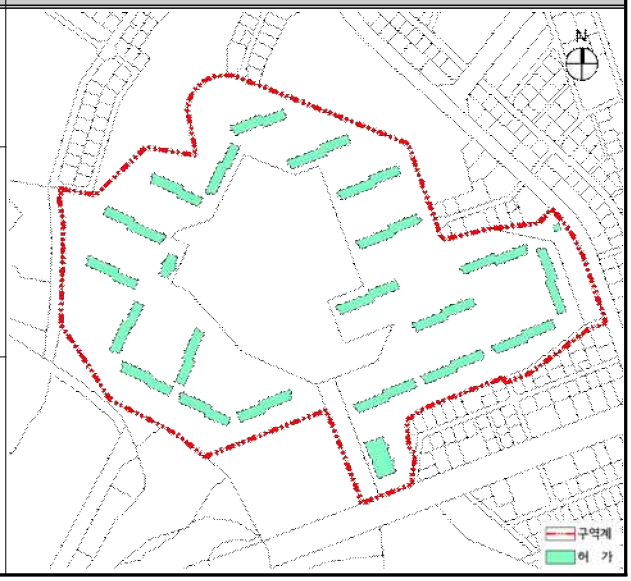
4) 건축물 경과년도별 현황도

• 대상지 내 건축물 23동 모두 3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임

건축물 경과년도별 현황						현황도면
구분	합계	10~20년	20~30년	30~40년	40년 이상	
동수(동)	23	-	-	23	-	
구성비(%)	100.0	-	-	100.0	-	

5) 건축물 허가유무별 현황도

• 대상지 내 건축물 23동 모두 유허가 건축물로 무허가 건축물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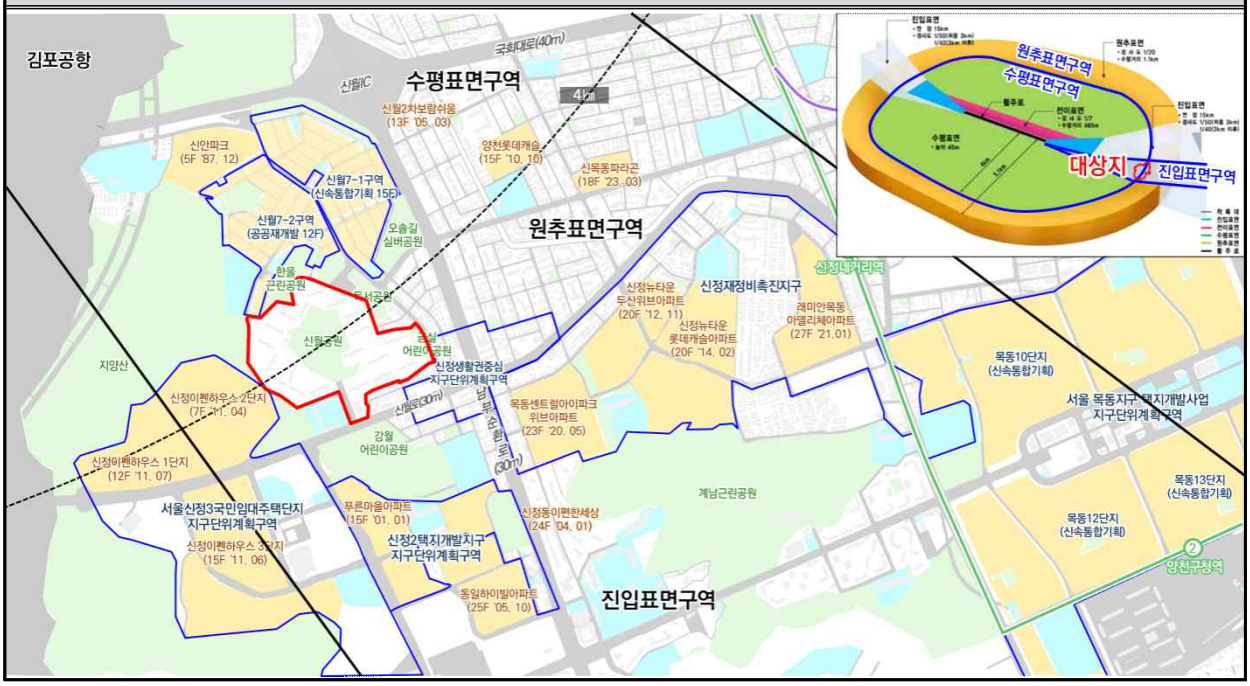
건축물 허가유무별 현황					현황도면
구분	계	허가	특정 무허가	신발생 무허가	
동수(동)	23	23	-	-	
구성비(%)	100.0	100.0	-	-	

4. 주변 개발현황

- 정비구역은 주변으로 기개발 된 아파트 단지 및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중으로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
- 목동선(예정) 및 남부순환도로가 인접하여 경인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높으며, 반경 500m 내 학교 2개소 위치함에 따라 입지여건이 우수한 주거밀집 지역임
- 학교, 공원 등이 밀집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높은 학군을 보유하고 있어 우수한 주거지역임
- 현재 「공항시설법」 상 고도제한 적용 시 사업추진이 곤란하나, 지양산 등 주변 장애물 차폐이론을 적용하여 고도제한 완화

연번	사업유형	명칭	진행단계
1	신속통합기획	신월7-1구역	2025.01 고시
2	공공재개발	신월7-2구역	2024.03 고시
3	지구단위계획	신정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2022.1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4	국민임대주택	서울신정3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011.04~07 준공
5	택지개발	신정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2001.01 준공
6	재정비촉진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1-1지구	2020.05 준공
7	신속통합기획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목동10,12,13단지)	신속통합기획 진행중

주변 개발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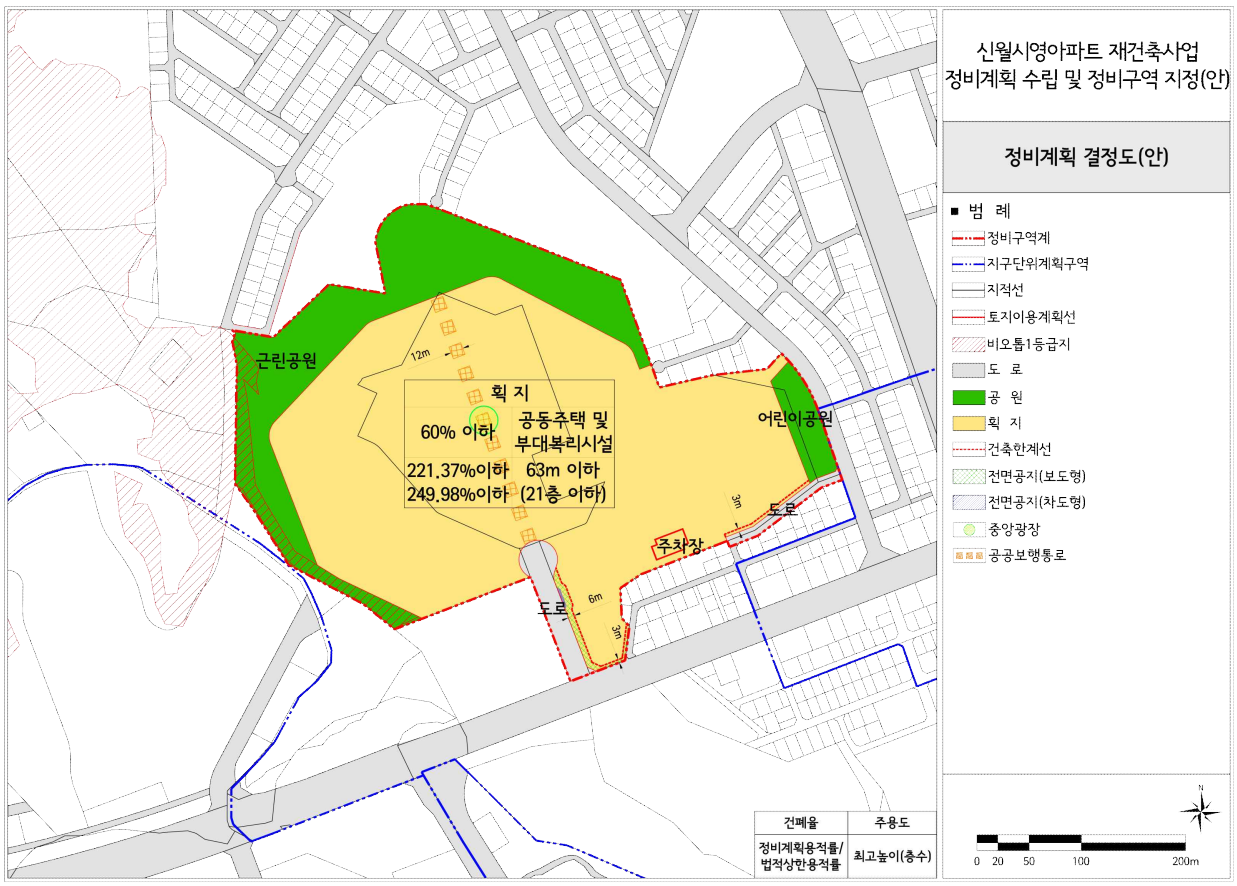


3 신속통합기획

1.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라인
공공시설 등	도로	◦ 남·북 보행축 연결을 위해 라운드어바웃 도입 등 도로 위치 조정 검토 (※1차) - 주출입구를 T자형 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 변경(4차로→3차로, 보도폭 4.8m→7.8m) ◦ 주출입구 회전교차로 안전성 확보(※3차) - 고원식 횡단보도, 주차평탄부 길이 확보(5m→15m)
	공원	◦ 공원 위치는 개별 단지가 아닌 지구 차원에서 타당성 검토(※1차) - 공원 선형 변경(북측 일자 배치 → 주변 공원과 연결) ◦ 획지 내 비오톱1등급지 관리방안 제시(※관련부서 협의) - 공원 선형 변경(비오톱1등급지 공원 내 포함)
	공용주차장	◦ 신월로7길 주차구획 삭제(※2차) - 거주자우선주차장 단지 내 확보(주차장 입체적 결정) ◦ 거주자우선주차장 독립성 및 효율성 확보(※관련부서 협의) - 거주자우선주차장 분리 운영(426.24㎡→580.92㎡)
건축배치	배치계획	◦ 단조로운 격자형 배치계획 재검토(※1차) - 공원 형태와 연계한 배치계획(중앙광장 및 순환형 Eco-Ring 조성) ◦ 남동측 배치 분산(※2차) - 동-서, 남-북 통경축 확보
	대지조성계획	◦ 경사진 대지에 대한 지형순응 및 주변 도로와 연계(※1차) - 금실어린이공원변 주민공동이용시설 도입 ◦ 단일 레벨 적정성 검토(※2차) - 지형순응형 대지레벨 계획(1단 36.5m → 2단 36.0m/33.0m)
	중앙광장	◦ 중앙광장을 부대복리시설과 입체적으로 연결(※2차) - 부대복리시설 중앙광장으로 배치 ◦ 중앙광장 지침 부여(※3차) - 지구단위계획 지침 부여, 도면 표시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향후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담보 방안 제시(※심의) -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단서조항 및 지역권 설정을 등기에 명시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구	◦ 대규모 단지임을 고려하여 출입구 추가 확보(※1차) - 2개소→3개소(현황도로 편입 확폭 6m→10m) ◦ 주출입구 교통량 분산을 위한 추가 출입구 확보(※2차) - 3개소→4개소(공원 하부 진입구 추가) ◦ 공원 하부 진입구 적정성 검토(※관련부서 협의) - 공원 하부 진입구 삭제(3개소→4개소) ◦ 대상지 규모 및 세대수를 고려하여 동측변 차량진출입구 추가 설치(※심의) - 동측 출입구 추가(3개소→4개소, 교통영향평가 세부적인 교통처리계획 수립·결정)

< 정비계획결정도(안) >



- 이 하 여 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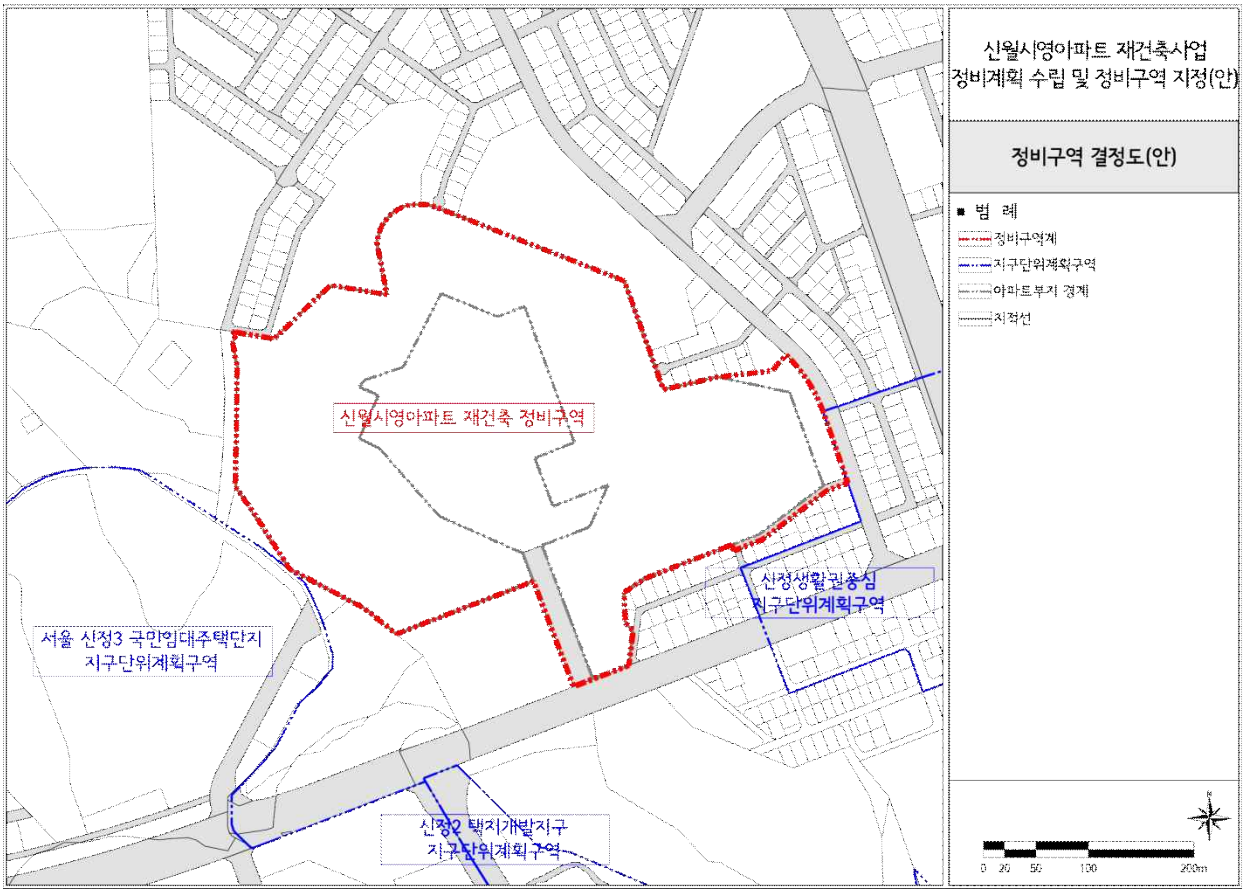
4 부문별 계획

1. 정비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의 면적은 153,213.6㎡로 공원 및 도로 40,204.6㎡를 구역 내 편입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양천구 신월동 987-1번지 일원	-	증) 153,213.6	153,213.6

< 정비구역 결정도(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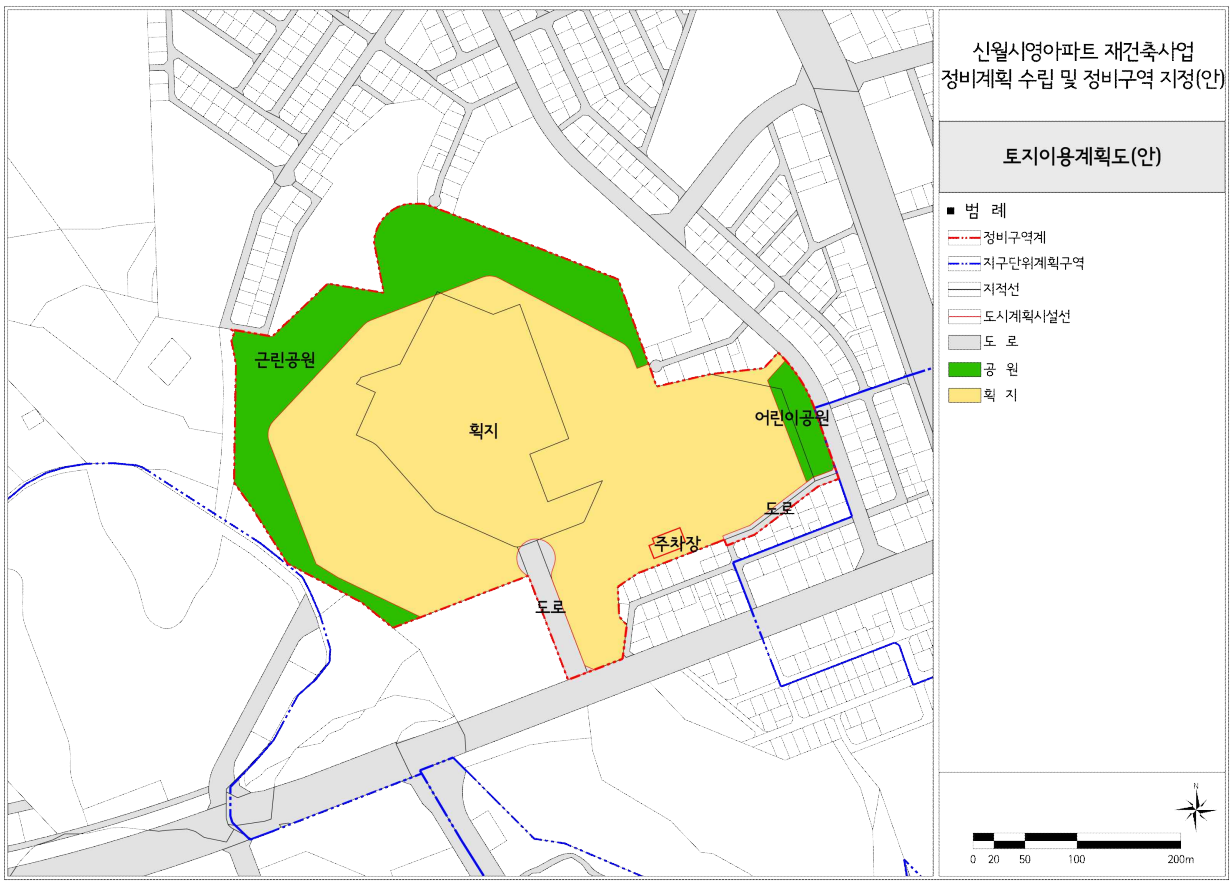


2. 토지이용계획

- 구역면적 153,213.6㎡ 중 73.8%에 해당하는 면적을 획지로 계획하고 정비기반시설은 도로(4,449.8㎡), 공원(35,754.8㎡), 주차장(획지 내 입체적 결정)으로 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153,213.6	100.0	-
정비기반 시설등	소 계	40,204.6	26.2	-
	도 로	4,449.8	2.9	-
	근린공원	32,376.0	21.1	-
	어린이공원	3,378.8	2.2	-
	주차장	(580.92)	(0.4)	획지 내 입체적 결정
획지	소계	113,009.0	73.8	-
	획지1	113,009.0	73.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토지이용계획도(안) >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 대상지 내 공원, 도로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임
-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획지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
- 새로 설치하는 공원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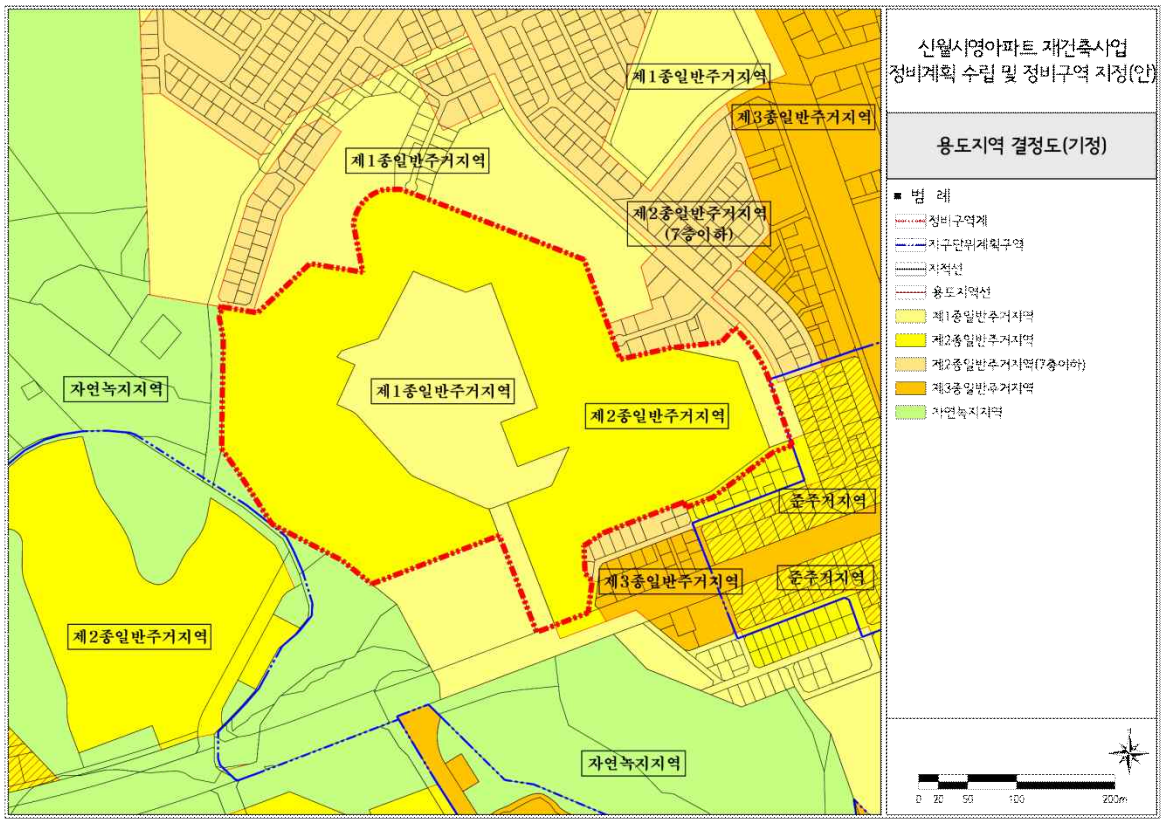
구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소 계	153,213.6	-	153,213.6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38,475.1	증) 450.4	38,925.5	25.4	공원, 도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114,738.5	감) 450.4	114,288.1	74.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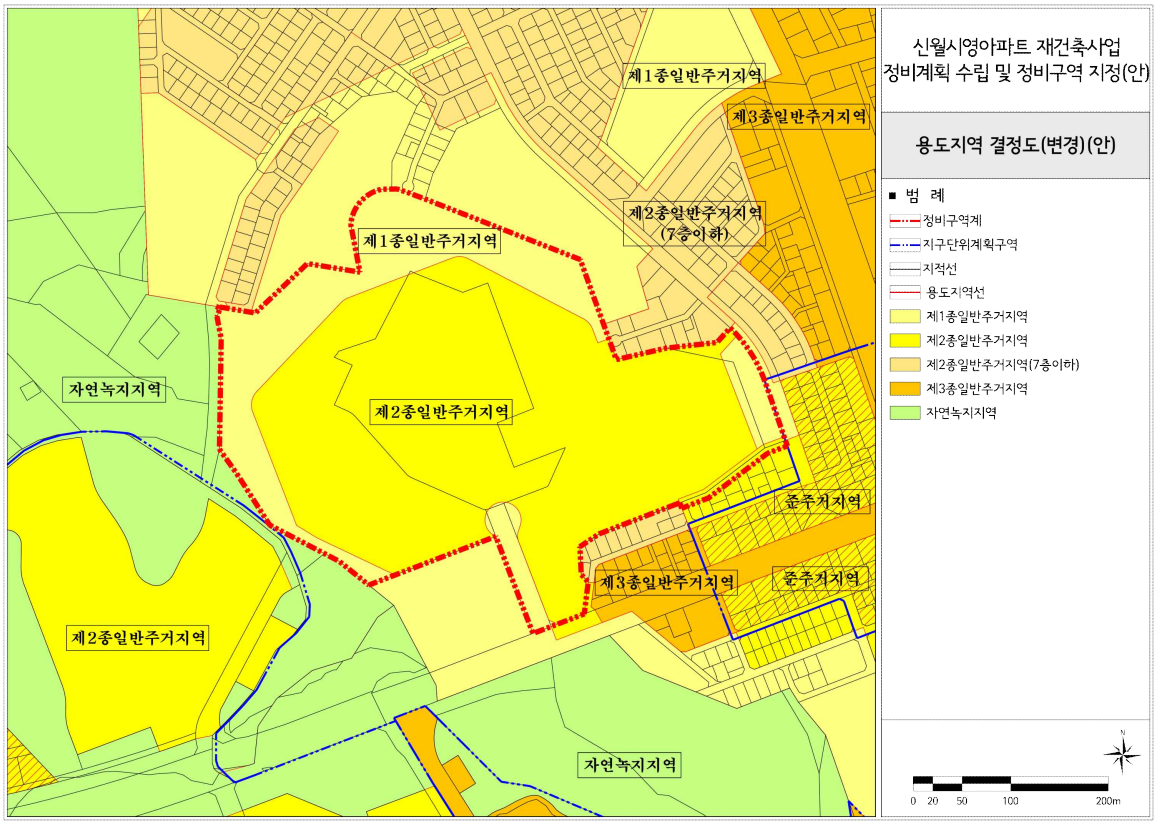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 이 하 여 백 -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안))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 중로 1-1: 구역 내 도로의 원활한 차량교행을 위하여 2차선(20m) → 3차선(20m) 차로 수 개선
- 소로 3-1: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도로 일부 확폭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2	610 (267)	6,429.4 (4,449.8)	1	140	3,170.7	-	-	-	1	470 (127)	3,258.7 (1,279.1)
대로	-	-	-	-	-	-	-	-	-	-	-	-
중로	1	140	3,170.7	1	140	3,170.7	-	-	-	-	-	-
소로	1	470 (127)	3,258.7 (1,279.1)	-	-	-	-	-	-	1	470 (127)	3,258.7 (1,279.1)

※ ( )는 대상지 내 수치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	-	140 (140)	신월동 산154-6	신월동 산154-5	일반 도로	-	양천구 고시 1988-21호 (88.08.18)	-
변경	중로	1	1	20	-	140 (140)	신월동 산154-6	신월동 산154-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1	6	-	470 (127)	대 2-36	지구계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제475호 (82.12.29)	-
변경	소로	3	1	6~10	-	470 (127)	대 2-36	지구계	일반 도로	-		

※ ( )는 대상지 내 수치임

2) 주차장

- 사업지 주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월로7길의 자율주차구획을 삭제하고 공동주택 획지 내 입체적 결정을 통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확보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신월동 987-1	-	증) 580.92	580.92 (입체적 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입체적범위 결정)

※ 580.92㎡는 수평투영면적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	주차장	신월동 987-1	층수	-	지하1층	-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	-	580.92		

나. 공간시설

1) 공원

- 획지 내 공동주택 건립을 및 신월공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린공원 위치 및 면적 변경
- 주변 공원과의 연계 및 획지 정형화를 위해 어린이공원 선형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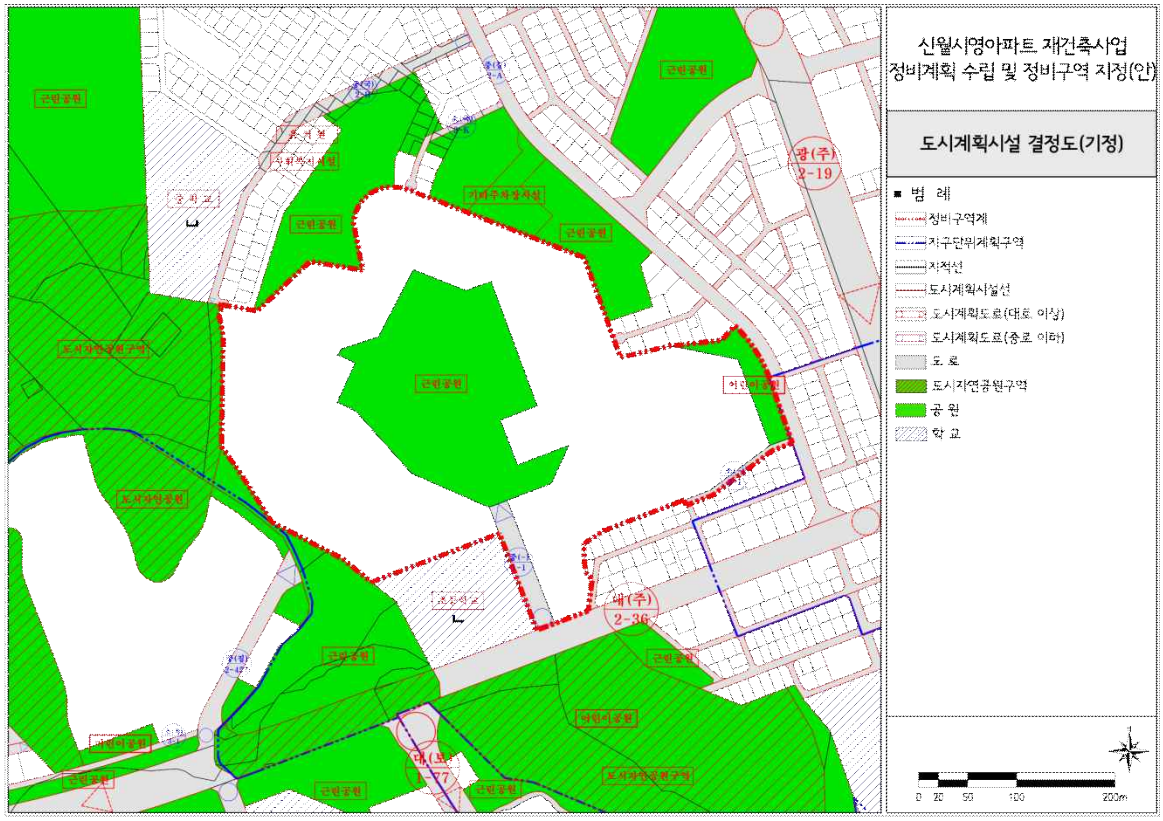
■ 공원 총괄표

구분	행정구역 (㎡)				시가화구역 (㎡)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2	35,754.8	2	35,754.8	2	35,754.8	2	35,754.8
근린공원	1	32,376	1	32,376	1	32,376	1	32,376
어린이공원	1	3,378.8	1	3,378.8	1	3,378.8	1	3,3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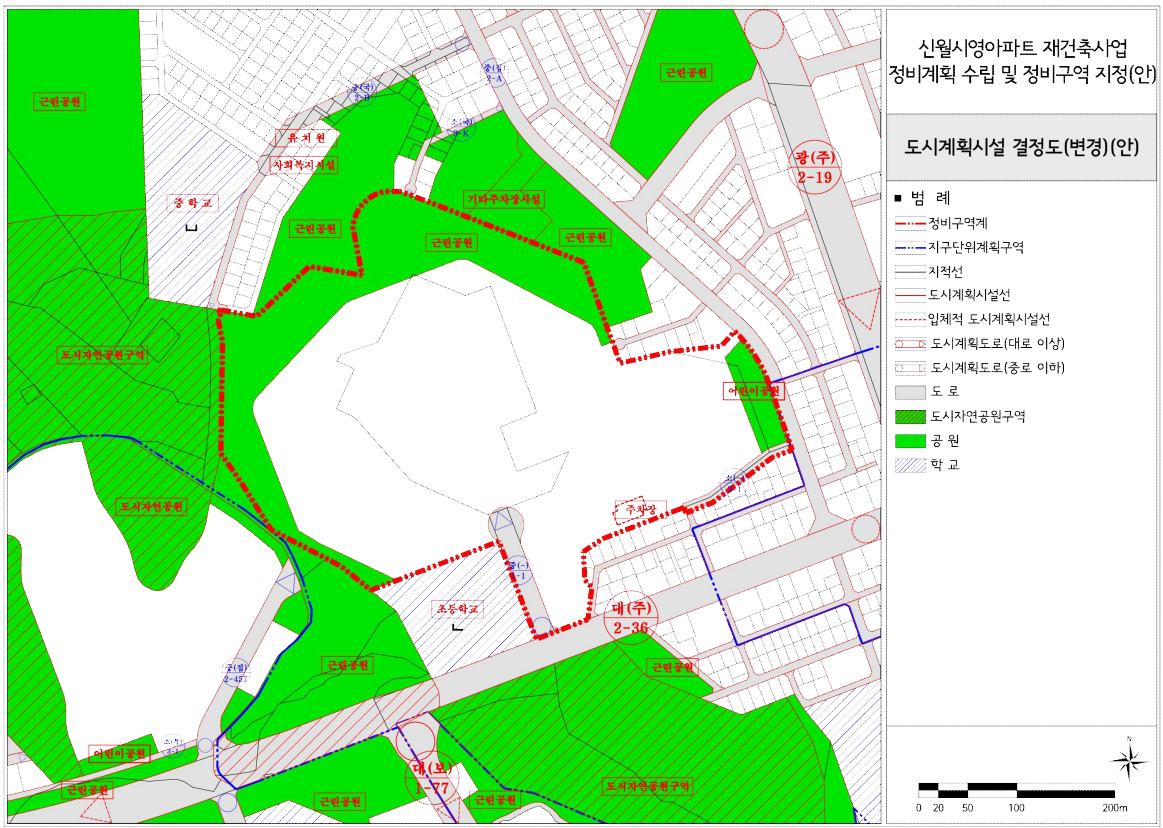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신월공원	근린공원	신월동 산 154-5 외 7필지	32,376	-	32,376	양천구 고시 1988-21호 (88.08.18)	-
변경				신월동 987-2					
기정	-	금실공원	어린이공원	신월동 985	3,378.8	-	3,378.8	건설부고시 제475호 (82.12.29)	-
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안) >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 주민공동시설 계획
- 구역 내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산정하고, 이용대상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에 따라 1,000세대 이상의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500㎡에 세대당 2㎡ 더한 면적의 1.25배 이상 확보 = (500㎡ + 3,149세대×2)×1.25 = 8,497.5㎡ 이상 < 10,290.0㎡ 계획

구분		면 적(㎡)		비고
		서울시 기준	계획(안)	
경비실		-	115.0	지상
관리사무소		164.95	200.0	지하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다함께돌봄센터	66.0	450.0	지상
	경로당	954.8	960.0	지상
	어린이집	954.8	960.0	지상
	작은도서관	412.9	420.0	지하
	주민공동시설	-	2,625.0	지하
	주민운동시설	-	2,125.0	옥외
	어린이놀이터	-	2,750.0	옥외
	소계	-	10,290.0	-
합계		-	10,605.0	-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대상지 내 총 23개 건축물 중 철거후 신축 22동으로 1개동 존치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53,213.6	획지1	113,009	신월동 987-1 일원	23	1	-	22	-	-

7. 건축물에 관한 계획

-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23.03.)」 용적률 계획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적용
- 공동주택 획지(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 190%, 허용용적률 210%, 법적상한용적률 250%이하 적용
-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사업성 보정계수 반영으로 용적률 체계 변경 (허용용적률 210% → 218.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28.61% 완화로 인해 공공주택 196세대 확보
- 최고높이는 63m 이하(21층 이하)로 계획하고, 폐쇄적인 경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다양한 층수 배치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건폐율(%)</th><th colspan="4">용적률(%)</th><th rowspan="2">최고 높이 (층수)</th><th rowspan="2">비고</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h>기준</th><th>허용</th><th>상한</th><th>법적 상한</th></tr>
<tr><td>신규</td><td>신월시영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td><td>153,213.6</td><td>획지1</td><td>113,009</td><td>신정동 987-1 일원</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60 이하</td><td>190 이하</td><td>218.6 이하</td><td>221.37 이하</td><td>249.98 이하</td><td>63m 이하 (21층 이하)</td><td>-</td></tr>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13">◦ 주택공급계획 : 3,149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건립 : 97.6%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6">세대수</th></tr>
<tr><th colspan="2">소계</th><th colspan="2">분양</th><th colspan="2">공공</th></tr>
<tr><td>합 계</td><td>3,147</td><td>100.0%</td><td>2,953</td><td>93.8%</td><td>196</td><td>6.2%</td></tr>
<tr><td>60㎡ 이하</td><td>2,317</td><td>73.6%</td><td>2,159</td><td>68.6%</td><td>158</td><td>5.0%</td></tr>
<tr><td>60~85㎡ 이하</td><td>756</td><td>24.0%</td><td>718</td><td>22.8%</td><td>38</td><td>1.2%</td></tr>
<tr><td>85㎡ 초과</td><td>76</td><td>2.4%</td><td>76</td><td>2.4%</td><td>-</td><td>-</td></tr>
</table></td></tr>
<tr><td>심의완화사항</td><td colspan="13">◦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249.98% 이하 (완화용적률 28.61%)</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등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3">◦ 건축한계선 : 3~8.5m</td></tr>
<tr><td>기타사항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3">◦ 전면공지 : 3~6m(보도형), 2.5m(차도형)
◦ 공공보행통로 : 12m
- ‘공공보행통로 상부에 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며, 24시간 개방을 통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중앙광장 : 공공보행통로와 교차하는 통경축 확보구간에 개방형 공간 조성</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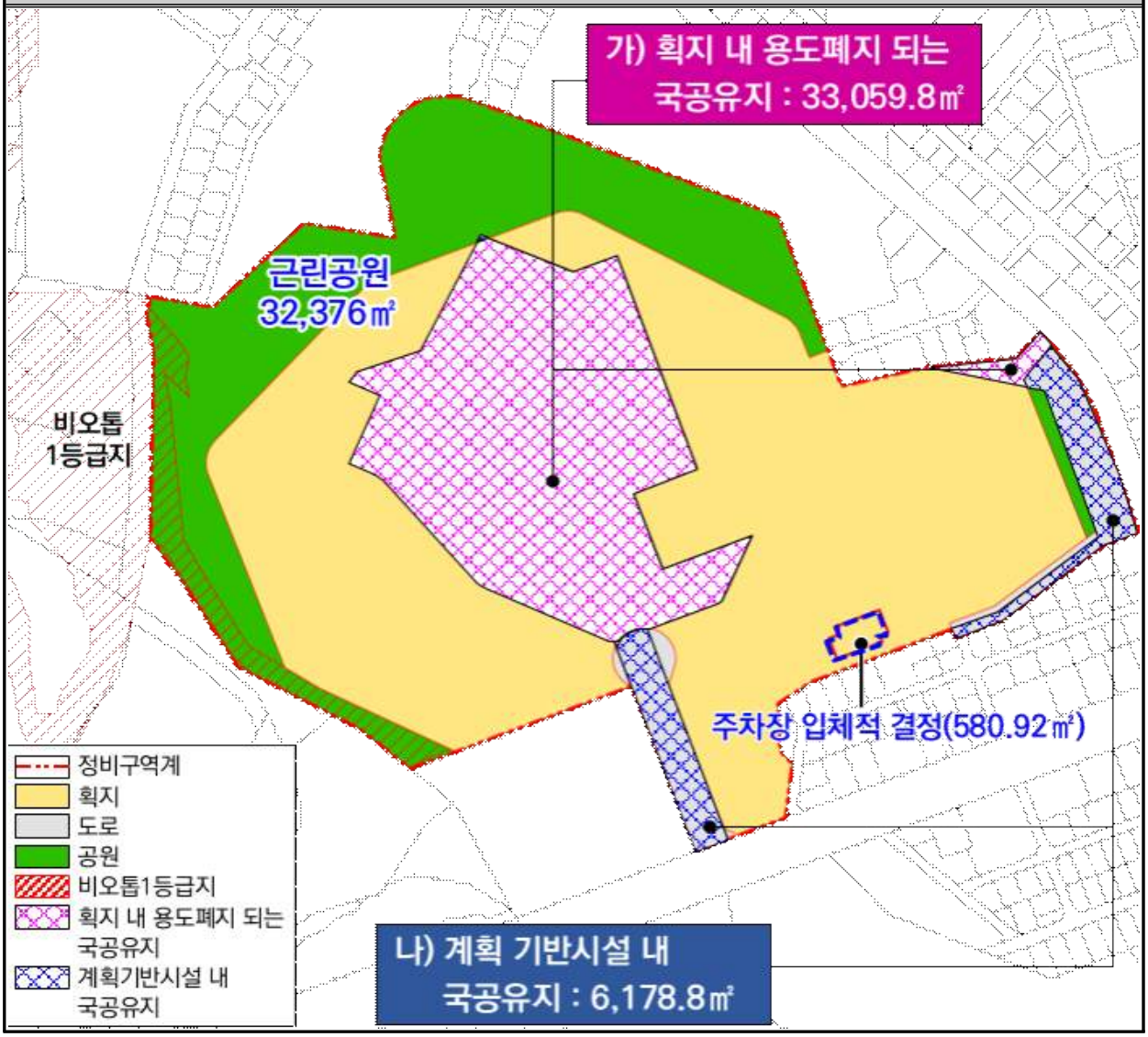
■ 용적률 산정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7">산정내용</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계획
(㎡)</td><td rowspan="2">구역면적</td><td rowspan="2">획지
(공동주택)</td><td colspan="3">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등</td><td rowspan="2">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 rowspan="2">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td></tr>
<tr><td>소계</td><td>정비
기반시설</td><td>현금·건축물
(환산부지)</td></tr>
<tr><td>153,213.6</td><td>113,009.0</td><td>40,416.5</td><td>40,346.6</td><td>69.9</td><td>6,178.8</td><td>33,059.8</td></tr>
<tr><td>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7">◦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등 제공면적-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40,416.5㎡ - 6,178.8㎡ - 33,059.8㎡ = 1,177.9㎡(구역면적의 0.77%)</td></tr>
<tr><td>공공시설등
부지(토지)면적</td><td colspan="7">◦ 40,346.6㎡
= (도로)4,449.8㎡ + (공원)35,754.8㎡ + (주차장 대지지분)142.0㎡ = 40,346.6㎡
※ 주차장 대지지분 : 대지면적 × (주차장 연면적 ÷ 전체 연면적)
= 113,009.0 × (580.92 ÷ 462,352.68) = 142.0㎡</td></tr>
<tr><td>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면적</td><td colspan="7">◦ 69.9㎡
: ((설치비용)540,783,709.1원 + (설계비)26,119,853.1원 + (감리비)6,056,777.5원) ÷ (부지가액)8,189,814.5원 = 69.9㎡
※설치비용 : 2025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지하층 건축비 1,024,000원의 부가세 10% 제외 금액(930,909원) × 건축연면적(580.92㎡)
※부지가액 : 2024년 1월 평균공시지가 4,094,907.2원/㎡의 2배
※설계비·감리비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설계비·감리비 적용 (설계비 × 직선보간법에 따른 요율 적용)</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7">◦ 190.0%(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 준수)</td></tr>
<tr><td>허용용적률</td><td colspan="7">◦ 218.6%(허용용적률 최대량 계획 : 공공보행통로, 장수명주택, 방재안전 등 제공, 사업성보정계수 1.43 적용 시)
: 사업성보정계수 = 서울시 공동주택 평균 공시지가 ÷ 대상단지 평균 공시지가
= 7,192,285 ÷ 5,030,000 = 1.43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 × 사업성보정계수
= 190% + 20% × 1.43 = 218.6%
⇒ 허용용적률 218.6%
※2023 서울시 공동주택 평균 공시지가 : 7,192,258원/㎡
※2023 신월시영아파트단지 평균 공시지가 : 5,030,000원/㎡</td></tr>
<tr><td>상한용적률</td><td colspan="7">◦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a(토지)+(0.7×a(건축물)))
= 218.6%+(210%^{주)}x(1.3×1.0×0.00982)+210%^{주)}x(0.7×0.0062)) = 221.37%
⇒ 정비계획 용적률 221.37% 이하
※ 가중치 :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사업부지용적률 = 210%÷210% = 1.0
※ a(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제공면적÷공공시설등 부지(토지)제공 후 부지면적
= 1,108.0㎡÷112,867.0㎡ = 0.00982
※ a(건축물) : 공공시설 등 부지(건축물 환산부지)÷공공시설등 제공 후 부지면적
= 69.9㎡÷112,867.0㎡ = 0.00062
주) 상한용적률 산정 시 허용용적률은 사업성보정계수 미적용 수치임</td></tr>
<tr><td>법적상한 용적률</td><td colspan="7">◦ 249.98%</td></tr>
</table>

■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 면적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정비기반시설	① 토지	부지	도로	4,449.8	2.90	-
			근린공원	32,376.0	21.13	-
			어린이공원	3,378.8	2.21	-
		건축물 대지지분	주차장	142.0	0.09	획지 내 입체적 결정
	② 건축물(환산면적)		주차장	69.9	0.04	연면적 580.92㎡
	③ 순부담 산정시 제외면적(국·공유지)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내	6,386.8	4.17	-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32,851.8	21.44	-
	A 합 계(①+②-③)			1,177.9	0.77	-
B 현 금				-	-	-
순부담(A+B)				1,177.9	0.77	의무순부담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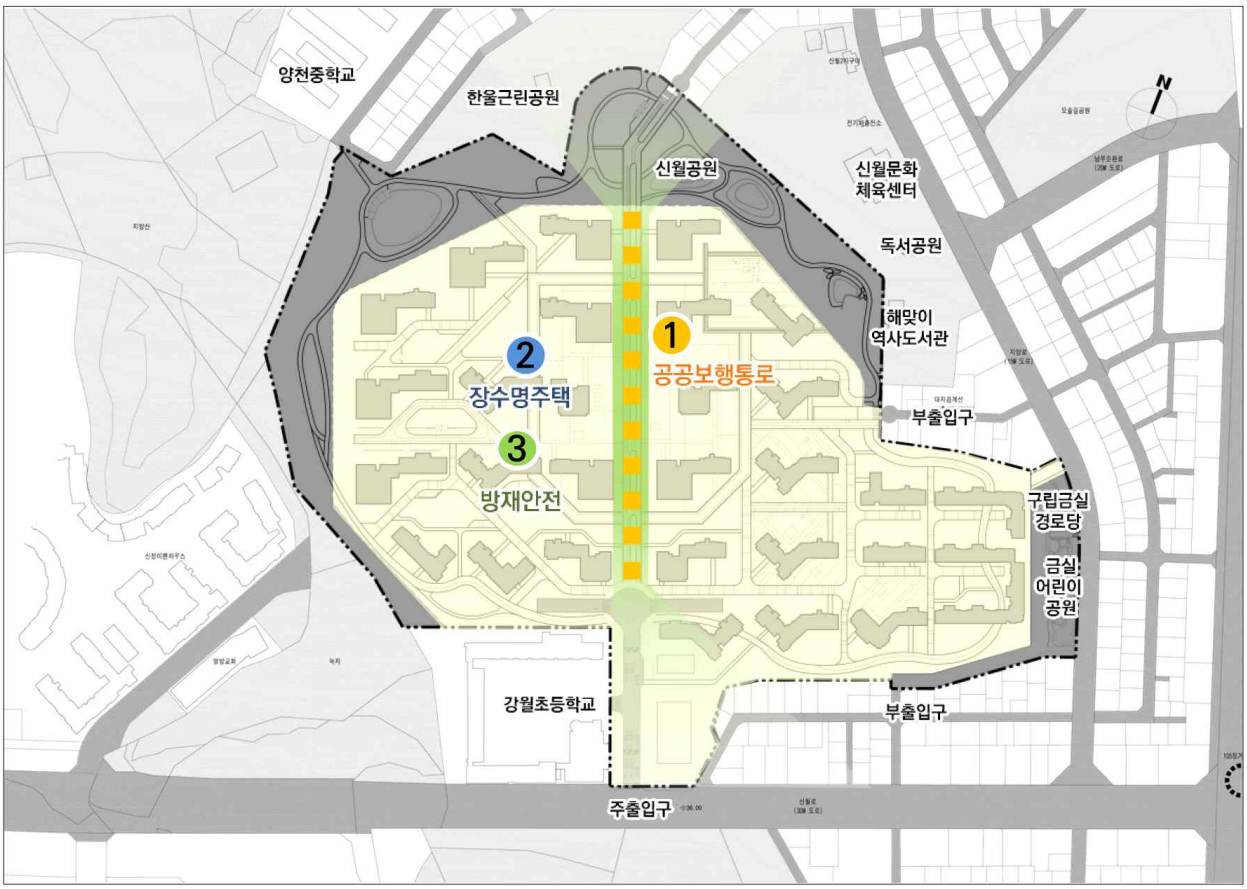
순부담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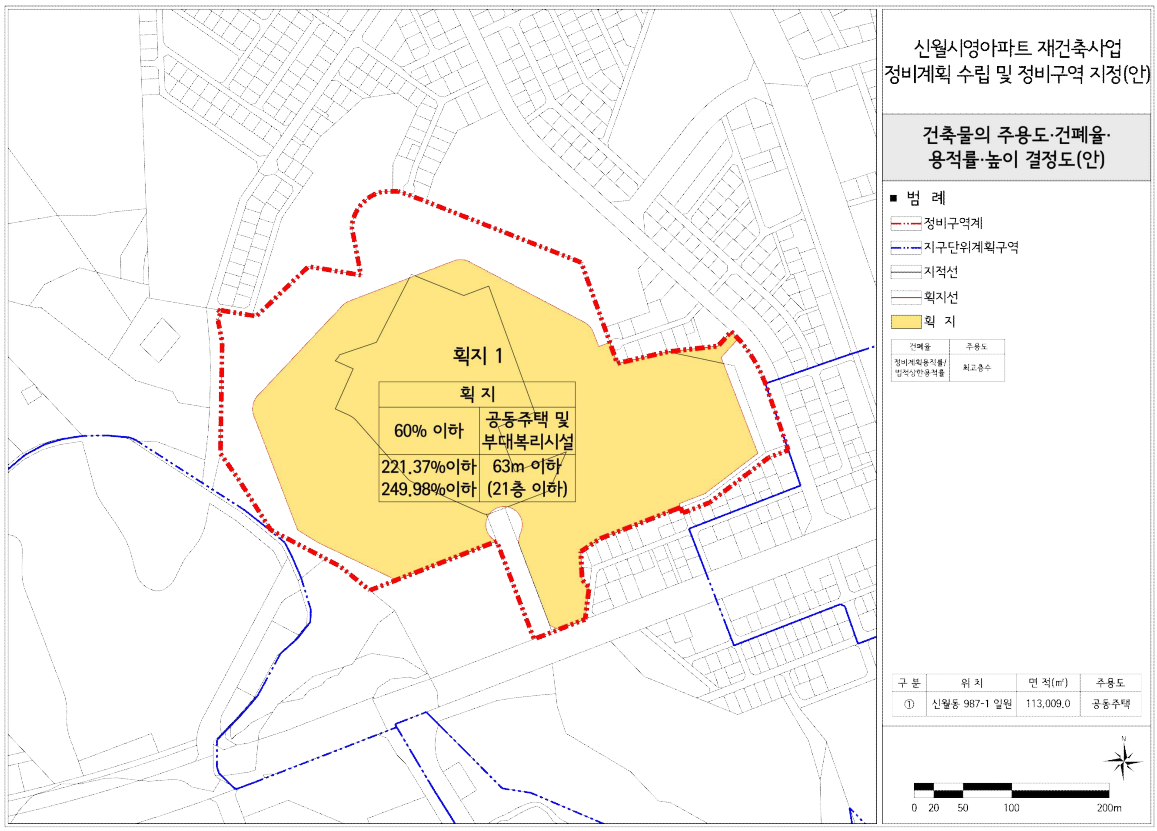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인센티브량		적용	비고
공공 보행통로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등 조성(지역권* 설정)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a ※ a = 1이하 - 190%×(3,026.5㎡÷113,009.0㎡)×1=**5.09% ⇒ 5% 적용**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등기로 설정)	10%p 이내	**5%**	3,026.5㎡ 조성
우수디자인, 장수명	◦ 공동주택의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구조적으로 내구성 확보 및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건설 유도 - 기준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우수디자인 기준을 통과하고,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 최우수 15%, 우수등급 10%	15%p 이내	**10%**	우수등급 (80점 이상)
방재안전	◦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공동주택 시설성능개선 - 기준 : 시설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적용	5%p 이내	**5%**	의무기준 초과개선
합 계	최대 20%p 이내		**20%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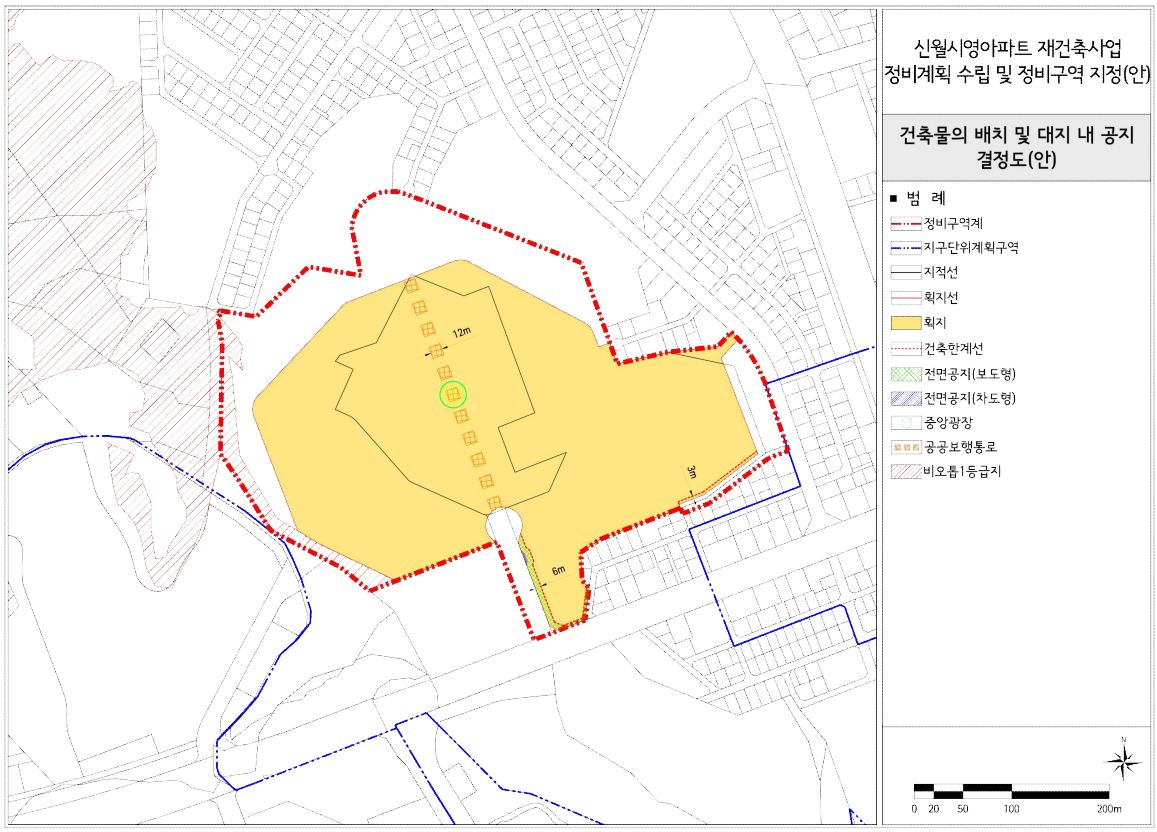
<허용용적률 완화구간>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결정도(안)>



<건축물의 배치 및 대지 내 공지 결정도(안)>



8.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구 분	지점	개 선 방 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사업지 주변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7개소)
	-	○ 중로1-1호선 차로운영계획 재수립
	Ⓐ	- B=20.0m, L=140.0m(왕복2차로→왕복3차로)
		- 강월초교측 보도 설치 : 9.0m(식수대포함)
		- 근린생활시설 측 보도부속형전면공지 설치 : 6.0m
		○ 신월로7길 확폭 및 차로운영계획 재수립
	Ⓑ	- B=6.0→10.0m, L=127m(왕복2차로)
		- 사업지 맞은편 보도 설치 : 2.0m
		- 사업지측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 : 3.0m
진·출입 동선	-	○ 차량진출입구 설치(4개소)
		- 남측 진출입구부 회전교차로 설치(1개소)
		- 동측 지양로(3개소)
		• 교차로운영 2개소
		• 우회전 진출입 1개소
	Ⓒ	○ 강월초등학교 전면 교차로 폐쇄 후 진출입동선 재수립
	Ⓓ	○ 유치원 앞 Drop-off 설치
	-	○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R=6.0m)
대중교통 및 보행	-	○ 사업지 전면 보행부속형 전면공지 설치(B=3.0~6.0m)
	-	○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	- 험프형 : 3개소
		○ 자전거보관소 설치
		- 법정주차의 20% 이상 확보
주차시설	-	○ 법정주차 : 2,883대
	-	○ 주차수요 : 3,515대(2031년 원단위법)
	-	○ 계획주차 : 4,458대
		- 법정대비 154.6%, 수요대비 126.8%
		- 장애인주차 법정주차의 3% 이상
		- 확장형주차 계획주차의 30% 이상
		- 가족배려주차 계획주차의 10%이상
	-	○ 사업지내 거주자주차공간 확보
교통안전 및 기타	-	○ 주차장 진출입구 차량경고등 설치(5개소)
		○ 과속방지턱 설치(2개소)
		○ 유색포장 설치
		○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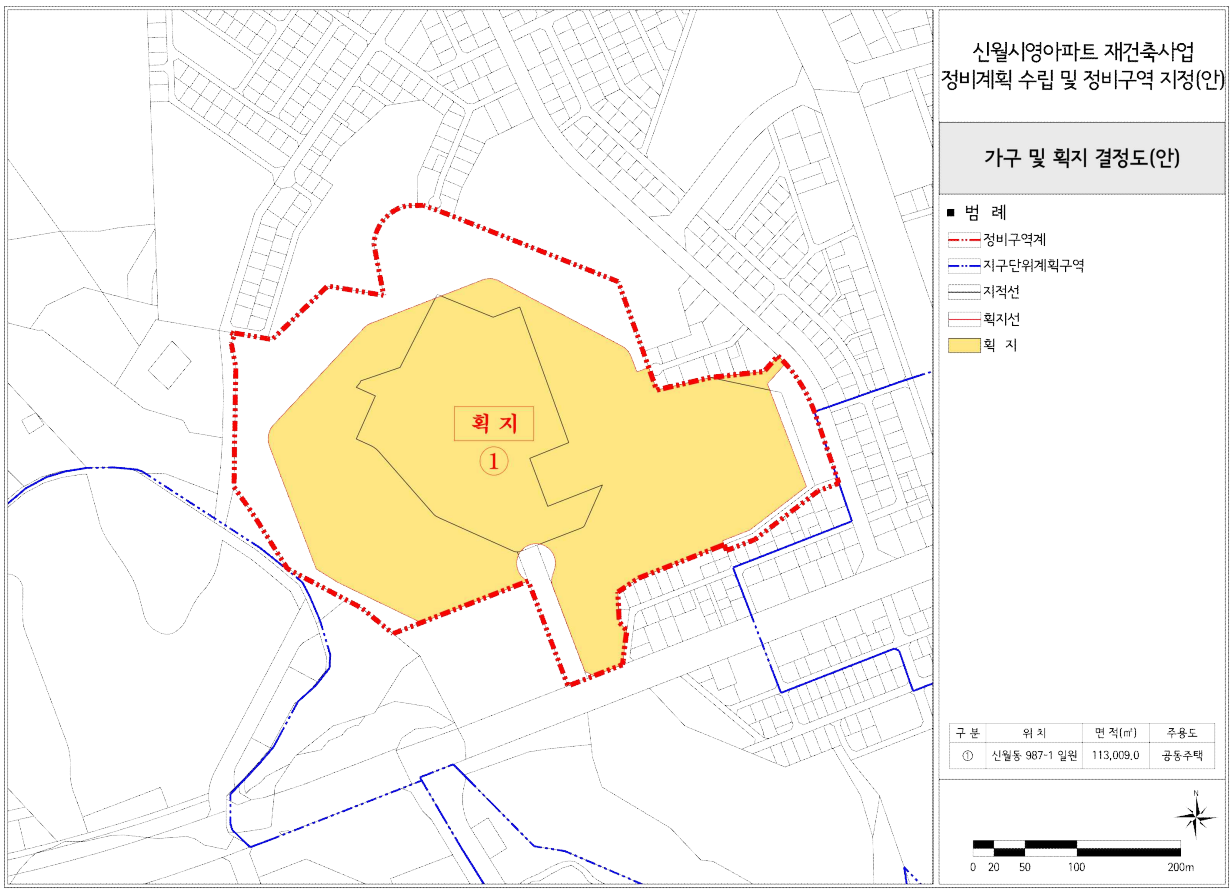
주 : 각 지점은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9.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양호한 공동주택지의 주거환경을 고려한 획지 및 가구계획 수립

구분	획 지	위치	면적(㎡)	비 고
신설	획지1	양천구 신월동 987-1번지 일원	113,009.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안)>



10. 공공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필요 시, 해당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계획기준	◦ 공공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

■ 공공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table>
<tr><td colspan="2">법적상한용적률
(건축계획)</td><td colspan="5">◦ 249.98% 이하</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td><td colspan="5">◦ 221.37% 이하</td></tr>
<tr><td rowspan="8">공공주택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산출근거</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5">◦ 249.98% - 221.37% = 28.61%</td></tr>
<tr><td>증가된 용적률의 50%</td><td colspan="5">◦ 28.61% × 50% = 14.305%</td></tr>
<tr><td>의무 연면적</td><td colspan="5">◦ 113,009.0㎡(대지면적) × 14.305% = 16,165.94㎡ 이상</td></tr>
<tr><td rowspan="6">공공주택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확보계획</td><td colspan="2">세대규모</td><td rowspan="2">세대수</td><td rowspan="2">연면적</td><td rowspan="2">비고</td></tr>
<tr><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r>
<tr><td colspan="2">합계</td><td>196</td><td>16,171.20㎡</td><td>(의무)16,165.94㎡
이상 확보</td></tr>
<tr><td>49㎡</td><td>67.70㎡</td><td>72</td><td>4,874.40㎡</td><td>획지</td></tr>
<tr><td>59㎡</td><td>81.45㎡</td><td>86</td><td>7,004.70㎡</td><td>획지</td></tr>
<tr><td>84㎡</td><td>112.95㎡</td><td>38</td><td>4,292.10㎡</td><td>획지</td></tr>
</table>

11.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3,149세대 중 조합원 및 일반분양은 2,953세대이며, 공공주택은 196세대임

구 분	세대수			구성비 (%)	비고
	총계	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	공공주택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합 계	**3,149**	**2,953**	**196**	**100.0**	-
60㎡이하	2,317	2,159	158	73.6	-
60㎡초과 ~ 85㎡이하	756	718	38	24.0	-
85㎡초과	76	76	-	2.4	-

1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개정 '22.06.10, 시행 '22.12.11)

가. 건설되는 건축물 등의 설계 개요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역면적(A)		153,213.6
정비기반시설면적(B) (기부채납)	공 원	35,754.8
	도 로	4,449.8
	주 차 장	(580.92)
	소 계	40,204.6
실사용대지면적(C=A-B)		113,009.0

2) 설계개요

구 분	내 용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규 모	지하 4층, 지상 최고 21층		
세대수	3,149세대 / 분양 : 2,953세대, 국민주택규모주택 : 196세대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면적	32,156.75㎡		
연면적	합계	지상	지하
	462,352.68㎡	284,871.43㎡	177,481.25㎡
밀도계획	건폐율 : 28.46% / 용적률 : 249.98% 이하		
주차대수	4,458대		

3) 분양설계

가) 공동주택

구분	유형	세대수	면적(㎡)			
			전유	주거공용	공급	계약
국민주택 규모주택 (공공)	49형	72	49.80	17.90	67.70	109.97
	59형	86	59.95	21.50	81.45	132.33
	84형	38	84.95	28.00	112.95	185.05
	소계	196	11,969.40	4,201.80	16,171.20	26,330.24
아파트 (분양)	49형	378	49.80	17.90	67.70	109.97
	59형	1,781	59.95	21.50	81.45	132.33
	84형	718	84.95	28.00	112.95	185.05
	108형	76	108.88	36.60	145.58	238.08
	소계	2,953	194,871.93	67,943.30	262,815.23	428,212.99
총합계		3,149	206,841.33	72,145.10	278,986.43	454,543.23

※ 상기 설계 개요는 금회 정비계획(안)에 근거하여 작성한 계획으로서,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등 이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나) 근린생활시설

구분	층	호수	면적(㎡)			
			전유	공용	지하주차장	합계(연면적)
근린생활시설	지상	미정	1,820.00	780.00	-	2,600.00
	지하	미정	1,933.20	828.50	1,862.00	5,209.45
	합계	미정	3,753.20	1,608.50	1,862.00	7,809.45

※ 종후 근린생활시설의 세부내용은 미정임

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추정분담금) 산식

1) 분담금 추산액 산식

• 분담금 추산액 = 권리자 분양가추산액 - 추산권리가액[추정비례율×개별 종전자산 추산액]

2) 추정비례율 산식

• 추정비례율 =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 총추산액-총 사업비)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추산액 × 100%

다.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추정분담금) 산출근거

1)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추산액 : 1,152,362,707천원

• 아파트는 부동산 시세조회(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2025년 06월 기준) 및 최근 1년(2024년 07월~2025년 06월) 실거래가 평균 등을 참작하여 개략적으로 추정

• 아파트外(근린생활시설 등)는 신월시영아파트 내 상가 등의 거래사례(2021년 11월 ~ 2025년 06월)를 조사한 후 위치별·층별·면적별 효용비율 등을 감안하여 개략적으로 추정

(단위 : 천원)

구분	건물면적(㎡)		세대수	일반평균시세(2025년 06월)		종전자산 (세대평균)	종전자산추산액
	공급	전용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55.42	43.2	792	455,000	455,000	460,000	364,320,000
	65.00	50.67	938	530,000	540,000	530,000	497,140,000
	76.31	59.49	526	625,000	620,000	610,000	320,860,000
	합 계		2,256				1,182,320,000
아파트外	층	연면적(㎡)	호수				종전자산총액
	지하	970.95					4,888,615
	지상	2,778.95					24,270,092
	상가 등 소계		44				29,158,707
종전자산 총계			**2,299**				**1,211,478,707**

• 현금청산자(5% 가정)를 제외한 분양대상자(2,143세대)의 종전자산 가액을 추정

(단위 : 천원)

현금청산자(5% 가정)를 제외한 분양대상자의 종전자산 가액	1,152,362,707

※ 상기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추산액은 개략적으로 추산한 금액이며,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될 예정임.

2)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종후자산) 총추산액 : 2,549,133,254천원

가) 종후 아파트

- 일반분양가 - 인근 신축아파트 시세수준, 실거래가 등을 감안하여 일반분양가 평균단가를 36,000천원/3.3㎡로 추정하며, 주택형별 격차율은 인근 신축아파트 주택형별 격차율 참작하여 적용
- 조합원분양가 - 주택형별 일반시세의 82%를 조합원분양가로 적용

(단위 : 천원)

주택형	일반분양(일반시세)				조합원분양			
	세대수	단가/공급3.3㎡	세대분양가	분양수입	세대수	단가/공급3.3㎡	세대분양가	분양수입
49	114	37,500	768,000	87,552,000	264	30,800	629,760	166,256,640
59	478	36,900	908,000	434,024,000	1303	30,200	744,560	970,161,680
84	203	34,600	1,181,000	239,743,000	515	28,300	968,420	498,736,300
108	15	32,700	1,439,000	21,585,000	61	26,800	1,179,980	71,978,780
소계	810	36,000		782,904,000	2,143	29,500		1,707,133,400

- 국민주택규모주택 매각수입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4호)로 추정

(단위 : 천원)

주택형	세대수	평균면적 / 세대 (㎡)		세대당 예상가격				예상 매각수입
		공급	지하	지상	지하	샷시부분	소계	
49	72	67.70	42.27	79,466	31,258	2,923	113,647	8,183,000
59	86	81.45	50.88	92,788	36,516	3,415	132,719	11,414,000
84	38	112.95	72.10	128,582	51,710	4,835	185,127	7,035,000
소계	196							26,632,000

- 종후 아파트 소계 : 2,516,669,400천원 (= 782,904,000+1,707,133,400+26,632,000)

나) 종후 근린생활시설 등

- 인근지역 신축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시세 등을 감안하여 개략적으로 추정

(단위 : 천원)

구분	건물면적 (㎡)				예상분양수입 (천원)
	전유	공용	기타공용+지하주차장	합계(연면적)	
지상층	2,355.50	1,009.50	35.00	3,400.00	22,001,376
지하층	1,933.20	828.50	2,447.75	5,209.45	10,462,478
소계	4,288.7	1,838	2,482.75	8,609.45	32,463,854

다) 종후자산 총계

(단위 : 천원)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	총 계
2,516,669,400	**32,463,854**	**2,549,133,254**

※ 상기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종후자산) 추산액은 개략적으로 추산한 금액이며, 향후 종후자산은 조합원분양신청만료일을 기준으로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될 예정임.

3) 총 사업비 추산액 : 1,356,280,865천원

(단위 : 천원)

항 목	금 액(천원)	포함 내용
공사비	979,031,800	건축공사비(7,000천원/3.3㎡)
보상비	85,027,600	토지매입, 공원이전비용, 현금청산 등
관리비	5,749,135	추진위운영, 조합운영, 각종소송, 회계감사비 등
설계감리비	41,958,506	설계, 감리비 등
외주용역비	64,210,926	정비사업전문관리, 감정평가, 신탁수수료 등
각종분담금	12,795,135	광역교통시설, 학교용지,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부담금 등
제세공과금	30,482,085	보존등기, 채권매입, 법인세 등
예비비	63,870,367	5.0% 적용
항목별 사업비계	**1,283,125,554**	
대여금이자	73,155,311	연5.00%, 48개월 대여 기간 추정
중도금이자	-	개별부담으로 사업비에서 제외
이주비이자	-	개별부담으로 사업비에서 제외
총합계	**1,356,280,865**	
원/㎡	2,933,000	
원/3.3㎡	9,697,000	

※ 상기 추산액은 금회 정비계획(안)과 개략적인 설계 개요에 기반하여 개략적으로 추산한 사업비로서 향후 물가상승률, 시공사와의 공사비 계약내용, 사업진행속도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관련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하여 단계별로 고지될 예정임

라.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1) 추정비례율 및 토지등소유자별 추정권리가액

- 비례율 =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 총추산액-총 사업비)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추산액 × 100%
  = (2,549,133,254천원 - 1,356,280,865천원)÷ 1,152,362,707천원 × 100%
  ≒ 103.51%
- 토지등소유자별 추정권리가액 = 종전자산 추산액 × 추정비례율(103.51%)

2) 분담금 추산액 예시

(단위 : 천원)

전용면적(㎡)	예상평균 종전자산	추정권리가액		예상분양가		분담금 추산액	
		비례율	권리가액	주택형	분양가	분담금 추산액	구분
43.20	460,000	103.51%	476,146	49	629,760	153,614	추가분담
				59	744,560	268,414	추가분담
				84	968,420	492,274	추가분담
				108	1,179,980	703,834	추가분담
50.67	530,000	103.51%	548,603	49	629,760	81,157	추가분담
				59	744,560	195,957	추가분담
				84	968,420	419,817	추가분담
				108	1,179,980	631,377	추가분담
59.49	610,000	103.51%	631,411	49	629,760	(-)1,651	환급
				59	744,560	113,149	추가분담
				84	968,420	337,009	추가분담
				108	1,179,980	548,569	추가분담

(단위 : 천원)

전용면적(㎡)		예상평균 종전자산	추정권리가액		총 예상분양가		분담금 추산액	
			비례율	권리가액	층수	분양가	분담금 추산액	구분
아파트	지하	4,888,615	103.51%	5,060,205	지하	10,462,478	5,402,273	추가분담
外	지상	24,270,092		25,121,972	지상	22,001,376	(-)3,120,596	환급

※ 상기 분담금 추산액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라 작성시점 현재의 정비계획(안)과 설계 개요를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개략적으로 추산한 예시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분담금은 향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통하여 확정됨.

※ 상기 분담금 추산액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물가상승률, 시공사와의 공사비 계약내용, 사업진행속도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은 관련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하여 단계별로 고지 예정임

※ 상기 조합원 및 일반분양 세대수에 따른 분양수입은 현재 주택형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을 감안하여 임의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향후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가액은 소수점 또는 단위 절사 등으로 제곱미터 또는 평당 단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 경관성 검토서

목 차

1 검토의 개요

1. 검토의 목적 ····· 3
2. 검토의 범위 ····· 3

2 현황 및 상위계획검토

1. 지역현황 ····· 4
2.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 5
3. 관련 법규 검토 ····· 8

3 경관 현황 검토

1. 대상지 경관현황 ····· 10

4 경관 계획 검토

1. 토지이용계획 ····· 12
2. 건축물계획 ····· 13
3. 녹지계획 ····· 17
4. 스카이라인 계획 ····· 18

5 조망분석

1. 조망분석의 전제 ····· 19
2. 조망점 선정 ····· 20
3. 경관시뮬레이션 ····· 21

1 검토의 개요

1. 검토의 목적

가. 경관현황 조사 분석

- 사업지구형성으로 인한 영향이 예측되는 주변 지역의 경관자원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한 특성파악

나. 경관변화 및 영향검토

- 사업지구개발로 인한 주변지역 경관변화 및 영향정도 파악 및 경관영향예측을 통한 저감방안 모색
- 사업지구 개발 시 요소별 경관 기본계획수립을 통한 바람직한 경관 창출 유도와 개발로 인한 경관 악영향 최소화를 통한 쾌적한 경관 형성

2. 검토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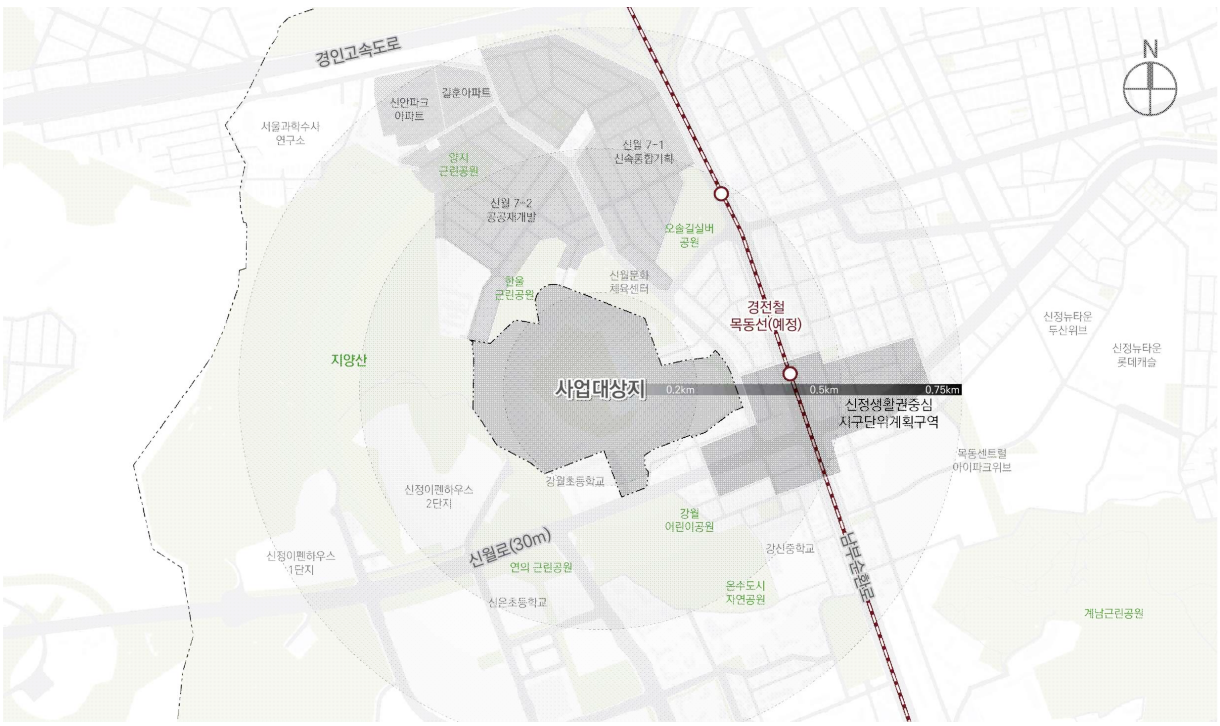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87-1번지 일원
- 면　　적 : 153,213.6㎡

나. 내용적 범위

- 사업지구와 주변지역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과 그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 관련계획검토, 경관현황분석, 경관계획, 조망분석, 경관시뮬레이션

< 위치도 >



2 현황 및 상위계획 검토

1. 지역현황



- 양천구는 한반도 중서부에 있는 서울시 서남부에 위치
- 동측 영등포구, 서측 경기도 부천시, 남측 구로구, 북측 강서구와 접하고 있음
- 면적은 17.41㎢로 서울시 면적의 2.87%를 차지함
- 전체면적 중 주거지역이 70%를 차지하며, 전체주택 중 44%가 아파트로 되어있는 전형적인 아파트 주거지역
- 2호선, 5호선, 9호선에 둘러싸여 있으며, 경인고속도로의 종점과 연결되는 신월나들목이 위치하여 외부에서의 접근성이 뛰어남

< 양천구 상징이미지 >

<table>
<tr><td></td><td></td><td></td></tr>
<tr><td>구조 - 꿩</td><td>구화 - 해바라기</td><td>구목 - 감나무</td></tr>
<tr><td colspan="2">살고싶은 도시 살기좋은 양천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 행복한 교육도시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고, 언제나 머무르고 싶은 양천을 표현</td><td colspan="2">중앙의 동그란 모양은 해(陽)을 나타내며, 이를 둘러싼 3선은 미래지향적인 발전상을 형상화하였고 물결무늬 모양은 냇물(川)을 뜻하며 생동감이 넘치는 구의 모습을 표현</td></tr>
<tr><td colspan="2">브랜드슬로건 및 캐치프레이즈</td><td colspan="2">양천구 휘장</td></tr>
</table>

2.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가. 204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1) 계획목표

• 미래상 :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

2) 핵심이슈별 목표

핵심이슈	목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삶의 질"	1. 걸어서 누리는 다양한 일상, '보행일상권 조성' 2. 수변 공간의 잠재력 발굴, '수변 중심 공간 재편' 3. 새로운 도시공간의 창출, '기반시설 입체화'
서울의 성장 견인 "도시 경쟁력"	4. 미래성장거점 육성 및 연계, '중심지 기능 혁신' 5. 기술발전에 선제적 대응,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
대 전환시대 미래서울의 "가치와 방향"	6. 미래위기를 준비하는, '탄소중립 안전도시 구축' 7. 도시의 다양한 모습 구현, '도시계획 대전환'

3) 공간구조계획

•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 중심지 체계 유지 및 중심지 기능 고도화

• 중심지 체계와 광역교통망·대중교통체계·수변·산업거점 연계로 중심지 기능 고도화 지원

• 도시계획체계 유연화로 다기능 복합용도 유도

•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심지 육성 및 관리 방안 마련

4) 생활권계획

• 생활권의 공간범위는 도심, 동북, 서북, 서남, 동남생활권 등 5개 권역(대생활권)으로 구분하며 대상지는 서남권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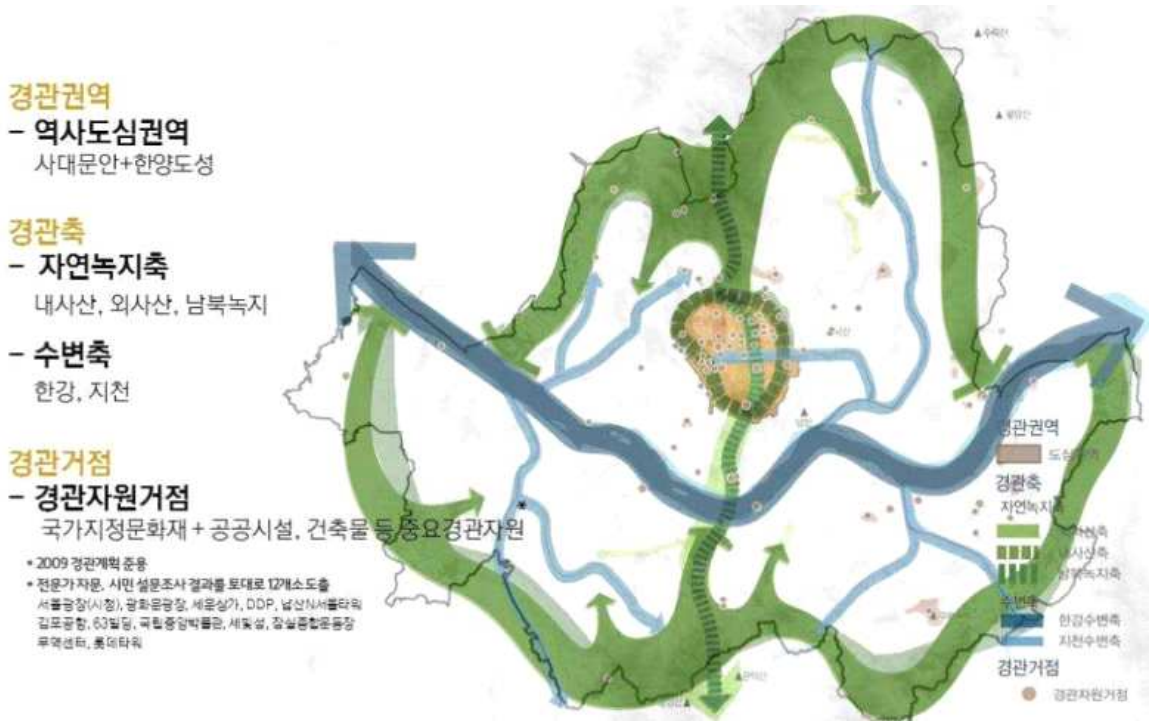
서남권 발전방향	"교육·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신산업 기반 혁신"
도시공간	◦ 여의도·영등포 도심,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적 공간구조 구축 ◦ 가산대림 광역중심, 대규모 가용지를 활용한 혁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 ◦ 마곡 광역중심, 인접 지역과 연계한 지식기반산업 거점으로 육성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중심별 특화 육성 계획 수립 ◦ 역세권 중심지의 일자리·복합 기능 강화 및 관리방안 마련
주거환경	◦ 노후 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 지원 강화 ◦ G밸리 연계 직주근접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편익시설 및 다양한 주택유형 공급
기반시설	◦ 지역 내 단절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추진 ◦ 권역 내 교통체계 개선과 연결성 강화 ◦ 도심첨단물류단지 중심의 서남권 생활물류체계 구축
공원녹지	◦ 수경축 및 남북녹지축 연계와 공원·녹지 및 수변공간 접근성 강화
지역특화	◦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공간 육성으로 권역 경쟁력 강화 ◦ 권역 내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문화축 육성

나.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1) 경관미래상



2) 경관구조 설정



3) 경관구조별 기본 구상

경 관 구 조	기 본 구 상
역사도심권역	◦ 한양도성 및 문화재 주변 역사경관특성 관리 ◦ 주요 업무상업지, 청계천변 가로공간 활력 제고 ◦ 내사산 주변 저층주거지 자연경관특성 관리 및 조망보호
자연녹지축	◦ 구릉지의 자연성 및 경관특성 유지 ◦ 내·외사산 등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시가지 녹지네트워크 구축 ◦ 하천 및 시가지에서 배후산 조망확보
수변축	◦ 수변 자연성 보호 및 연접지역 경관자원과 연계관리 ◦ 수변 경관특성과 조화로운 주변지역 개발 관리 ◦ 수변의 열린조망경관 형성 및 배후산 조망확보
경관자원거점	◦ 문화재 및 문화적 보존가치 밀집지역의 역사성 유지관리 ◦ 중요경관자원의 상징성 유지를 위한 주변지역 경관관리

< 자연녹지축-외사산축 >



3. 관련 법규 검토

가. 경관법(2019.3.14.)

• 경관법은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 경관법 주요 내용 >

장	구분	조항	주요내용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다른 법과의 관계	◦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 확보
제2장	경관계획	◦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 경관계획의 내용 ◦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경관계획의 수립절차 ◦ 경관계획의 승인 ◦ 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 경관계획의 정비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의 수립
제3장	경관사업	◦ 경관사업의 대상 등 ◦ 경관사업추진협의체 ◦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 경관조성을 위한 경관사업의 시행
제4장	경관협정	◦ 경관협정의 체결 ◦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준수 및 승계·지원	◦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 협정제도의 도입
제5장	경관심의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 건축물의 경관 심의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심의
제6장	경관위원회	◦ 경관위원회의 설치 ◦ 경관위원회의 기능 ◦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심의 및 자문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4.8.7.)

• 국토의 이용 및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 관련 내용 >

구분	법률	시행령
광역도시계획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제12조-①-4)	-
도시·군기본계획	경관에 관한 사항 (제19조-①-8)	◦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음 (제16조-8)
도시·군관리계획	경관지구 지정 (제37조-①-1)	◦ 경관지구의 지정 (자연·시가지·특화)(제31조-②-1) ◦ 자연, 시가지, 특화 이외에 추가적으로 세분 (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음(제31조-③)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경관계획 내용 (제52조-①-6)	-
개발행위 허가관련	개발행위허가 제한 (제63조-①-2)	◦ 도시경관계획수립 (도시지역) ◦ 일반경관지구 (경관지구 행위제한 -용도, 건폐율, 높이,규모제한) ◦ 경관지구계획수립 (경관지구)

라.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2024.5.20.)

•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경관 관련 내용 >

조	구분	주요내용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서울 한양도성축·수변축·자연녹지축 경관관리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경관가이드라인 운용 등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1. 도시경관 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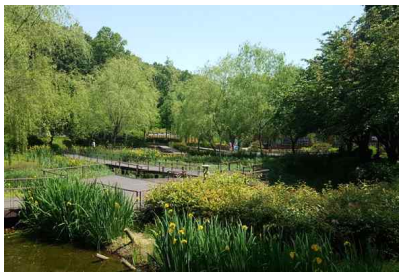
3 경관 현황 검토

1. 대상지 경관현황

가. 자연경관 현황

- 대상지 서측으로 지양산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주변으로 작동산, 신월산 등 녹지자원이 풍부
- 또한, 대상지 주변으로 오솔길 실버공원, 온수도시자연공원, 한울근린공원 등 다수 공원이 분포하여 녹지공간과의 접근성이 높음

< 자연경관 현황사진 >

		
지양산	오솔길실버공원	온수도시자연공원

나. 인문경관 현황

- 대상지 주변으로 강월초등학교를 비롯한 양천중, 신은초 등 다수의 교육시설이 인접함
- 대상지 북측으로 신월7-1, 7-2, 길훈아파트 등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
- 또한, 동측으로 남부순환로가 위치하고, 향후 경전철(목동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이 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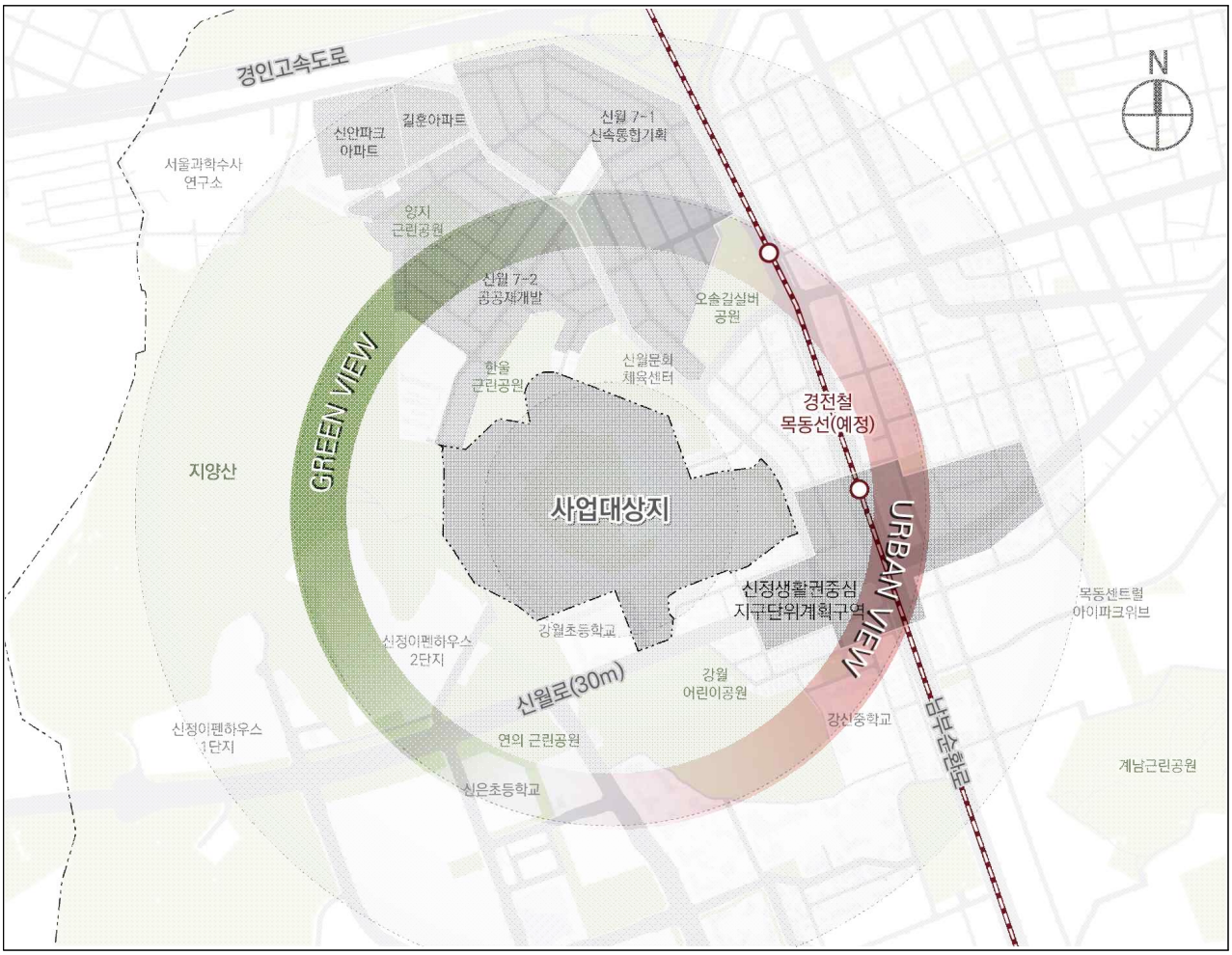
< 인문경관 현황사진 >

		
강월초	개발예정지(신월7-1)	남부순환로-신월로 교차로

2. 경관현황 종합분석

- 대상지 서측에 위치한 지양산을 비롯하여, 주변으로 오솔길 실버공원, 온수도시자연공원 등 다수의 자연녹지공간이 인접하므로, 주변 녹지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고려한 가로경관 조성
- 대상지는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개통예정인 경전철(목동선) 역과 인접하므로 향후 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경관축·경관거점 설정
- 또한, 북측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므로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배치·규모, 및 스카이라인 등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계획 마련

<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



4 경관계획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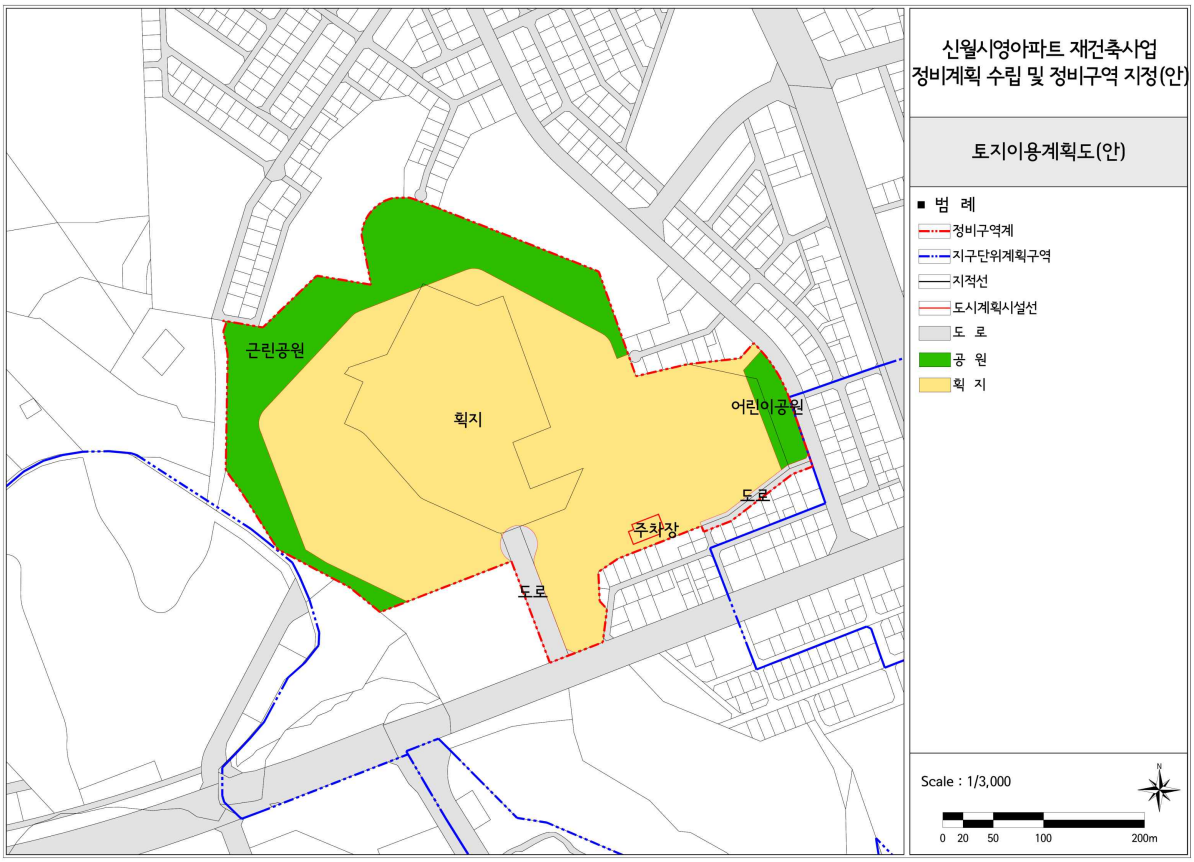
1. 토지이용계획

- 주변지역의 현황을 고려하여 주변환경 및 지형에 조화되는 계획 수립
-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적정밀도를 유지하며 효율적·경제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계획구역 내·외 경관 및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수립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53,213.6	100.0	
정비기반시설	소계	40,204.6	26.2	
	도로	4,449.8	2.9	
	근린공원	32,376.0	21.1	
	어린이공원	3,378.8	2.2	
	주차장	(580.92)	(0.4)	획지 내 입체적 결정
획지		113,009.0	73.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토지이용계획도 >



2. 건축물계획

가. 기본방향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주거경관 형성 유도
- 주변지역 건축물 배치, 형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시기반시설 용량에 부합되는 밀도 설정
- 도시전체의 이미지 확보 측면을 감안, 식별성 확보가 가능한 밀도계획 수립

나. 건폐율 및 용적률 계획

- 건축물의 용도계획에 부합되는 건폐율을 적용하되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개방감 및 리듬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인동간격, 전면 건축선 후퇴, 조경확보면적의 기준, 옥외주차장의 확보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주변지역 개발현황 및 계획구역의 입지적 특성과 도시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보다 쾌적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주용도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28.46%	249.98%

다. 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

- 구역 내의 중심성 및 양호한 도시경관 확보를 위한 적정 높이 설정
- 높이계획은 당해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획
- 건축물의 높이는 계획구역 및 주변의 안정적인 도시 스카이라인 유지와 다양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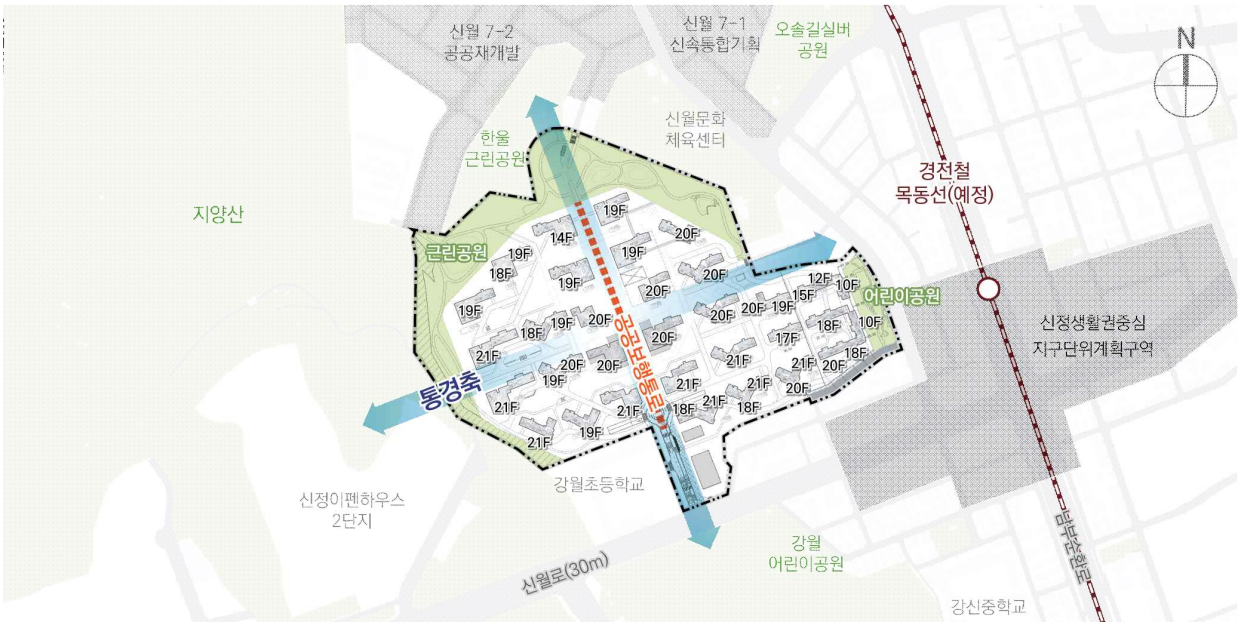
구분	최저층수	최고층수	비고
공동주택	10층	21층	-

라. 건축물 배치 및 형태

1) 공동주택 건축물 배치계획

- 경계부 중,저층 주동배치를 통해 인접 경관자원으로의 조망권을 보전하고 단지 내 중심부 고층 주동배치를 통해 상징성 및 인지성 제고
- 시각통로를 확보하는 주동배치를 통해 차폐감 최소화
- 인접개발단지와의 보행연계 및 안전한 보행가로경관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배치계획
- 사업대상지의 위치 및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지 인접 도로 주변 오픈스페이스 조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보행자 및 이용객의 접근성 고려

< 공동주택 배치계획 >



2) 공동주택 건축물 입면 및 형태계획

- 획일적인 주거동의 외관디자인을 지양하고, 다양하고 조화로운 형태미를 담기 위해 입면분할 계획
- 건축물 입면은 다양한 모듈 및 수직·수평적 분절요소를 통해 시각적 위압감 완화
- 건축물 상층부는 주동과 시각적 연속성을 이루며 투명한 소재사용을 통해 시각적 위압감완화 및 원경에서의 인지성 및 상징성 제고
- 옥상에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공동주택 입면 및 형태계획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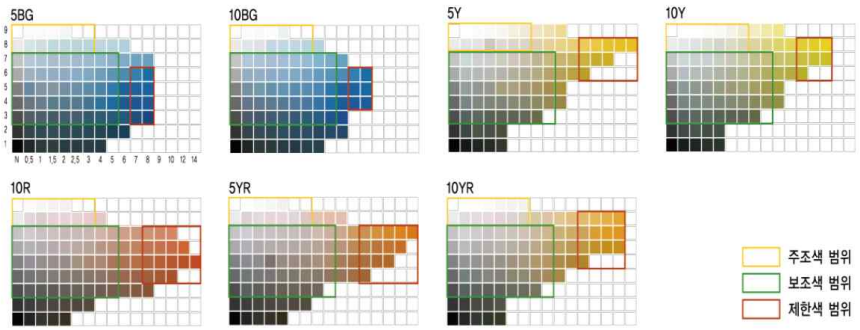


3) 색채계획

- 서울시 색채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역이미지와 어우러진 색채계획 수립
- 원경에서는 대상지 전체의 색상이 일관성있게 보여야하고, 중경에서는 인접 건축물 혹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근경에서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색채계획이 되어야함
- 녹지 및 주거지 등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되도록 내추럴하고 점잖은 이미지의 색채 적용

< 자연녹지경관 권장색채 사용 범위 >

※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2008.05)에 준하여 작성

구분	적용
색채적용 기본방향	◦ 수려한 자연녹지 경관특성을 보존하고 향유할 수 있는 친환경도시 ◦ Neutral계열 색채를 적용하여 자연경관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색채이미지 지향
권장재료	◦ 자연소재의 외장재, 석재, 목재, 유리 사용 ◦ 광택이 있는 소재 사용을 제한(스틸 등)
권장배색	◦ 동일조화, 유사조화, 무채색 조화
권장색채 사용범위	◦ 주조색 – 명도 8이상, 채도 4이하의 10R~10Y계열, 5BG~10BG계열 ◦ 보조색 – 명도3~8 채도 4이하의 10R~10Y계열, 5BG~10BG계열 ◦ 강조색 – 원색제한 

< 색채계획 예시 >



4) 야간경관계획

-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눈부심 없이 기준에 맞는 조· 휘도를 확보하고 서울시의 이미지와 특성에 맞는 야간환경을 조성함
- 건축물 전체가 인식이 가능하도록 원경에서는 실내조명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외형과 구조 및 높이를 강조한 야간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계획함
- 가로등 및 볼라드, 수목등, 저층부 측벽조명등 건축물과 가로시설물을 이용한 안전한 야간보행환경 계획수립

< 빛 방사 허용기준 >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빛방사 허용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

구분	적용 시간	기준값	조명환경 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준공업	상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 이하		15 이하	20 이하	25 이하	cd/㎡
		최대값	20 이하	60 이하	180 이하	240 이하	300 이하	

< 오픈스페이스 조명기준 >

※ KS조도기준(KS A 3011)에 준하여 작성

구분	장소	권장조도(lx) 최저-표준-최고
건물	입구	30-40-60
	통로	30-40-60
공원	전반	6-10-15
	주된장소	15-20-30
정원	길, 집 밖, 층계	6-10-15
	강조한 나무, 꽃밭, 석조공원	30-40-60
	배경-관목, 나무, 담장, 벽	15-20-35
	전반조명	3-4-6

< 야간경관계획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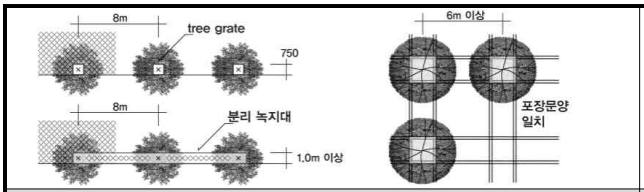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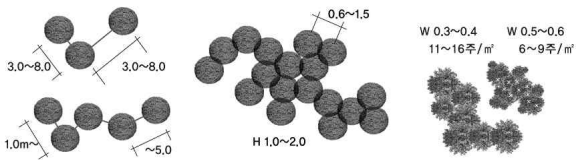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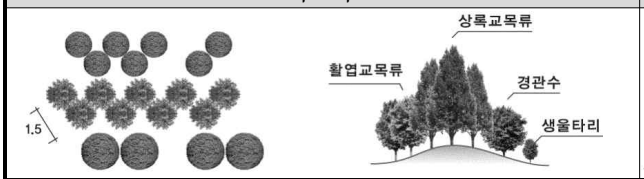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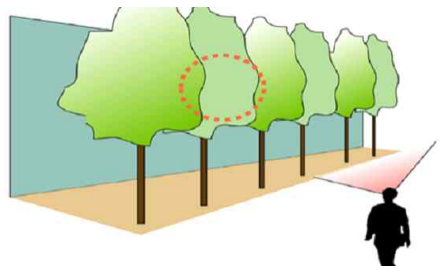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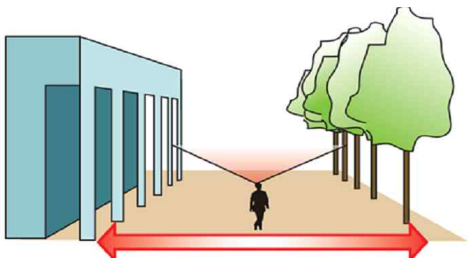
3. 녹지계획

가. 녹지계획

- 기존 해당부지의 자연환경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개발로 경관이 훼손된 곳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부지 조성 시 발생되는 절토사면은 비탈면 기울기 등에 따라 녹화공법을 선정하거나 조경식재를 계획하여 자연에 가까운 경관을 조성하도록 함
- 도로변 등에 녹지를 계획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며 친환경적인 경관을 조성하도록 함

나. 조경계획

- 가로경관에서 이용자들이 시간대별, 계절별, 공간별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수종 선정 및 조경식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기존 해당부지의 자연환경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개발로 경관이 훼손된 곳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경계획을 수립함
- 단지 경계부를 따라 관목과 교목계획을 수립, 차폐기능 및 인공감 완화 기능을 적용하여 주변 보·차도 이용자들에게 위압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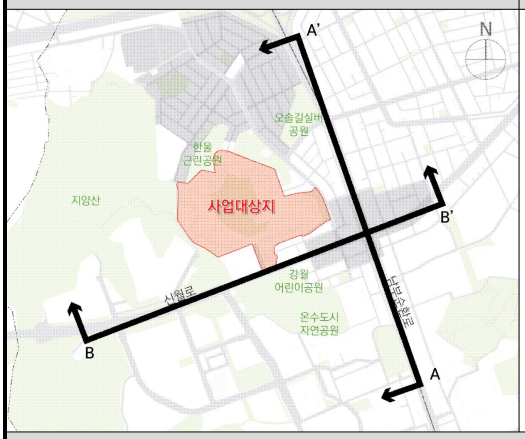
<table>
<tr><td>
</td><td>
</td></tr>
<tr><td>가로수</td><td>경관식재</td></tr>
<tr><td>
</td><td>
</td></tr>
<tr><td>차폐식재</td><td>지표식재</td></tr>
<tr><td></td><td></td></tr>
<tr><td>가로녹시율 증가로 근경의 위압감 완화</td><td>폭넓은 보도 확보로 건축물의 위압감 완화</td></tr>
<tr><td>•녹시율 확보 및 건축물 차폐기능을 유도하여 고층건축물의 위압감을 보행자 시점에서 차단
•가로환경개선 및 경관 완충의 역할 기대</td><td>•건축물 이격 배치하여 시야의 확보 및 보행자 시점에서의 위압감 완화
•환경적 측면에서는 가로환경이 개선되어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가능</td></tr>
</table>

4. 스카이라인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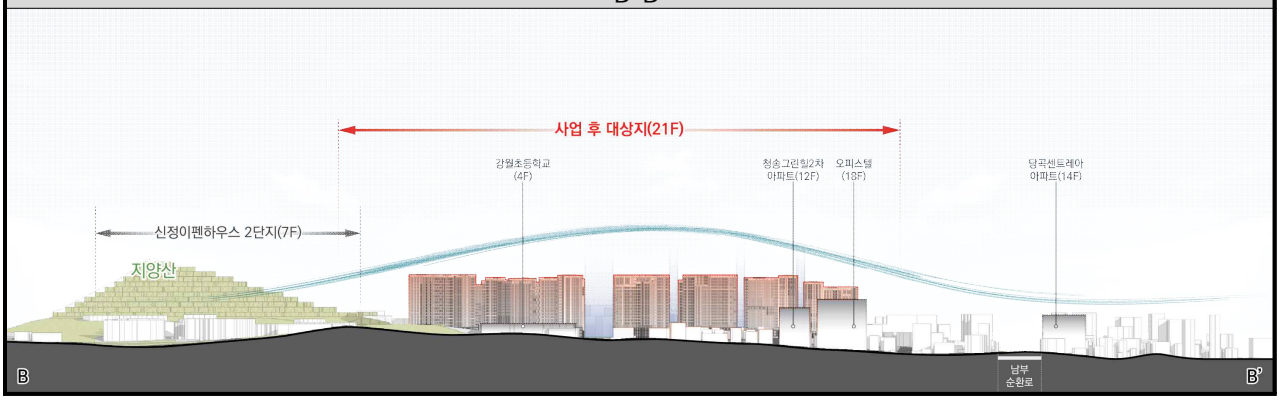
가. 기본방향

-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한 높이 및 규모계획을 통해 주변과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다양한 높낮이의 층수계획을 통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나. 스카이라인 검토

<table>
<tr><th>KEYMAP</th><th>분석내용</th></tr>
<tr><td>
</td><td>◦ A-A’ | 고도제한으로 인해 단지 내 다소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 인접 건축물 및 배후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도시 스카이라인 계획

◦ B-B’ | 인접 건축물과의 비슷한 규모 계획으로 조화로운 도시스카이라인 형성</td></tr>
<tr><td colspan="2">A-A’

</td></tr>
<tr><td colspan="2">B-B’

</td></tr>
</table>

5 조망분석

1. 조망분석의 전제

가. 조망의 개념

• 관찰자가 존재하고 있는 시점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공간의 크기를 가늠할 때 시거리 지표를 활용하며, 관찰자 앞에 배열되어있는 대상의 시각적 크기에 의하여 그 공간의 규모를 파악

구분	개 념
근 경	◦ 대상지 경계에서 조망점까지의 거리가 100m 이내에 위치한 간선도로 및 교차로 등 주요가로에서 조망
중 경	◦ 대상지 경계에서 조망점까지의 거리가 100~300m에 위치한 공원, 광장, 주요 시설 등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지점에서 조망
원 경	◦ 대상지 경계에서 조망점까지의 거리가 300m 이상 되는 위치의 전망대 등에서 조망

나. 조망의 구성요소

• 일정한 지점(조망지점)에서 가시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각적 요소를 조망자원이라고 하며, 조망자원 중 일정한 기준에 의해 조망될 가치가 있는 조망요소로 분류된 것을 조망대상이라 함

• 조망점(view point)은 사람들이 모이는 주된 장소와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보는 이동 동선상의 한 장소를 기준으로 함

• 장소로서의 조망점(주요시설지 조망점) : 일상생활에서 시선이 모이는 장소인 역전, 상점가, 공원, 광장 중에서 조망이 양호한 지점

• 이동 동선상의 조망점(가로 조망점) :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 통근 및 통학로 등 이동상에 보이는 조망이 중시되는 곳으로 설정

다. 조망권역에 따른 평가내용

구분	평 가 내 용	평 가 기 준
근경	가로경관의 쾌적성 확보	◦ 가로경관의 연속성과 쾌적성, 편의성 여부 ◦ 보행자의 심리적 안정성
	인접 건축물과의 영향을 고려한 공간적 질 향상	◦ 주변 인공구조물과의 통일성과 조화성 여부 ◦ 대상지 건축물의 디테일에 대한 심미성과 통일성, 조화성여부
중경	지역주민의 조망권확보	◦ 전망, 통경, 차경 등의 다양한 조망형태 확보 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 대상지의 용도별 개발유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의 적절성 여부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경관변화에의 대응	◦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과업대상지의 장소성
원경	지역경관의 수준 향상	◦ 지역경관의 정체성을 고려한 랜드마크 조성의 필요성 ◦ 지역경관 내에서 과업대상지의 인지성
	도시스카이라인 보존	◦ 도시스카이라인의 저해성 여부

2. 조망점 선정

가. 조망점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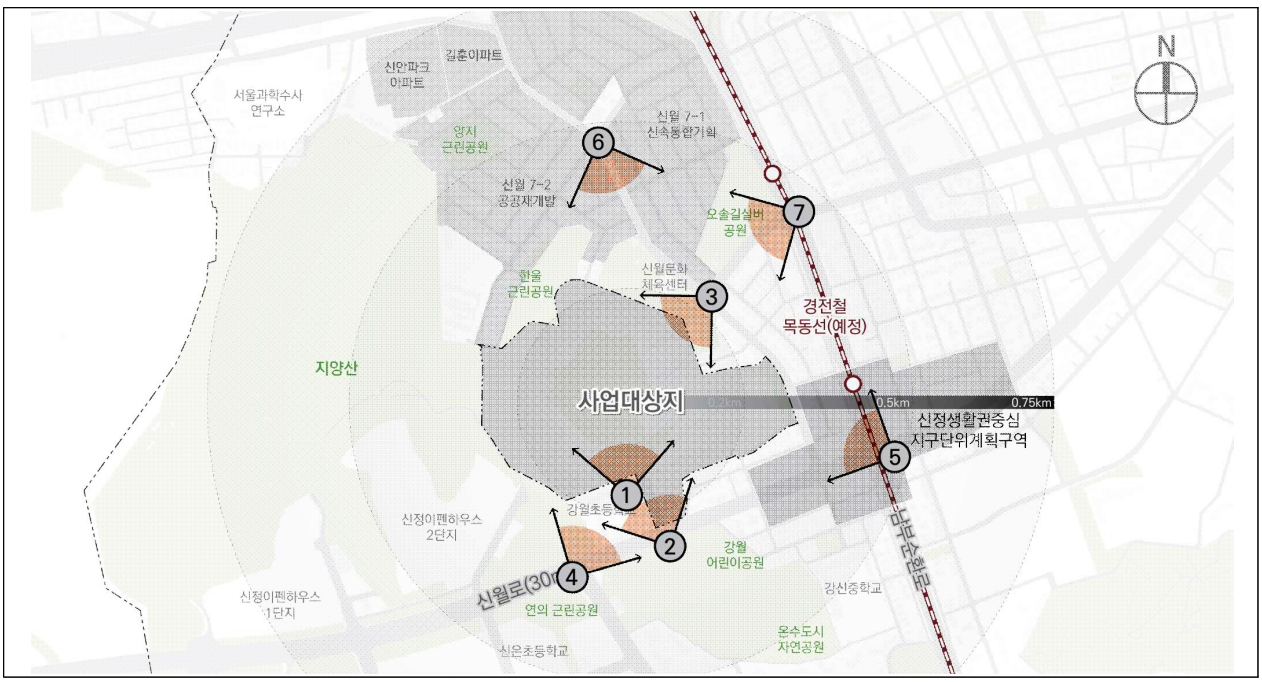
- 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현장 확인을 통하여 주요 조망점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 후 근경, 중경, 원경으로 구분하여 조망점을 선정함
- 경관변화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는 기준이 되는 조망점 선정을 위하여 조사된 경관자원의 분포특성과 경관적 가치, 거리, 조망방향 등을 판단하여 조망점을 선정
- 지명도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나 공원, 문화 공간 등 오픈스페이스가 조성된 장소, 대상지 주변지역을 통과하는 주요도로와 주요시설을 중심으로 선정
- 특별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나 가장 좋은 조망기회를 제공하는 장소 위주로 선정
- 대상지의 분위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가 확보되어 있는 장소로 선정

나. 조망점 선정 및 위치도

*거리 기준은 조망점 인접 사업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설정

구분	조망점	거리	위치	비고
근경	1	남측 약 30m	강월초등학교	
	2	남측 약 40m	신월로	
중경	3	북동측 약 100m	오솔길 실버공원	
	4	남측 약 150m	연의 근린공원 앞	
	5	동남측 약 200m	강월초교입구 사거리	
원경	6	북측 약 300m	우성상가	
	7	북동측 약 320m	과학수사연구원입구 사거리	

< 조망점 위치도 >



3. 경관시뮬레이션

가. 경관시뮬레이션-근경

<table>
<tr><th>KEYMAP</th><th>조망점 1</th><th>강월초등학교</th></tr>
<tr><td rowspan="2">
</td><td>가시거리</td><td>남측 약 30m 지점</td></tr>
<tr><td>분석내용</td><td>대상지 주요 거점에서 바라본 조망으로 강월초등학교 배후로 대상지 전체가 조망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첩경관을 형성하여 입면분절 및 색채계획, 투시형과 다채로운 재료 사용을 통한 시각적 위압감 및 차폐감 완화 유도</td></tr>
<tr><td colspan="3">사업전</td></tr>
<tr><td colspan="3">
</td></tr>
<tr><td colspan="3">사업후</td></tr>
<tr><td colspan="3">
</td></tr>
</table>

KEYMAP	조망점 2	신월로
	가시거리	남측 약 40m 지점
	분석내용	대상지 주요 진입로에서 바라본 조망으로 전반적인 형태 및 규모가 조망될 것으로 예상됨 중·상층부의 입면분절 및 색채계획을 통하여 보행자의 시각적 위압감 및 차폐감 완화 유도와 저층부 열린경관계획을 통한 안전한 보행로 조성 권장

사업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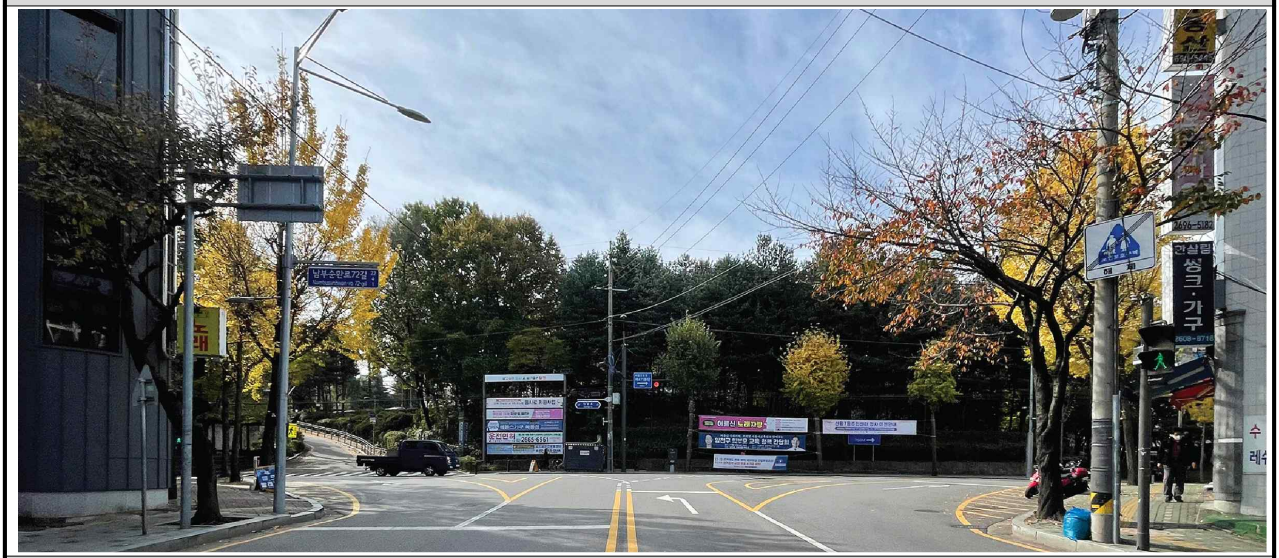
사업후



나. 경관시뮬레이션-중경

KEYMAP	조망점 3	오솔길 실버공원
	가시거리	북동측 약 100m 지점
	분석내용	인접 공원에 의해 저층부가 차폐되며, 중·상층부의 입면이 전반적으로 보여져 경관적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됨 비슷한 규모의 계획으로 인한 단조로운 기존 경관을 색채 및 입면특화계획을 통한 다채로운 경관형성 유도

사업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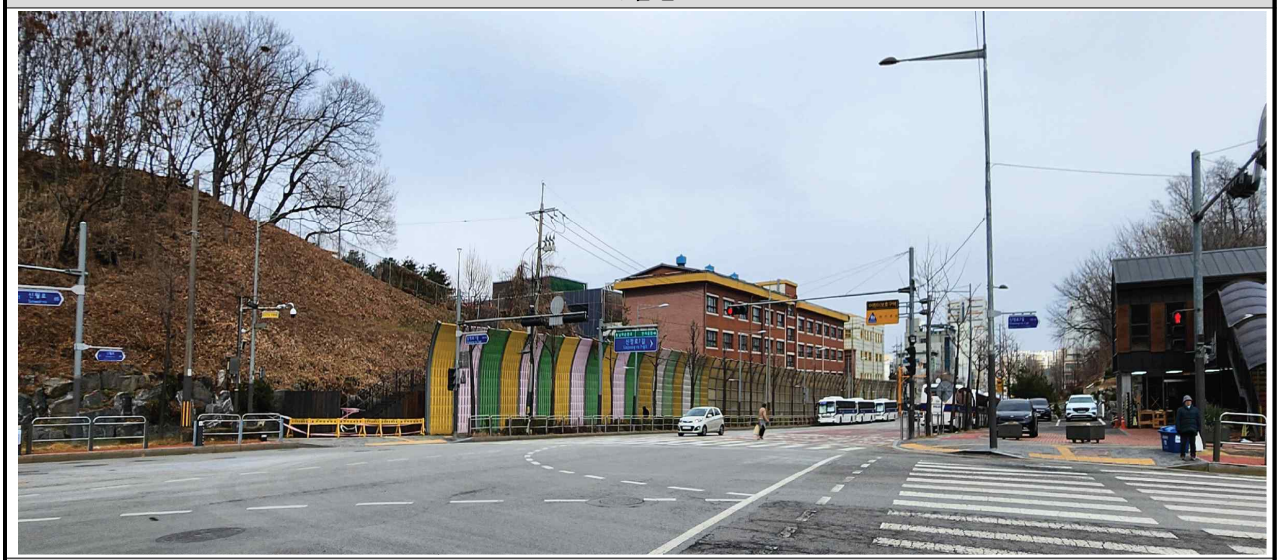


사업후



KEYMAP	조망점 4	연의 근린공원 앞
	가시거리	남측 약 150m 지점
	분석내용	연의 근린공원 앞에서 바라본 조망으로 신월로를 따라 강월초등학교 배후로 대상지 일부가 조망되며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사업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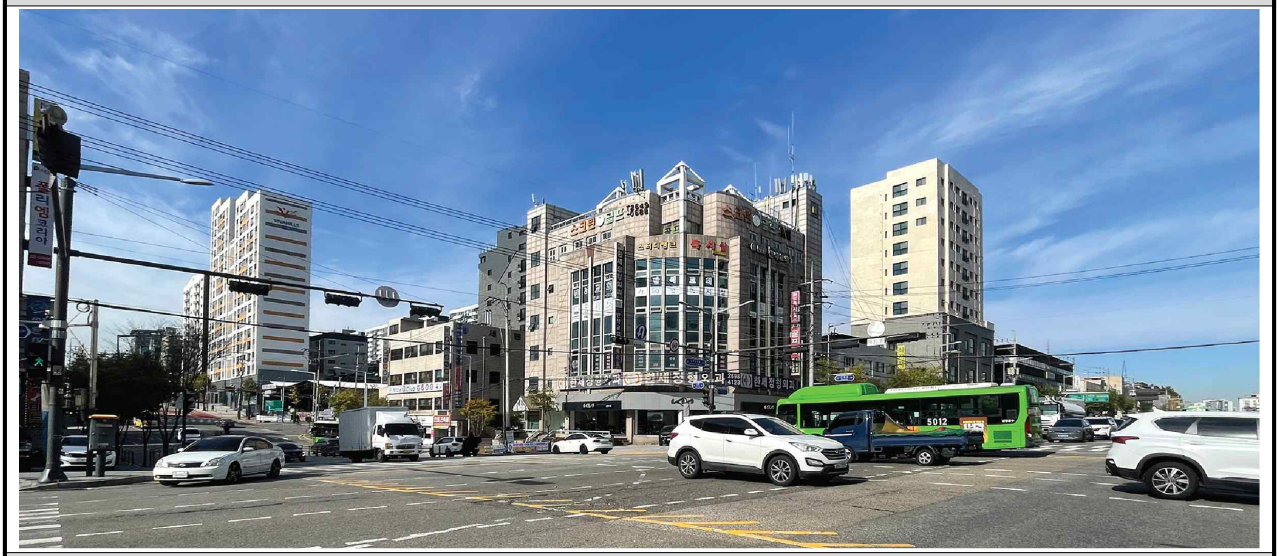


사업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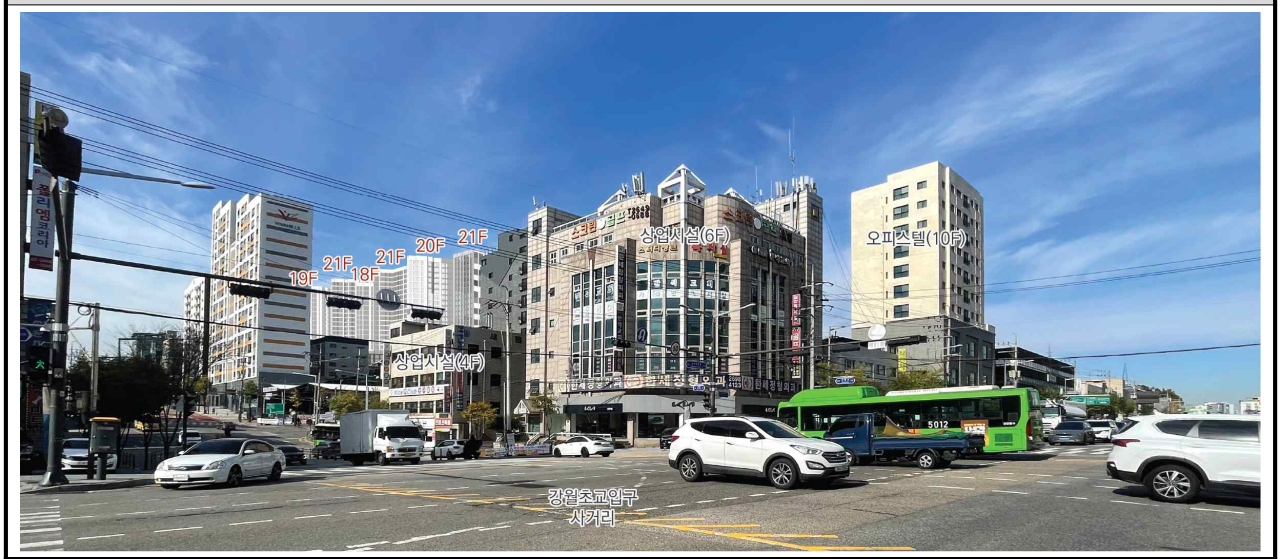


KEYMAP	조망점 5	강월초교입구 사거리
	가시거리	동남측 약 200m
	분석내용	대상지 주요 진입도로에서 바라본 조망으로 인접 건축물에 의해 대부분이 차폐되나 기존도심과의 조화로운 경관계획을 위한 입면계획이 요구됨

사업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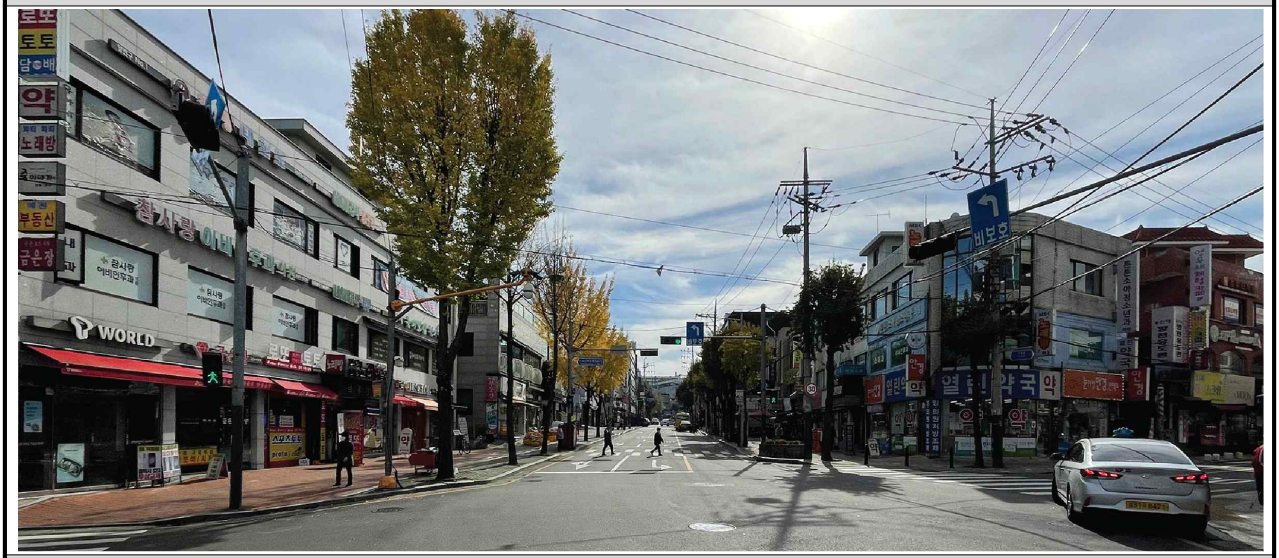
사업후



다. 경관시뮬레이션-원경

KEYMAP	조망점 6	우성상가
	가시거리	북측 약 300m 지점
	분석내용	추후 개발 예정지들과 함께 조망되며 조화로운 입면 및 색채계획이 요구되고 비슷한 규모의 계획으로 대상지 일부만 조망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사업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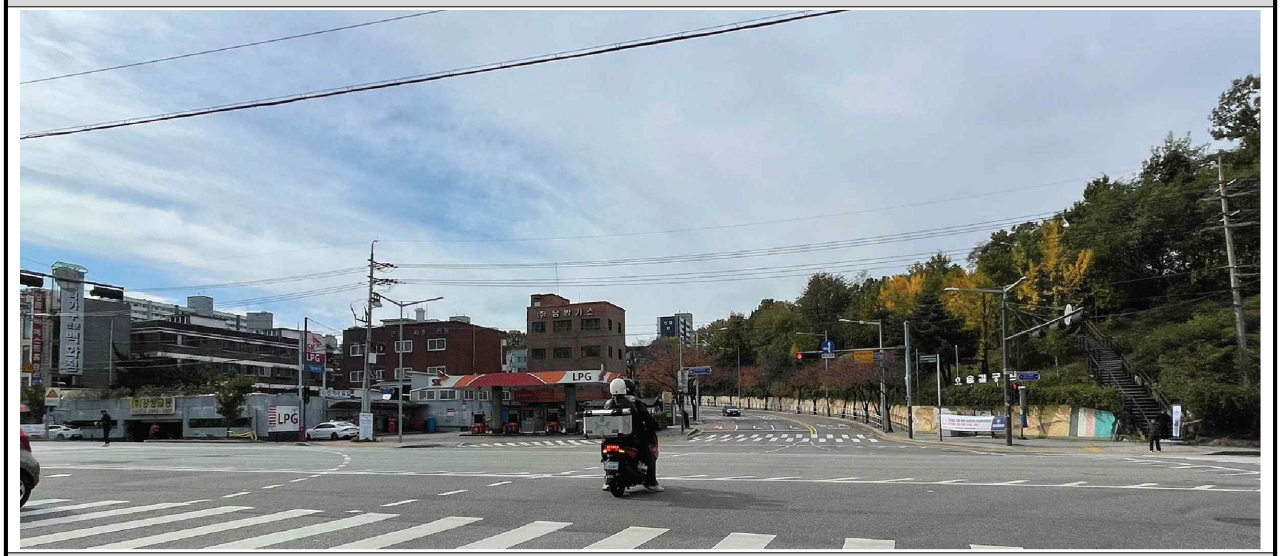


사업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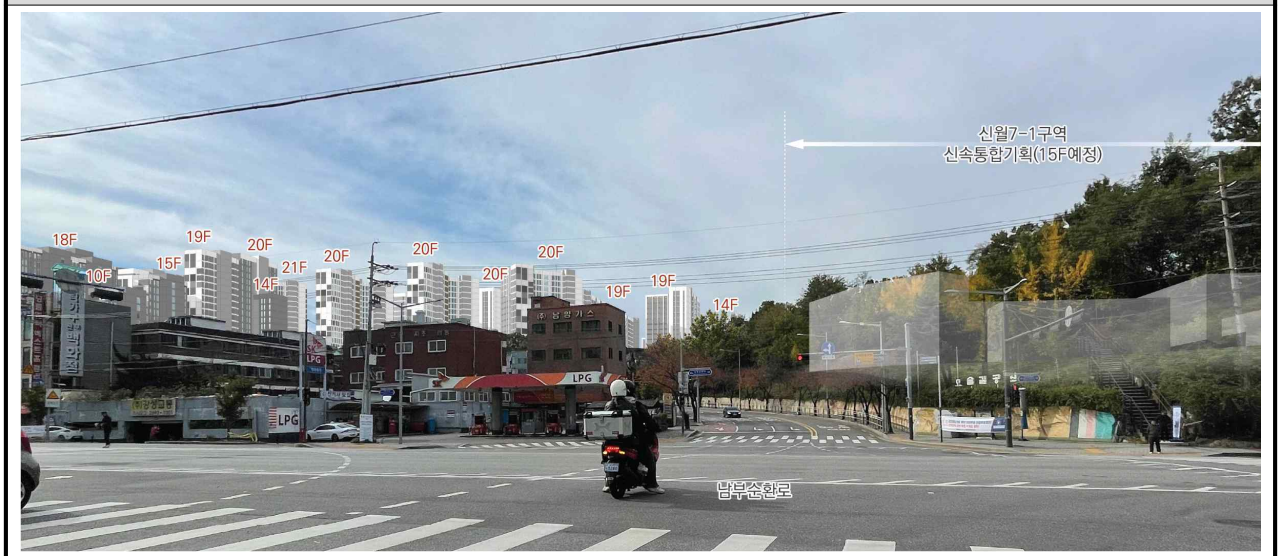


KEYMAP	조망점 7	과학수사연구원 입구 사거리
	가시거리	북동측 약 320m 지점
	분석내용	남부순환로를 기준으로 우측 개발예정지가 위치하지만 오솔길 실버공원 조경에 의해 차폐되며, 대상지의 중첩경관으로 인한 일률적인 입면은 지양하고 다채로운 경관 형성계획이 요구됨

사업전



사업후



6 교통성 검토서

목 차

1. 계획의 개요

가. 사업지 위치 ····· 3

나. 사업의 개요 ····· 4

2. 교통분석의 범위 및 현황

가. 교통분석의 범위 ····· 6

나. 가로망 현황 ····· 7

3. 교통소통분석 기준

가. 가로분석 기준 ····· 8

나. 교차로분석 기준 ····· 14

다. 교통소통 현황 ····· 20

라. 주변개발계획 ····· 22

4. 교통수요예측

가. 사업미시행시 교통수요예측 ····· 28

나. 사업시행시 교통수요예측 ····· 33

5. 주차수요예측

가. 법정주차대수 산정 ····· 45

나. 주차발생원단위법에 의한 주차수요 예측 ····· 47

다. 주차수요예측 종합 ····· 48

6.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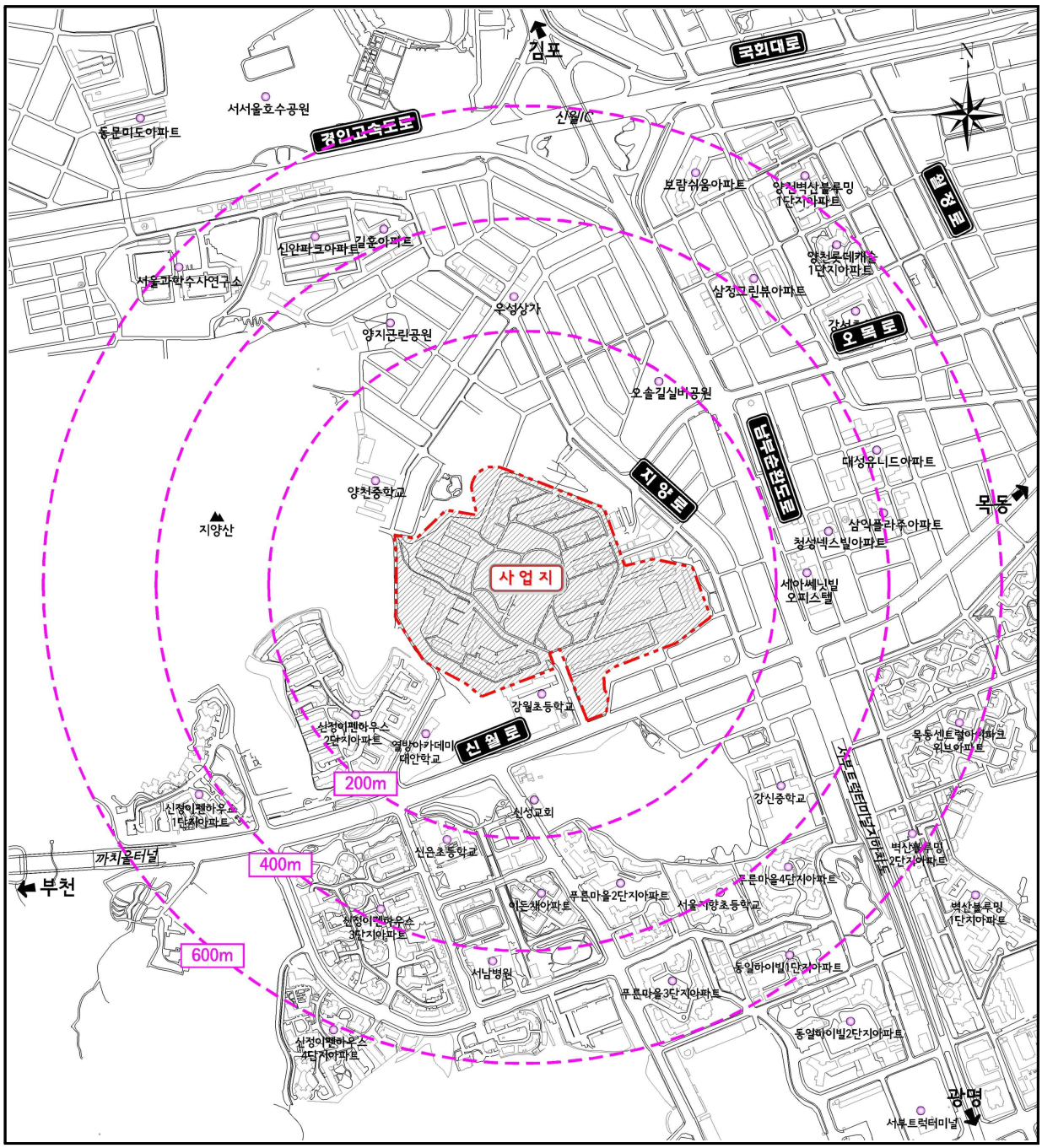
나. 개선방안 및 개선효과 ····· 50

1. 계획의 개요

가. 사업지 위치

- 본 사업지는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87-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상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사업지 동측으로 남부순환로가 남북으로 지나고 있으며, 북측으로 신월IC가 위치해 있음

〈 대상지 위치도 〉



나. 사업의 개요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87-1번지 일원						
지 역 지 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사 업 기 간		~2030년						
세 대 수		3,149세대						
건 축 규 모	대지면적	113,009.00㎡						
	건축면적	32,026.75㎡						
	연면적	462,352.68㎡ (지상 : 284,871.43㎡, 지하 : 177,481.25㎡)						
	용적률	249.98%						
	건폐율	28.46%						
주 차	법정주차대수	2,883대						
	주차수요대수	3,515대 (2031년 원단위법)						
	계획주차대수	4,458대 (법정대비 154.6%, 수요대비 126.8%)						
구 분(2031년)		승용차		택 시		합 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계
사업 미시행시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대/시)	34	307	55	55	89	362	451
	1일 발생교통량(대/일)	1,569	1,569	425	425	1,994	1,994	3,988
사업 시행시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대/시)	77	660	118	118	195	778	973
	1일 발생교통량(대/일)	3,220	3,220	893	893	4,113	4,113	8,226
순수발생 교통량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대/시)	43	353	63	63	106	416	522
	1일 발생교통량(대/일)	1,651	1,651	468	468	2,119	2,119	4,238

주 :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는 08~09시임

2) 면적개요

[공동주택 분양면적표]

구 분		세대수 (세대)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	주차장 (㎡)	분양면적 (㎡)
임대	20평형	72	49.80	17.90	67.70	1.93	40.33	109.96
	24평형	87 86	59.95	21.50	81.45	2.32	48.56	132.33
	34평형	38	84.95	28.00	112.95	3.30	68.80	185.05
분양	20평형	378	49.80	17.90	67.70	1.93	40.33	109.96
	24평형	1,781	59.95	21.50	81.45	2.32	48.56	132.33
	34평형	718	84.95	28.00	112.95	3.30	68.80	185.05
	44평형	76	108.98	36.60	145.58	4.23	88.27	238.08
합계		3,149	206,841.33	72,145.10	278,986.43	8,030.00	167,526.80	454,543.23

[용도별 면적표]

구 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	계약면적(㎡)
공동주택	206,841.3300	72,145.10	278,986.43	8,030.00	167,526.80	454,543.23
근린생활시설	3,753.20	1,608.50	5,361.70	585.75	1,862.00	7,809.45
계	210,594.53	73,753.60	284,348.13	8,615.75	169,388.80	462,352.68

2. 교통분석의 범위 및 교통현황

가. 교통분석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시간적으로는 2023년을 기준으로 사업완공 후 1년을 분석대상 시점으로 설정하였으며, 사업완공 1년 후인 2031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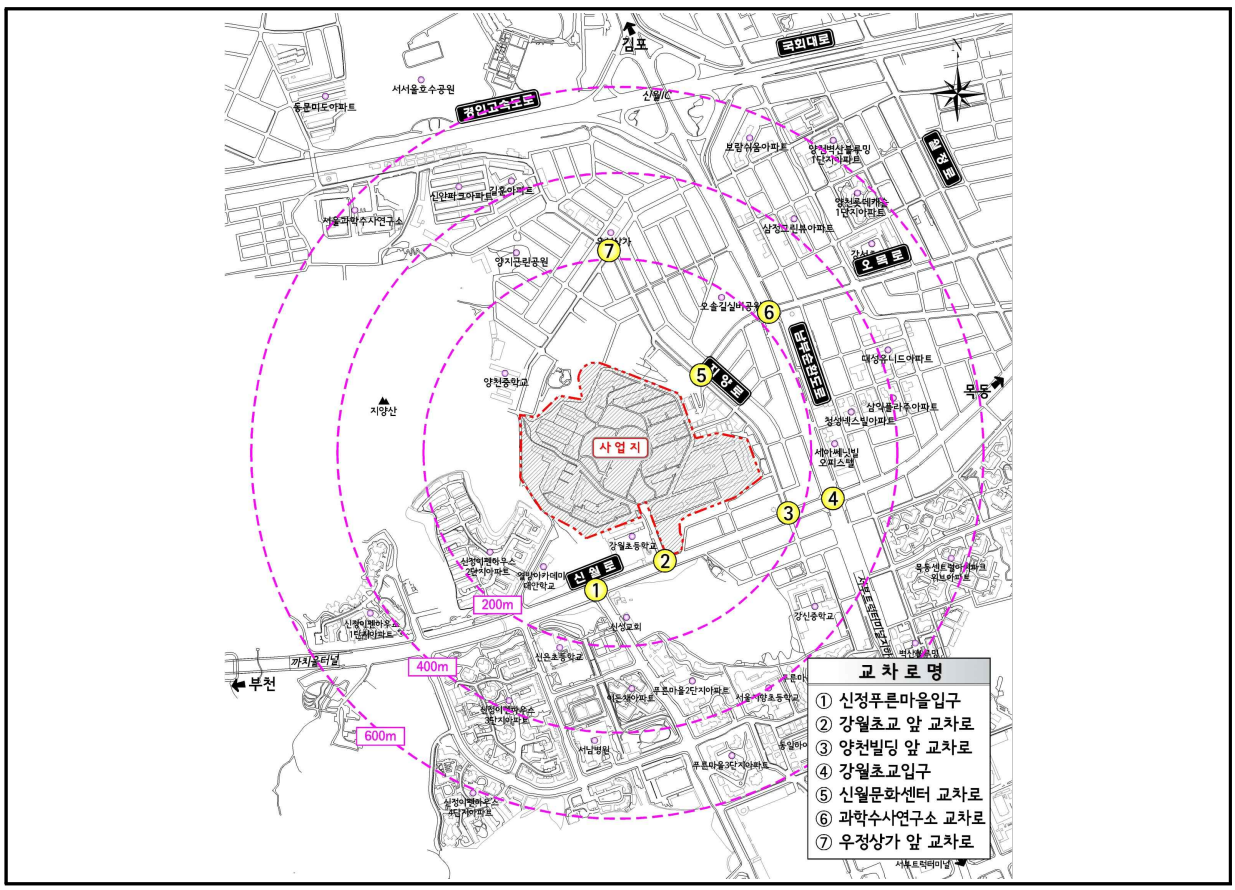


2) 공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사업부지 주변지역, 특히 사업시행으로 직·간접적인 교통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주요가로 및 교차로를 선정하였음

■ 본 사업지를 중심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7개 교차로 및 주요 가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외부 영향권으로 설정하였으며, 교통수요, 주차동선체계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업지의 내부동선 및 인접 교통시설을 내부 영향권으로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였음

〈 공간적 범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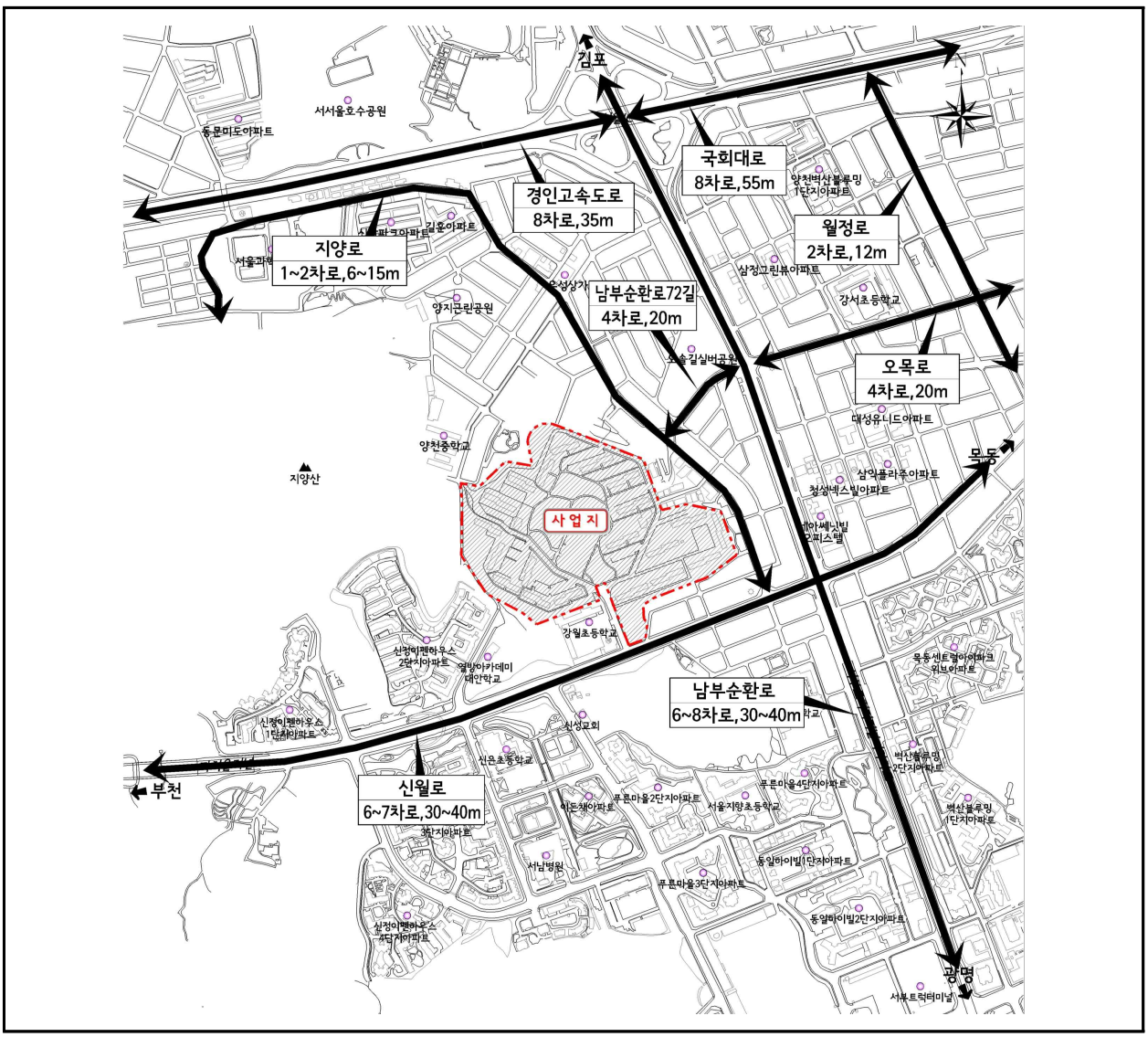
나. 가로망 현황

■ 사업지 주변 가로망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지 북측의 경인고속도로(B=35m, 8차로), 국회대로(B=55m, 8차로), 사업지 남측의 신월로(B=30~40m, 6~7차로)가 동서축을, 동측의 남부순환로(B=30~40m, 6~8차로)가 남북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업지 주변 가로망 현황은 다음과 같음

[사업지 주변 가로망 현황]

가 로 명	폭 원(m)	차로수(양방향)	가 로 명	폭 원(m)	차로수(양방향)
경인고속도로	35	8	남부순환로	30~40	6~8
국회대로	55	8	남부순환로72길	20	4
신월로	30~40	6~7	월정로	12	2
오목로	20	4	지양로	6~1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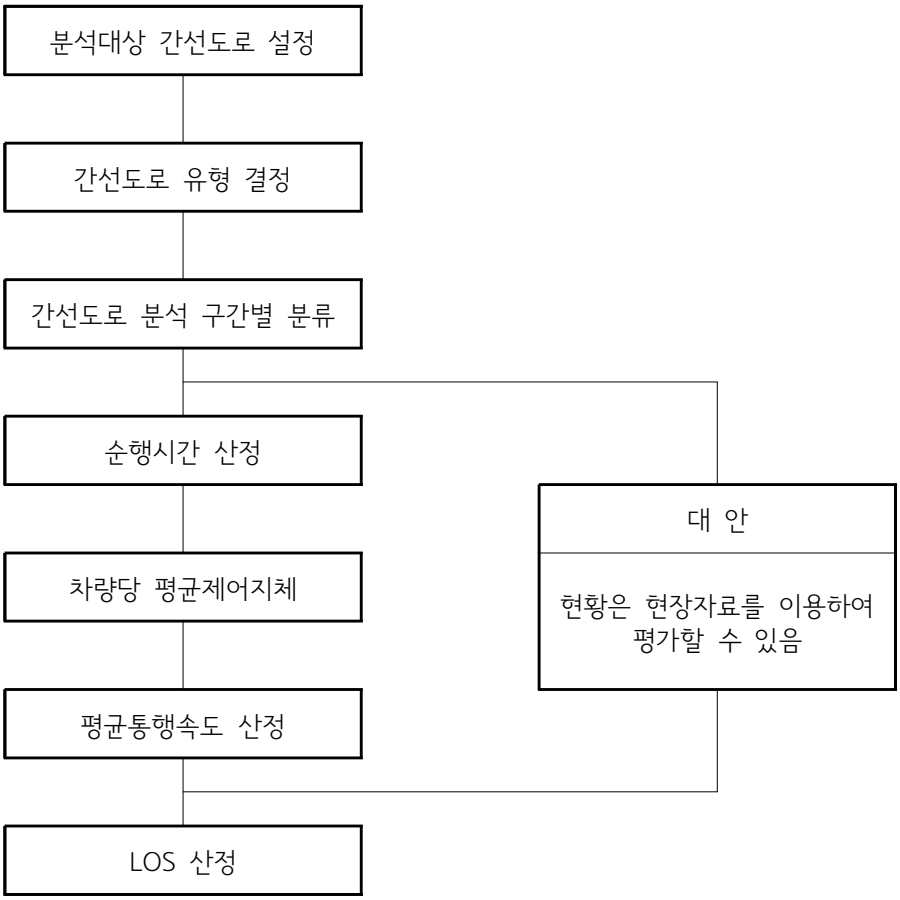
〈 사업지 주변 가로망 현황도 〉



3. 교통소통분석 기준

가. 가로분석 기준

- 간선도로상의 차량운행은 도로의 주변 환경, 차량간의 상호작용, 교통신호 등과 같은 주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주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용량결정 및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수준을 결정함
- 도시 및 교외간선도로의 서비스수준을 나타내는 효과척도(M.O.E)로서 「도로용량편람, 국토교통부, 2013」에서 제시하는 평균통행속도(Average Travel Speed)를 효과척도로 사용하여 분석하였음
- 평균통행속도의 산정은 주행시간과 교차로 접근지체 및 구간거리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도로용량편람, 국토교통부, 2013」에서 제시한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음



< 간선도로 서비스수준 분석과정 >

1) 분석대상 간선도로의 설정(1단계)

■ 분석대상 간선도로의 위치와 총 연장을 정확하게 규정함

2) 간선도로 유형 결정(2단계)

■ 도로의 기능과 설계수준, 도로여건에 따라 간선도로의 유형을 구분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간선도로는 우선 기능과 설계수준에 따라 분류한 다음 도로여건에 따라 분류함

① 도시 및 교외간선도로 서비스수준 분석방법

< 서비스수준 분석표 >

구분		기 능 적 분 류		
		고규격	중간규격	저규격
이동성		매우중요	중요	보통
접근관리수준		고	중	저
연결도로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도시부 연결도로	주요간선도로	집산도로
주요통행목적		장거리통과교통	도시부접근교통	도시부내부교통
구분		설 계 수 준 분 류		
		고 규 격	중 간 규 격	저 규 격
진출입로 설치밀도		저	중	고
km당 신호교차로수		2개 이하	1~3개	2개 이상
자유속도(kph)		≤ 85	≤ 75	≤ 65
보행자밀도		저	중	고
주변개발정도		저	중	고
구분		도로여건범주		
		양 호	보 통	
차로수	고규격	링크 편도 4차로 이상	링크 편도 3차로	
	저규격/중간규격	링크 편도 3차로 이상	링크 편도 2차로	

자료 :「도로용량편람, 국토교통부,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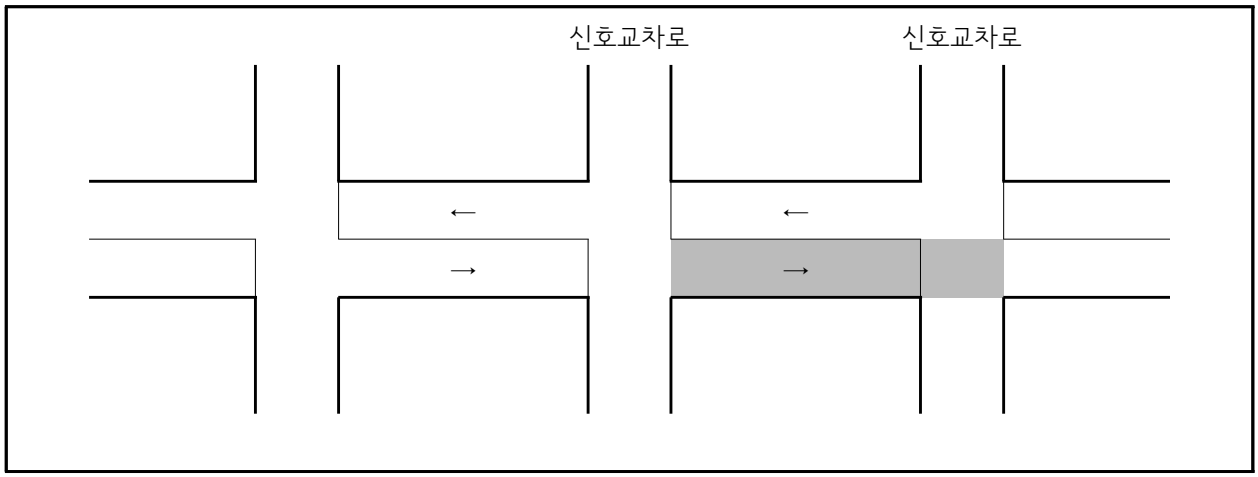
< 도로구분과 도로여건에 따른 간선도로 유형 >

도로구분 \ 도로여건	양 호	보 통
고규격	I	I
중간규격	I	II
저규격	II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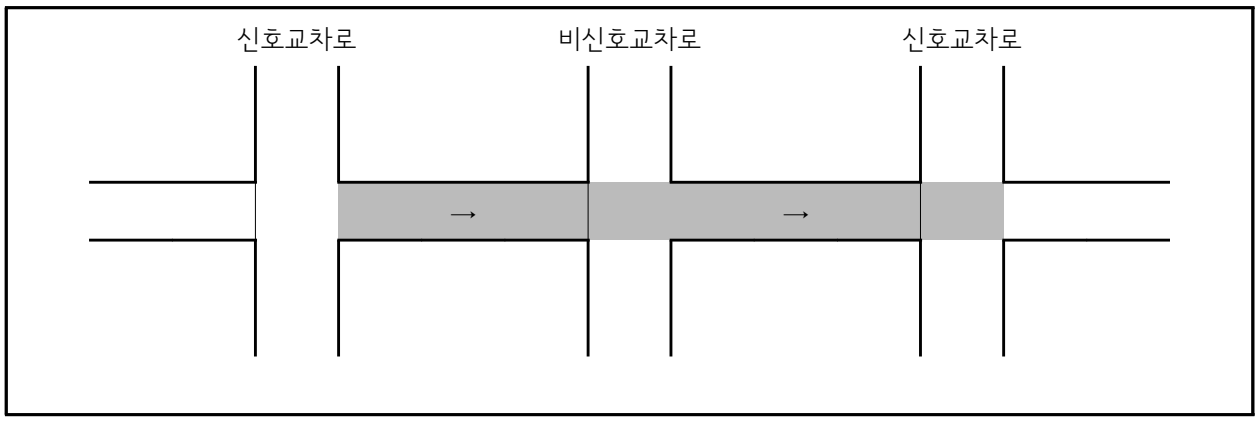
자료 :「도로용량편람, 국토교통부, 2013」

3) 간선도로 분석구간별 분류(3단계)

- 도로의 분석 기본단위는 구간인데, 신호교차로에서 다음 신호교차로까지 한 방향의 길이를 말함
- 만약 동일한 동급의 간선도로에서 두 개 이상의 연속된 구간의 구간길이, 자유속도, 속도제한 그리고 주변의 토지이용도가 비슷하다면 하나의 구간으로 분석함
- 아래의 그림은 간선도로 구간 설정시 양방향 통행도로, 일방통행도로의 구간설정 개념을 도식화함



< 양방통행도로의 분석구간 개념도 >



< 일방통행도로의 분석구간 개념도 >

4) 순행시간 산정(4단계)

- 순행시간(주행시간)이란 어떤 구간을 통행하는데 있어서 신호등으로 인한 가·감속 지체와 정지지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행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주행속도는 자유속도보다 낮은 값을 갖음
- 또한, 분석구간의 주행속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간선도로 유형, 분석구간 길이, 측면마찰 정도를 알아야 함

< km당 구간 순행시간 >

도로유형	Ⅰ		Ⅱ		Ⅲ	
노변마찰 / 구간거리(km)	대	소	대	소	대	소
≤ 0.1	108	86	143	102	178	119
≤ 0.2	80	66	100	75	119	85
≤ 0.3	71	59	85	67	99	74
≤ 0.4	66	56	77	63	88	69
≤ 0.5	63	54	73	60	83	65
≤ 0.6	61	53	70	58	79	63
≤ 0.7	60	52	68	57	75	62
≤ 0.8	59	51	66	56	74	61
≤ 0.9	58	50	65	55	72	60
> 0.9	58	50	65	54	72	58

자료 :「도로용량편람, 국토교통부, 2013」

< 노변마찰 정도 설정 기준 >

도로유형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노변마찰 / 노변마찰요인	대	소	대	소	대	소
버스정류장 수(개/km)	> 2	≤ 2	> 2	≤ 2	> 2	≤ 2
진출입로 수(개/km)	> 2	≤ 2	> 3	≤ 3	> 4	≤ 4

자료 :「도로용량편람, 국토교통부, 2013」

5) 교차로 접근지체 산정(5단계)

■ 간선도로 평가에 사용하기 위한 지체는 평균제어지체임

$$d = d_1 \times PF \times f_{cw} + d_2 + d_3$$

여기서,

d = 차량당 평균제어지체(sec/veh)
d_1 = 연동보정된 균일제어지체(sec/veh)
d_2 = 임의 도착과 과포화를 나타내는 증분지체
PF = 연동계수
f_{cw} = 신호교차로간 보행자 횡단신호 보정계수
d_3 = 추가지체(sec/veh)

■ 균일지체, 증분지체, 연동계수, 추가지체 산정식은 다음과 같음

$$d_1 = \frac{0.5C(1-g/C)^2}{1-[\min(1,X)\frac{g}{C}]}$$

$$d_2 = 900T\left[(x-1)+\sqrt{(x-1)^2+\frac{4X}{cT}}\right]$$

$$d_3 = \frac{1800Q_b^2}{cT(c-V)} \quad (\text{유형 Ⅰ})$$

$$= \frac{3600Q_b}{c} - 1800T(1-X) \quad (\text{유형 Ⅱ})$$

$$= \frac{3600Q_b}{c} \quad (\text{유형 Ⅲ})$$

여기서,

T = 분석기간의 길이(h)
C = 신호주기(s)
g = 유효녹색시간(s)
X = 해당 차로군의 포화도
c = 분석기간 중 해당 차로군의 용량
x = 교통량/용량 비(v/c)
Q_b = 분석 시점에 존재하는 초기차량대수(vph)
V = 분석기간 중 해당 차로군의 도착교통량(vph)

6) 평균통행속도 산정(6단계)

■ 간선도로의 평균통행시간 산정시 간선도로 구간의 순행시간과 교차로 총 접근지체를 알아야 함

$$\text{평균통행속도} = \frac{3600 \times \text{구간길이}}{km\text{당 순행시간} \times \text{구간길이} + \text{교차로총접근지체}}$$

여기서,

평균통행속도 = 간선도로의 전체 또는 일부 구간의 평균통행속도(kph)
구간길이 = 간선도로의 전체 또는 일부 구간의 연장(km)
km당 순행시간 = 간선도로 전체 또는 일부 구간의 km당 총 순행시간 (sec/pcu)
교차로 총접근지체 = 간선도로 전체 또는 일부 구간으로 분석대상범위내의 모든 교차로에서의 총 접근지체(s)
3600 = 속도를 kph로 환산하기 위한 환산계수

7) 서비스수준 평가(7단계)

■ 간선도로의 유형과 평균통행속도를 이용하여 서비스수준을 평가하는 단계로서 간선도로에서의 서비스수준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음

< 간선도로의 서비스수준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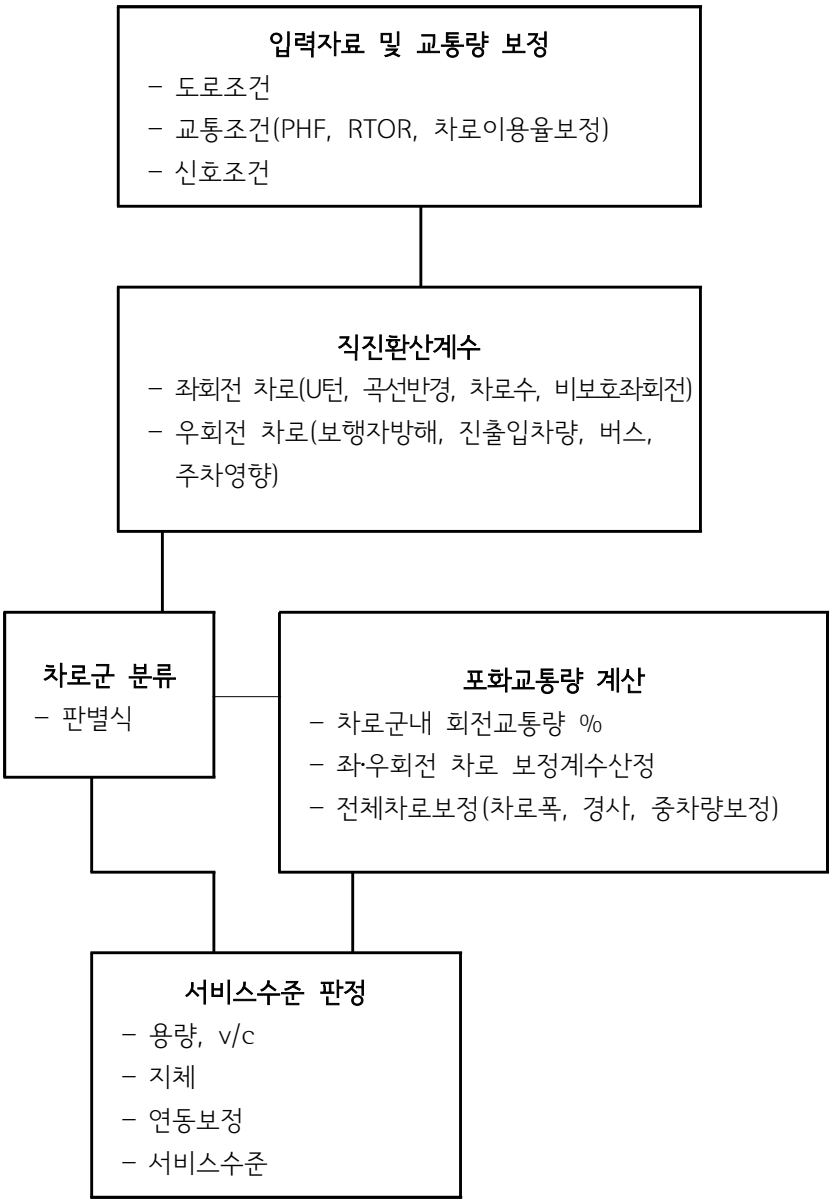
간선도로유형	Ⅰ	Ⅱ	Ⅲ
자유속도 범위(kph)	85 ~ 75	75 ~ 65	65 ~ 55
자유속도 기준(kph)	80	70	60
서비스수준	평 균 통 행 속 도 (kph)		
A	≥ 67	≥ 60	≥ 49
B	≥ 51	≥ 46	≥ 39
C	≥ 37	≥ 33	≥ 29
D	≥ 28	≥ 25	≥ 20
E	≥ 21	≥ 18	≥ 12
F	≥ 10	≥ 10	≥ 8
FF	≥ 6	≥ 6	≥ 5
FFF	< 6	< 6	< 5

자료 :「도로용량편람, 국토교통부, 2013」

나. 교차로분석 기준

1) 신호교차로 분석방법

- 신호교차로에서 서비스수준의 평가기준으로 사용되는 지체는 분석기간 동안의 차량당 평균제어지체로 나타남
- 차량당 평균제어지체란 분석기간에 도착한 차량들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부터 교차로를 벗어나서 제 속도를 낼 때까지 걸린 추가적인 시간손실의 평균값을 말한다. 또 여기에는 이전에 교차로를 다 통과하지 못한 차량으로 인해 분석기간 동안에 도착한 차량이 받는 추가지체도 포함됨
-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은 도로용량편람의 기준을 적용하고 KHC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평가하였음



< 신호교차로 분석과정 >

① 입력자료 및 교통량 보정(1단계)

- 도로, 교통, 신호조건에 관한 현황자료를 정리하고, 첨두 시간교통류율을 환산, 차로이용율 보정, 우회전 교통량 보정이 이 과정에서 이루어짐

② 좌회전차로, 우회전차로의 직진환산계수 산정(2단계)

- 모든 회전차로 및 노변차로는 교통류 내부 및 외부마찰에 의해 이동효율이 감소함
- 좌회전 차로는 내부마찰이 거의 대부분이며, 우회전차로는 내부마찰 및 외부마찰을 같이 받음

③ 차로군 분류(3단계)

- 한 접근로에서 동일한 현시에 진행하는 이동류들의 차로이용률이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차로별 서비스수준도 다름
- 이용률이 같은 이동류끼리 묶어서 몇 개의 차로군으로 분류하고 분석도 이 차로군별로 함
- 차로군 분류

㉠ 전용 좌회전 차로 또는 별도 차로군

㉡ 접근로 차로수(전용 좌회전차로 제외)가 1개이면 하나의 통합차로군

㉢ $V_{STL} > V_{LF}$ 이고, $V_{STR} > V_{RF}$ 이면 : 직진, 좌·우회전 모두 하나의 통합차로군

㉣ $V_{STL} < V_{LF}$ 이면 : 실질적 전용 좌회전차로군

$V_{STR} < V_{RF}$ 이면 : 실질적 전용 우회전차로군

㉤ $V_{STL} > V_{LF}$ 이면 : 직진과 좌회전 통합차로군

$V_{STR} > V_{RF}$ 이면 : 직진과 우회전 통합차로군

여기서, V_{LF} : 공용 좌회전차로에서 첫 좌회전 앞에 도착하는 직진차량 대수(vph)

V_{RF} : 공용 좌회전차로에서 첫 좌회전 앞에 도착하는 직진차량 대수(vph)

V_{STL} : 공용 좌회전차로를 이용하는 직진차량의 교통량(vph)

V_{STR} : 공용 우회전차로를 이용하는 직진차량의 교통량(vph)

④ 포화교통량 계산(4단계)

- 포화교통류율은 조사지점마다 각각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음
- 따라서 분석에 사용할 포화교통류율을 직접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주어진 도로조건과 교통조건에서의 운영분석에서만 타당성을 갖음
- 장래의 도로 및 교통조건에서의 운영분석 또는 설계분석 및 계획분석 등 많은 부분에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포화교통류율 값을 사용함

■ 포화교통류율 산정식은 다음과 같음

$$S_i = S_0 \times N_i \times f_{LT}(\text{또는 } f_{RT}) \times f_w \times f_g \times f_{HV}$$

여기서, S_i : 차로군 i의 포화교통류율(vphg)

S_0 : 기본포화교통류율(2,200pcphgpl)

N_i : i차로군의 차로수

f_{LT}, f_{RT} : 좌·우회전차로 보정계수(직진의 경우 1.0)

f_w : 차로폭 보정계수

f_g : 접근로 경사 보정계수

f_{HV} : 중차량 보정계수

⑤ 서비스수준 판정(6단계)

■ 서비스 수준은 다음 단계를 거쳐 산정함

ⅰ) 각 차로군별 용량 및 v/c비 계산

ⅱ) 초기 대기차량(Q_b)이 없으면

㉠ 균일지체(d_1)

$$d_1 = \frac{0.5C(1-\frac{g}{C})^2}{1-\left[\min(1,X)\frac{g}{C}\right]} \quad (Q_b = 0\text{일 때})$$

$$= \frac{R^2}{2C(1-y)} + \frac{Q_b R}{2TS(1-y)} \quad (\text{유형 Ⅰ일 때 사용})$$

$$= \frac{R}{2} \quad (\text{유형 Ⅱ, Ⅲ일 때 사용})$$

여기서, Q_b : 초기대기차량대수(대) d_1 : 균일지체(초/대)

C : 주기(초) g : 해당 차로군에 할당된 유효녹색시간(초)

X : 해당 차로군의 포화도 R : 적색신호시간(초)

y : 교통량비(flow ratio)(=v/s) T : 분석시간 길이(초)

S : 해당 차로군의 포화교통량(vphg)

㉡ 증분지체(d_2)

$$d_2 = 900T\left[(X-1)+\sqrt{(X-1)^2+\frac{4X}{cT}}\right]$$

여기서, d_2 : 임의도착 및 분석기간 안에서의 과포화 영향을 나타내는 증분지체

T : 분석기간 길이(시간)

X : 해당 차로군의 포화도

c : 해당 차로군의 용량(vph)

ⅲ) 초기 대기차량(Q_b)이 있으면

㉠ Q_b와 $(1-X)cT$를 비교하여 CASE Ⅰ, Ⅱ, Ⅲ 중 선택

㉡ 증분지체(d_2)

㉢ 추가지체(d_3)

$$d_3 = \frac{1800\,Q_b^2}{cT(c-V)} \qquad \text{(유형 Ⅰ일 때)}$$

$$= \frac{3600\,Q_b}{c} - 1800\,T(1-X) \qquad \text{(유형 Ⅱ일 때)}$$

$$= \frac{3600\,Q_b}{c} \qquad \text{(유형 Ⅲ일 때)}$$

여기서, d_3 : 추가지체(분석기간 이전에 잔류한 과포화 대기행렬도 인한 지체)

Q_b : 분석기간(T)이 시작될 때 존재하는 초기 대기차량대수(대)

c : 분석기간 중에 해당 차로군의 용량(vph)

V : 분석기간 중에 차로군의 도착교통량(vph)

ⅳ) 연동계수(PF)를 적용하여 제어지체 계산

$$d = d_1(PF) + d_2 + d_3$$

여기서, d : 차량당 평균제어지체(초/대)

d_1 : 균일 제어지체(초/대)

PF : 신호연동에 의한 연동보정계수

d_2 : 임의도착과 과포화를 나타내는 증분지체로서, 분석기간 바로 앞 주기 끝에 잔여차량이 없을 경우(초/대)

ⅴ) 차로군별 지체를 교통량에 관해서 가중평균하여 접근로의 평균지체를 계산하고, 서비스수준 판정

ⅵ) 접근로별 지체를 교통량에 관해서 가중평균하여 교차로 전체의 평균지체계산 및 서비스수준 판정

<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기준 >

서비스수준	차량당 제어지체
A	≤ 15초/대
B	≤ 30초/대
C	≤ 50초/대
D	≤ 70초/대
E	≤ 100초/대
F	≤ 220초/대
FF	≤ 340초/대
FFF	> 340초/대

자료 :「도로용량편람, 국토교통부, 2013」

2) 비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방법

■ 본 평가에서 서비스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사업지 내부 주요 교차로가 신호등 미설치 교차로 분석대상으로 『도로용량편람, 국토교통부, 2013』을 사용하여 그 소통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무통제 교차로
비신호교차로에서 접근하는 모든 방향에 동등하게,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교차로를 말한다.

2) 양방향정지 교차로(Two-way stop controlled)
비신호교차로에서 주도로의 차량이 통행을 완료할 때까지의 시간간격동안 부도로에서 진입하는 모든 차량과 주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기다려야하는 교통통제 기법을 이용하는 지점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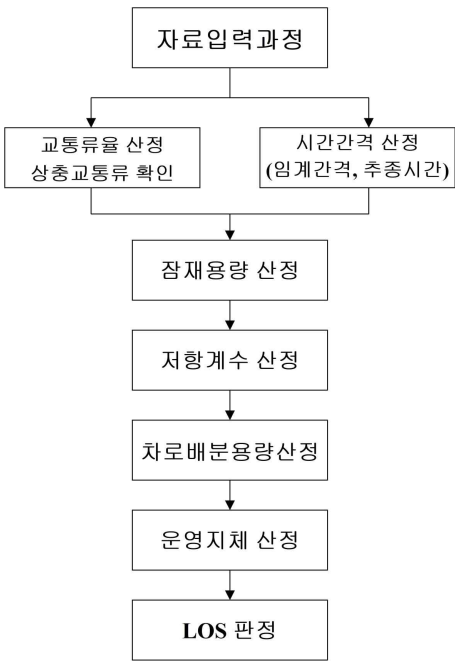
3) 전방향정지 교차로(All-way stop controlled)
모든 접근로에 정지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차량의 진행 여부가 도로의 통행 우선순위와 진입하는 다른 차량에 영향을 받는 교차로 지점을 말한다.

4) 로터리식 교차로
교차점이 중앙에 교통섬을 설치하여 차량이 그 주위를 돌아가면서 교통흐름을 처리하는 도류식 교차로 지점을 말한다.

■ 본 사업지의 비신호 교차로는 위의 4가지 중 양방향정지 교차로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정지 교차로의 분석방법을 『도로용량편람, 국토교통부, 2013』을 사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양방향정지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방법

■ 양방향정지 교차로의 용량 및 서비스수준은 총 8단계로 수행된다. 그 단계는 자료입력과정, 상충교통류 산정, 시간간격 산정, 이동류의 잠재용량 산정, 저항계수 산정, 차로배분용량 산정, 운영지체 산정, 서비스수준 판정의 과정으로 양방향정지 교차로의 분석이 이루어진다.



< 양방향정지 교차로의 분석과정 >

■ 서비스수준은 위의 과정에 의해 계산된 교차로의 운영지체 값에 의하여 다음 표를 이용하여 결정된다.

< 양방향정지 교차로의 서비스수준>

서비스수준	평균운영지체(초/대)
A	≤ 10
B	≤ 15
C	≤ 25
D	≤ 35
E	≤ 50
F	>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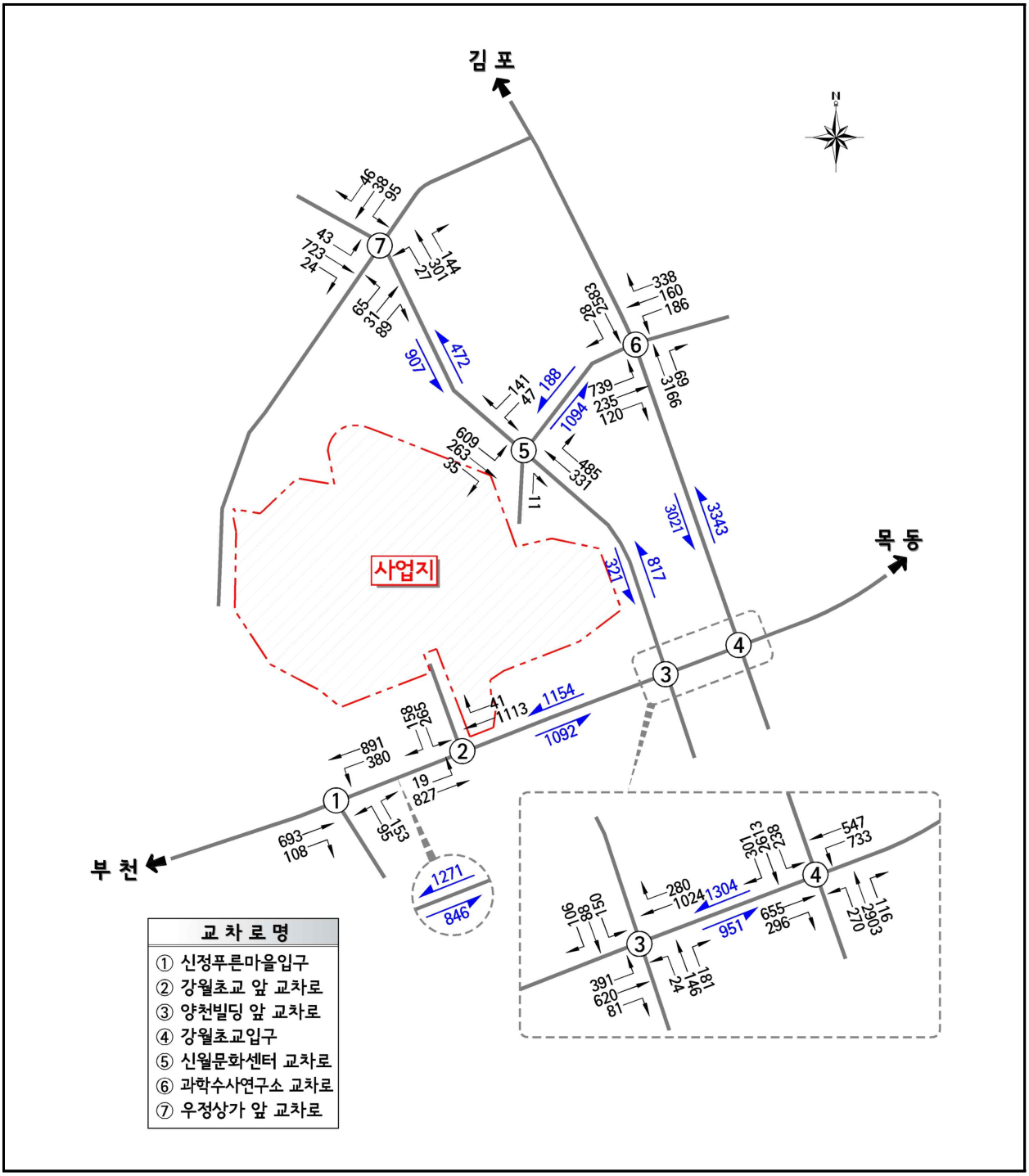
자료 : 도로용량편람, 국토교통부, 2013

다. 교통소통 현황

1)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 현황

■ 사업지 주변의 첨두시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한 결과, 첨두시는 08시~09시로 조사되었으며, 첨두시 교통량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주변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 현황(2023년 08~09시, 단위: pcu/h) 〉



2) 가로 및 교차로 소통현황

■ 주변가로의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평균통행속도가 12.52~27.72km/h로 서비스수준이 "B"~"E"로 분석되었음

[주변가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08~09시)]

구 간	연장 (km)	교통량 (pcu/h)	평균통행속도 (km/h)	서비스 수준
① 신정푸른마을 입구 → ② 강월초교 앞 교차로	0.16	846	25.05	D
② 강월초교 앞 교차로 → ① 신정푸른마을 입구	0.16	1,271	13.80	E
② 강월초교 앞 교차로 →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0.30	1,092	22.59	D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 ② 강월초교 앞 교차로	0.30	1,154	24.60	D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 ④ 강월초교 입구	0.10	951	13.49	E
④ 강월초교 입구 →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0.10	1,304	21.22	D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0.39	817	27.15	D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0.39	333	17.19	E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 ⑦ 우성상가 앞 교차로	0.36	472	26.74	D
⑦ 우성상가 앞 교차로 →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0.36	907	27.72	D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 ⑥ 과학수사연구소 교차로	0.21	1,094	12.52	E
⑥ 과학수사연구소 교차로 →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0.21	188	15.09	E
④ 강월초교 입구 → ⑥ 과학수사연구소 교차로	0.46	3,343	22.68	D
⑥ 과학수사연구소 교차로 → ④ 강월초교 입구	0.46	3,021	27.27	D

■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신호교차로의 평균제어지체가 18.1~57.1sec/pcu로서 서비스수준 "B"~"D"로 분석되었음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08~09시)]

교 차 로 명	교차로 교통량(pcu/h)	평균제어지체(sec/pcu)	서비스 수준
① 신정푸른마을 입구	2,320	31.5	C
② 강월초교 앞 교차로	2,423	25.3	B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3,091	48.9	C
④ 강월초교 입구	8,672	46.2	C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1,922	18.1	B
⑥ 과학수사연구소 교차로	7,624	57.1	D
⑦ 우성상가 앞 교차로	1,626	31.7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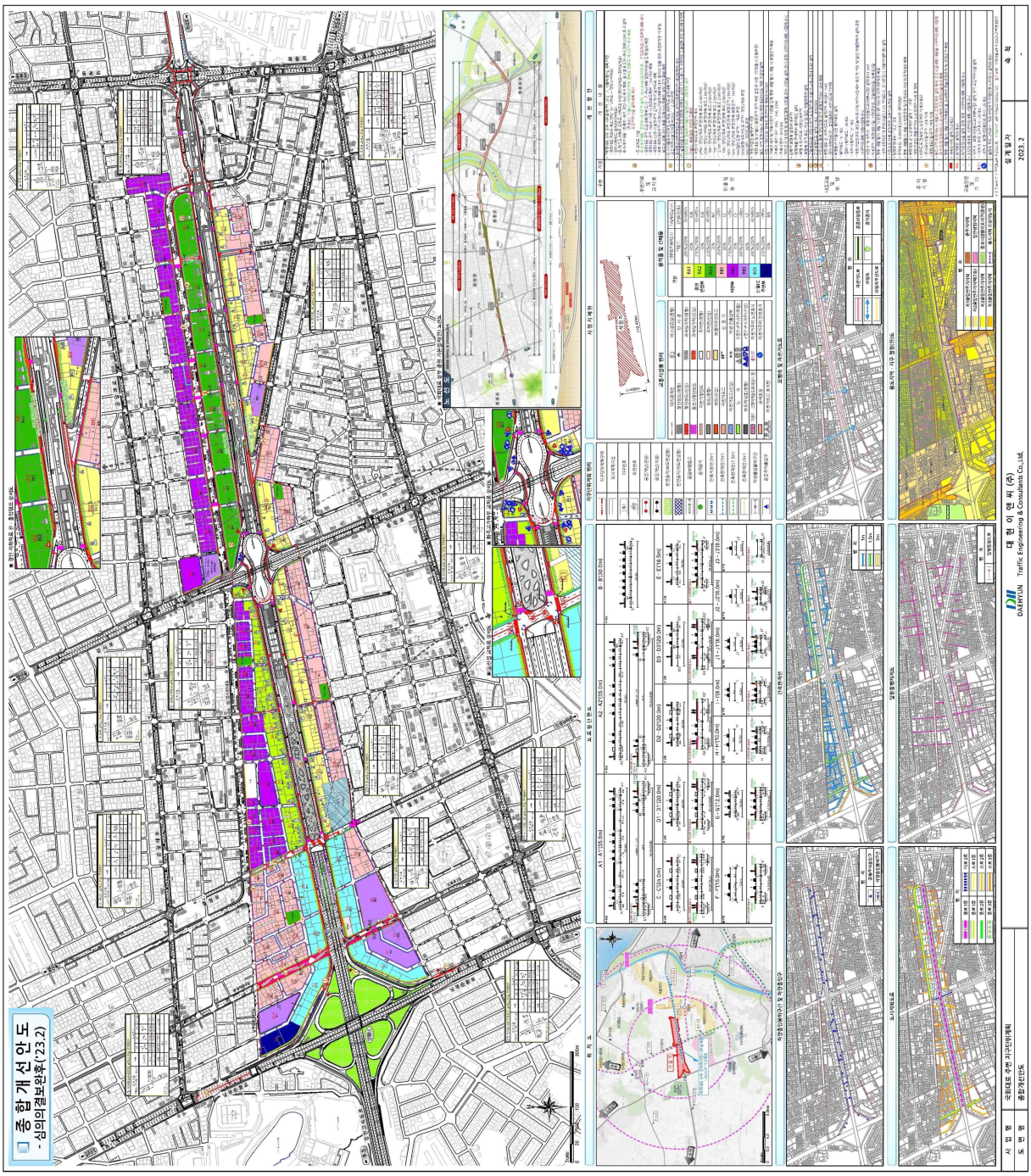
라. 주변개발계획

1)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 분		내 용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신월동·신정동 일원
인·허가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 업 기 간		2021년 ~ 2025년
지 역 지 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부 지 면적		622,000㎡
주차 계획	법 정	10,213대
	수 요	9,993대

구 분			사업미시행시(①)			사업시행시(②)			순수발생량(②-①)		
			유입	유출	계	유입	유출	계	유입	유출	계
발생교통량 (대/시,대/일)	사업지 첨두시 (대/시)	2026년	1,337	869	2,206	2,030	1,208	3,238	693	339	1,032
		2030년	1,303	844	2,147	1,984	1,176	3,160	681	332	1,013
	주변가로 첨두시 (대/시)	2026년	684	1,427	2,111	925	2,299	3,224	241	872	1,113
		2030년	669	1,339	2,068	905	2,253	3,158	236	854	1,090
	1일 발생교통량 (대/일)	2026년	12,163	12,163	24,326	17,756	17,756	35,512	5,593	5,593	11,186
		2030년	11,834	11,834	23,668	17,284	17,284	34,568	5,450	5,450	10,900

주 : 사업지 첨두시는 18:00~19:00시, 주변가로 첨두시는 08:00~09:00시임
자료 :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2023.02, 대현이앤씨㈜


□ 종합 개선안도
- 상위의결보완('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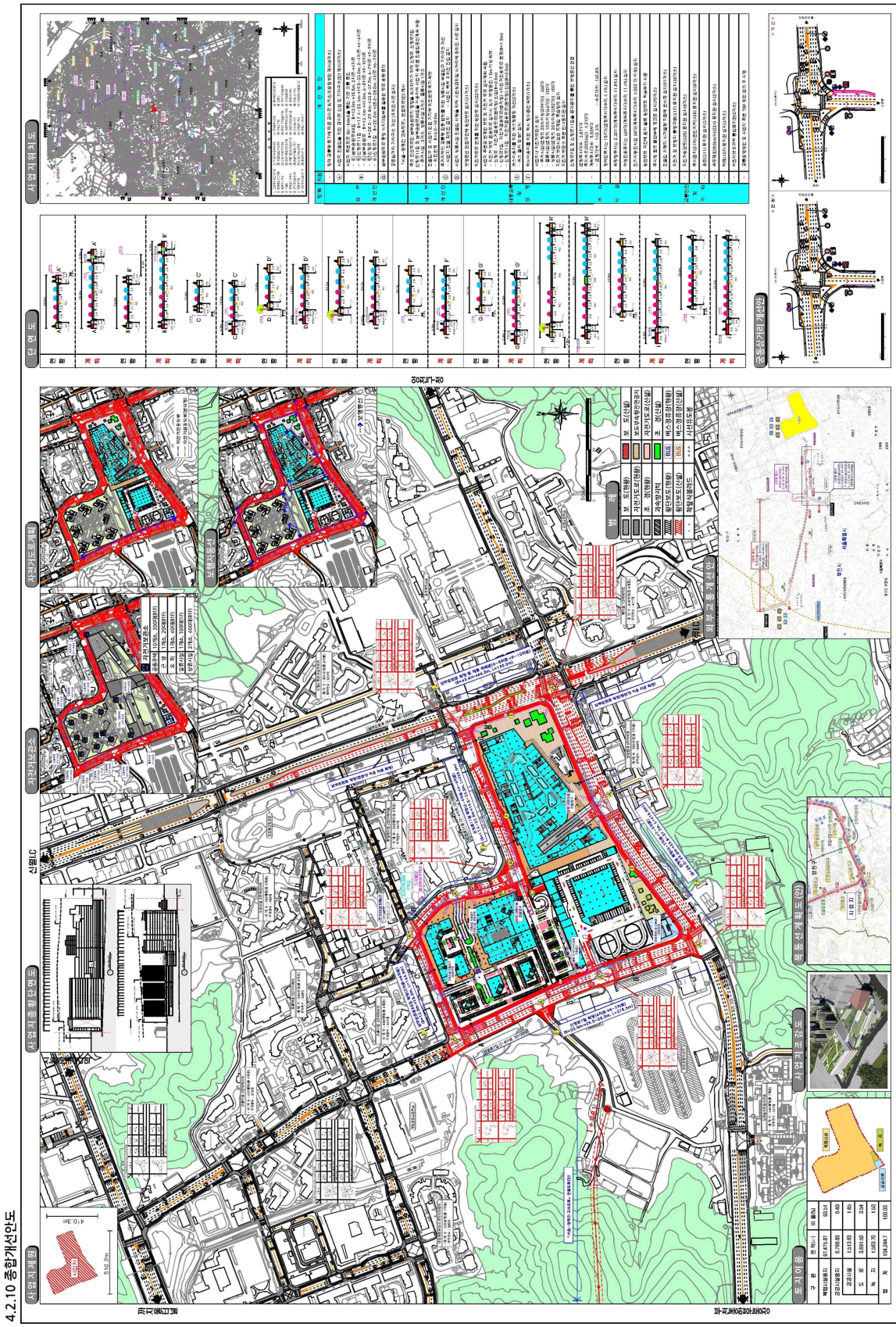
2)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구 분				내 용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167외 10필지
인·허가 관련법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의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사 업 기 간				2020년 ~ 2025년
지 역 지 구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예정), 자동차정류장(화물터미널)
건축 규모	계획 면적	복합시설		97,475.87㎡
		공공 시설	공공시설	1,513.63㎡
			도로	3,691.50㎡
			녹지	1,563.70㎡
			소계	6,768.83㎡
		합계		104,244.70㎡
	건축 계획 면적	주용도		창고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
		건폐율		52.50%
		건축면적		51,179.36㎡
		용적율		352.98%
		연면적		816,069.14㎡(지상 410,596.50㎡, 지하 405,472.64㎡)
		용적율 산정		344,066.20㎡
		규모		지하7층, 지상25층
주차 계획	법 정			3,871대
	수 요			4,212대(2026년)
	계 획			5,509대(법정대비 142.3%, 수요대비 130.8%) ▸ 장애인주차는 157대(법정주차대수의 4.1%) 설치 ▸ 확장형주차는 2,301대(계획주차대수의 41.8%) 설치 ▸ 여성전용주차는 629대(계획주차대수의 11.4%) 설치 ▸ 전기차충전시설 28대(계획주차대수의 1/200 대 이상) 설치

구 분(2028년)			2026년			2030년		
			승용차	택 시	합 계	승용차	택 시	합 계
발생 교통량	평일	주변가로첨두시	1,537	1,447	2,984	1,517	1,429	2,946
		사업지 첨두시	1,823	1,561	3,384	1,796	1,540	3,336
		1일 발생교통량	18,352	18,352	36,704	18,245	18,245	36,490
	일요일	주변가로첨두시	2,411	2,163	4,574	2,369	2,123	4,492
		사업지 첨두시	2,565	2,459	5,024	2,521	2,415	4,936
		1일 발생교통량	21,141	21,141	42,282	20,781	20,781	41,562

주 : 평일 주변가로 첨두시는 18:00~19:00시, 사업지 첨두시는 19:00~20:00시, 일요일 주변가로 첨두시는 13:00~14:00시, 사업지 첨두시는 14:00~15:00시임.

자료 :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2022.03, ㈜동해종합기술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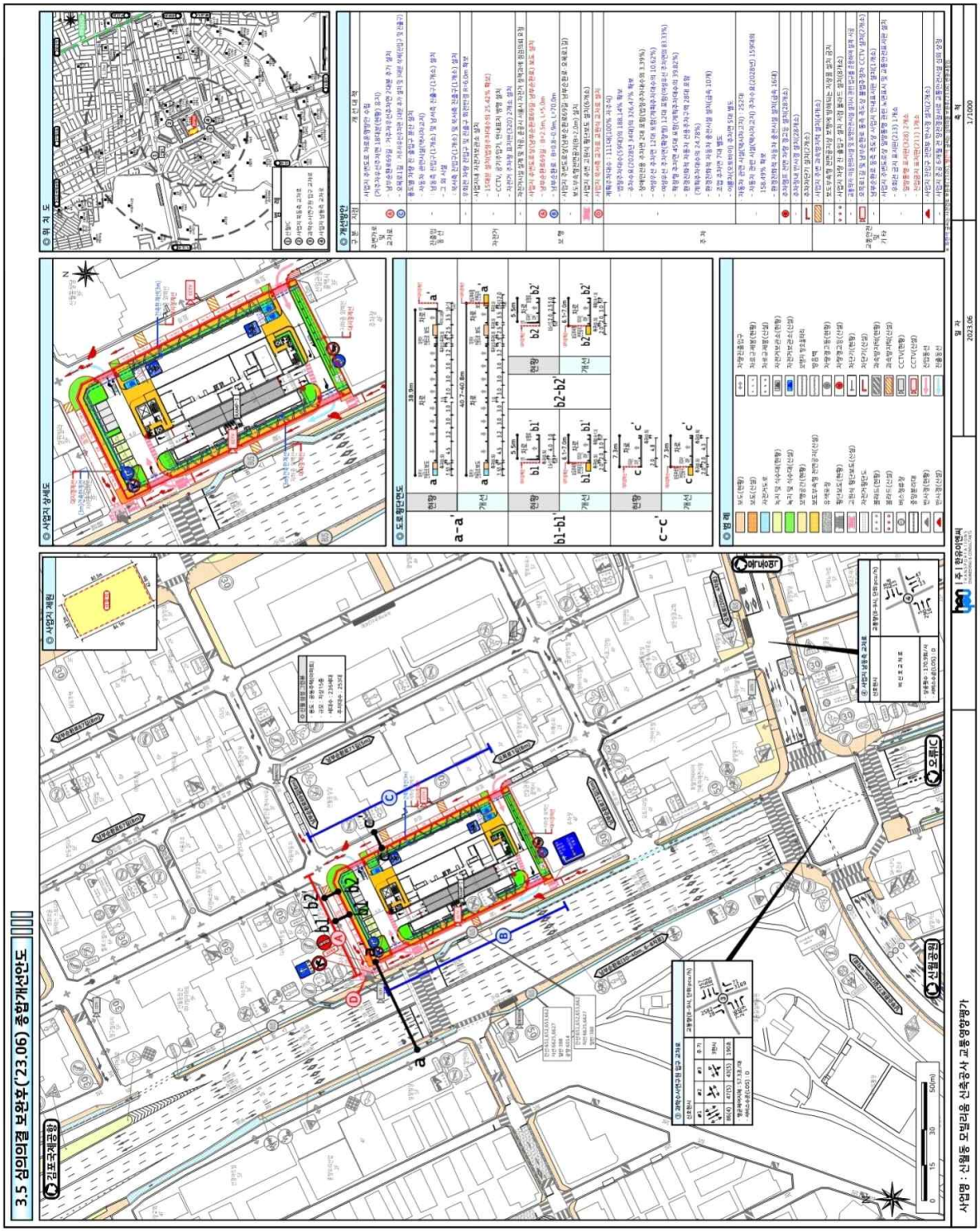

4.2.10 종합개선안도
사업지 계획
사업지 종합 횡단면도
신월IC
지하차도 교통처리
지하차도 교통처리
사업지 진입 위치도
단면도
종합개선안도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협)가기권
2022.03

3) 신월동 모빌리움 신축공사

구 분			내 용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437-1번지 외 3필지
인·허가 관련법규			건축법
사 업 기 간			2023년~2025년
지 역 지 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자동차 관련 시설,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평가대상여부판단			복합용도산정면적(Swa) 10,000㎡이상≒13,896.38㎡로 평가대상 규모 초과
건축 규모	대지면적		3,545.80㎡
	건축면적		1,763.94㎡
	건축 연면적	합 계	16,148.28㎡
		지상층	8,733.15㎡
		지하층	7,415.13㎡
	건폐율		49.75%(법정 50% 이하)
	용적률		246.30%(법정 250% 이하)
	진출입구수		4개소
주차 계획	법 정		59대(자동차 관련 시설 48대, 근린생활시설 2대, 창고시설 9대)
	수 요		34대
	계 획		계획주차대수 : 111대(100% 자주식) - 법정주차(59대)의 188.14% 확보 - 주차수요(2028년 34대)의 326.47% 확보
			자동차 관련 시설(택시차고지) : 252대 - 자동차 관련 시설(택시차고지) 주차수요 (2028년) 159대의 158.49% 확보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급속16개)
자전거보관소			16대분 설치(법정주차대수의 27.12% 확보)

구 분		승용차		택 시		합 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계
2026년	주변가로첨두시	16	-	6	2	22	2	24
	사업지 첨두시	3	1	136	190	139	191	330
	1일 발생교통량	78	78	474	474	552	552	1,104
2028년	주변가로첨두시	16	-	6	2	22	2	24
	사업지 첨두시	3	1	136	190	139	191	330
	1일 발생교통량	77	77	474	474	551	551	1,102

주 : 사업지 첨두시는 7시 이전이며, 주변가로 첨두시는 8~9시임
자료 : 신월동 모빌리움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2023.02, ㈜한유이엔씨


3.5 신호현황 보완후('23.06) 좌회개선안도
김포국제공항
신월시영 1단지
신월시영 2단지
신월시영 3단지
신월시영 4단지
신월시영 5단지
신월시영 6단지
신월시영 7단지
신월시영 8단지
신월시영 9단지
신월시영 10단지
신월시영 11단지
신월시영 12단지
신월시영 13단지
신월시영 14단지
신월시영 15단지
신월시영 16단지
신월시영 17단지
신월시영 18단지
신월시영 19단지
신월시영 20단지
신월시영 21단지
신월시영 22단지
신월시영 23단지
신월시영 24단지
신월시영 25단지
신월시영 26단지
신월시영 27단지
신월시영 28단지
신월시영 29단지
신월시영 30단지
신월시영 31단지
신월시영 32단지
신월시영 33단지
신월시영 34단지
신월시영 35단지
신월시영 36단지
신월시영 37단지
신월시영 38단지
신월시영 39단지
신월시영 40단지
신월시영 41단지
신월시영 42단지
신월시영 43단지
신월시영 44단지
신월시영 45단지
신월시영 46단지
신월시영 47단지
신월시영 48단지
신월시영 49단지
신월시영 50단지
신월시영 51단지
신월시영 52단지
신월시영 53단지
신월시영 54단지
신월시영 55단지
신월시영 56단지
신월시영 57단지
신월시영 58단지
신월시영 59단지
신월시영 60단지
신월시영 61단지
신월시영 62단지
신월시영 63단지
신월시영 64단지
신월시영 65단지
신월시영 66단지
신월시영 67단지
신월시영 68단지
신월시영 69단지
신월시영 70단지
신월시영 71단지
신월시영 72단지
신월시영 73단지
신월시영 74단지
신월시영 75단지
신월시영 76단지
신월시영 77단지
신월시영 78단지
신월시영 79단지
신월시영 80단지
신월시영 81단지
신월시영 82단지
신월시영 83단지
신월시영 84단지
신월시영 85단지
신월시영 86단지
신월시영 87단지
신월시영 88단지
신월시영 89단지
신월시영 90단지
신월시영 91단지
신월시영 92단지
신월시영 93단지
신월시영 94단지
신월시영 95단지
신월시영 96단지
신월시영 97단지
신월시영 98단지
신월시영 99단지
신월시영 100단지
신월시영 101단지
신월시영 102단지
신월시영 103단지
신월시영 104단지
신월시영 105단지
신월시영 106단지
신월시영 107단지
신월시영 108단지
신월시영 109단지
신월시영 110단지
신월시영 111단지
신월시영 112단지
신월시영 113단지
신월시영 114단지
신월시영 115단지
신월시영 116단지
신월시영 117단지
신월시영 118단지
신월시영 119단지
신월시영 120단지
신월시영 121단지
신월시영 122단지
신월시영 123단지
신월시영 124단지
신월시영 125단지
신월시영 126단지
신월시영 127단지
신월시영 128단지
신월시영 129단지
신월시영 130단지
신월시영 131단지
신월시영 132단지
신월시영 133단지
신월시영 134단지
신월시영 135단지
신월시영 136단지
신월시영 137단지
신월시영 138단지
신월시영 139단지
신월시영 140단지
신월시영 141단지
신월시영 142단지
신월시영 143단지
신월시영 144단지
신월시영 145단지
신월시영 146단지
신월시영 147단지
신월시영 148단지
신월시영 149단지
신월시영 150단지
신월시영 151단지
신월시영 152단지
신월시영 153단지
신월시영 154단지
신월시영 155단지
신월시영 156단지
신월시영 157단지
신월시영 158단지
신월시영 159단지
신월시영 160단지
신월시영 161단지
신월시영 162단지
신월시영 163단지
신월시영 164단지
신월시영 165단지
신월시영 166단지
신월시영 167단지
신월시영 168단지
신월시영 169단지
신월시영 170단지
신월시영 171단지
신월시영 172단지
신월시영 173단지
신월시영 174단지
신월시영 175단지
신월시영 176단지
신월시영 177단지
신월시영 178단지
신월시영 179단지
신월시영 180단지
신월시영 181단지
신월시영 182단지
신월시영 183단지
신월시영 184단지
신월시영 185단지
신월시영 186단지
신월시영 187단지
신월시영 188단지
신월시영 189단지
신월시영 190단지
신월시영 191단지
신월시영 192단지
신월시영 193단지
신월시영 194단지
신월시영 195단지
신월시영 196단지
신월시영 197단지
신월시영 198단지
신월시영 199단지
신월시영 200단지
신월시영 201단지
신월시영 202단지
신월시영 203단지
신월시영 204단지
신월시영 205단지
신월시영 206단지
신월시영 207단지
신월시영 208단지
신월시영 209단지
신월시영 210단지
신월시영 211단지
신월시영 212단지
신월시영 213단지
신월시영 214단지
신월시영 215단지
신월시영 216단지
신월시영 217단지
신월시영 218단지
신월시영 219단지
신월시영 220단지
신월시영 221단지
신월시영 222단지
신월시영 223단지
신월시영 224단지
신월시영 225단지
신월시영 226단지
신월시영 227단지
신월시영 228단지
신월시영 229단지
신월시영 230단지
신월시영 231단지
신월시영 232단지
신월시영 233단지
신월시영 234단지
신월시영 235단지
신월시영 236단지
신월시영 237단지
신월시영 238단지
신월시영 239단지
신월시영 240단지
신월시영 241단지
신월시영 242단지
신월시영 243단지
신월시영 244단지
신월시영 245단지
신월시영 246단지
신월시영 247단지
신월시영 248단지
신월시영 249단지
신월시영 250단지
신월시영 251단지
신월시영 252단지
신월시영 253단지
신월시영 254단지
신월시영 255단지
신월시영 256단지
신월시영 257단지
신월시영 258단지
신월시영 259단지
신월시영 260단지
신월시영 261단지
신월시영 262단지
신월시영 263단지
신월시영 264단지
신월시영 265단지
신월시영 266단지
신월시영 267단지
신월시영 268단지
신월시영 269단지
신월시영 270단지
신월시영 271단지
신월시영 272단지
신월시영 273단지
신월시영 274단지
신월시영 275단지
신월시영 276단지
신월시영 277단지
신월시영 278단지
신월시영 279단지
신월시영 280단지
신월시영 281단지
신월시영 282단지
신월시영 283단지
신월시영 284단지
신월시영 285단지
신월시영 286단지
신월시영 287단지
신월시영 288단지
신월시영 289단지
신월시영 290단지
신월시영 291단지
신월시영 292단지
신월시영 293단지
신월시영 294단지
신월시영 295단지
신월시영 296단지
신월시영 297단지
신월시영 298단지
신월시영 299단지
신월시영 300단지
신월시영 301단지
신월시영 302단지
신월시영 303단지
신월시영 304단지
신월시영 305단지
신월시영 306단지
신월시영 307단지
신월시영 308단지
신월시영 309단지
신월시영 310단지
신월시영 311단지
신월시영 312단지
신월시영 313단지
신월시영 314단지
신월시영 315단지
신월시영 316단지
신월시영 317단지
신월시영 318단지
신월시영 319단지
신월시영 320단지
신월시영 321단지
신월시영 322단지
신월시영 323단지
신월시영 324단지
신월시영 325단지
신월시영 326단지
신월시영 327단지
신월시영 328단지
신월시영 329단지
신월시영 330단지
신월시영 331단지
신월시영 332단지
신월시영 333단지
신월시영 334단지
신월시영 335단지
신월시영 336단지
신월시영 337단지
신월시영 338단지
신월시영 339단지
신월시영 340단지
신월시영 341단지
신월시영 342단지
신월시영 343단지
신월시영 344단지
신월시영 345단지
신월시영 346단지
신월시영 347단지
신월시영 348단지
신월시영 349단지
신월시영 350단지
신월시영 351단지
신월시영 352단지
신월시영 353단지
신월시영 354단지
신월시영 355단지
신월시영 356단지
신월시영 357단지
신월시영 358단지
신월시영 359단지
신월시영 360단지
신월시영 361단지
신월시영 362단지
신월시영 363단지
신월시영 364단지
신월시영 365단지
신월시영 366단지
신월시영 367단지
신월시영 368단지
신월시영 369단지
신월시영 370단지
신월시영 371단지
신월시영 372단지
신월시영 373단지
신월시영 374단지
신월시영 375단지
신월시영 376단지
신월시영 377단지
신월시영 378단지
신월시영 379단지
신월시영 380단지
신월시영 381단지
신월시영 382단지
신월시영 383단지
신월시영 384단지
신월시영 385단지
신월시영 386단지
신월시영 387단지
신월시영 388단지
신월시영 389단지
신월시영 390단지
신월시영 391단지
신월시영 392단지
신월시영 393단지
신월시영 394단지
신월시영 395단지
신월시영 396단지
신월시영 397단지
신월시영 398단지
신월시영 399단지
신월시영 400단지
신월시영 401단지
신월시영 402단지
신월시영 403단지
신월시영 404단지
신월시영 405단지
신월시영 406단지
신월시영 407단지
신월시영 408단지
신월시영 409단지
신월시영 410단지
신월시영 411단지
신월시영 412단지
신월시영 413단지
신월시영 414단지
신월시영 415단지
신월시영 416단지
신월시영 417단지
신월시영 418단지
신월시영 419단지
신월시영 420단지
신월시영 421단지
신월시영 422단지
신월시영 423단지
신월시영 424단지
신월시영 425단지
신월시영 426단지
신월시영 427단지
신월시영 428단지
신월시영 429단지
신월시영 430단지
신월시영 431단지
신월시영 432단지
신월시영 433단지
신월시영 434단지
신월시영 435단지
신월시영 436단지
신월시영 437단지
신월시영 438단지
신월시영 439단지
신월시영 440단지
신월시영 441단지
신월시영 442단지
신월시영 443단지
신월시영 444단지
신월시영 445단지
신월시영 446단지
신월시영 447단지
신월시영 448단지
신월시영 449단지
신월시영 450단지
신월시영 451단지
신월시영 452단지
신월시영 453단지
신월시영 454단지
신월시영 455단지
신월시영 456단지
신월시영 457단지
신월시영 458단지
신월시영 459단지
신월시영 460단지
신월시영 461단지
신월시영 462단지
신월시영 463단지
신월시영 464단지
신월시영 465단지
신월시영 466단지
신월시영 467단지
신월시영 468단지
신월시영 469단지
신월시영 470단지
신월시영 471단지
신월시영 472단지
신월시영 473단지
신월시영 474단지
신월시영 475단지
신월시영 476단지
신월시영 477단지
신월시영 478단지
신월시영 479단지
신월시영 480단지
신월시영 481단지
신월시영 482단지
신월시영 483단지
신월시영 484단지
신월시영 485단지
신월시영 486단지
신월시영 487단지
신월시영 488단지
신월시영 489단지
신월시영 490단지
신월시영 491단지
신월시영 492단지
신월시영 493단지
신월시영 494단지
신월시영 495단지
신월시영 496단지
신월시영 497단지
신월시영 498단지
신월시영 499단지
신월시영 500단지
신월시영 501단지
신월시영 502단지
신월시영 503단지
신월시영 504단지
신월시영 505단지
신월시영 506단지
신월시영 507단지
신월시영 508단지
신월시영 509단지
신월시영 510단지
신월시영 511단지
신월시영 512단지
신월시영 513단지
신월시영 514단지
신월시영 515단지
신월시영 516단지
신월시영 517단지
신월시영 518단지
신월시영 519단지
신월시영 520단지
신월시영 521단지
신월시영 522단지
신월시영 523단지
신월시영 524단지
신월시영 525단지
신월시영 526단지
신월시영 527단지
신월시영 528단지
신월시영 529단지
신월시영 530단지
신월시영 531단지
신월시영 532단지
신월시영 533단지
신월시영 534단지
신월시영 535단지
신월시영 536단지
신월시영 537단지
신월시영 538단지
신월시영 539단지
신월시영 540단지
신월시영 541단지
신월시영 542단지
신월시영 543단지
신월시영 544단지
신월시영 545단지
신월시영 546단지
신월시영 547단지
신월시영 548단지
신월시영 549단지
신월시영 550단지
신월시영 551단지
신월시영 552단지
신월시영 553단지
신월시영 554단지
신월시영 555단지
신월시영 556단지
신월시영 557단지
신월시영 558단지
신월시영 559단지
신월시영 560단지
신월시영 561단지
신월시영 562단지
신월시영 563단지
신월시영 564단지
신월시영 565단지
신월시영 566단지
신월시영 567단지
신월시영 568단지
신월시영 569단지
신월시영 570단지
신월시영 571단지
신월시영 572단지
신월시영 573단지
신월시영 574단지
신월시영 575단지
신월시영 576단지
신월시영 577단지
신월시영 578단지
신월시영 579단지
신월시영 580단지
신월시영 581단지
신월시영 582단지
신월시영 583단지
신월시영 584단지
신월시영 585단지
신월시영 586단지
신월시영 587단지
신월시영 588단지
신월시영 589단지
신월시영 590단지
신월시영 591단지
신월시영 592단지
신월시영 593단지
신월시영 594단지
신월시영 595단지
신월시영 596단지
신월시영 597단지
신월시영 598단지
신월시영 599단지
신월시영 600단지
신월시영 601단지
신월시영 602단지
신월시영 603단지
신월시영 604단지
신월시영 605단지
신월시영 606단지
신월시영 607단지
신월시영 608단지
신월시영 609단지
신월시영 610단지
신월시영 611단지
신월시영 612단지
신월시영 613단지
신월시영 614단지
신월시영 615단지
신월시영 616단지
신월시영 617단지
신월시영 618단지
신월시영 619단지
신월시영 620단지
신월시영 621단지
신월시영 622단지
신월시영 623단지
신월시영 624단지
신월시영 625단지
신월시영 626단지
신월시영 627단지
신월시영 628단지
신월시영 629단지
신월시영 630단지
신월시영 631단지
신월시영 632단지
신월시영 633단지
신월시영 634단지
신월시영 635단지
신월시영 636단지
신월시영 637단지
신월시영 638단지
신월시영 639단지
신월시영 640단지
신월시영 641단지
신월시영 642단지
신월시영 643단지
신월시영 644단지
신월시영 645단지
신월시영 646단지
신월시영 647단지
신월시영 648단지
신월시영 649단지
신월시영 650단지
신월시영 651단지
신월시영 652단지
신월시영 653단지
신월시영 654단지
신월시영 655단지
신월시영 656단지
신월시영 657단지
신월시영 658단지
신월시영 659단지
신월시영 660단지
신월시영 661단지
신월시영 662단지
신월시영 663단지
신월시영 664단지
신월시영 665단지
신월시영 666단지
신월시영 667단지
신월시영 668단지
신월시영 669단지
신월시영 670단지
신월시영 671단지
신월시영 672단지
신월시영 673단지
신월시영 674단지
신월시영 675단지
신월시영 676단지
신월시영 677단지
신월시영 678단지
신월시영 679단지
신월시영 680단지
신월시영 681단지
신월시영 682단지
신월시영 683단지
신월시영 684단지
신월시영 685단지
신월시영 686단지
신월시영 687단지
신월시영 688단지
신월시영 689단지
신월시영 690단지
신월시영 691단지
신월시영 692단지
신월시영 693단지
신월시영 694단지
신월시영 695단지
신월시영 696단지
신월시영 697단지
신월시영 698단지
신월시영 699단지
신월시영 700단지
신월시영 701단지
신월시영 702단지
신월시영 703단지
신월시영 704단지
신월시영 705단지
신월시영 706단지
신월시영 707단지
신월시영 708단지
신월시영 709단지
신월시영 710단지
신월시영 711단지
신월시영 712단지
신월시영 713단지
신월시영 714단지
신월시영 715단지
신월시영 716단지
신월시영 717단지
신월시영 718단지
신월시영 719단지
신월시영 720단지
신월시영 721단지
신월시영 722단지
신월시영 723단지
신월시영 724단지
신월시영 725단지
신월시영 726단지
신월시영 727단지
신월시영 728단지
신월시영 729단지
신월시영 730단지
신월시영 731단지
신월시영 732단지
신월시영 733단지
신월시영 734단지
신월시영 735단지
신월시영 736단지
신월시영 737단지
신월시영 738단지
신월시영 739단지
신월시영 740단지
신월시영 741단지
신월시영 742단지
신월시영 743단지
신월시영 744단지
신월시영 745단지
신월시영 746단지
신월시영 747단지
신월시영 748단지
신월시영 749단지
신월시영 750단지
신월시영 751단지
신월시영 752단지
신월시영 753단지
신월시영 754단지
신월시영 755단지
신월시영 756단지
신월시영 757단지
신월시영 758단지
신월시영 759단지
신월시영 760단지
신월시영 761단지
신월시영 762단지
신월시영 763단지
신월시영 764단지
신월시영 765단지
신월시영 766단지
신월시영 767단지
신월시영 768단지
신월시영 769단지
신월시영 770단지
신월시영 771단지
신월시영 772단지
신월시영 773단지
신월시영 774단지
신월시영 775단지
신월시영 776단지
신월시영 777단지
신월시영 778단지
신월시영 779단지
신월시영 780단지
신월시영 781단지
신월시영 782단지
신월시영 783단지
신월시영 784단지
신월시영 785단지
신월시영 786단지
신월시영 787단지
신월시영 788단지
신월시영 789단지
신월시영 790단지
신월시영 791단지
신월시영 792단지
신월시영 793단지
신월시영 794단지
신월시영 795단지
신월시영 796단지
신월시영 797단지
신월시영 798단지
신월시영 799단지
신월시영 800단지
신월시영 801단지
신월시영 802단지
신월시영 803단지
신월시영 804단지
신월시영 805단지
신월시영 806단지
신월시영 807단지
신월시영 808단지
신월시영 809단지
신월시영 810단지
신월시영 811단지
신월시영 812단지
신월시영 813단지
신월시영 814단지
신월시영 815단지
신월시영 816단지
신월시영 817단지
신월시영 818단지
신월시영 819단지
신월시영 820단지
신월시영 821단지
신월시영 822단지
신월시영 823단지
신월시영 824단지
신월시영 825단지
신월시영 826단지
신월시영 827단지
신월시영 828단지
신월시영 829단지
신월시영 830단지
신월시영 831단지
신월시영 832단지
신월시영 833단지
신월시영 834단지
신월시영 835단지
신월시영 836단지
신월시영 837단지
신월시영 838단지
신월시영 839단지
신월시영 840단지
신월시영 841단지
신월시영 842단지
신월시영 843단지
신월시영 844단지
신월시영 845단지
신월시영 846단지
신월시영 847단지
신월시영 848단지
신월시영 849단지
신월시영 850단지
신월시영 851단지
신월시영 852단지
신월시영 853단지
신월시영 854단지
신월시영 855단지
신월시영 856단지
신월시영 857단지
신월시영 858단지
신월시영 859단지
신월시영 860단지
신월시영 861단지
신월시영 862단지
신월시영 863단지
신월시영 864단지
신월시영 865단지
신월시영 866단지
신월시영 867단지
신월시영 868단지
신월시영 869단지
신월시영 870단지
신월시영 871단지
신월시영 872단지
신월시영 873단지
신월시영 874단지
신월시영 875단지
신월시영 876단지
신월시영 877단지
신월시영 878단지
신월시영 879단지
신월시영 880단지
신월시영 881단지
신월시영 882단지
신월시영 883단지
신월시영 884단지
신월시영 885단지
신월시영 886단지
신월시영 887단지
신월시영 888단지
신월시영 889단지
신월시영 890단지
신월시영 891단지
신월시영 892단지
신월시영 893단지
신월시영 894단지
신월시영 895단지
신월시영 896단지
신월시영 897단지
신월시영 898단지
신월시영 899단지
신월시영 900단지
신월시영 901단지
신월시영 902단지
신월시영 903단지
신월시영 904단지
신월시영 905단지
신월시영 906단지
신월시영 907단지
신월시영 908단지
신월시영 909단지
신월시영 910단지
신월시영 911단지
신월시영 912단지
신월시영 913단지
신월시영 914단지
신월시영 915단지
신월시영 916단지
신월시영 917단지
신월시영 918단지
신월시영 919단지
신월시영 920단지
신월시영 921단지
신월시영 922단지
신월시영 923단지
신월시영 924단지
신월시영 925단지
신월시영 926단지
신월시영 927단지
신월시영 928단지
신월시영 929단지
신월시영 930단지
신월시영 931단지
신월시영 932단지
신월시영 933단지
신월시영 934단지
신월시영 935단지
신월시영 936단지
신월시영 937단지
신월시영 938단지
신월시영 939단지
신월시영 940단지
신월시영 941단지
신월시영 942단지
신월시영 943단지
신월시영 944단지
신월시영 945단지
신월시영 946단지
신월시영 947단지
신월시영 948단지
신월시영 949단지
신월시영 950단지
신월시영 951단지
신월시영 952단지
신월시영 953단지
신월시영 954단지
신월시영 955단지
신월시영 956단지
신월시영 957단지
신월시영 958단지
신월시영 959단지
신월시영 960단지
신월시영 961단지
신월시영 962단지
신월시영 963단지
신월시영 964단지
신월시영 965단지
신월시영 966단지
신월시영 967단지
신월시영 968단지
신월시영 969단지
신월시영 970단지
신월시영 971단지
신월시영 972단지
신월시영 973단지
신월시영 974단지
신월시영 975단지
신월시영 976단지
신월시영 977단지
신월시영 978단지
신월시영 979단지
신월시영 980단지
신월시영 981단지
신월시영 982단지
신월시영 983단지
신월시영 984단지
신월시영 985단지
신월시영 986단지
신월시영 987단지
신월시영 988단지
신월시영 989단지
신월시영 990단지
신월시영 991단지
신월시영 992단지
신월시영 993단지
신월시영 994단지
신월시영 995단지
신월시영 996단지
신월시영 997단지
신월시영 998단지
신월시영 999단지
신월시영 1000단지

4. 교통수요예측

가. 사업미시행시 교통수요예측

1) 예측방법 및 기본가정

- 사업미시행시 교통수요예측은 본 사업시설이 건설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주변개발사업과 도시성장을 고려하여 사업지 주변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을 예측하는 것임
- 먼저 각 교통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는데 사업완공년도(2030년)를 기준으로, 사업완료 후 1년(2031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사업지 주변 교통영향을 분석하였음
- 장래 사업미시행시 교통량은 사업지 주변 활동인구의 통행패턴의 변화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본 분석에서는 『2022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2022.12,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시한 서울시 수단통행 증가율을 토대로 장래 자연증가 교통량을 예측하였음
- 또한, 교통영향의 분석은 사업미시행시에 주변지역의 자연증가 및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을 주변가로에 배분시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하므로, 본 분석에서는 본 사업지가 속한 서울시의 『2022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2022.12,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시된 지표를 토대로 각 목표년도별 자연증가된 교통량을 예측하는 한편, 사업지 주변의 장래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사업미시행시 장래 주변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을 예측하였음

2) 서울시 장래 도시지표 전망

- 교통수요예측과 가장 밀접한 도시성장지표 인구와 자동차 보유대수를 들 수 있다. 인구는 도시권의 규모와 성장잠재력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자동차 보유대수는 도시권의 경제력과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서 이들은 교통정책을 입안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 『2022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2022.12,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예측한 장래 서울시 사회경제지표, 목적통행량, 수단통행량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기준년도인 2023년 인구수 9,447,034인에서 장래 2031년 인구수 9,114,789인으로 예측됨

[서울시 인구수 및 승용차보유대수 예측]

구 분	2019년	2023년*	2025년	2030년	2031년*	2035년	연평균증가율(%)
							'23-'31
인구수(인)	9,639,541	9,447,034	9,352,227	9,155,502	9,114,789	8,953,738	-0.45
종사자수(인)	5,210,936	5,367,983	5,448,273	5,420,988	5,390,951	5,272,457	0.05
취업자수(인)	4,614,933	4,633,991	4,643,550	4,501,166	4,458,631	4,292,473	-0.48
학생수(인)	1,394,340	1,301,159	1,256,930	1,141,385	1,128,219	1,077,055	-1.77

자료 : 『2022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2022.12, 한국교통연구원』
주 : *는 목표년도에 맞게 보정한 수치임

■ 서울시의 총 목적통행량을 살펴보면, 『2022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2022.12,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시한 서울관련 통행량을 기준으로 2023년 25,441,194 통행/일에서 최종목표년도인 2031년에 24,921,065통행/일로 -0.26%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예측됨

■ 통행목적별 구성비는 본 분석의 장래 2031년에 통근통행이 48.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정기반 기타통행 19.49%, 통학통행 7.79% 순으로 예측됨

[서울시 목적별 통행량 예측]

구 분			2019년	2023년*	2025년	2030년	2031년*	2035년	연평균증가율(%) '23-'31
통행량(통행)	가정기반	통근	11,978,274	12,341,765	12,527,626	12,297,780	12,205,000	11,840,828	-0.14
		통학	2,716,375	2,339,979	2,171,816	1,971,002	1,941,212	1,826,484	-2.31
		학원	915,171	802,519	751,505	680,868	668,082	619,293	-2.27
		쇼핑	1,627,858	1,684,347	1,713,323	1,764,590	1,769,687	1,790,224	0.62
		기타	4,765,767	4,827,602	4,858,819	4,865,484	4,857,269	4,824,545	0.08
	비가정기반	업무	1,811,669	1,905,321	1,953,947	1,944,216	1,933,451	1,890,983	0.18
		쇼핑	233,381	235,559	236,656	229,279	227,886	222,396	-0.41
		기타	1,196,461	1,304,102	1,361,500	1,326,467	1,318,478	1,287,002	0.14
	계		25,244,957	25,441,194	25,575,193	25,079,687	24,921,065	24,301,755	-0.26
구성비(%)	가정기반	통근	47.44	48.50	48.98	49.04	48.98	48.71	-
		통학	10.76	9.20	8.49	7.86	7.79	7.52	-
		학원	3.63	3.15	2.94	2.71	2.68	2.55	-
		쇼핑	6.45	6.62	6.70	7.04	7.10	7.37	-
		기타	18.88	18.98	19.00	19.40	19.49	19.85	-
	업무기반	업무	7.18	7.49	7.64	7.75	7.76	7.78	-
		쇼핑	0.92	0.93	0.93	0.91	0.91	0.92	-
		기타	4.74	5.13	5.32	5.29	5.29	5.30	-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자료 : 『2022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2022.12, 한국교통연구원』
주 : *는 본 분석년도로 보정한 수치임

- 서울시의 총 수단통행량을 살펴보면, 『2022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2022.12,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시한 서울관련 통행량을 기준으로 2023년 25,457,119 통행/일에서 최종목표년도인 2031년에 24,922,075통행/일로 -0.27%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예측됨
- 도보/기타를 제외한 수단별 통행량 중 2023년 승용차의 수단분담률 28.9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장래 2031년에 승용차의 수단분담률이 27.90%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됨

[서울시 수단별 통행량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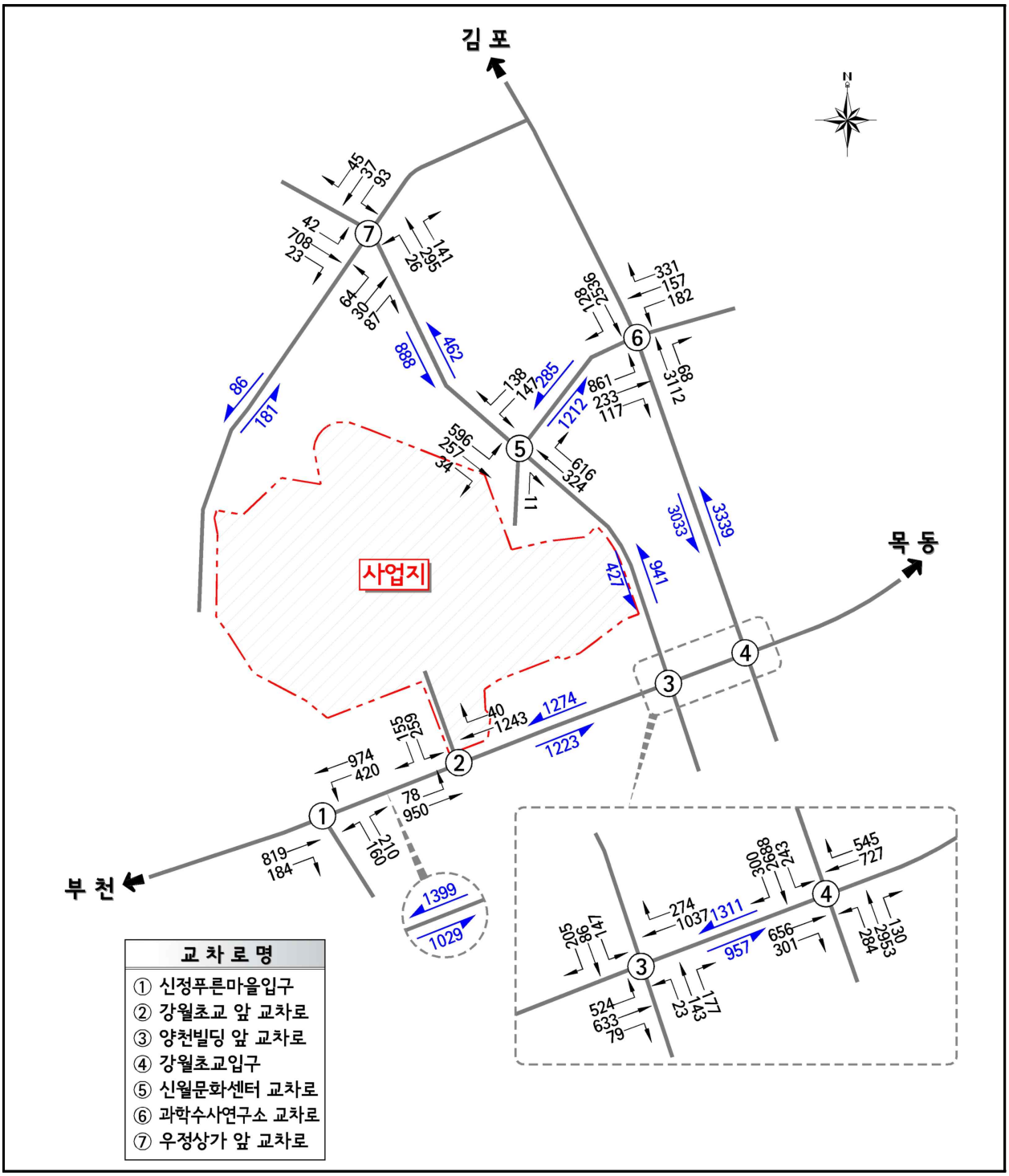
구 분		2019년	2023년*	2025년	2030년	2031년*	2035년	연평균증가율(%) '23-'31
통행량(통행)	승용차	7,603,929	7,360,250	7,241,354	7,002,017	6,953,766	6,764,065	-0.71
	택 시	5,912,084	5,953,022	5,973,597	5,829,325	5,803,198	5,699,858	-0.32
	버 스	1,676,255	1,693,309	1,701,901	1,651,357	1,642,029	1,605,241	-0.38
	지하철	3,905,499	3,922,055	3,930,358	3,847,935	3,822,409	3,721,988	-0.32
	버스+지하철	4,403,097	4,661,246	4,795,942	4,801,546	4,766,232	4,627,553	0.28
	기 타	1,744,079	1,867,237	1,932,040	1,947,507	1,934,441	1,883,050	0.44
	합 계	25,244,943	25,457,119	25,575,193	25,079,687	24,922,075	24,301,755	-0.27
분담율(%)	승용차	30.12	28.92	28.32	27.92	27.90	27.83	-
	버 스	23.42	23.38	23.36	23.24	23.29	23.45	-
	지하철	6.64	6.65	6.65	6.58	6.59	6.61	-
	버스+지하철	15.47	15.41	15.37	15.34	15.34	15.32	-
	택 시	17.44	18.31	18.75	19.15	19.12	19.04	-
	기 타	6.91	7.33	7.55	7.77	7.76	7.75	-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자료 : 『2022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2022.12, 한국교통연구원』
주 : *는 본 분석년도로 보정한 수치임

3) 장래 사업미시행시 교통량 및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 본 분석에서는 『2022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2022.12,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단통행 연평균 증가율 -0.27%(2023년~2031년)를 적용하였으며, 장래 사업미시행시 교통량 예측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장래 사업미시행시 교통량도(2031년 08~09시, 단위 : pcu/h) 〉



■ 장래 사업미시행시 주변가로의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평균통행속도가 15.57~27.82km/h로 서비스수준이 "B"~"E"로 분석되었음

[주변가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2031년 08~09시)]

구 간			연장 (km)	교통량 (pcu/h)	평균통행속도 (km/h)	서비스 수준
① 신정푸른마을 입구	→	② 강월초교 앞 교차로	0.16	1,029	24.80	D
② 강월초교 앞 교차로	→	① 신정푸른마을 입구	0.16	1,399	13.52	E
② 강월초교 앞 교차로	→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0.30	1,223	22.57	D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	② 강월초교 앞 교차로	0.30	1,274	24.28	D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	④ 강월초교 입구	0.30	957	13.48	E
④ 강월초교 입구	→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0.30	1,311	21.20	D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0.50	941	27.24	D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0.50	427	15.16	E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	⑦ 우성상가 앞 교차로	0.36	462	26.84	D
⑦ 우성상가 앞 교차로	→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0.36	888	27.82	D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	⑥ 과학수사연구소 교차로	0.30	1,212	12.57	E
⑥ 과학수사연구소 교차로	→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0.30	285	13.90	E
④ 강월초교 입구	→	⑥ 과학수사연구소 교차로	0.46	3,339	22.84	D
⑥ 과학수사연구소 교차로	→	④ 강월초교 입구	0.46	3,033	27.09	D

■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신호교차로의 평균제어지체가 20.4~56.7sec/pcu로서 서비스수준 "B"~"D"로 분석되었음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2031년 08~09시)]

교 차 로 명	교차로 교통량(pcu/h)	평균제어지체(sec/pcu)	서비스 수준
① 신정푸른마을 입구	2,773	32.5	C
② 강월초교 앞 교차로	2,725	25.9	B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3,328	55.9	D
④ 강월초교 입구	8,827	46.6	C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2,123	20.4	B
⑥ 과학수사연구소 교차로	7,725	56.7	D
⑦ 우성상가 앞 교차로	1,591	31.8	C

나. 사업시행시 교통수요예측

1) 통행발생

- 통행발생은 4단계 수요예측 방법 중 1단계로서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활동인구를 예측하여 이를 통행량으로 환산하는 단계임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활동인구는 상근인구와 이용인구로 구분되며, 본 분석에서는 장래 사업의 통행발생량을 예측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용도별 면적을 분석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사시설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활동인구의 원단위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본 사업지의 활동인구를 추정하였음

[사업지내 세대수 현황]

세대수(세대)	인구수(인)
143	303

[공동주택 분양면적표]

구 분		세대수 (세대)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	주차장 (㎡)	분양면적 (㎡)
임대	20평형	71	49.80	17.90	67.70	1.93	40.33	109.96
	24평형	87	59.95	21.50	81.45	2.32	48.56	132.33
	34평형	38	84.95	28.00	112.95	3.30	68.80	185.05
분양	20평형	379	49.80	17.90	67.70	1.93	40.33	109.96
	24평형	1,780	59.95	21.50	81.45	2.32	48.56	132.33
	34평형	718	84.95	28.00	112.95	3.30	68.80	185.05
	44평형	76	108.98	36.60	145.58	4.23	88.27	238.08
합계		3,149	206,841.33	72,145.10	278,986.43	8,030.00	167,526.80	454,543.23

[용도별 면적표]

구 분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	주차장 (㎡)	계약면적 (㎡)
공동주택	206,841.33	72,145.10	278,986.43	8,030.00	167,526.80	454,543.23
근린생활시설	3,753.20	1,608.50	5,361.70	585.75	1,862.00	7,809.45
계	210,594.53	73,753.60	284,348.13	8,615.75	169,388.80	462,352.68

■ 사업시행시 활동인구 예측시 사업지와 유사한 시설의 문헌조사를 통하여 공동주택은 각 형별로 세대당 원단위를, 근린생활시설은 단위면적당 활동인구 원단위를 가중평균하여 적용하였음

[활동인구 원단위]

구 분			세대수,연면적 (세대수,㎡)	상주/상근 (인)	방문/이용 (인)	원단위(인/세대, 인/1,000㎡)	
						상주/상근	방문/이용
공동주택	주거1	신림현대아파트	435	1,322	444	3.04	1.02
		영등포중흥S클래스	52	156	49	3.00	0.95
		당산센트럴IPARK	49	147	49	3.00	1.01
		신동아4차아파트	135	425	132	3.15	0.98
		적용치	-	-	-	3.06	1.01
	주거2	신림현대아파트	269	853	277	3.17	1.03
		래미안목동아델리체	284	909	287	3.20	1.01
		당산센트럴IPARK	200	648	206	3.24	1.03
		신길우성2차아파트	120	377	127	3.14	1.06
		적용치	-	-	-	3.19	1.03
	주거3	신림현대아파트	330	1,115	356	3.38	1.08
		래미안목동아델리체	848	2,892	899	3.41	1.06
		유원제일2차아파트	176	586	190	3.33	1.08
		신길우성2차아파트	605	2,081	653	3.44	1.08
		적용치	-	-	-	3.41	1.07
	주거4	신림현대아파트	270	991	297	3.67	1.10
		목동힐스테이트	154	604	169	3.92	1.10
		유원제일2차아파트	234	838	255	3.58	1.09
		보라매경남아너스빌	88	349	99	3.97	1.13
		적용치	-	-	-	3.73	1.10
근린생활시설		신림현대아파트	1,968.00	48	511	24.39	259.72
		래미안목동아델리체	3,294.26	88	913	26.80	277.00
		당산센트럴IPARK	1,882.02	49	480	25.80	255.09
		신길우성2차아파트	1,972.96	57	550	28.89	278.87
		적용치	-	-	-	26.53	269.15

자료 : 문헌자료

■ 활동인구 예측은 『2022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2022.12,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시한 목적통행증가율 -0.26%('23~'31)를 적용하였으며, 사업미시행시 방문인구는 세대당 1인으로 가정하여 장래 목표연도별 활동인구를 예측하였음

[사업지 1일 활동인구 예측(사업미시행시, 2031년)]

구 분	세대수(세대), 연면적(㎡)	발생 원단위 (인/세대, 인/1,000㎡)		활동인구(인/일)			합 계	
		상주/상근	방문/이용	상주/상근	방문/이용			
					2023년	2031년	2023년	2031년
공동주택	2,256	2.09	1.00	4,715	2,256	2,210	6,971	6,925
합 계	-	-	-	4,715	2,256	2,210	6,971	6,925

[사업지 1일 활동인구 예측(사업시행시, 2031년)]

(단위 : 인/일)

구 분		세대수(세대), 연면적(㎡)	발생 원단위 (인/세대, 인/1,000㎡)		활동인구(인/일)			합 계	
			상주/상근	방문/이용	상주/상근	방문/이용			
						2023년	2031년	2023년	2031년
공동주택	주거1	450	3.06	1.01	1,377	455	446	1,832	1,823
	주거2	1,867	3.19	1.03	5,956	1,923	1,883	7,879	7,839
	주거3	756	3.41	1.07	2,578	809	792	3,387	3,370
	주거4	76	3.73	1.10	283	84	82	367	365
	소계	3,149	-	-	10,194	3,271	3,203	13,465	13,397
근린생활시설		5,947.45	26.53	269.15	158	1,601	1,568	1,759	1,726
합 계			-	-	10,352	4,872	4,771	15,224	15,123

■ 본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공동주택 상주인구의 통행량은『2022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2022.12,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시하는 1인당 목적통행수 2031년 2.73통행/인을 적용하였으며, 공동주택 방문인구의 경우 1인당 2.0통행/일을 적용하여 예측하였음

[장래 목표연도별 1일 총 통행량 예측(사업미시행시, 2031년)]

(단위 : 통행/일)

구 분	세대수(세대)	총 통행량		
		상주	방문	합계
공동주택	2,256	12,872	4,420	17,292

[장래 목표연도별 1일 총 통행량 예측(사업시행시, 203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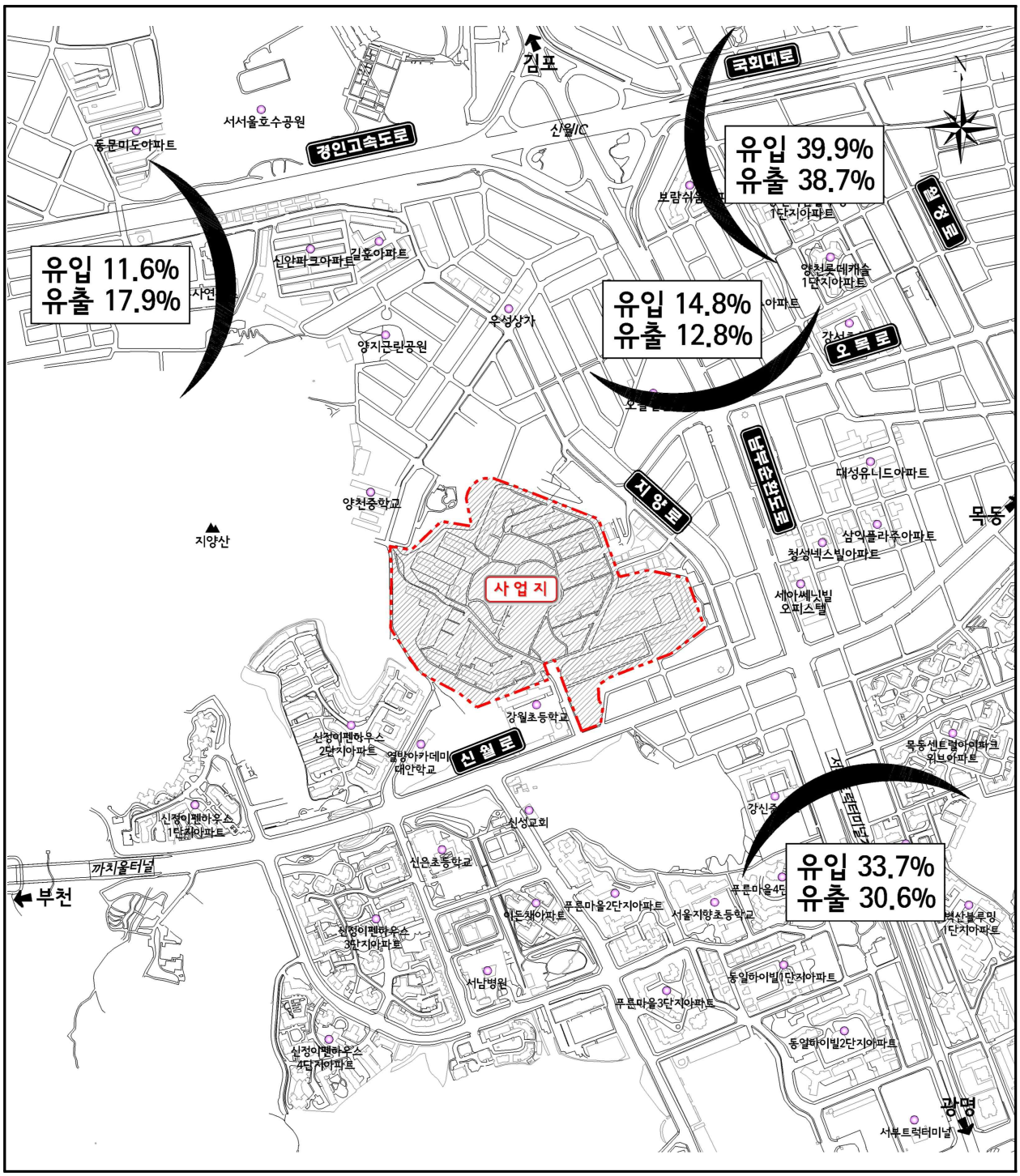
(단위 : 통행/일)

구 분		세대수(세대), 연면적(㎡)	총 통행량		
			상주/상근	방문/이용	합 계
공동주택	주거1	450	3,759	892	4,651
	주거2	1,867	16,260	3,766	20,026
	주거3	756	7,038	1,584	8,622
	주거4	76	773	164	937
	소계	3,149	27,830	6,406	34,236
근린생활시설		5,947.45	316	3,136	3,452
합 계		-	28,146	9,542	37,688

2) 통행분포

- 통행분포란 발생교통량 예측단계에서 추정된 각 죤의 발생과 도착의 통행단을 연결하여 죤간의 통행량을 추정하는 단계임
- 본 분석에서는 유사시설 조사를 통해 본 사업지로의 각 방향별 분포비를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방향별 유출입 분포를 산정하여 그 결과를 사업시행시 유발 교통량 배분시 적용하였음

〈 통행분포도 〉



3) 수단분담

- 교통수단의 선택과정은 본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장래 수단별 통행량을 추정하기 위한 단계로, 활동인구의 장래 통행량을 각 교통수단별로 배분하여 수단별 통행량을 예측할 수 있음
- 본 분석에서 유사시설의 문헌조사를 통하여 수단분담율을 도출하였으며 추정된 수단분담율은 아래와 같음

[유사시설 교통수단분담율 조사결과(2023년, 현황)]

(단위 : %)

구 분			승용차	택시	버스	도시철도	기타	합 계
공동주택	상 주	통 근	33.7	4.9	22.5	29.9	9.0	100.0
		통 학	9.9	3.2	27.6	28.6	30.7	100.0
		기 타	28.4	7.1	23.3	28.2	13.0	100.0
	방 문		30.7	7.0	21.3	25.5	15.5	100.0
근린생활시설	상 근		21.6	6.2	26.4	24.7	21.1	100.0
	이 용		11.6	3.6	11.9	12.6	60.3	100.0

자료 : 문헌자료

- 본 사업지구의 장래 목표년도별 수단분담율은 유사시설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수단분담율을 기준으로 『2022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022.12,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시한 수단분담율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 수단분담율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사업지 장래 목표년도별 교통수단분담률 예측 결과는 다음과 같음

[장래 목표년도별 수단분담율 예측 결과]

(단위 : %)

구 분				승용차	택시	버스	도시철도	기타	합 계
2031년	공동주택	상주	통 근	33.3	4.8	22.2	31.0	8.7	100.0
			통 학	9.9	3.2	27.5	29.9	29.5	100.0
			기 타	28.1	7.0	23.1	29.3	12.5	100.0
		방 문		30.5	6.9	21.1	26.6	14.9	100.0
	근린생활시설	상 근		21.5	6.1	26.3	25.8	20.3	100.0
		이 용		11.7	3.6	12.1	13.4	59.2	100.0

■ 상기에서 예측한 각 목표년도 수단분담율과 앞에서 예측된 총 통행량 예측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지의 교통수단별 유출입 통행량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장래 시간대별·수단별 유출입 통행량(사업미시행시 2031년)]

(단위 : 대/시)

구 분	승용차		택 시		버 스		철 도		기 타		합 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07시 이전	5	108	1	19	4	105	5	133	2	70	17	435
07:00-08:00	20	346	4	64	15	376	19	465	8	276	66	1,527
08:00-09:00	48	436	11	82	36	473	46	584	21	351	162	1,926
09:00-10:00	66	155	15	31	47	139	62	176	29	91	219	592
10:00-11:00	77	111	17	24	56	96	72	121	35	63	257	415
11:00-12:00	93	108	21	24	73	86	91	108	48	55	326	381
12:00-13:00	100	100	24	23	95	77	115	98	73	48	407	346
13:00-14:00	127	109	29	25	108	83	134	105	76	52	474	374
14:00-15:00	144	120	33	28	124	91	153	116	88	58	542	413
15:00-16:00	154	126	36	29	136	95	168	121	95	62	589	433
16:00-17:00	172	122	40	29	166	93	203	117	122	60	703	421
17:00-18:00	202	120	44	27	206	90	252	114	156	56	860	407
18:00-19:00	316	98	60	21	292	71	368	91	196	44	1,232	325
19:00-20:00	313	84	57	18	280	61	358	78	179	38	1,187	279
20:00-21:00	242	62	44	14	214	45	275	57	136	29	911	207
21시 이후	176	50	33	11	165	36	209	46	111	22	694	165
합 계	2,255	2,255	469	469	2,017	2,017	2,530	2,530	1,375	1,375	8,646	8,646

[장래 시간대별·수단별 유출입 통행량(사업시행시 2031년)]

(단위 : 대/시)

구 분	승용차		택 시		버 스		철 도		기 타		합 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07시 이전	14	235	3	41	11	227	14	288	6	152	48	943
07:00-08:00	48	749	11	138	40	814	48	1,007	33	607	180	3,315
08:00-09:00	109	938	25	177	90	1,022	110	1,261	71	773	405	4,171
09:00-10:00	136	324	31	65	106	297	132	375	102	221	507	1,282
10:00-11:00	147	226	34	49	111	201	141	251	117	180	550	907
11:00-12:00	180	213	43	49	148	176	184	220	164	174	719	832
12:00-13:00	195	198	49	47	198	160	236	200	231	176	909	781
13:00-14:00	242	211	58	49	219	168	267	211	224	173	1,010	812
14:00-15:00	272	229	65	54	247	182	302	227	246	181	1,132	873
15:00-16:00	299	236	71	57	275	186	338	233	263	188	1,246	900
16:00-17:00	343	230	80	55	344	182	418	227	329	190	1,514	884
17:00-18:00	413	231	92	54	435	181	528	227	400	187	1,868	880
18:00-19:00	665	194	128	45	624	151	785	188	492	171	2,694	749
19:00-20:00	665	171	121	40	602	135	767	167	446	151	2,601	664
20:00-21:00	513	130	92	31	459	105	587	127	327	116	1,978	509
21시 이후	370	96	69	21	352	74	445	93	247	58	1,483	342
합 계	4,611	4,611	972	972	4,261	4,261	5,302	5,302	3,698	3,698	18,844	18,844

4) 교통수단별 발생교통량 예측

- 상기에서 예측된 수단별 통행량은 Trip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발생교통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각 수단별 평균재차인원을 적용하여야 하나 도보 및 기타통행은 실제 가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지하철과 버스는 노선과 배차간격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외하였음
- 본 분석에서는 승용차/택시에 대해서만 유발교통량을 산출하였으며, 사업목표년도가 단기적이기 때문에 장래에도 평균재차인원은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였음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발생교통량은 활동인구에 차종별 평균재차인원을 적용하여 예측하게 되는데, 본 사업에서 평균재차인원의 산정은 문헌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교통수단별 평균승차인원]

(단위 : 인/대)

구 분		승용차	택 시
공동주택	상주인구	1.42	1.50
	방문인구	1.48	1.55
근린생활시설	상근인구	1.36	1.46
	이용인구	1.43	1.50

자료 : 문헌자료

[장래 시간대별 발생교통량 예측(사업미시행시 2031년)]

(단위 : 대/시)

구 분	승용차		택 시		합 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계
07시 이전	4	76	12	12	16	88	104
07:00-08:00	14	244	42	42	56	286	342
08:00-09:00	34	307	55	55	89	362	451
09:00-10:00	45	108	20	20	65	128	193
10:00-11:00	53	77	16	16	69	93	162
11:00-12:00	64	75	16	16	80	91	171
12:00-13:00	69	69	16	16	85	85	170
13:00-14:00	87	75	19	19	106	94	200
14:00-15:00	99	83	22	22	121	105	226
15:00-16:00	107	87	23	23	130	110	240
16:00-17:00	118	84	26	26	144	110	254
17:00-18:00	141	82	29	29	170	111	281
18:00-19:00	221	67	40	40	261	107	368
19:00-20:00	220	58	38	38	258	96	354
20:00-21:00	170	43	29	29	199	72	271
21시 이후	123	34	22	22	145	56	201
합 계	1,569	1,569	425	425	1,994	1,994	3,988

주 : 1)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는 08~09시임
2) 유출입이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택시는 Back Haul 교통량(귀로교통량)으로 환산하였음

[장래 시간대별 발생교통량 예측(사업시행시 2031년)]

(단위 : 대/시)

구 분	승용차		택 시		합 계		
	유 입	유 출	유 입	유 출	유 입	유 출	계
07시 이전	10	165	27	27	37	192	229
07:00-08:00	34	527	92	92	126	619	745
08:00-09:00	77	660	118	118	195	778	973
09:00-10:00	94	228	43	43	137	271	408
10:00-11:00	101	158	33	33	134	191	325
11:00-12:00	124	148	33	33	157	181	338
12:00-13:00	135	138	32	32	167	170	337
13:00-14:00	168	146	38	38	206	184	390
14:00-15:00	189	158	43	43	232	201	433
15:00-16:00	208	163	47	47	255	210	465
16:00-17:00	239	159	53	53	292	212	504
17:00-18:00	288	160	61	61	349	221	570
18:00-19:00	466	134	85	85	551	219	770
19:00-20:00	467	119	81	81	548	200	748
20:00-21:00	360	90	61	61	421	151	572
21시 이후	260	67	46	46	306	113	419
합 계	3,220	3,220	893	893	4,113	4,113	8,226

주 : 1)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는 08~09시임
2) 유출입이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택시는 Back Haul 교통량(귀로교통량)으로 환산하였음

[장래 시간대별 발생교통량 예측(순수발생교통량 2031년)]

(단위 : 대/시)

구 분	승용차		택 시		합 계		
	유 입	유 출	유 입	유 출	유 입	유 출	계
07시 이전	6	89	15	15	21	104	125
07:00-08:00	20	283	50	50	70	333	403
08:00-09:00	43	353	63	63	106	416	522
09:00-10:00	49	120	23	23	72	143	215
10:00-11:00	48	81	17	17	65	98	163
11:00-12:00	60	73	17	17	77	90	167
12:00-13:00	66	69	16	16	82	85	167
13:00-14:00	81	71	19	19	100	90	190
14:00-15:00	90	75	21	21	111	96	207
15:00-16:00	101	76	24	24	125	100	225
16:00-17:00	121	75	27	27	148	102	250
17:00-18:00	147	78	32	32	179	110	289
18:00-19:00	245	67	45	45	290	112	402
19:00-20:00	247	61	43	43	290	104	394
20:00-21:00	190	47	32	32	222	79	301
21시 이후	137	33	24	24	161	57	218
합 계	1,651	1,651	468	468	2,119	2,119	4,238

주 : 1)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는 08~09시임
2) 유출입이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택시는 Back Haul 교통량(귀로교통량)으로 환산하였음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발생교통량을 요약하면, 목표년도인 2031년에 사업시행시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의 발생교통량은 유입 195대/시, 유출 778대/시, 1일 발생교통량은 유·출입 각각 4,113대/일로 예측되었음

■ 순수발생교통량으로는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의 발생교통량은 유입 106대/시, 유출 416대/시, 1일 발생교통량은 유·출입 각각 2,119대/일로 예측되었음

[발생교통량 예측 종합]

(단위 : 대/시, 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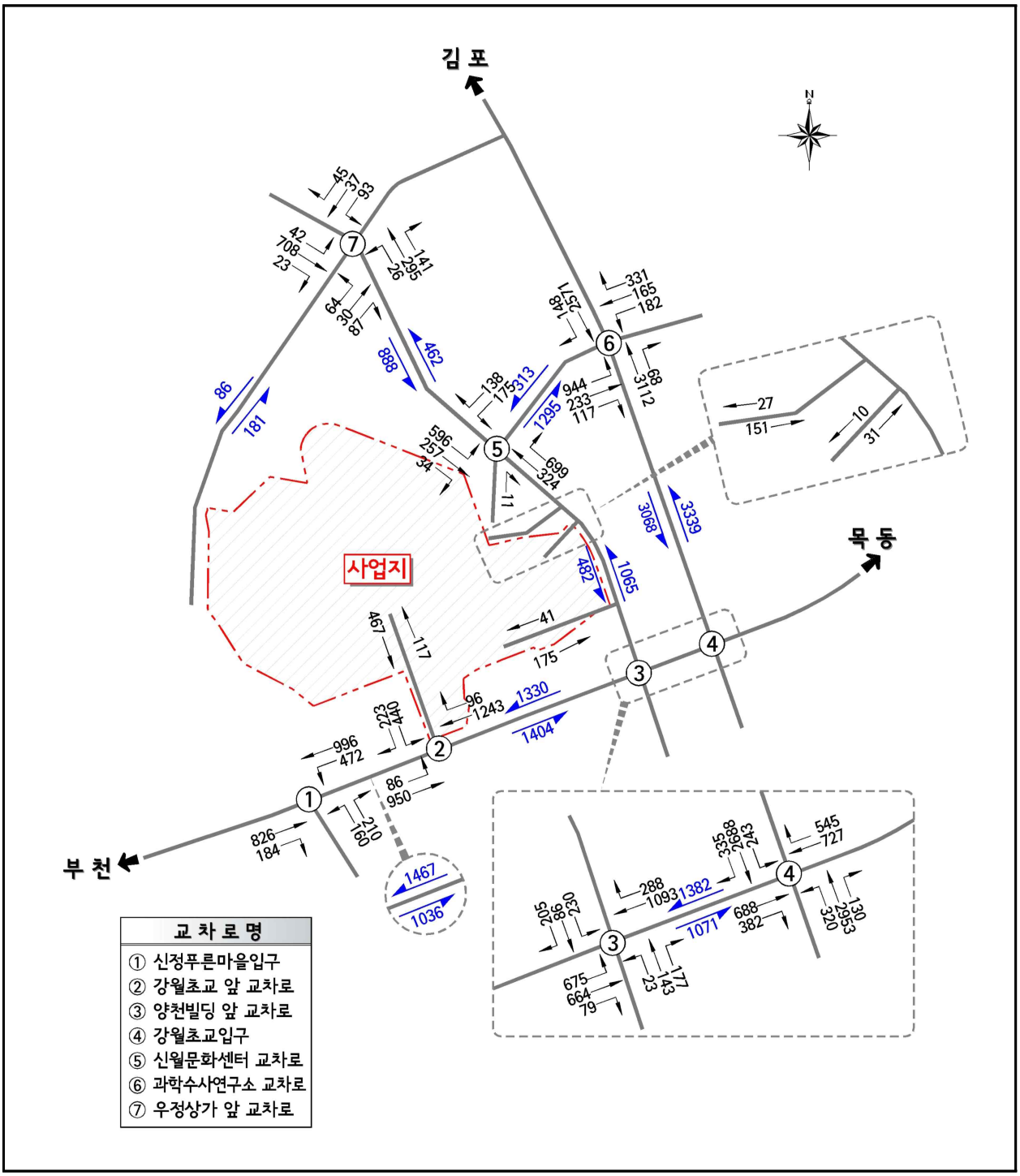
구 분		2031년 발생교통량						
		승용차		택 시		합 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계
사업 미시행시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대/시)	34	307	55	55	89	362	451
	1일 발생교통량(대/일)	1,569	1,569	425	425	1,994	1,994	3,988
사업 시행시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대/시)	77	660	118	118	195	778	973
	1일 발생교통량(대/일)	3,220	3,220	893	893	4,113	4,113	8,226
순수발생 교통량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대/시)	43	353	63	63	106	416	522
	1일 발생교통량(대/일)	1,651	1,651	468	468	2,119	2,119	4,238

주 :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는 08~09시임

5) 장래 사업시행시 교통량 및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발생교통량이 주변가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예측된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의 발생교통량을 배분한 장래 시행시 교통량은 다음과 같음

〈 장래 사업시행시 교통량도(2031년 08~09시, 단위 : pcu/h) 〉



■ 장래 사업시행시 주변가로의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평균통행속도가 12.57~27.82km/h로 서비스수준이 "B"~"E"로 분석되었음

[주변가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2031년 08~09시)]

구 간	연장 (km)	교통량 (pcu/h)	평균통행속도 (km/h)	서비스 수준
① 신정푸른마을 입구 → ② 강월초교 앞 교차로	0.16	1,036	24.79	D
② 강월초교 앞 교차로 → ① 신정푸른마을 입구	0.16	1,467	13.44	E
② 강월초교 앞 교차로 →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0.30	1,404	22.50	D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 ② 강월초교 앞 교차로	0.30	1,330	24.13	D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 ④ 강월초교 입구	0.10	1,071	13.42	E
④ 강월초교 입구 →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0.10	1,382	21.03	D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0.39	1,065	27.24	D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0.39	482	12.66	E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 ⑦ 우성상가 앞 교차로	0.36	462	26.84	D
⑦ 우성상가 앞 교차로 →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0.36	888	27.82	D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 ⑥ 과학수사연구소 교차로	0.21	1,295	12.57	E
⑥ 과학수사연구소 교차로 →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0.21	313	13.45	E
④ 강월초교 입구 → ⑥ 과학수사연구소 교차로	0.46	3,339	22.84	D
⑥ 과학수사연구소 교차로 → ④ 강월초교 입구	0.46	3,068	27.09	D

■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신호교차로의 평균제어지체가 20.8~63.7sec/pcu로서 서비스수준 "B"~"D"로 분석되었음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2031년 08~09시)]

교 차 로 명	교차로 교통량(pcu/h)	평균제어지체(sec/pcu)	서비스 수준
① 신정푸른마을 입구	2,848	32.9	C
② 강월초교 앞 교차로	3,037	26.9	B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3,663	61.0	D
④ 강월초교 입구	9,011	47.3	C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2,234	20.8	B
⑥ 과학수사연구소 교차로	7,871	63.7	D
⑦ 우성상가 앞 교차로	1,591	32.5	C

5. 주차수요예측

가. 법정주차대수 산정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사업지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부설주차장의 법정주차대수 산정시 주택건설촉진법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름

[주차장 설치기준]

면적기준(대/㎡)					세대기준(대/세대)	
규 모 (전용면적)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외시지역	기타지역	규 모 (전용면적)	설치기준
85㎡이하	1 / 75	1 / 85	1 / 95	1 / 110	60㎡이하	0.8
85㎡초과	1 / 65	1 / 70	1 / 75	1 / 85	60㎡초과	1.0

자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주차장 설치기준]

구 분	설 치 기 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외국공관안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0.8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료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2]

■ 위의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본 사업지의 법정주차대수를 산정한 결과, 본 사업지에서 확보해야 할 법정 주차대수는 총 2,883대로 분석되었음

[법정주차대수 산정]

구 분			세대수(세대)	전용면적(㎡)	주차산정연면적(㎡)	산정근거			주차대수(대)			
						주택건설기준		지자체조례	주택건설기준등		지자체조례	적용
						면적기준	세대기준		면적기준	세대기준		
공동주택	임대	20평형	71	49.80	3,535.80	75	0.7	0.8	47.1	49.7	56.8	56.8
		24평형	87	59.95	5,215.65	75	0.7	0.8	69.5	60.9	69.6	69.6
		34평형	38	84.95	3,228.10	75	1.0	1.0	43.0	38.0	38.0	43.0
	분양	20평형	379	49.80	18,874.20	75	0.7	0.8	251.7	265.3	303.2	303.2
		24평형	1,780	59.95	106,711.00	75	0.7	0.8	1,422.8	1,246.0	1,424.0	1,424.0
		34평형	718	84.95	60,994.10	75	1.0	1.0	813.3	718.0	718.0	813.3
		44평형	76	108.98	8,282.48	65	1.0	1.0	127.4	76.0	76.0	127.4
계			3,149	-	-	-	-	-	-	-	-	2,837.3 (≒2,838)
근린생활시설			5,947.45	-	5,947.45	-		134	44.4		-	44.4 (≒45)
합계			-	-	-	-	-		-	-		2,883

나. 주차발생원단위법에 의한 주차수요 예측

- 본 분석에서는 주차수요를 예측하기 위하여 원단위법을 사용하였음
- 각 시설의 주차원단위 산정은 유사시설 문헌자료에 의한 원단위를 가중평균하여 적용하였으며, 공동주택 주차이용효율은 야간박차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이용효율을 1.0을 적용하였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제도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권고하는 0.8~0.9의 중간 값인 0.85를 적용하였음

[유사시설 주차발생 원단위]

구 분			세대수(세대)	주차발생 원단위(대/세대)
공동주택	주거1	신림현대아파트	435	0.92
		영등포중흥S클래스	52	0.85
		당산센트럴IPARK	49	0.95
		신동아4차아파트	135	0.98
		적용치	-	0.93
	주거2	신림현대아파트	269	1.13
		래미안목동아델리체	284	1.12
		당산센트럴IPARK	200	1.18
		신길우성2차아파트	120	1.08
		적용치	-	1.13
	주거3	신림현대아파트	330	1.20
		래미안목동아델리체	848	1.17
		유원제일2차아파트	176	1.23
		신길우성2차아파트	605	1.22
		적용치	-	1.20
	주거4	신림현대아파트	270	1.33
		목동힐스테이트	154	1.36
		유원제일2차아파트	234	1.40
		보라매경남아너스빌	88	1.38
		적용치	-	1.36
근린생활시설		신림현대아파트	1,968.00	6.61
		래미안목동아델리체	3,294.26	7.22
		당산센트럴IPARK	1,882.02	7.49
		신길우성2차아파트	1,972.96	5.59
		적용치	-	6.79

자료 : 문헌자료

[주차발생원단위법에 의한 주차수요 추정결과(2031년)]

구 분		세대수(세대)	주차수요원단위(대/세대)	이용효율	주차수요
공동주택	주거1	450	0.91	1.00	409.5
	주거2	1,867	1.11	1.00	2,072.4
	주거3	756	1.17	1.00	884.5
	주거4	76	1.33	1.00	101.1
	소 계	3,149	-	-	3,467.5(≒3,468)
근린생활시설		5,947.45	6.64	0.85	46.5 (≒47)
합 계		-	-	-	3,515

다. 주차수요예측 종합

■ 본 사업지의 법정주차대수는 2,883대, 최종목표년도인 2031년 원단위법에 의한 주차수요가 3,515대, 계획주차대수는 4,458대로 주차수요대비 126.8%를 확보하였음

[주차수요예측 종합]

법정주차(대)	원단위법(대)	계획주차(대)	비 고
	2031년		
2,883	3,515	4,458	법정대비 154.6% 수요대비 126.8%

6.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1) 주변교차로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첨두시 교통량을 사업지 주변가로에 각 방향별로 배분하여 목표년도별 미시행시와 시행시의 교통량을 비교하여 보면 각 가로 및 교차로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 주변가로 경우 장래 사업시행으로 인해 가로구간 평균통행속도가 0.01~2.50㎞/h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교차로의 경우 장래 사업시행으로 인해 신호교차로의 평균제어지체가 0.4~7.0sec/pcu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장래 사업시행시 주변가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08~09시)]

구 간	2031년			비고 (②-①)
	평균통행속도(km/h)		서비스수준	
	미시행시(①)	시행시(②)		
① 신정푸른마을 입구 → ② 강월초교 앞 교차로	24.80	24.79	D → D	▽ 0.01
② 강월초교 앞 교차로 → ① 신정푸른마을 입구	13.52	13.44	E → E	▽ 0.08
② 강월초교 앞 교차로 →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22.57	22.50	D → D	▽ 0.07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 ② 강월초교 앞 교차로	24.28	24.13	D → D	▽ 0.15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 ④ 강월초교 입구	13.48	13.42	E → E	▽ 0.06
④ 강월초교 입구 →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21.20	21.03	D → D	▽ 0.17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27.24	27.24	D → D	-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15.16	12.66	E → E	▽ 2.50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 ⑦ 우성상가 앞 교차로	26.84	26.84	D → D	-
⑦ 우성상가 앞 교차로 →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27.82	27.82	D → D	-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 ⑥ 과학수사연구소 교차로	12.57	12.57	E → E	-
⑥ 과학수사연구소 교차로 →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13.90	13.45	E → E	▽ 0.45
④ 강월초교 입구 → ⑥ 과학수사연구소 교차로	22.84	22.84	D → D	-
⑥ 과학수사연구소 교차로 → ④ 강월초교 입구	27.09	27.09	D → D	-

[장래 사업시행시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08~09시)]

교 차 로 명	2031년			비고 (②-①)
	평균제어지체(sec/pcu)		서비스수준	
	미시행시(①)	시행시(②)		
① 신정푸른마을 입구	32.5	32.9	C → C	▲ 0.4
② 강월초교 앞 교차로	25.9	26.9	B → B	▲ 1.0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55.9	61.0	D → D	▲ 5.1
④ 강월초교 입구	46.6	47.3	C → C	▲ 0.7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20.4	20.8	B → B	▲ 0.4
⑥ 과학수사연구소 교차로	56.7	63.7	D → D	▲ 7.0
⑦ 우성상가 앞 교차로	31.8	32.5	C → C	▲ 0.7

2) 진출입동선

- 사업지 진출입동선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함
- 사업지 출입구의 회전시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각정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됨

3) 보행

- 사업지주변 보행공간확보로 보행편의 도모가 요구됨

4) 주차시설의 공급과 운영

- 관계규정에 적합한 적정주차면 설치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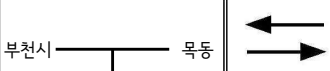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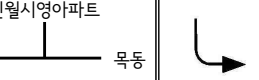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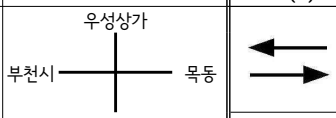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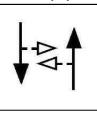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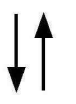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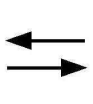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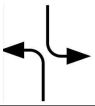
5) 교통안전 및 기타

- 차량 출입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가 요구됨

나. 개선방안 및 개선효과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소통의 악화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장래 사업지 주변 교차로의 교통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최적신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음

[교차로 신호 최적화]

교차로명 \ 구분		현시 방법 및 시간(초) Φ1	Φ2	Φ3	Φ4	Φ5	주기(초)
① 신정푸른마을 입구	부천시 ↔ 목동 / 대일 관광고등학교				-	-	120
		46(4)	36(3)	28(3)	-	-	
② 강월초교 앞 교차로	신월시영아파트 / 부천시 ↔ 목동				-	-	120
		40(5)	13(3)	56(3)	-	-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우성상가 / 부천시 ↔ 목동 / 강선중학교				-	-	190
		85(3)	50(3)	45(4)	-	-	
④ 강월초교 입구	김포공항 / 부천시 ↔ 목동 / 오류 IC				-	-	190
		111(3)	39(3)	31(3)	-	-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우성상가 / 해맞이 역사 도서관 ↔ 신정동 / 강선중학교			보행신호	-	-	130
		91(3)	13(3)	20	-	-	
⑥ 과학수사연구소 교차로	김포공항 / 해맞이 역사 도서관 ↔ 신정동 / 오류 IC				-	-	190
		95(4)	41(5)	40(5)	-	-	
⑦ 우성상가 앞 교차로	우성상가 / 영천 초등 학교 ↔ 신강 초등 학교 / 강선중학교			-	-	-	130
		81(3)	42(4)	-	-	-	

[신호 최적화시 서비스수준 변화]

교차로명	평균제어지체 (sec/pcu) 2031년 시행시	2031년 최적화시	증감	서비스수준 변화
① 신정푸른마을 입구	32.9	31.6	▽ 1.3	C → C
② 강월초교 앞 교차로	26.9	24.7	▽ 2.2	B → B
③ 일진빌딩 앞 교차로	61.0	60.5	▽ 0.5	D → D
④ 강월초교 입구	47.3	43.7	▽ 3.6	C → C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20.8	16.5	▽ 4.3	B → B
⑥ 과학수사연구소 교차로	63.7	50.2	▽ 13.5	D → D
⑦ 우성상가 앞 교차로	32.5	23.1	▽ 9.4	C →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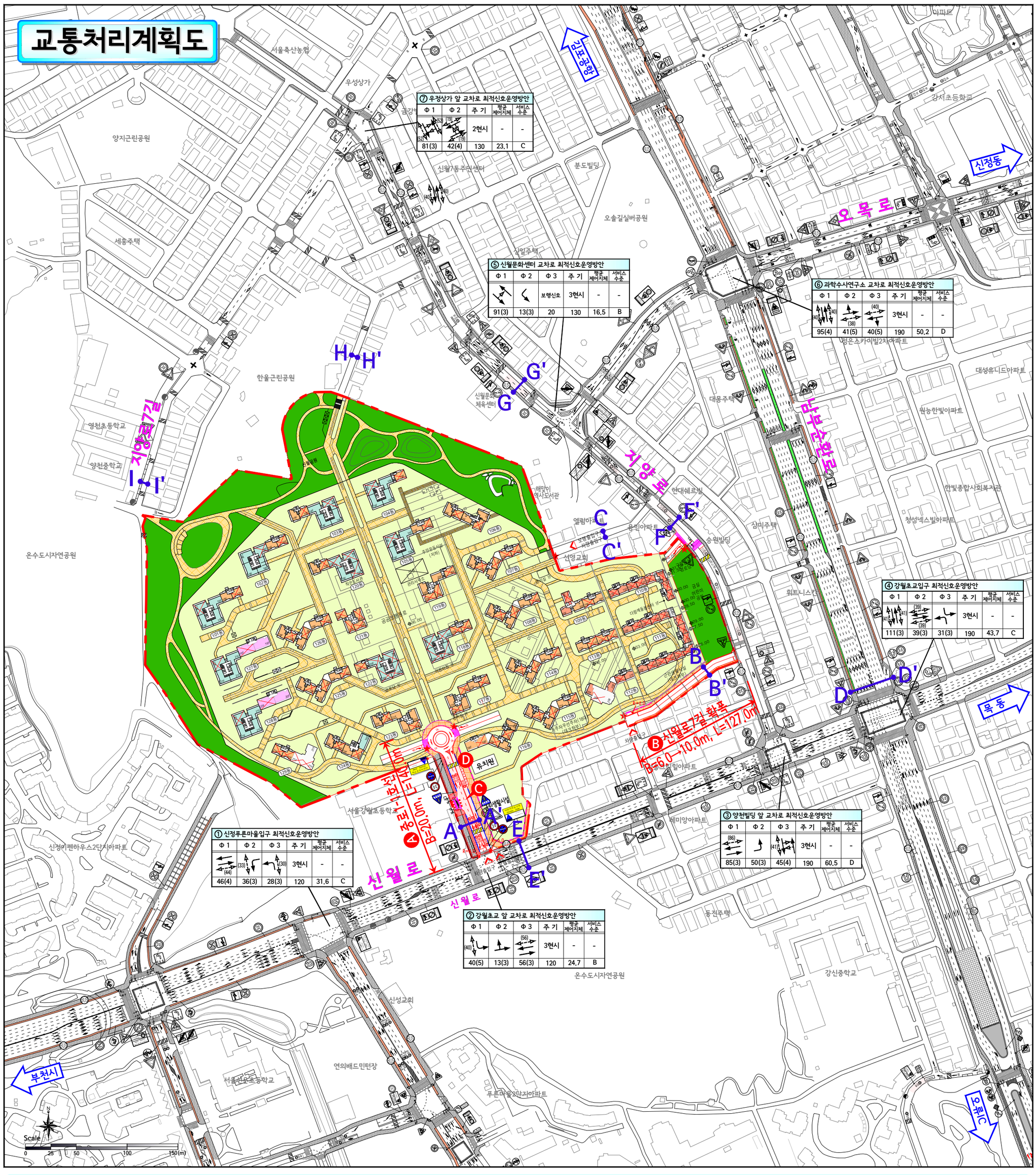
■ 각 부문별 개선방안 적용으로 인한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다.

[개선방안]

구 분	지점	개 선 방 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사업지 주변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7개소)
	-	○ 중로1-1호선 차로운영계획 재수립
	Ⓐ	- B=20.0m, L=140.0m(왕복2차로→왕복3차로)
		- 강월초교측 보도 설치 : 9.0m(식수대포함)
		- 근린생활시설 측 보도부속형전면공지 설치 : 6.0m
		○ 신월로7길 확폭 및 차로운영계획 재수립
	Ⓑ	- B=6.0→10.0m, L=127m(왕복2차로)
		- 사업지 맞은편 보도 설치 : 2.0m
		- 사업지측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 : 3.0m
진·출입 동선	-	○ 차량진출입구 설치(4개소)
		- 남측 진출입구부 회전교차로 설치(1개소)
		- 동측 지양로(3개소)
		• 교차로운영 2개소
		• 우회전 진출입 1개소
	Ⓒ	○ 강월초등학교 전면 교차로 폐쇄 후 진출입동선 재수립
	Ⓓ	○ 유치원 앞 Drop-off 설치
	-	○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R=6.0m)
대중교통 및 보행	-	○ 사업지 전면 보행부속형 전면공지 설치(B=3.0~6.0m)
	-	○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	- 험프형 : 3개소
		○ 자전거보관소 설치
		- 법정주차의 20% 이상 확보
주차시설	-	○ 법정주차 : 2,883대
	-	○ 주차수요 : 3,515대(2031년 원단위법)
	-	○ 계획주차 : 4,458대
		- 법정대비 154.6%, 수요대비 126.8%
		- 장애인주차 법정주차의 3% 이상
		- 확장형주차 계획주차의 30% 이상
		- 가족배려주차 계획주차의 10%이상
	-	○ 사업지내 거주자주차공간 확보
교통안전 및 기타	-	○ 주차장 진출입구 차량경고등 설치(5개소)
		○ 과속방지턱 설치(2개소)
		○ 유색포장 설치
		○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

주 : 각 지점은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교통처리계획도



⑦ 우정상가 앞 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Φ 1	Φ 2	주 기	평균 제어지체	서비스 수준
81(3)	42(4)	130	23,1	C

⑤ 신월문화센터 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Φ 1	Φ 2	Φ 3	주 기	평균 제어지체	서비스 수준
91(3)	13(3)	20	130	16,5	B

⑥ 과학수사연구소 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Φ 1	Φ 2	Φ 3	주 기	평균 제어지체	서비스 수준
95(4)	41(5)	40(5)	190	50,2	D

④ 강월초교입구 최적신호운영방안

Φ 1	Φ 2	Φ 3	주 기	평균 제어지체	서비스 수준
111(3)	39(3)	31(3)	190	43,7	C

① 신정푸른마을입구 최적신호운영방안

Φ 1	Φ 2	Φ 3	주 기	평균 제어지체	서비스 수준
46(4)	36(3)	28(3)	120	31,6	C

② 강월초교 앞 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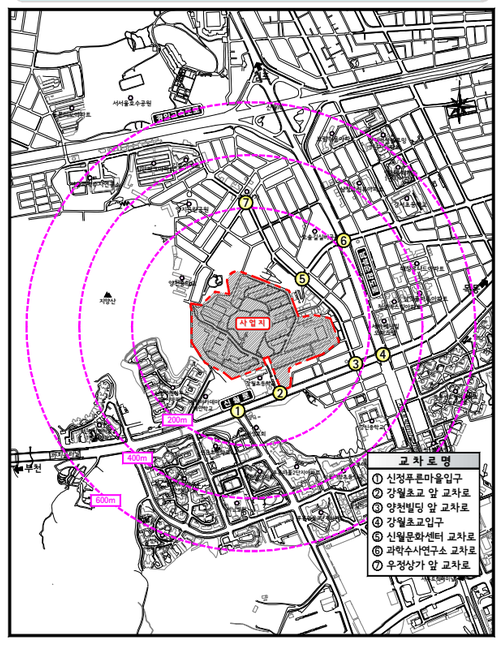
Φ 1	Φ 2	Φ 3	주 기	평균 제어지체	서비스 수준
40(5)	13(3)	56(3)	120	24,7	B

③ 양천빌딩 앞 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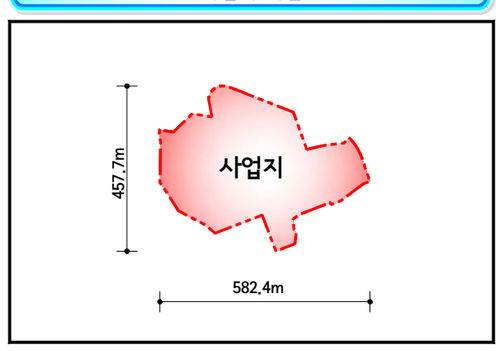
Φ 1	Φ 2	Φ 3	주 기	평균 제어지체	서비스 수준
85(3)	50(3)	45(4)	190	60,5	D

A 보행중심가 사업중심가 A'
B 신월로7길 확폭 B=6.0→10.0m, L=127.0m
C 근린생활시설 C'
D 유치원 앞 Drop-off 설치 D'
E E'
F F'
G G'
H H'
I I'

위 치 도



사업지 제원



범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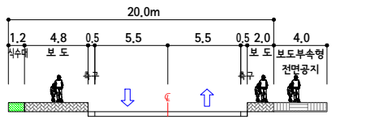
	사업구역경계선	BUS	버스정류장
	건축한계선		교통안전표지판
	보 도(현황)	★	차량경고등
	보 도(계획)		신호등(현황)
	무단차 보도(계획)		신호등(계획)
	유 색 포 장		과속방지턱(현황)
	횡단보도(현황)		과속방지턱(계획)
	횡단보도(계획)		공공보행통로
	고원식 횡단보도		

개 선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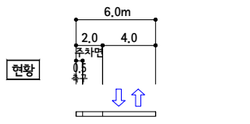
항 목	지점	개 선 내 용
주변차로 및 교 차 로	–	○사업지 주변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 (7개소)
	–	○중로1-1호선 차로운영계획 재수립
	A	- B=20.0m, L=140.0m(왕복2차로→왕복3차로)
		- 강월초교측 보도 설치: 9.0m(식수대포함)
		- 근린생활시설 측 보도부속형전면공지 설치: 6.0m
	–	○신월로7길 확폭 및 차로운영계획 재수립
	B	- B=6.0→10.0m, L=127m(왕복2차로)
		- 사업지 맞은편 보도 설치: B=2.0m
		- 사업지측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 B=3.0m
진출입 동 선	–	○차량진출입구 설치(4개소)
		- 남측 진출입구부 회전교차로 설치(1개소)
		- 동측 지양로(3개소)
		・교차로 운영 2개소
		・우회전 진출입 1개소
	C	○강월초등학교 전면 교차로 폐쇄 후 진출입동선 재수립
	D	○유치원 앞 Drop-off 설치
	–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R=6.0m)
보 행 및 대중교통	–	○사업지 전면 보행부속형 전면공지 설치 (B=3.0~6.0m)
	–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 험프형 : 3개소
		○자전거보관소 설치
	–	- 법정주차의 20% 이상 확보
주 차 시 설	–	○법정주차 : 2,883대
	–	○주차수요 : 3,515대(2031년 원단위법)
	–	○계획주차 : 4,458대
		- 법정대비 154.6%, 수요대비 126.8%
		- 장애인주차 법정주차의 3% 이상
		- 확장형주차 계획주차의 30% 이상
		- 가족배려주차 계획주차의 10% 이상
	–	○사업지내 거주자주차공간 확보
교통안전 및 기 타	–	○주차장 진출입구 차량경고등 설치(5개소)
	–	○과속방지턱 설치(2개소)
	–	○유색포장 설치
	–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

표 준 횡 단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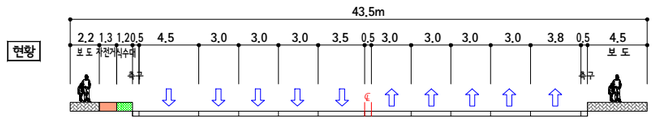
▣ 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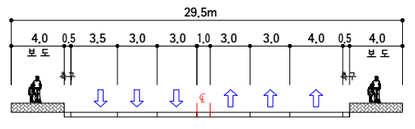
▣ B–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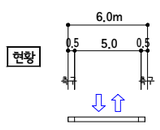
▣ D–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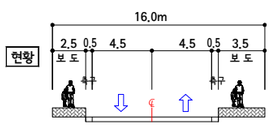
▣ 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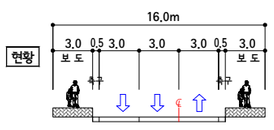
▣ 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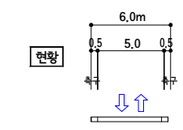
▣ 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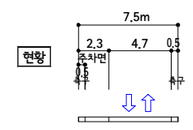
▣ G–G'



▣ H–H'



▣ I–I'



7 환경성 검토서

환 경 성 검 토 자 문 의 견 서

계 획 명 :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총괄의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사업추진 근거, 사업내용 및 향후 계획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해당 법령의 목적에 부합하게 개발계획(토지이용구상안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환경영향요소 추출결과의 적정성	공사(철거 포함) 및 운영시기 단계별로 구분하고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하여야 함.
선택 검토항목 선정 및 검토방법, 범위 등의 적정성	사업구역은 지양산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으로 다수의 주거시설, 공원시설, 교육시설 등이 분포하여 위치하는 바, 주변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조성하여야 함. 저감방안은 노후화된 기존 시설물 철거공사 시부터 실시하며,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해 주변 정온시설에 미칠 수 있는 피해영향을 검토하여 최소화하여야 함. 또한, 서울강월초등학교 및 양천중학교 등 교육시설이 인접하여 위치하는 바, 통경축 확보 및 저층배치구간이 확보된 조화로운 경관계획을 조성하여야 함. 서측에 위치한 지양산과 연계한 생태네트워크를 검토하고, 불투수면적을 최소화하여 토양 및 물순환체계의 건전성을 검토하여야 함.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기타의견	대상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시된 의견은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 재건축사업 특성상 바람, 경관, 일조 항목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자문위원 소 속 : ㈜가림기술단

성 명 : 이 승 일 (서명)

환경영향평가기술자(특급)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 스코핑

1. 사업개요

가.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대상지는 1984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서울시 고시 제331호)'되고 '신월지구 시영아파트 건립계획 변경(시장방침 제2635호)'되어 1988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준공(양천구 공고 제45호)'된 공동주택 단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임
- 신월시영아파트는 1988년 준공으로, 현재 37년 경과되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함에 따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시 도시환경 정비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 등을 반영하여 대상지 주변 여건 변화를 수용한 정비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나. 계획의 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87-1번지 일원
- 면적 : 153,213.6㎡
- 도시관리계획 현황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수평표면구역, 원추표면구역, 진입표면구역, 비오톱1등급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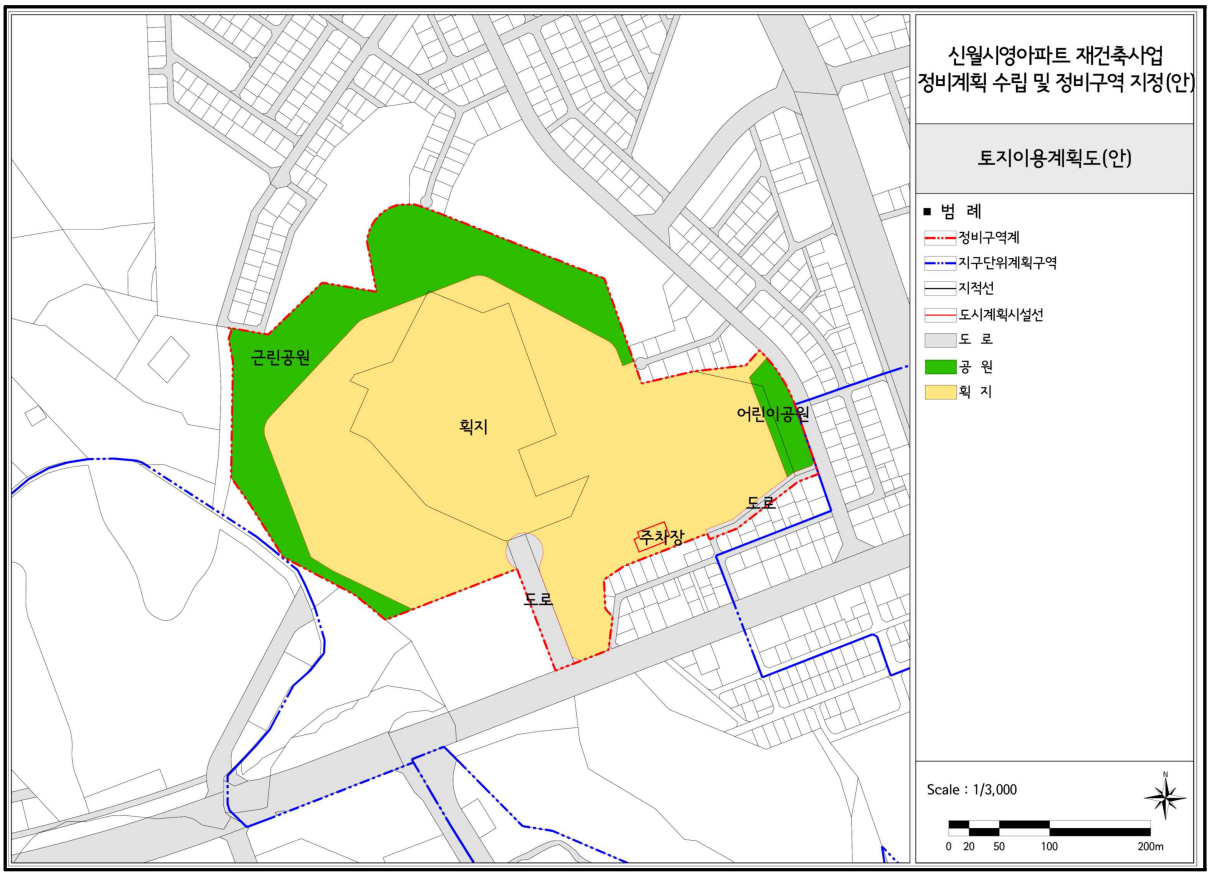
[위치도]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153,213.6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40,204.6	26.2	-
	도로	4,449.8	2.9	-
	근린공원	32,376.0	21.1	-
	어린이공원	3,378.8	2.2	-
	주차장	(580.92)	(0.4)	획지 내 입체적 결정
획지	소계	113,009.0	73.8	-
	획지	113,009.0	73.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토지이용계획도]



2. 사업의 환경영향요소 추출

검토항목 \ 단계		공사단계	운영단계
자연생태환경	비오톱	-	○
	생태네트워크	-	○
	동 · 식물상	-	-
	자연환경자산	-	-
생활환경	토지이용	-	○
	토양	-	-
	지형 · 지질	▲	-
	물순환, 수리 · 수문	-	○
	수질(지표 · 지하)	▲	▲
	바람, 열	-	△
	대기질 · 미세먼지	◆	▲
	악취	-	-
	온실가스	-	▲
	친환경적자원순환	▲	▲
	에너지	-	▲
	소음 · 진동	◆	▲
	경관	-	○
	휴식 및 여가공간	-	◎
	일조	-	▲
	보행친화공간	-	-
	전파장해	-	-
사회경제환경	인구	-	-
	주거	-	-
	산업	-	-
범 례		◎ : 개발 후 상당히 좋아짐 ○ : 개발 후 비교적 긍정적임 △ : 개발 후 긍정적이나 효과는 미약함	▲ : 개발 후 악영향이 있으나 미약함 ◆ : 개발 후 악영향이 다소 있음 ● : 개발 후 악영향이 큼

3. 검토항목 및 범위 설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평가방법	범위
자연생태환경	비오톱	토지이용 현황도, 현존식생도, 불투수토양 포장도, 비오톱 유형도, 비오톱유형 평가도, 개별비오톱 평가도를 통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서울도시계획포털 지도서비스 등 이용	대상지 및 주변지역
	생태네트워크	녹지네트워크 현황, 사업시행에 따른 녹지확보계획, 녹지평가지표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측	대상지 및 주변지역
	동 · 식물상	-	-	-
	자연환경자산	-	-	-
생활환경	토지이용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현황,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측	대상지 및 주변지역
	토양	-	-	-
	지형 · 지질	표고 및 경사분석, 지질현황을 통한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문헌조사	대상지 및 주변지역
	물순환, 수리 · 수문	물환경 공간유형도, 생태면적률, 저영향 개발 계획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대상지 및 주변지역
	수질	수계현황, 수자원이용현황, 지구 · 지역 지정 현황, 우슈유출량 산정, 토사유출량 산정, 토사유출에 따른 SS가중농도, 용수공급계획, 우 · 오수처리계획	계획설명서 및 문헌조사, 강우강도 산정식 이용 우수유출량, 원단위 이용 토사유출량 산정	대상지 및 주변지역
	바람, 열	기상개황, 바람장미도, 기후환경(바람기능, 열환경)공간유형도를 통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기상연보, UPIS내 도시계획 지도서비스 등 이용	대상지및 주변지역
	대기질 · 미세먼지	월별 대기오염도 현황,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문헌조사	-
	악취	-	-	-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량,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난방 · 취사 등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대상지 및 주변지역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 현황, 공사시 및 운영시 예측, 저감방안	문헌조사 및 통계연보, 산정식을 이용한 계산	대상지 및 주변지역
	에너지	에너지 사용 현황 조사, 건축계획(안)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문헌조사 및 통계연보, 난방 연료 사용량 산정	대상지및 주변지역
	소음 · 진동	소음 측정망 자료, 투입장비에 따른 이격거리별 소음도 예측, 운영시 저감대책	문헌조사, 거리감쇠식 및 합성소음도, 합성진동레벨 산출공식	대상지 및 주변지역
	경관	대상지 현황	계획설명서	대상지 및 주변지역
	휴식 및 여가공간	대상지 주변 공원녹지 현황,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계획설명서	대상지 및 주변지역
	일조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에 대한 예측 및 조례 검토	문헌조사	대상지 및 주변지역
	보행친화공간	-	-	-
	전파장해	-	-	-
사회경제환경	인구	-	-	-
	주거	-	-	-
	산업	-	-	-

환경성검토 총괄표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	비오톱	비오톱보전등급 향상	■	• 비오톱유형평가도 도로 및 1~4등급, 개별비오톱평가도 평가제외구역, 도로, 및 일부 2등급	• 대상지 내 녹지공간 확보	
2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 대상지 서측으로 지양산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주변으로 작동산, 신월산 등 녹지자원이 풍부함	• 대상지 내 녹지계획을 수립	
3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 도심지(대지)로 해당사항 없음	-	
4	자연환경 자산	자연환경 보전	-	• 해당 사항 없음	-	
5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현황 및 용도지역 조사	• 공원 및 공동주택을 반영한 종합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6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토양오염 발생하지 않음	-	
7	지형·지질	지형·지질영향 최소화	■	• 표고 24.44~51.08m, 평균 경사도 2.80°의 평탄지형	• 평지 형태로 지형변화는 경미하며, 건축터파기 공사로 부분적 지형변화 발생	
8	물순환, 수리·수문	자연물순환 유지	■	• 획지 내 조경녹지 계획	• 생태면적률 45.01%	
9	수질	수질오염 방지	■	• 지표 수질(안양천) 및 지하수질 현황 조사, 공사 중 토사유출 및 오수 발생	• 공사 중 수질저감 계획 수립 • 우수, 하수 처리방안 계획	
10	바람	바람길 및 미기후 개선	■	• 서울기상대 기상현황 조사 분석, 주풍향 등 검토	• 향후 세부 계획 시 바람방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녹지 수목 식재 통한 미기후 개선	
11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5층 이상 주거지, 공원 등 조경수목식재지, 불투수포장비율이 낮은 주거지,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4층 이하 주거지로 조사됨	• 투수포장과 충분한 녹지 조성으로 열환경 개선	
12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장 장비가동 시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배출 영향	• 세륜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주기적인 살수 등 저감, 환경정화수종 식재	
13	악취	악취공해 해결	-	• 해당 사항 없음	-	
14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난방, 취사연료 사용과 차량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 대상지 내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 절감, 녹지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5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공사장 건설폐기물 발생 및 운영 시 생활 및 분뇨폐기물 발생	•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 감량	
16	에너지	에너지절약/ 효율 극대화	■	• 지역 에너지 소비현황 조사, 난방, 취사, 전력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이용량 증가	• 향후 에너지 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 검토 예정	
17	소음 · 진동	소음 · 진동 최소화	■	• 공사 시 장비투입에 따른 공사장 소음 유발, 운영 시 교통소음으로 인한 영향	• 공사 중 가설방음판넬,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녹지 완충공간 조성	
18	경관	주변경관과의 조화	■	• 시가화된 지역으로 인공경관이 주를 이룸	• 인근 주거지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해 지상 21층 이하로 계획 • 인접 주거지와 연결되는 안전한 가로 · 세로환경을 조성	
19	휴식 및 여가공간	양질의 휴식, 여가공간 확보	■	• 주변으로 한울근린공원, 독서공원, 오솔길 실버공원 등 위치	• 인접개발단지와의 보행연계 및 안전한 보행가로경관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배치계획 • 대상지 내 공원과 조화될 수 있도록 지상부 녹지공간 계획 및 확보	
20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 연평균 및 월별, 계절별 일조시간 검토	• 최고 지상 21층 이하 규모의 사업계획 수립, 일조권 침해 수인한도 준수	
21	보행 친화공간	보행친화형 도시 조성	■	• 도로 확폭 필요	• 주택용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주요시설 연계 보행공간 확보 및 생활가로 활성화 도모	
22	전파장해	전파장해 영향 저감	-	• 해당 사항 없음	• -	
23	인구	인구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 해당 사항 없음	• -	
24	주거	주거 환경을 고려한 계획 수립	-	• 해당 사항 없음	• -	
25	산업	산업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 해당 사항 없음	• -	

환 경 성 검 토 서

제1장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대상지는 1984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서울시 고시 제331호)'되고 '신월지구 시영아파트 건립계획 변경(시장방침 제2635호)'되어 1988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준공(양천구 공고 제45호)'된 공동주택 단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임
- 신월시영아파트는 1988년 준공으로, 현재 37년 경과되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함에 따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시 도시환경 정비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 등을 반영하여 대상지 주변 여건 변화를 수용한 정비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2. 계획의 범위

-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87-1번지 일원
- 면적 : 153,213.6㎡
- 도시관리계획 현황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수평표면구역, 원추표면구역, 진입표면구역, 비오톱1등급지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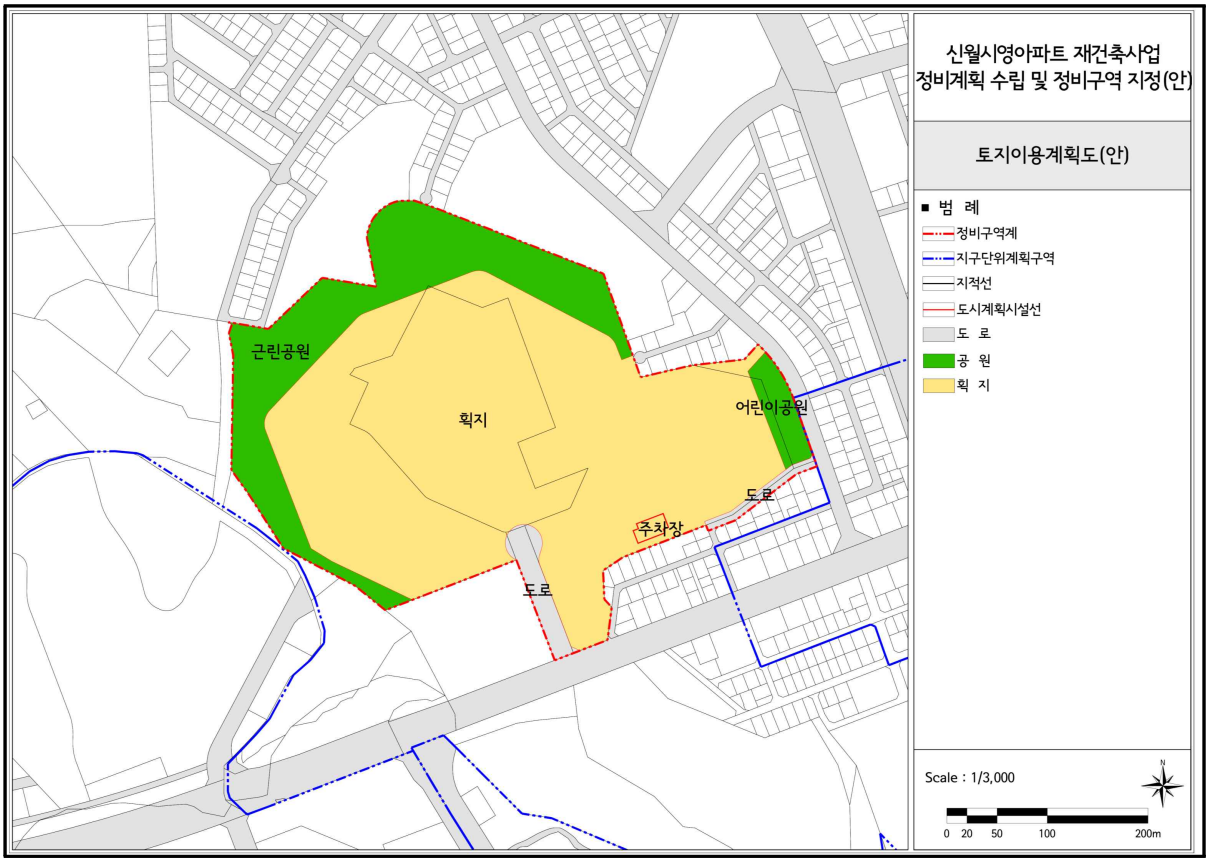


■ 계 획 내 용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153,213.6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40,204.6	26.2	-
	도로	4,449.8	2.9	-
	근린공원	32,376.0	21.1	-
	어린이공원	3,378.8	2.2	-
	주차장	(580.92)	(0.4)	획지 내 입체적 결정
획지	소계	113,009.0	73.8	-
	획지	113,009.0	73.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토지이용계획도]



[설계개요]

<table>
<tr><td colspan="2">사업명</td><td colspan="6">서울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td></tr>
<tr><td colspan="2">대지위치</td><td colspan="6">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87-1번지 일원</td></tr>
<tr><td colspan="2">지역지구</td><td colspan="6">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td></tr>
<tr><td colspan="2">실사용
대지면적</td><td>113,009.00㎡</td><td>34,185.22평</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전체 면적</td><td>153,213.60㎡</td><td>46,347.11평</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건축면적</td><td>32,156.75㎡</td><td>9,727.41평</td><td>-</td><td>건폐율</td><td colspan="2">28.46% (법정:60%)</td></tr>
<tr><td rowspan="4">연
면
적</td><td>단위
(㎡)</td><td>공동주택</td><td>근린
생활시설</td><td>합계</td><td rowspan="2">용적률</td><td colspan="2" rowspan="2">249.98% (법적상한:250%)</td></tr>
<tr><td>지상</td><td>282,271.43</td><td>2,600.00</td><td>284,871.43</td></tr>
<tr><td>지하</td><td>172,271.80</td><td>5,209.45</td><td>177,481.25</td><td rowspan="2">용적률
산정
연면적
:</td><td colspan="2" rowspan="2">282,501.43㎡</td></tr>
<tr><td>계</td><td>454,543.23</td><td>7,809.45</td><td>462,352.68</td></tr>
<tr><td colspan="2">건물규모</td><td colspan="6">지상21층 / 지하 4층</td></tr>
<tr><td colspan="2">세대수</td><td colspan="6">3,149 세대</td></tr>
<tr><td colspan="2">부대복리시설</td><td colspan="2">10,290.00㎡</td><td rowspan="2">조경면적</td><td>법정</td><td colspan="2">16,951.35㎡</td></tr>
<tr><td colspan="2">근린생활시설</td><td colspan="2">7,809.45㎡</td><td>계획</td><td colspan="2">17,177.37㎡</td></tr>
<tr><td rowspan="3">주차
대수</td><td>세대</td><td colspan="4">4,409대</td><td colspan="2">세대당 1.4대</td></tr>
<tr><td>근생</td><td colspan="4">49대</td><td colspan="2">법정 1.1대</td></tr>
<tr><td>합계</td><td colspan="4">4,458대</td><td colspan="2">-</td></tr>
</table>

[배치도]


N
신월로 (30M 도로)
남부순환로 (20M 도로)
지양로 (8M 도로)
신월근린공원
온수도시자연공원
신월어린이공원
신월6구역
신월초등학교
신월어린이도서관
독서공원
유치원
차량출입구
보행출입구
건축개요
임대
분양
합계
용적률

제2장 지역개황

1. 일반현황

- 양천구는 동쪽으로는 한강을 경계로 영등포구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경기도 부천시와 접하며, 남쪽으로는 구로구, 북쪽으로는 강서구와 마주하고 있음.
- 지나가는 지하철 노선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 및 서울 지하철 5호선이 있음.
- 대상지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987-1번지 일원으로, 북측으로 목동동로, 서측으로 목동로, 남측으로 목동로3길 및 양천구천역(2호선)이 있어 교통 접근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

[양천구 지리적 좌표 위치]

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지명	극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신정동 321-4)	동단	목동 409-384	북위 37° 31′ 51″ 동경 126° 53′ 23″	동서간 6.17㎞
	서단	신월동 38-5	북위 37° 32′ 02″ 동경 126° 49′ 22″	
	남단	신정동 산 150-9	북위 37° 30′ 16″ 동경 126° 50′ 06″	남북간 5.96㎞
	북단	목동 605-21	북위 37° 33′ 03″ 동경 126° 51′ 52″	

[자료] 제35회 양천구 통계연보(2022.12.31.기준), 2023, 양천구

2. 토지이용현황

가.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대상지가 위치한 양천구는 총면적 17.41㎢ 중 8.67㎢(49.81%)가 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도로 3.10㎢(17.81%), 공원 1.75㎢(10.05%) 등으로 분포하고 있음.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구분		합계	전	답	임야	대지	도로	철도용지	공원	기타
양천구	면적(㎢)	17.41	0.11	0.02	1.07	8.67	3.10	0.24	1.75	2.45
	비율(%)	100.00	0.63	0.12	6.15	49.81	17.81	1.38	10.05	14.05

[주] 기타 :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종교용지, 묘지, 잡종지

[자료] 제35회 양천구 통계연보(2022.12.31.기준), 2023, 양천구

나.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 양천구의 용도지역은 총 17.47㎢ 중 주거지역 12.54㎢(71.78%), 녹지지역 4.04㎢(23.13%), 상업지역 0.80㎢(4.58%)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구분		총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양천구	면적(㎢)	17.47	12.54	0.80	0.09	4.04	-
	구성비(%)	100.00	71.78	4.58	0.51	23.13	-

[자료] 제35회 양천구 통계연보(2022.12.31.기준), 2023, 양천구

3.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

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

■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규정에 의해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2023년 12월 기준), 환경부」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다. 수변구역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현황

■ 서울특별시는 「4대강 수계별 수변구역 지정·고시현황(22년 기준, 환경부)」 에 따른 '수변구역' 및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23-123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지정현황

■ 서울특별시는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266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마.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

■ 양천구는 전역이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 중 '나'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현황]

지역명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양천구	-	-	전역

[자료]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지정규정(환경부 고시 제2007-107호)

바. 오염총량관리지역 현황

- 양천구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 한강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에 해당하며, 양천구 신월동 987-1번지 일원은 '한강I' 단위유역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사. 자연공원 지정현황

- 양천구는 「자연공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으로 지정된 공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아. 대기관리권역 지정현황

- 서울특별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규정에 의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대기관리권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서울특별시	전 지역

[자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현황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해 양천구 는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차.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등록현황

- 양천구는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2022년 12월 기준), 환경부」 및 「람사르습지 등록현황(2022년 12월 기준), 환경부」 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카. 특별관리해역 관리구역 현황

- 대상지가 위치한 양천구 신월동 987-1번지 일원은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에 따른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구역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4. 환경기준 및 생태자연도

가. 환경기준

[대기 환경기준]

항목	단위	구분	대기질 환경기준	서울시 대기질 환경기준	측정방법
아황산가스 (SO_2)	ppm	연평균	0.02이하	*0.01이하*	자외선형광측정법
		24시간평균	0.05이하	*0.04이하*	
		1시간평균	0.15이하	*0.12이하*	
일산화탄소 (CO)	ppm	8시간평균	9이하	*9이하*	비분산적외선 분석법
		1시간평균	25이하	*25이하*	
이산화질소 (NO_2)	ppm	연평균	0.03이하	*0.03이하*	화학발광법
		24시간평균	0.06이하	*0.06이하*	
		1시간평균	0.10이하	*0.10이하*	
미세먼지 (PM-10)	㎍/㎥	연평균	50이하	*50이하*	베타선흡수법
		24시간평균	100이하	*100이하*	
미세먼지 (PM-2.5)	㎍/㎥	연평균	15이하	*15이하*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 측정법
		24시간평균	35이하	*35이하*	
오존 (O_3)	ppm	8시간평균	0.06이하	*0.06이하*	자외선광도법
		1시간평균	0.10이하	*0.10이하*	
납(Pb)	㎍/㎥	연평균	0.5이하	*0.5이하*	원자흡광광도법
벤젠	㎍/㎥	연평균	5이하	*5이하*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주]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미세먼지는(PM-10)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미세먼지는(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자료]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환경기준
2.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별표 1] 환경기준

[하천수질 환경기준]

구분	등급		상태(캐릭터)	기준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mg/L)	화학적 산소요구량(COD)(mg/L)	총유기탄소량(TOC)(mg/L)	부유물질량(SS)(mg/L)	용존산소량(DO)(mg/L)	총인(TP)(mg/L)	대장균군(군수/100mL)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생활환경	매우 좋음	Ia		6.5~8.5	1이하	2이하	2이하	25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2이하	4이하	3이하	25이하	5.0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3이하	5이하	4이하	25이하	5.0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이하	7이하	5이하	25이하	5.0 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이하	9이하	6이하	100이하	2.0 이상	0.3 이하	-	-
	나쁨	V		6.0~8.5	10이하	11이하	8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0 이상	0.5 이하	-	-
	매우 나쁨	VI		-	10초과	11초과	8초과	-	2.0 미만	0.5 초과	-	-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값(mg/L)		카드뮴(Cd) : 0.005이하 비소(As) : 0.05이하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납(Pb) : 0.05이하 6가크롬(Cr^{6+}) : 0.05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이하 사염화탄소 : 0.004이하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1,2-디클로로에탄 : 0.03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0.04이하 디클로로메탄 : 0.02이하 벤젠 : 0.01이하 클로로포름 : 0.08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0.008이하 안티몬 : 0.02이하 1,4-다이옥세인 : 0.05이하 포름알데히드 : 0.5이하 헥사클로로벤젠 : 0.00004이하				

비고)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다.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라.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마.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바.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사.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아. 용수는 당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자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환경기준

[소음 환경기준]

지 역 구 분	적용대상지역	기준(Leq dB(A))	
		낮(06:00 ~ 22:00)	밤(22:00 ~ 06:00)
일 반 지 역	“가” 지역	50	40
	“나” 지역	55	45
	“다” 지역	65	55
	“라” 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 지역	65	55
	“다” 지역	70	60
	“라” 지역	75	70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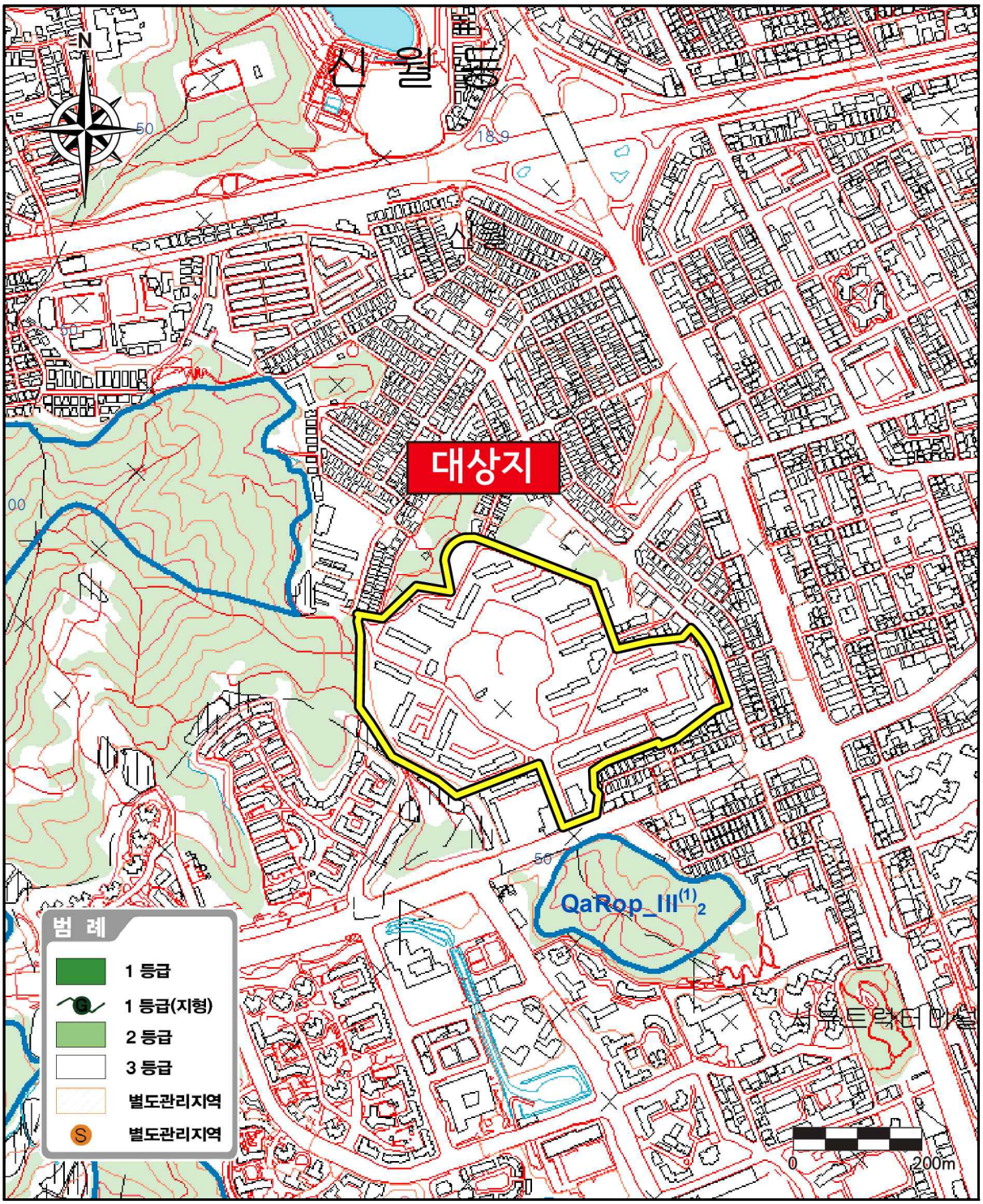
1.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7)「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나)「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도서관
   나. "나"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나. 생태자연도

■ 생태자연도는 1~3등급으로 나누어지며, 1등급은 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2등급은 완충지역 및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 3등급은 이용가능 지역 및 별도관리 지역으로 구분됨. 본 대상지가 위치하고 있는 양천구 양천구 신월동 987-1번지 일원은 3등급으로 조사되었음.

[생태자연도]



5. 환경피해 유발시설물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 양천구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104개소로 조사되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27개소,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72개소로 조사되었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대기(가스, 먼지, 매연 및 악취)						수질(폐수)						소음 진동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양천구	104	27	2	-	-	7	18	77	-	-	1	4	72	-

[자료] 제35회 양천구 통계연보(2022.12.31.기준), 2023, 양천구

나. 도로 현황

■ 본 대상지가 위치한 양천구 도로현황은 총연장 411,736m 중 100.0%가 포장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대상지는 신월로에 인접해 있고, 서측으로는 남부순환로가 위치하고 있음.

[도로현황 (단위 : m)]

지 역	도 로	연 장	포 장	포장율(%)	미포장	미개통
양천구	합 계	411,736	411,736	100.0	-	-
	고 속 도 로	500	500	100.0	-	-
	일 반 국 도	-	-	100.0	-	-
	특 별 시 도	411,236	411,236	100.0	-	-

[자료] 제35회 양천구 통계연보(2022.12.31.기준), 2023, 양천구

6. 주요보호대상 시설물

가. 취수장 및 정수장

■ 대상지가 위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의 취수장 및 정수장은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나. 천연기념물

■ 양천구의 경우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다. 보호수

■ 서울특별시에는 202본의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으나 대상지가 위치한 양천구에는 보호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라. 문화재

■ 양천구에는 시지정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등 총 3점의 문화재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문화재현황]

구 분	총계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시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	국가 등록 문화재	시 등록 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소계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양천구	3	1	-	1	-	-	-	-	-	2	2	-	-	-	-	-	-

[자료] 제35회 양천구 통계연보(2022.12.31.기준), 2023, 양천구

7. 환경기초시설

가.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 현재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폐기물 매립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하는 매립대상 폐기물은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매립시설 현황]

명 칭	소 재 지	총 매립 면적 (천㎡)	총 매립 용량 (천㎥)	사용기간(년)
수도권매립지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	15,277	289,329	1992 ~ 종료시

[자료] 2022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3,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나.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폐기물 소각시설은 총 5개소이며, 대상지가 위치한 양천구에는 1개소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소각시설 현황]

지역	소 재 지	시설용량 (톤/일)	소각방식	운영방식	2022년도 처리량(톤)
서울 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0길 99	800	일반소각	연속식	163,785.3
	은평구 통일로 1053	48	고온용융	연속식	12,540.0
	마포구 하늘공원로 86	750	일반소각	연속식	169,780.5
	양천구 안양천로 1121	**400**	**일반소각**	**연속식**	**104,175.7**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900	일반소각	연속식	238,769.5

[자료] 2022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3,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다. 하수처리시설 현황

■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4개소로 조사되었으며, 대상지가 위치한 양천구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시설 명계	소재지	시설용량 (m^3/일)	처리 방법	방류수역		
				수계	지류	세부단위 구역
난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92-2	860,000.0	중력침전법, 표준활성슬러지법, MLE, A2O	한강	한강	한강본류
중랑물 재생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47-6	1,590,000.0	표준활성슬러지법, MLE, SBAF	한강	중랑천	한강본류
서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4	1,630,000.0	기타, 표준활성슬러지법, MLE, 4stage-BNR	한강	한강	한강본류
탄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580	900,000.0	표준활성슬러지법, MLE	한강	탄천	한강본류

[자료] 2022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3,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라. 분뇨처리시설 현황

■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분뇨처리시설은 총 3개소로 조사되었으며, 대상지가 위치한 양천구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분뇨처리시설 현황]

시설 명계	소재지	시설용량 (m^3/일)	처리 방법	방류수역			
				수계	지류	중권역	소권역
난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262-2	4,500	물리적, 생물학적	한강	한강	한강서울	한강본류
양천물 재생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47-6	4,000	물리적	한강	양천천	한강서울	한강본류
서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4	4,000	물리적	한강	한강	한강서울	한강본류

[자료] 2022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3,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제3장 자연생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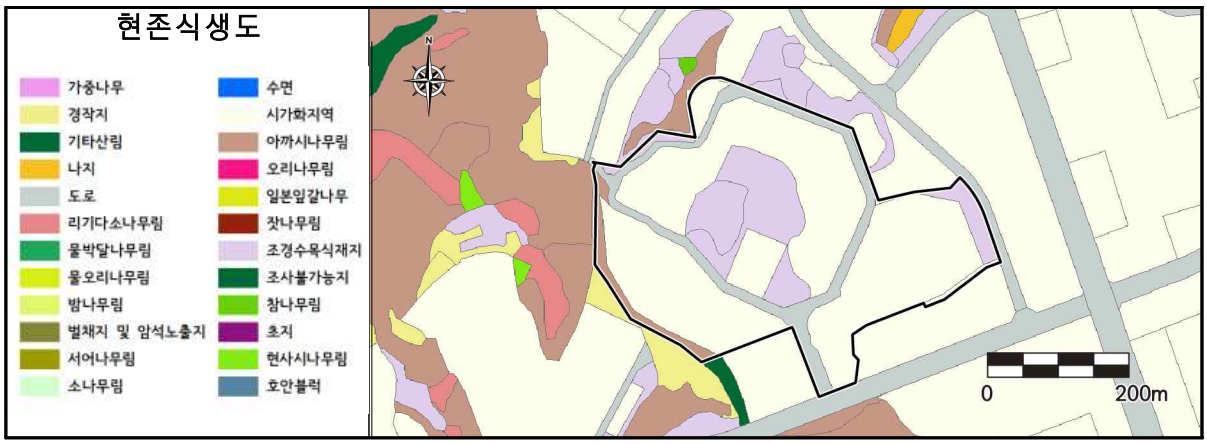
1. 비오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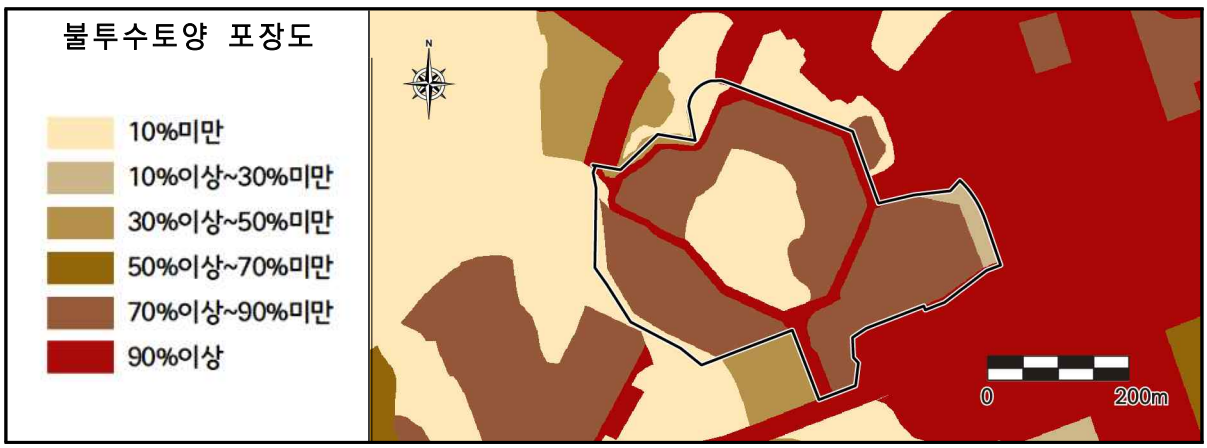
가. 토지유형 현황

■ 대상지는 공공용도지, 교통시설지, 주택지,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로 표현되어 있는 조경수목식재지, 도로, 아까시나무림 및 시가화지역으로 불투수율이 10% 미만, 30~90%, 9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토지유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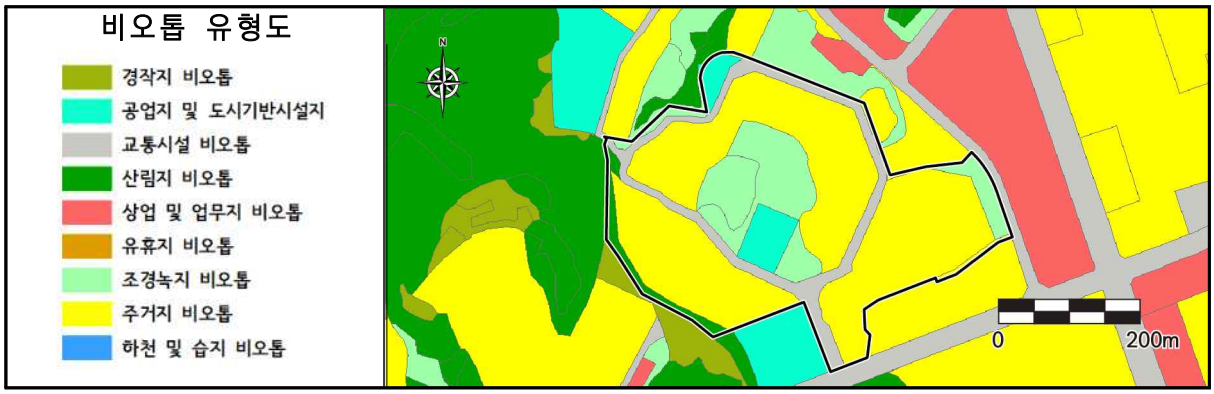




나. 비오톱 유형 및 평가

-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 즉 군집을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를 말함.
- 숲, 가로수, 습지, 하천, 화단 등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도심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공물이나 자연물로 지역 생태계 향상에 기여하는 작은 생물서식 공간이며, 도심 곳곳에 만들어지는 비오톱은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함.
- 대상지의 비오톱 유형을 검토한 결과 주거지, 조경녹지, 교통시설, 공업지 및 도시기반시설지, 산림지 비오톱으로 조사되었으며, 도시생태현황도에서 도시화 한 비오톱 유형 평가도는 도로 및 1~4등급, 개별비오톱 평가도는 평가제외구역, 도로, 및 일부 2등급으로 조사됨.

[비오톱유형 및 평가도]







나.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대상지 내부는 자연환경이 우수하거나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일부 있으나, 일부 조경식재지는 인위적인 이용강도가 크고 생물서식지로서 기능이 현저히 낮아 서식지의 훼손 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비오톱의 변화

- 대상지는 주거지, 조경녹지, 교통시설, 공업지 및 도시기반시설지, 산림지 비오톱이며, 토지이용계획 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도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사업시행 시 조경녹지 비오톱이 추가되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녹지계획

- 사업시행으로 인해 조경식재 등 조화로운 녹지공간을 조성
- 다양한 녹지의 확보 및 열섬화 방지 등을 도모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조성
- 대상지의 조경녹지에는 인공적 식재보다는 자연성을 갖추어 수목을 밀도 있게 식재
- 주변 현황을 분석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식재수종을 선택
- 전통 수종을 식재로 선택하여 이용자 및 외부로부터의 시각적 친근감 유도
- 체계적인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의 효용성 증진

2. 생태네트워크

가. 현 황

1) 일반현황

- 본 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87-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는 주거지로 이용 중임.
- 대상지 및 인근지역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태네트워크는 대상지 남동측으로 계남근린공원, 서측으로 지양산, 남측에 신월산이 위치하고 있음.

[주변지역 생태네트워크 현황]



나. 녹지네트워크 검토

- 대상지 서측으로 지양산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주변으로 작동산, 신월산 등 녹지자원이 풍부함.
- 대상지 내부는 대지, 도로 및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시행 시 부지 내 조경으로 녹지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할 계획임.

[녹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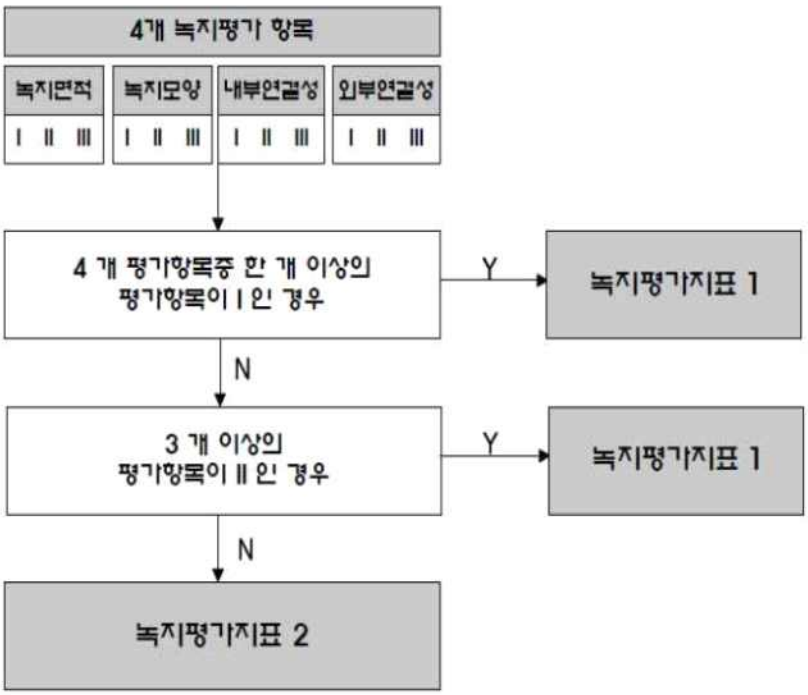
구분	평가내용
녹지면적	녹지 총면적 : 58,916.37㎡, 최대녹지(획지 내 인공지반 녹지) : 40,247.86㎡ = 40,247.86㎡ / 58,916.37㎡ * 100 =68.31%

[주] 녹지 총면적은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의 계획면적임.

[녹지평가지표]

평가기준		가치기준	평가내용	비고
녹지면적		Ⅰ	50% 이상	녹지 총 면적에서 최대녹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Ⅱ	44% 이상 50% 미만	
		Ⅲ	44% 미만	
녹지모양		Ⅰ	1.67 미만	녹지모양의 불규칙한 정도를 SI(Shape Index)로 나타냄
		Ⅱ	1.67이상 1.72 미만	
		Ⅲ	1.72 이상	
녹지 연결성	내부	Ⅰ	2개 이상	계획구역 내 녹지들간의 연결성으로 일정 거리 이내에서 녹지 cluster를 이루는 경우, 계획구역 내부 녹지공간에 통로를 조성한 경우
		Ⅱ	1개	
		Ⅲ	없음	
	외부	Ⅰ	2개 이상	계획구역 내부녹지와 계획구역 외부녹지 사이에 통로를 조성한 경우
		Ⅱ	1개	
		Ⅲ	없음	

[녹지평가지표 달성기준]



녹지평가지표 1 : 환경성검토에서 녹지평가지표를 달성한 것으로 함
녹지평가지표 2 : 환경성검토에서 녹지평가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로 달성하지 못한 사유를 첨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제4장 토지환경

1. 토지이용

가. 토지이용 현황

1)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대상지가 위치한 양천구는 총면적 17.41㎢ 중 8.67㎢(49.81%)가 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도로 3.10㎢(17.81%), 공원 1.75㎢(10.05%) 등으로 분포하고 있음.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구분		합계	전	답	임야	대지	도로	철도용지	공원	기타
양천구	면적(㎢)	17.41	0.11	0.02	1.07	8.67	3.10	0.24	1.75	2.45
	비율(%)	100.00	0.63	0.12	6.15	49.81	17.81	1.38	10.05	14.05

[주] 기타 :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종교용지, 묘지, 잡종지
[자료] 제35회 양천구 통계연보(2022.12.31.기준), 2023, 양천구

2)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 양천구의 용도지역은 총 17.47㎢ 중 주거지역 12.54㎢(71.78%), 녹지지역 4.04㎢(23.13%), 상업지역 0.80㎢(4.58%)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구분		총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양천구	면적(㎢)	17.47	12.54	0.80	0.09	4.04	-
	구성비(%)	100.00	71.78	4.58	0.51	23.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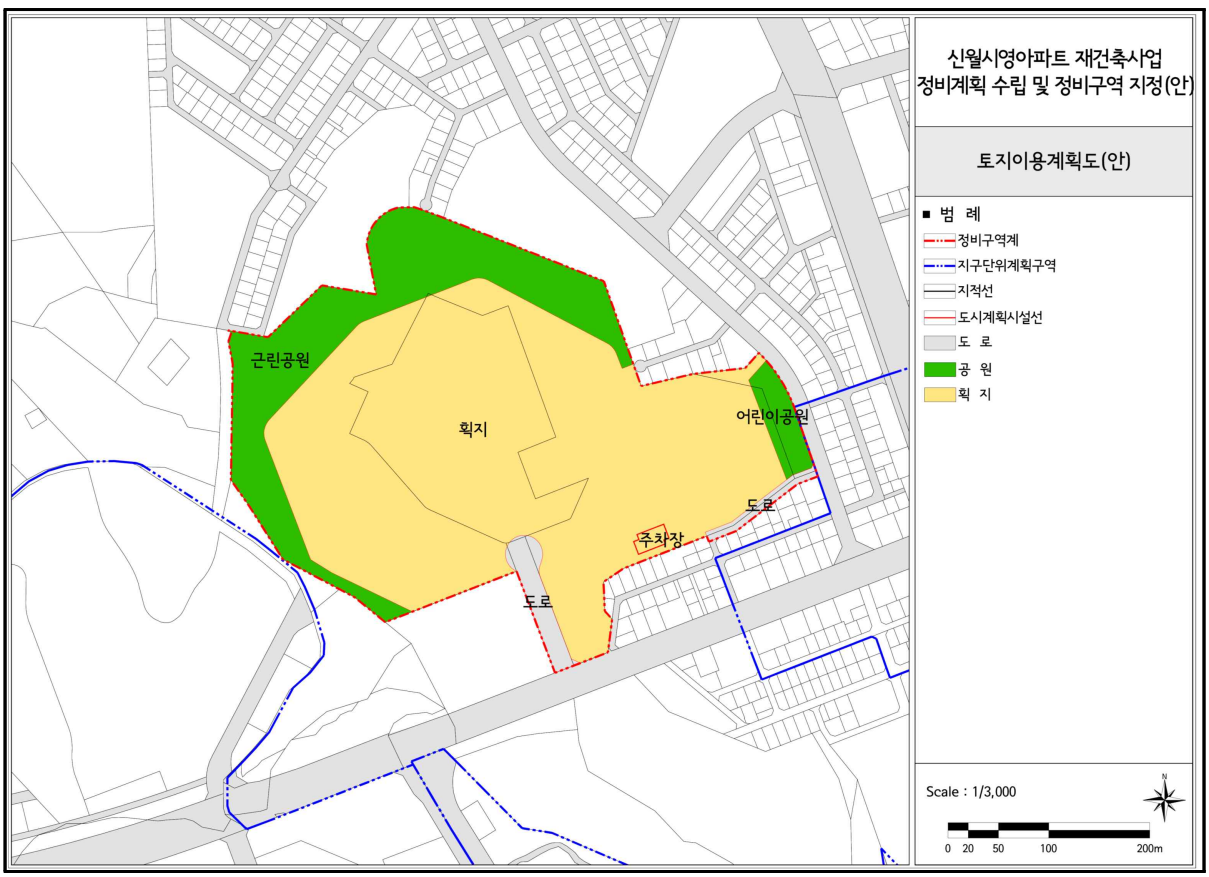
[자료] 제35회 양천구 통계연보(2022.12.31.기준), 2023, 양천구

나.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153,213.6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40,204.6	26.2	-
	도로	4,449.8	2.9	-
	근린공원	32,376.0	21.1	-
	어린이공원	3,378.8	2.2	-
	주차장	(580.92)	(0.4)	획지 내 입체적 결정
획지	소계	113,009.0	73.8	-
	획지	113,009.0	73.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토지이용계획도]



2. 지형 · 지질

가.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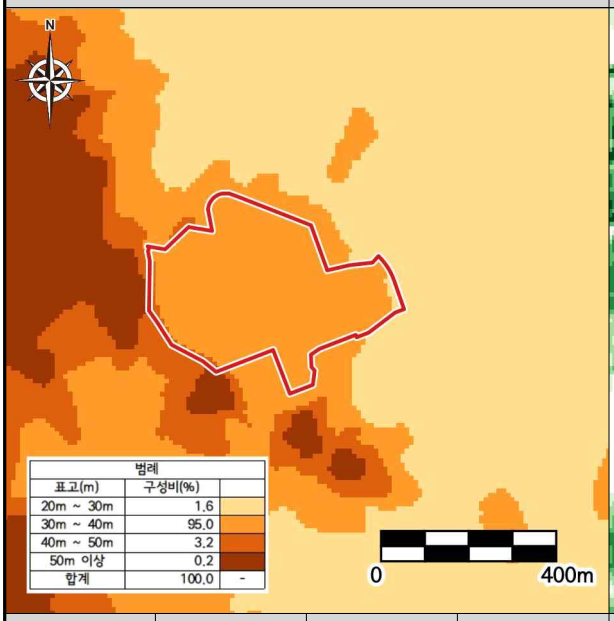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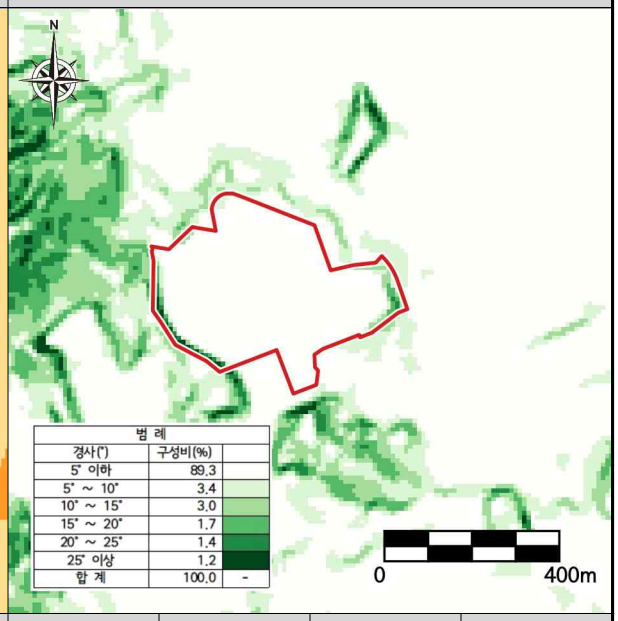
1) 지형현황

- 대상지가 입지한 신월동의 경우, 대부분 주거지,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대상지와 인접하게 공원 및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2) 표고 및 경사분석

- 대상지의 최저표고는 24.44m, 최대표고는 51.08m, 평균 표고는 37.99m로 조사됨.
- 대상지의 평균 경사도는 2.80°로 완만한 평지 지형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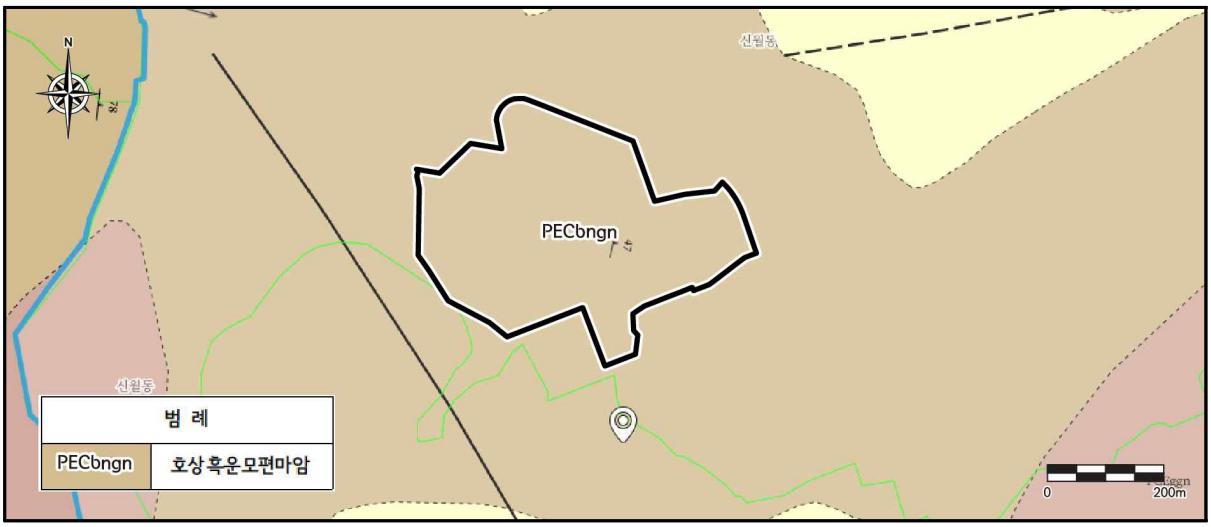
[표고 및 경사분석]

<table>
<tr><th colspan="4">표고현황</th><th colspan="4">경사현황</th></tr>
<tr><td colspan="4">
</td><td colspan="4">
</td></tr>
<tr><th>구분</th><th>평균표고</th><th>최대표고</th><th>최저표고</th><th>구분</th><th>평균경사도</th><th>최대경사도</th><th>최저경사도</th></tr>
<tr><td>대상지</td><td>37.99m</td><td>51.08m</td><td>24.44m</td><td>대상지</td><td>2.80°</td><td>28.08°</td><td>0.00°</td></tr>
</table>

3) 지질현황

■ 지질현황도를 통해 대상지 지질검토 결과 선캄브리아시대 호상흑운모편마암으로 조사됨

[지질 현황]



나.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지형 변화 및 절·성토 균형

- 본 대상지는 현재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평탄한 지형이므로 사업의 시행 시 부지정지 공사로 인한 지형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 계획에 따른 공사 시 절·성토 작업으로 인해 부분적인 지형 변화가 예상됨.
- 사업의 시행 시 본 대상지에서 발생되는 잔여토 또는 부족토는 서울시 및 수도권역에 사용되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http://soilbank.seoul.go.kr」 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함.
- 부지정지 및 터파기 시 사면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절한 사면구배와 사면처리를 통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 사면안정화 대책

- 사업시행으로 인해 사면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절한 사면구배와 사면처리를 통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임.

■ 토사유출방지

- 공사 시 우수유출로 인한 토양침식,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우기를 피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임.
- 사면 발생지역은 법면상단에 측구를 설치하여 도수로에 연결, 자연배수를 유도하며, 강우가 예상될 경우 사면에는 비닐이나 거적 등을 포설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할 계획임.

제5장 물환경

1. 수질

가. 현 황

1) 수계 현황

가) 하천현황

■ 대상지 주변의 수계분포를 보면 대상지 동측의 안양천이 북으로 유하하여 한강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한강서울은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환경부고시 제2018-6호)」 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목표기준 Ⅰb등급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하 천 현 황]

하천명	유수의 계통(수 계)				하천 등급	기 점	종 점
	본 류	1지류	2지류	3지류			
안양천	한강	양천천	-	-	국가	경기 안양 안양 경부본선철교	서울 영등포 양평 한강(국가) 합류점
한 강	한강	-	-	-	국가	강원 정선 여량 송천 합류점	경기 김포 월곳 용강리 유도 31m산정부터 남북으로 그은 직선

[자료] 한국하천일람(2020.12.31기준), 2022,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대권역명	중권역명	목 표 기 준		생물이해등급	어류생물지수
한 강	한강서울	좋음	Ib	매우좋음 ~ 좋음	A, B

비고

1. 연간 275일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높은 수위에서 달성·유지되어야할 목표기준임
2. 각 중권역의 대표지점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환경 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름
3. 생물이해등급 중 "수생태계 특성"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이해표'의 생물등급에 따르며, "어류생물지수"는 '생물측정망 조사 및 평가지침(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6-372호)'의 어류생물지수(FAI) 평가등급에 따름

※ 어류생물지수(FAI) 평가등급

평가지표	고려요소	평가등급				
		매우좋음(A)	좋음(B)	보통(C)	나쁨(D)	매우나쁨(E)
어류생물지수 (FAI)	국내종의 종수 및 개체수, 민감종수, 내성종수, 잡식종수, 비정상종수 등	80이상 100이하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20이상 40미만	0이상 20미만

4. 호소기준의 각 호소는 하천기준의 각 중권역에서 제외됨
5. 각 중권역 대표지점의 목표기준 달성여부 평가는『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6호)』에 따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항목에 대해 각각 평가하며,

중권역 대표지점별 수질측정 보고자료의 연간산술평균값으로 평가함

6. 각 중권역 대표지점의 목표기준 달성기간은『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기간과 같이 2025년까지로 함
7. 향후 대권역 계획 수립 시 오염원 변화 및 지점 변경 등 물환경 정책 추진 여건과 세부 추진 방향을 반영하여 일부 지점 목표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자료]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환경부고시 제2018-6호)

2) 수자원 이용현황

가) 취수장 현황

■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수시설은 총 4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총 시설용량은 6,160,000m^3/일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취수장 현황]

정수장	소재지	설계시설 용량 (㎥/일)	일평균 취수량 (㎥/일)	공급 정수장
강북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682	2,300,000	889,232	강북, 구의, 뚝도
암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산1	1,710,000	996,587	암사
자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01	1,450,000	588,007	구의, 뚝도
풍납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19	700,000	439,326	영등포

[자료] 2022 상수도통계, 2023, 환경부

나) 정수장 현황

■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정수시설은 총 6개소이며, 시설용량은 총 4,800,000m^3/일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정수장 현황]

구 분	위 치	시설용량 (m^3/일)	처리방식	급수구역	관련 취수장
강북	경기 남양주시 고산로 171	1,000,000	급속여과+활성탄여과	노원구외 9개구	강북
광암	경기 하남시 서하남로 293	400,000	급속여과+활성탄여과	송파구외 1개구	팔당(광역취수장)
구의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71	500,000	급속여과+활성탄여과	광진구외 6개구	강북+자양
뚝도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7	700,000	급속여과+활성탄여과	종로구외 6개구	강북+자양
암사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131	1,600,000	급속여과+활성탄여과	강동구외 9개구	암사
영등포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 11	600,000	급속여과+막여과(MF) +활성탄여과	양천구외 3개구	풍납

[자료] 2022 상수도통계, 2023, 환경부

3) 지구·지역 지정 현황

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2023년 12월 기준), 환경부」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나) 수변구역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현황

■ 서울특별시는 「4대강 수계별 수변구역 지정 · 고시현황(22년 기준, 환경부)」 에 따른 '수변구역' 및 「팔당 ·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23-123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지정현황

■ 서울특별시는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지정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06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라)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

■ 양천구는 전역이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 중 '나'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현황]

지역명	'청정'지역	'가'역	'나'지역
양천구	-	-	전역

[자료]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지정규정(환경부 고시 제2007-107호)

마) 오염총량관리지역 현황

■ 양천구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 한강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에 해당하며, 양천구 신월동 987-1번지 일원은 '한강I' 단위유역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4) 수질 현황

- 본 대상지가 위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하천 현황파악을 위하여 '안양천9'의 측정망 자료를 이용하여 양천구의 하천수질 현황을 조사하였음.
- 2023년도 '안양천9'의 수질은 pH 7.6, DO 8.4㎎/L(Ⅰa 등급), BOD 3.0㎎/L(Ⅱ등급), COD 8.0㎎/L(Ⅳ등급), SS 10.0㎎/L(Ⅰa 등급), T-N 7.510㎎/L, T-P 0.129㎎/L(Ⅲ등급), TOC 5.9㎎/L(Ⅳ등급)로 조사되었음.

[수질측정망 위치]

측정소명	주소	대권역	중권역	조사기관
안양천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한강	한강서울	한강물환경연구소

[자료]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

[수질 현황]

조사시기	조 사 항 목							
	pH	DO (mg/L)	BOD (mg/L)	COD (mg/L)	SS (mg/L)	T-N (mg/L)	T-P (mg/L)	TOC (mg/L)
2023년	7.6	8.4	3.0	8.0	10.0	7.510	0.129	5.9

[자료]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

5) 지하수질 현황

- 본 대상지가 위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지하수질 현황파악을 위하여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www.gims.go.kr)」 자료를 이용하여 지하수질 현황을 조사하였음.
- 2018~2019년도 '양천신정(A-12c-1-01)'지점의 지하수질은 pH 7.3, $NO^{3-}N$ 3.0 ~ 7.3㎎/L, Cl^- 44.9~51.5㎎/L, 그 외 항목은 극소량 검출이나 불검출로 조사되었음.

[지하수측정망 위치]

지점명	지점코드	주소	관리기관
양천신정	A-12c-1-0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0-7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료]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www.gims.go.kr)

[지하수질 현황]

년도	분기	용도	음용	Cd (㎎/L)	As (㎎/L)	CN (㎎/L)	Hg (㎎/L)	유기인 (㎎/L)	페놀 (㎎/L)	Pb (㎎/L)	Cr^{+6} (㎎/L)
	TCE (㎎/L)	1.1.1-TCE (㎎/L)	벤젠 (㎎/L)	톨루엔 (㎎/L)	에틸벤젠 (㎎/L)	크실렌 (㎎/L)	pH	대장균 (㎎/L)	$NO^{3-}N$ (㎎/L)	Cl^- (㎎/L)	일반세균 (㎎/L)
2018년	상반기	생활용	음용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미검사	불검출	불검출	미검사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3	불검출	7.3	49.4	-
	하반기	생활용	음용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미검사	불검출	불검출	미검사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3	불검출	3	44.9	-
2019년	상반기	생활용	음용	0.0	0.0	0.0	0.0	-	0.0	0.0	-
	0.0	0.0	0.0	0.0	0.0	0.0	7.3	0.0	3.1	51.5	-
	하반기	생활용	음용	미검사	미검사	미검사	미검사	미검사	미검사	미검사	미검사
	미검사	미검사	미검사	미검사	미검사	미검사	미검사	미검사	미검사	미검사	-

[자료]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www.gims.go.kr)

[하천수질 환경기준]

구분	등급		상태(캐릭터)	기준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mg/L)	화학적 산소요구량(COD)(mg/L)	총유기탄소량(TOC)(mg/L)	부유물질량(SS)(mg/L)	용존산소량(DO)(mg/L)	총인(TP)(mg/L)	대장균군(군수/100mL)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생활환경	매우좋음	Ia		6.5~8.5	1이하	2이하	2이하	25이하	7.5이상	0.02이하	50이하	10이하
	좋음	Ib		6.5~8.5	2이하	4이하	3이하	25이하	5.0이상	0.04이하	500이하	100이하
	약간좋음	II		6.5~8.5	3이하	5이하	4이하	25이하	5.0이상	0.1이하	1,000이하	200이하
	보통	III		6.5~8.5	5이하	7이하	5이하	25이하	5.0이상	0.2이하	5,000이하	1,000이하
	약간나쁨	IV		6.0~8.5	8이하	9이하	6이하	100이하	2.0이상	0.3이하	-	-
	나쁨	V		6.0~8.5	10이하	11이하	8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0이상	0.5이하	-	-
	매우나쁨	VI		-	10초과	11초과	8초과	-	2.0미만	0.5초과	-	-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값(mg/L)		카드뮴(Cd) : 0.005이하 비소(As) : 0.05이하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납(Pb) : 0.05이하 6가크롬(Cr^{6+}) : 0.05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이하 사염화탄소 : 0.004이하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1,2-디클로로에탄 : 0.03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0.04이하 디클로로메탄 : 0.02이하 벤젠 : 0.01이하 클로로포름 : 0.08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0.008이하 안티몬 : 0.02이하 1,4-다이옥세인 : 0.05이하 포름알데히드 : 0.5이하 헥사클로로벤젠 : 0.00004이하				

비고)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다.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라.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마.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바.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사.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아. 용수는 당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자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환경기준

나.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1) 공사 시

■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지를 중심으로 공사 시 강우로 인한 부유토사의 유출에 의하여 인근 주변수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지 내 설치 예정인 현장사무소 및 작업인부에 의한 생활오수의 발생이 예상됨.

가) 우수유출량 산정

■ 강우 시 공사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수유출량은 소유역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합리식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우수유출량 산정식]

우수유출량 (Q) : $\frac{1}{360}CIA\ (m^3/s)$ …… 합리식
Q : 우수유출량(㎥/s) C : 유출계수 I : 강우강도 (㎜/hr) A : 배수면적 (ha)

■ 유출계수는 집수면적내의 지표상태, 경사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현재부지의 지형, 강우 시 유출흐름 등을 고려하여 배수구역을 구분하였음.

■ 배수구역의 특성에 따라 자연배수를 감안하였으며, 배수구역은 공사 시 나지화되므로 공지의 최대치인 0.3을 적용하였음.

[공종별 유출계수 표준치]

공종별	유출계수	공종별	유출계수
지붕	0.85~0.95	**공지**	**0.10~0.30**
도로	0.80~0.90	잔디, 수림이 많은 공원	0.05~0.25
기타 불투수면	0.75~0.85	경사가 완만한 산지	0.20~0.40
수면	1.0	구배가 급한 산지	0.40~0.60

[자료] 하수도시설기준, 2011, 한국상하수도협회

■ 강우강도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도시방재성능 목표 설정 방안 연구, 2010.11, 소방방재청」에 제시된 통합형 확률강우강도식을 적용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지역의 계수를 적용함.

[강우강도 산정식]

강우강도 $I(t,T)=\dfrac{a+b\ln\dfrac{T}{t^n}}{c+d\ln\dfrac{\sqrt{T}}{t}+\sqrt{t}}$ …… 합리식
I : 강우강도 (㎜/hr)　　t : 지속시간(min)　　T : 재현기간(year) a, b, c, d, n은 지역별 결정 상수

[자료] 기후변화를 고려한 도시방재성능 목표 설정 방안 연구, 2010. 11, 소방방재청

[강우강도 지역계수]

구 분	지 역 계 수				
	a	b	n	c	d
서울특별시	-27.5153	107.2041	-0.678979	-0.732797	0.023396

[자료] 기후변화를 고려한 도시방재성능 목표 설정 방안 연구, 2010. 11, 소방방재청

■ 유입시간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입시간 중 인구밀도가 평균의 유입시간인 7분, 강우빈도는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재현기간 30년을 적용한 결과, 강우강도는 251.02㎜/hr로 나타남.

[유입시간의 표준치]

국 내 일 반		미 국 토 목 학 회	
인구밀도가 큰 지역	5분	완전포장 및 지하도가 완비된 지역	5분
인구밀도가 적은 지역	10분		
평 균	**7분**	비교적 경사도가 적은 발전부지	10~15분
간 선 오 수 관 선	5분		
지 선 오 수 관 선	7~10분	평지의 주택부지	20~30분

■ 대상지 배수유역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유출량은 3.20㎥/s로 예측됨.

[우수유출량 산정]

배수구역 면적 A(ha)	유출계수 C	강우강도 I(㎜/hr)	우수유출량 (㎥/s)
15.3214	0.3	251.02	3.20

나) 토사유출량 산정

■ 배수구역 토사유출량의 산정은 단위면적 당 배출원단위(일본 사방시설 설계기준)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유출원단위는 사업지역 중 개발지역은 나지·황폐지의 유출원단위 평균치인 300㎥/ha·년을 적용하였음.

[토사유출량 산정식]

우수유출량 (Q) : $\frac{1}{365}A \cdot S \cdot C$ (톤/일) …… 합리식
A : 면적 (ha)　　S : 토사유출 원단위(㎥/ha·yr) C : 토사단위중량(ton/㎥)

[토사유출량 원단위]

토지상태	토사유출량 (㎥/ha · yr)	두께 (㎜)	토지상태	토사유출량 (㎥/ha · yr)	두께 (㎜)
나지, 황폐지	**200-400**	20-40	택벌지	2	0.2
개발지, 초지	15	1.5	보통의임야	1	0.1

■ 대상지 배수유역 내에서 공사 시 우수로 인해 발생되는 토사유출량은 23.30ton/일로 예측됨.

[토사유출량 산정]

구　　분	면 적(A) (ha)	토사유출량원단위(S) (㎥/ha·년)	토사단위중량(C) (ton/㎥)	토사유출량 (ton/일)
배수구역	15.3214	300	1.85	23.30

[주] 토사단위중량은 자갈섞인토사의 단위중량 1,700~2,000kg의 평균치인 1,850㎏을 적용
[자료] 건설공사표준품셈, 2024, 국토교통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다) 토사유출에 따른 SS 가중농도

■ 강우 시 우수유출량과 토사유출량을 토대로 공사 시 유출되는 토사로 인해 우수의 부유물질(SS) 농도는 약 84.27㎎/L가 가중될 것으로 예측됨.

[SS 가중농도 산정]

구　　분	우수유출량 (㎥/s)	토사유출량 (ton/일)	SS 가중농도 (㎎/L)	비　　고
배수구역	3.20	23.30	84.27	-

2) 운영 시

가) 용수공급 계획

■ 향후 본 대상지 내 계획인구에 따른 충분한 양의 용수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나) 우 · 오수처리 계획

■ 본 대상지는 운영 시 우수배제 계획 및 계획인구의 용수사용에 따른 오수처리 계획의 수립이 예상됨.

다. 저감방안

1) 공사 시

■ 대상지의 공사로 인한 강우 시 발생되는 토사의 유출로 인해 인근 주거지 및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공사 실시

■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부지 외곽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차단

■ 토사유출과 세굴방지를 위해 배수로의 하류부에 유속감속물을 설치

■ 공사 전 배수구역 하단에 침사지를 설치토록 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침사지를 계획

■ 절 · 성토사면 발생 시 그린망이나 거적덮개를 설치하고 조기녹화를 실시하여 사전에 우수유출을 저감

■ 공사 시 공사인부에 의해 발생되는 오수는 기존 하수 관로를 이용하여 연계처리

2) 운영시

■ 상수도 계획

- 용수공급은 안정적이며 위생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상위계획과 연계한 상수도 공급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각종 개발계획을 고려한 용수공급계획을 수립
- 용수공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지원강화와 용수사용의 절약을 병행하여 보다 효율적인 용수이용을 추구할 계획이며, 대상지 내 상수관로를 설치하여 주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상수관로를 통해 공급받을 계획

■ 우수 계획

- 우수배수방식은 자연유하식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지 내에 우수관로를 설치하여 주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우수관로에 연결하여 처리

■ 하수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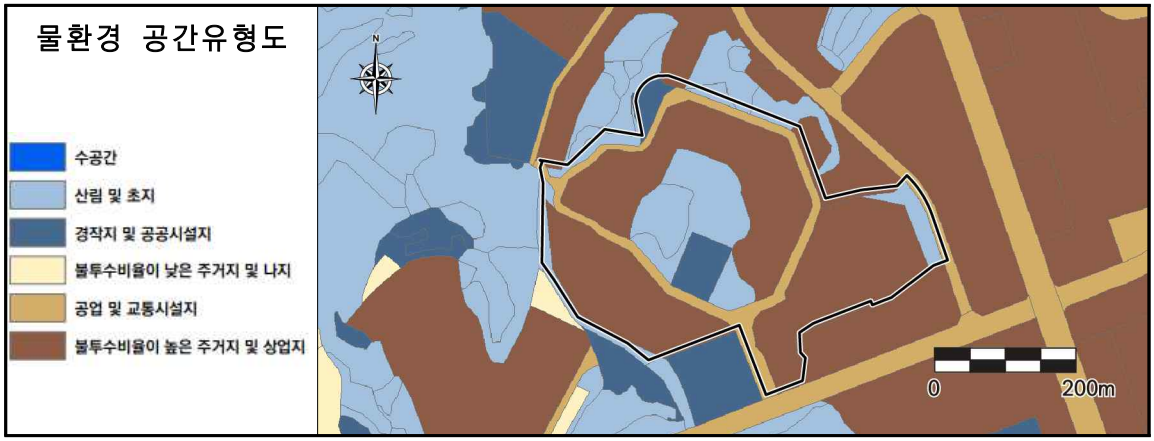
- 하수관거는 자연유하식으로 계획하며, 우수와 오수를 분류하여 처리하는 완전 분류식을 원칙으로 함.
- 본 대상지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하수관로에 연결하여 처리할 계획

2. 물순환, 수리·수문

가. 물환경

■ 대상지는 공업 및 교통시설지, 산림 및 초지, 경작지 및 공공시설지, 불투수비율이 높은 주거지 및 상업지로 불투수율 높은편임..

[물환경 공간유형도]



나. 생태면적률

1) 생태면적률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2023.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에 제시된 기준의 공동주택부분을 적용하여 생태면적률 30% 이상 만족 여부를 검토함.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건축유형	생태면적률 기준
(1)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	**30% 이상**
(2) (1) 이외의 건축물	20% 이상
(3)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계획 시설)	20% 이상
(4) (2)~(3)에도 불구하고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건설하는 건축물 및 기반시설	30% 이상
(5) (1)~(4)에도 불구하고 대상지가 녹지지역인 경우	50% 이상

[주] 단,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태면적률 주관부서 검토 등을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료]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개정 2023.10.30.), 서울시 도시계획국

2) 생태면적률 산정

■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2023.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생태면적률을 산정하였는지 검토하였음.

[생태면적률 산정]

생태면적률 산정식
생태면적률(%)=[자연순환기능 면적/전체면적]×100
=[Σ(피복유형별 환산면적)+Σ(식재유형별 환산면적)]/전체면적×100

[주] 피복유형 환산면적 = Σ(피복유형별 면적 x 가중치), 식재유형 환산면적 = Σ(식재개체수 x 자연순환기능 환산면적 x 가중치)
[자료]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2023.10, 서울시 도시계획국

[생태면적률 평가기준 적용 시 최소 생태면적]

구 분	해당면적(㎡)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생태면적률 기준 만족 최소면적(㎡)	본 사업 생태면적(㎡)
대상지	113,009.00	30% 이상	33,902.70	**50,865.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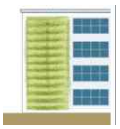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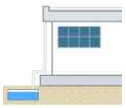
[주] 해당면적(㎡)은 토지이용계획상 획지(주택용지)에 해당하는 면적임.

[피복유형 구분 및 가중치]

피복유형			가중치		세부기준	비고
1		자연지반녹지	자연지반녹지	1.0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식생체류지	1.2	자연지반녹지내 식생체류지 설치 부분	
2		수공간	투수기능	1.0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투수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차수시설	0.5	자연지반 또는 인공지반 위에 차수처리 된 수공간	
3		인공지반녹지	토심≥90㎝	0.7	인공지반 상부 녹지 조성(최소토심 45㎝ 이상)	
			45㎝≤토심≤90㎝	0.6		
4		옥상녹화	토심≥90㎝	0.7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최소토심 20㎝ 이상)	
			45㎝≤토심≤90㎝	0.6		
			20㎝≤토심≤45㎝	0.4		

[피복유형 구분 및 가중치]

(계속)

피복유형			가중치		세부기준	비고
5		투수 포장	식재비율≥30%	0.4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단위면적당 식재면적 비율이 30% 이상인 부분 포장면	인공지반 상부에 설치하는 경우 토심에 따른 인공지반 가중치를 해당 공간유형별 가중치에 곱하여 산정 개정지침 시행일로부터 2년 경과 이후에는 투수계수 1㎜/sec 이상 포장재 사용
			식재비율<30%	0.2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단위면적당 식재면적 비율이 30% 미만인 부분 포장면으로 포장재(한 변의 길이는 500㎜ 이하) 간 간격은 최소 10㎜ 이상의 틈새 확보	
			미식재	0.2	자연지반 상부 식재와 연계하지 않고 포장재 전체를 통해 공기와 물이 통과되는 투수성 포장면으로 투수계수 0.5㎜/sec (서울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결과 2등급) 이상의 포장재 사용 또는 마사토, 모래, 자갈 등 자연골재를 물다짐하여 조성	
6			벽면녹화	0.3	창이 없는 벽면이나 옹벽(담장) 녹화를 최소 토심은 20㎝ 이상(단, 등반형 벽면녹화의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 산정)	
7			옥상저류 및 침투시설 연계면	0.1	누적유출고 5㎜ 이상 처리하는 우수침투시설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	

[자료]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개정 2023.10.30.), 서울시 도시계획국

[식재유형 구분 및 가중치]

식재유형	개체당 환산면적	가중치	세부기준	대표수종
0.3m≤H<1.5m	0.1㎡/주수	0.1	지피초화류의 경우 0.3m 이상이라 하더라도 개체로 인정하지 않음	관목류
1.5m≤H<4m	0.3㎡/주수	0.1	관목류를 식재하는 경우 개체당 환산면적의 50%만 인정	대관목류 및 소교목류
H≥4m	3㎡/주수	0.1	낙엽교목으로 B≥5㎝ 또는 R≥6㎝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0.8m인 경우 교목을 2주 인정	대교목류로서 조경기준(국토부고시) 제7조2항의 각호에 의하여 인정주수를 산출 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
			낙엽교목으로 B≥12㎝ 또는 R≥15㎝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2m인 경우 교목을 2주 인정	
H≥5m	3㎡/주수	0.1	낙엽교목으로 B≥18㎝ 또는 R≥20㎝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3m 인 경우 교목을 4주 인정	보존수목일 경우 가중치 0.15 대나무를 식재하는 경우 개체당 환산면적의 10%(0.3㎡)만 인정
			낙엽교목으로 B≥25㎝ 또는 R≥30㎝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5m 인 경우 교목을 8주 인정	

[주] B : 흉고직경, R : 근원직경, W : 수관폭
[자료]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개정 2023.10.30.), 서울시 도시계획국

3) 저영향 개발 계획

(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LID) 대상

- 본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11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 중 주거 부지에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빗물관리시설 도입 및 빗물의 표면 유출을 최소화하는 등의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본 대상지는 공동주택으로써 기준시설별 빗물분담량은 5.5㎜/hr를 적용하여야 함.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구 분	공공 · 교육	공원 · 녹지	교통 · 기반	민간(대규모)	민간(소규모)	비 고
빗물분담량 (㎜/hr)	6.0	7.5	5.0	**5.5**	3.5	-

[주1]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
[주2] 민간(대규모) : 500㎡이상, 민간(소규모) : 500㎡미만
[자료1] 빗물분담량 및 빗물분담량 적용을 위한 평균포화투수계수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4호)
[자료2]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안내, 2016.09,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나) 빗물분담량에 따른 필요대책량 산정

- 본 대상지의 필요대책량은 641.13㎡/hr로 산정되었음.

[빗물분담량에 따른 필요대책량 산정식]

빗물분담량	대책면적	비 고
7.5㎜//hr	부지면적-[지면기준 녹지면적x(0.4)] 적용	-
6.0㎜//hr	부지면적-[지면기준 녹지면적x(0.5)] 적용	-
5.5~5.0㎜//hr	**부지면적-[지면기준 녹지면적x(0.6)] 적용**	**적용**
3.5㎜//hr	부지면적-[지면기준 녹지면적] 적용	-

[빗물분담량에 따른 필요대책량 산정]

$$필요대책량 = [153{,}213.60m^2 - 61{,}074.11m^2 \times 0.6] \times 5.5 \div 1{,}000$$

[토지이용별 빗물분담량 및 필요대책량]

구 분	토지이용면적 (㎡)	녹지면적 (㎡)	대책면적 (㎡)	빗물분담량 (㎜/hr)	필요대책량 (㎡/hr)
민간(대규모)	153,213.60	61,074.11	116,569.13	5.5	641.13

[주] 녹지면적은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의 계획면적임.

나. 저감방안

1) 저영향개발 사전협의(LID) 제출

- 대상지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LID)는 별도의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 대책량 대비 설치대책량이 충분하도록 투수포장,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등의 침투시설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사업자	→ 제출	시장 · 구청장 (인허가권자)	필요시 보완 요청 →	사업자	→ 보완 제출	시장 · 구청장 (인허가권자)	→ 결과 통보	시장 (물순환 주관부서)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별지작성) *감리확인		설치결과 확인		보완작성		검토		자료 수합 · 관리

2) 생태면적률

- 대상지 내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우수유출량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임.
- 현재 생태면적 50,865.58㎡(생태면적률 45.01%) 확보로 적용기준에 만족하였음.

[피복유형별 생태면적]

구분	피복유형		가중치	계획면적 (㎡)	환산면적 (㎡)	비고
	자연지반녹지		1.0	20,351.51	20,351.51	-
	인공지반 녹지	토심≥90㎝	0.7	40,722.60	28,505.82	-
	옥상녹화	45㎝≤토심≤90㎝	0.6	724.31	434.59	-
	투수포장	자연지반	0.2	2,359.69	471.94	식재면적 30%미만
		인공지반	0.14	7,869.45	1,101.72	
합 계			-		50,865.58	-
대지면적			-		113,009.00	-
생태면적률			50,865.58÷113,009.00*100=**45.01%**			-

[주] 대지는 획지의 면적을 적용함

[생태 면적도]


N
생태면적률 산출표
단위 : ㎡
구 분
가중치
실면적
환산면적
비 고
대 지 면 적
113,009.00 ㎡
생 태 면 적 률
Σ(공간유형별면적 X 가중치) / 대지면적 X 100
= 50,865.58㎡ / 113,009.00㎡ X 100%
= 45.01%
합 계
50,865.58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투수포장
토심 90cm이상
토심 45cm≤토심<90cm
자연지반
인공지반
식재면적 30%미만
식재면적 30%이상
1.0
0.7
0.6
0.2
0.14
20,351.51
40,722.60
724.31
2,359.69
7,869.45
20,351.51
28,505.82
434.59
471.94
1,101.72
신월로 (20M 도로)
지양로 (15M 도로)
지양로2길 (8M 도로)
신월2동 구사무소
신월문화체육센터
독서공원
오솔길공원
지양산
신정이펜하우스
신월중학교
신월초등학교
온수도시자연공원
주민운동시설 (지하)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주민센터
어린이 공원
차량출입구
보행출입구
대지경계선
건축한계선(3M)
구역경계선
지하철선로
지하철 5호선 (1M)
주차장 (지하)
주차장 (지상)
자전거보관소
전기자전거충전소
공중화장실
쓰레기분리수거장
옥외운동시설
경비실
도시가스 정압기실
지하철환기실
지하철출입구
지하철 5호선 (1M)
주차장 (지하)

제6장 대기환경

1. 바람 및 미기후

가. 현 황

1) 기상개황

■ 본 대상지가 위치한 지역의 기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기상대의 과거 10년간(2013년~2022년)의 기상개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남

[기 상 개 황]

구분 / 년별	기 온 (°C)			강수량 (㎜)	상대습도 (%)	일조시간 (hr)	평균풍속 (m/sec)	주풍향 (16방위)
	평 균	최 고	최 저					
2013	12.5	33.9	-16.4	1,403.8	60.0	2,418.7	2.8	W
2014	13.3	35.8	-13.2	808.9	62.9	2,432.3	2.7	W
2015	13.6	36.0	-13.0	792.1	59.8	2,579.3	2.7	W
2016	13.6	36.6	-18.0	991.7	59.1	2,497.8	2.3	W
2017	13.0	35.4	-12.6	1,233.2	57.7	2,621.8	2.2	W
2018	12.9	39.6	-17.8	1,284.1	57.4	2,609.1	1.7	WNW
2019	13.5	36.8	-10.9	891.9	56.7	2,545.6	2.0	WNW
2020	13.2	35.4	-12.9	1,651.1	63.2	2,263.7	2.4	W
2021	13.7	36.5	-18.6	1,186.5	65.5	2,196.1	2.3	NE
2022	13.2	36.1	-13.7	1,775.1	64.4	2,325.2	2.4	W
전 년	13.3	36.2	-14.7	1,201.8	60.7	2,449.0	2.3	W

[자료] 기상연보(2013~2022년), 기상청

2) 월별 풍향 및 풍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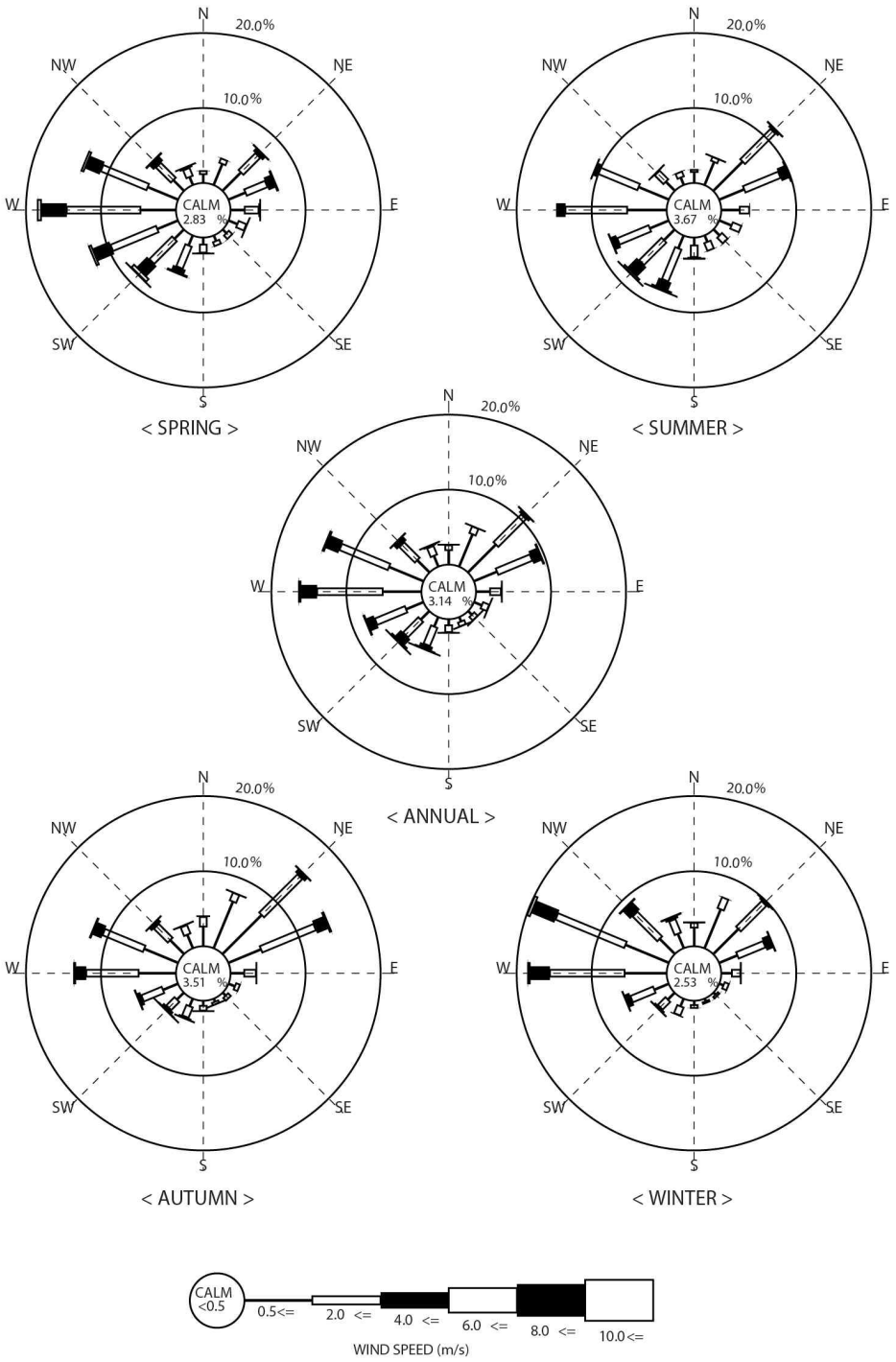
■ 서울기상대의 지난 10년간 평균 풍속은 2.3m/s로서 발생빈도는 서풍(W)이 주풍향으로 조사되었음

[월별 풍속 및 주풍향]

구분 /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평균풍속 (m/s)	2.3	2.5	2.5	2.7	2.5	2.2	2.3	2.2	2.2	2.1	2.2	2.3	2.3
주풍향 (16방위)	WNW	W	W	W	W	W	W	NE	NE	NE	W	WNW	W

[자료] 기상연보(2013~2022년), 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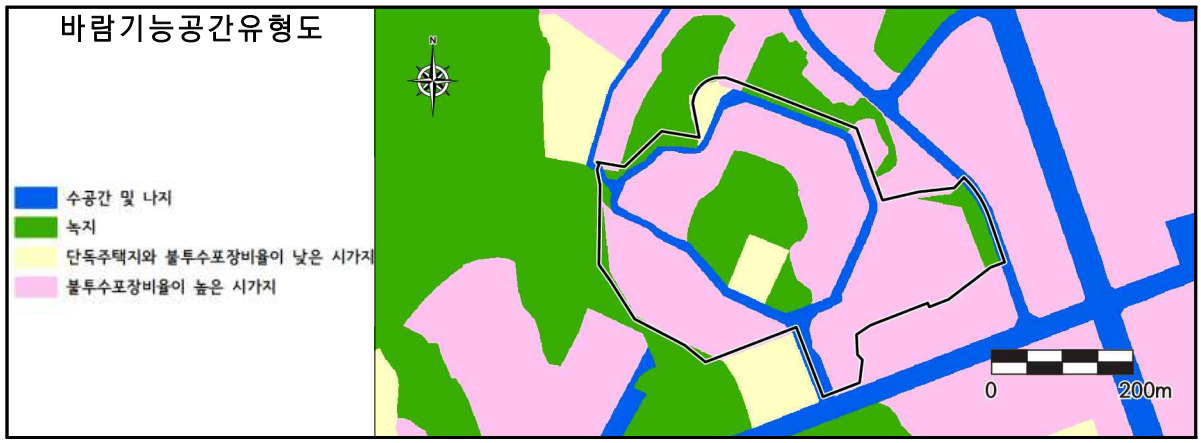
[바 람 장 미 도]


N
NE
E
SE
S
SW
W
NW
20.0%
10.0%
CALM
2.83 %
< SPRING >
CALM
3.67 %
< SUMMER >
CALM
3.14 %
< ANNUAL >
CALM
3.51 %
< AUTUMN >
CALM
2.53 %
< WINTER >
CALM
<0.5
0.5<=
2.0 <=
4.0 <=
6.0 <=
8.0 <=
10.0<=
WIND SPEED (m/s)

3) 바람기능 현황

■ 대상지의 바람기능공간유형은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시가지, 녹지, 단독주택지와 불투수포장비율이 낮은 시가지, 수공간 및 나지로 조사되어 생활권 높이에서의 바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나, 수공간 및 나지와 인접하여 바람길이 형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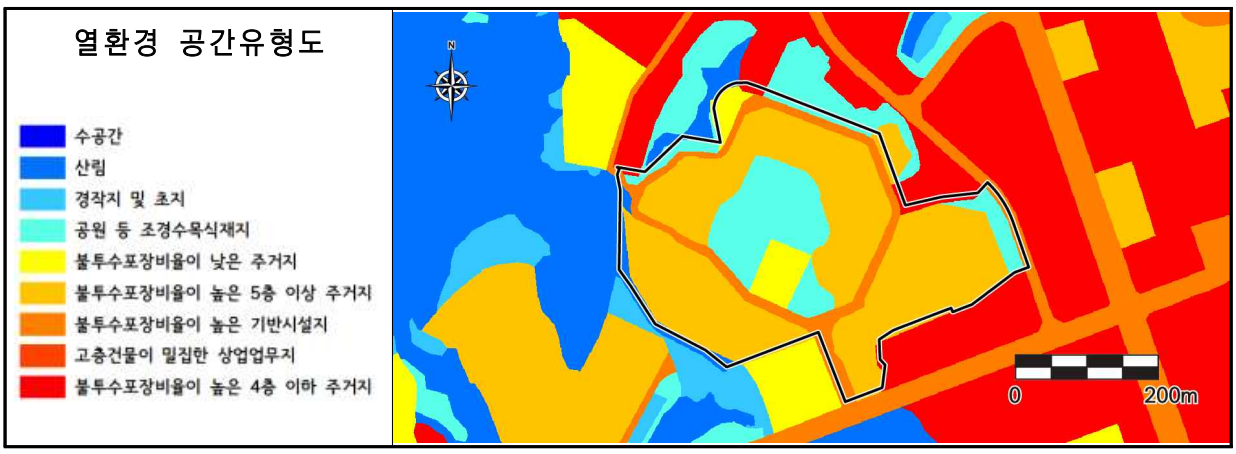
[바람기능공간유형도]



4) 열기능 현황

■ 대상지는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5층 이상 주거지, 공원 등 조경수목식재지, 불투수포장비율이 낮은 주거지,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4층 이하 주거지로 조사 되었음.

[열환경 공간유형도]



나.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본 대상지는 지상 21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으며, 고층 시설물 배치에 따른 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바람길(주풍향 서풍)의 차단 등과 같이 주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된 기상요소에 대한 영향이 예상됨.
- 건물의 입지로 풍하 방향의 풍속 증가, 신축건물에 부딪힌 기류가 좌우로 갈라져 인접도로 및 건물사이를 따라 진행, 건물에 의한 건물 뒤편으로 풍속이 크게 약화된 와류 생성 등의 영향이 예상됨.
- 대상지 내부 건축물 배치는 바람길과 녹지축, 통경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바람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조경녹지에 수목 식재후의 경우에는 식재 전에 비해 두드러진 개선효과는 볼 수 없으나, 대상지 내의 풍속(수치적 해석)이 경미하나마 적은 양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대상지 내 녹지를 확보함으로서 풍속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대기정화 수종 및 향토수종 등 적합한 수정을 선정하여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미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2. 대기질, 온실가스

가. 현황

1) 조사항목

■ 본 대상지가 위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원의 대기질 현황농도 조사는 인근에 위치한 양천구 측정소에서 측정한 자료를 인용 · 분석하였음.

2) 대기질 조사 범위

■ 측정소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52길 56 신정4동 문화센터

■ 조사기간 : 2023년 월별 측정 농도

■ 조사항목 : PM-10, PM-2.5, O_3, NO_2, CO, SO_2

[대기오염측정망 위치]

측정소명	측정소 위치	비고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52길 56 신정4동 문화센터	도시대기

[자료] Airkorea, 한국환경공단

3) 조사결과

■ 양천구 측정소의 2023년 월별 대기오염도 현황 조사 결과 연평균 농도는 PM-10 40㎍/㎥, PM-2.5 21㎍/㎥, O_3 0.030ppm, NO_2 0.022ppm, CO 0.5ppm, SO_2 0.003ppm으로 조사되었음.

[대기오염도 현황]

구 분 \ 항 목		PM-10 (㎍/㎥)	PM-2.5 (㎍/㎥)	O_3 (ppm)	NO_2 (ppm)	CO (ppm)	SO_2 (ppm)
2023년	1월	53	29	0.013	0.030	0.6	0.003
	2월	50	35	0.018	0.029	0.6	0.003
	3월	71	33	0.030	0.029	0.5	0.004
	4월	62	21	0.034	0.020	0.4	0.003
	5월	38	19	0.039	0.018	0.4	0.003
	6월	29	18	0.048	0.014	0.4	0.003
	7월	27	17	0.035	0.013	0.4	0.003
	8월	22	14	0.036	0.013	0.4	0.003
	9월	21	11	0.034	0.015	0.4	0.003
	10월	30	15	0.028	0.023	0.5	0.003
	11월	32	16	0.023	0.026	0.5	0.003
	12월	39	24	0.017	0.033	0.6	0.003
평 균		40	21	0.030	0.022	0.5	0.003

[자료] Airkorea, 한국환경공단

[대기 환경기준]

항목	단위	구분	대기질 환경기준	서울시 대기질 환경기준	측정방법
아황산가스 (SO_2)	ppm	연평균	0.02이하	*0.01이하*	자외선형광측정법
		24시간평균	0.05이하	*0.04이하*	
		1시간평균	0.15이하	*0.12이하*	
일산화탄소 (CO)	ppm	8시간평균	9이하	*9이하*	비분산적외선 분석법
		1시간평균	25이하	*25이하*	
이산화질소 (NO_2)	ppm	연평균	0.03이하	*0.03이하*	화학발광법
		24시간평균	0.06이하	*0.06이하*	
		1시간평균	0.10이하	*0.10이하*	
미세먼지 (PM-10)	㎍/㎥	연평균	50이하	*50이하*	베타선흡수법
		24시간평균	100이하	*100이하*	
미세먼지 (PM-2.5)	㎍/㎥	연평균	15이하	*15이하*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 측정법
		24시간평균	35이하	*35이하*	
오존 (O_3)	ppm	8시간평균	0.06이하	*0.06이하*	자외선광도법
		1시간평균	0.10이하	*0.10이하*	
납(Pb)	㎍/㎥	연평균	0.5이하	*0.5이하*	원자흡광광도법
벤젠	㎍/㎥	연평균	5이하	*5이하*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주]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미세먼지는(PM-10)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미세먼지는(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자료]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환경기준
2.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별표 1] 환경기준

나.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1) 공사 시

- 대상지에서 사업이 시행될 경우 부지정지, 터파기 및 건축 등의 공사 시에는 먼지 및 기타 대기오염 물질 발생이 예상되며, 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요구됨.
-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 건설장비의 가동에 따른 배출오염물질(PM-10, PM-2.5, SO_2, NO_2 등) 배출
  - 건설장비 이동에 따른 비산먼지(PM-10, PM-2.5) 발생
  - 토사의 하역 및 야적 시 바람에 의한 비산먼지(PM-10, PM-2.5) 발생

2) 운영 시

- 대상지의 운영 시에는 난방 및 취사 연료사용에 따른 배기가스와 획지별 교통량에 따른 차량 배기가스 발생이 예상됨.
- 그 외 불투수 포장 등 토양포장율 변화에 따른 노면 비점오염물질의 재비산, 도시열섬 현상 및 대기오염물질 정체 현상 등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됨.

가) 난방연료

- 신축 건축물의 난방면적에 따른 난방열부하는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18-202호」 에 제시되어 있는 난방 면적비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시되어 있는 단위난방부하(㎉/㎡·hr)를 적용하여 산정함

[용도별 난방면적 비율]

구 분	세부 내역	난방면적비(%)
주택	아파트, 연립, 주상복합(주거부분)	80
상업시설	근린·일반·중심상업, 주상복합(주거제외) 등	70
업무시설	업무시설, 도시지원시설등	84
열공급설비	열공급설비	84

[자료]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18-202호)

[주택의 단위난방부하 기준]

구 분	난방면적(㎡)	단위난방부하(kcal/㎡ · hr)			
		A	B	C	D
아 파 트	85초과	41.9	38.6	**35.2**	33.0
	60~85이하	43.0	39.4	**36.2**	33.7
	60이하	44.7	41.1	**37.6**	35.2
연립주택	85초과	44.1	40.3	37.1	34.5
	85이하	46.9	42.8	39.5	36.8

[비고] A : 세종 · 양주 · 철원파주 · 남양주 · 예천 · 아산지역,
B : 안동 · 고양 · 춘천 · 대전 · 용인 · 안산 · 의정부 · 영월 · 서산 · 원주 · 경주 · 김포 · 의왕 · 순천 · 오산 · 이천 · 구리 · 하남 · 과천 · 전주 · 충주 · 수원 · 진주 · 구미 · 청주 · 평택지역,
C : 속초 · 화성 · 강릉 · 천안 · 대구 · 서울 · 시흥 · 군산 · 성남 · 안양 · 울진 · 울산 · 광명 · 인천 · 부천 · 광주 · 군포지역,
D : 포항 · 김해 · 양산 · 부산 · 여수 · 목포 · 창원지역,
상기 이외의 지역은 인근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제주도는 따로 정함
[자료]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18-202호)

[건축물의 단위난방부하 및 급탕부하 (단위 : ㎉/㎡·hr)]

건 물 용 도	단위난방부하		단위 급탕부하	비 고
	A	B		
공동주택	-	-	15	단위난방부하는 〈주택의 단위난방부하 기준〉 참조
근린생활시설	86	**110**	5	관리사무소, 사회복지관, 아파트형공장 포함
근린공공시설	89	110	7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파출소, 우체국 등
종교시설	115	135	2	
노유자시설	86	**105**	7	유치원, 노인정
의료시설	105	125	25	병원 급 이하
교육연구시설	89	115	5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업무시설(일반 · 공공)	86	**115**	7	
숙박시설	89	110	45	
판매시설	98	120	5	
위락시설(특수목욕탕)	110	120	80	목욕장이외의 시설은 판매시설기준 적용
관람집회시설	115	135	2	
전시시설	115	135	2	

[주] 1. A : 라디에이터, 콘벡터 및 팬코일유니트(FCU)가 주 난방인 경우 적용
2. B : 공기조화기(AHU 등)가 주 난방인 경우 적용
[자료]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18-202호)

■ 본 대상지 내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전용면적을 고려한 난방연료(도시가스(LNG) 가정) 사용량을 예측함.

■ 대상지는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28.46%, 용적률 249.98%로 계획되어 있으며 최대용적률 적용 시 연료 소요량은 809.70㎥/hr로 예상됨.

[최대난방부하 및 난방 연료 사용량 산정]

구분	세대수	전용 면적 (㎡)	용적률 최대 연면적(㎡)	난방면적 (㎡)	단위 난방 부하 (㎉/㎡·hr)	최대난방 부하량 (㎉/hr)	연료 사용량 (㎥/hr)
20평형	71	49.80	3,535.80	2,828.64	37.6	106,356.86	11.57
24평형	87	59.95	5,215.65	4,172.52	37.6	156,886.75	17.07
34평형	38	84.95	3,228.10	2,582.48	36.2	93,485.78	10.17
20평형	379	49.80	18,874.20	15,099.36	37.6	567,735.94	61.78
24평형	1,780	59.95	106,711.00	85,368.80	37.6	3,209,866.88	349.28
34평형	718	84.95	60,994.10	48,795.28	36.2	1,766,389.14	192.21
44평형	76	108.98	8,282.48	6,625.98	35.2	233,234.64	25.38
노유자시설	-	3,170.00	3,170.00	2,662.80	105.0	279,594.00	30.42
관리사무소, 경비실	-	315.00	315.00	220.50	110.0	24,255.00	2.64
작은도서관	-	420.00	420,.00	352.80	115.0	40,572.00	4.41
주민공동시설	-	2,625.00	2,625.00	1,837.50	110.0	202,125.00	21.99
근린생활시설	-	7,809.45	7,809.45	5,466.62	110.0	601,327.65	65.43
합 계	3,149	-	-	-	-	-	809.70

[비고] 1. 난방면적은 전용면적*세대수를 적용함
2. 단위난방부하 : 아파트(C),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노유자시설(B) 적용
3. LNG 발열량 : 9,910㎉/㎥
4. 노유자시설 :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유치원 면적을 적용

[자료]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제5조제1항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연료명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g/kg)			비고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LNG	0.03	0.01	3.70	(난방)

[자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난방연료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연료명	연료사용량 (㎥/hr)	대기오염물질 배출량(kg/hr)			비고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LNG	809.70	0.01962	0.00654	2.41994	-

[주] 환산계수 : LNG(1㎏=1.238㎥)
[자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나) 취사연료

■ 본 대상지 운영 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서 취사연료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이 예상됨.

다) 이동배출원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

■ 대상지 운영 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해 오염물질의 배출이 예상됨.

라) 온실가스

■ 대상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예측은 운영 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량, 전기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CO_2, CH_4, N_2O 배출량을 토대로 산출함.

■ 난방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2006년 IPCC 가이드라인에 따른 온실가스별 배출계수와 에너지원별 순발열량 자료를 이용하여 CO_2, CH_4, N_2O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하고 온실효과 가스의 지구온난화 계수를 이용하여 온실가스량(CO_2e)으로 환산함

① 연료사용량을 순발열량으로 환산
순발열량(TJ) = 연료사용량(L, ㎏, ㎥) × 해당연료 순발열량(MJ/L, ㎏. ㎥) / 10^6
②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곱함
온실가스(CO_2, CH_4, N_2O) = 순발열량(TJ) × 배출계수(kg/TJ)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 계수]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계수	배출원의 예
이산화탄소(CO_2)	1	건설기계가동, 자동차 운행, 환기소 가동 등
메탄(CH_4)	21	연료사용, 자동차 주행 등
아산화질소(N_2O)	310	연료사용, 자동차 주행 등

[자료] 온실가스 항목의 효율적 환경영향평가 방안, 2009.07, 환경부

-CO_2 15,319.756ton/년, CH_4 1.365ton/년, N_2O 0.027ton/년으로 나타나 가스를 온실가스(CO_2e)로 환산하면 총 15,356.894tonCO_2e/년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구 분	LNG 발열량 (MJ/㎥)	온실가스 배출계수 (kg/TJ)	온실가스 배출량 (ton/년)	온난화계수	총 배출량 (ton CO_2e)
CO_2	38.5	56,100	15,319.756	1	15,319.756
CH_4	38.5	5	1.365	21	28.673
N_2O	38.5	0.1	0.027	310	8.465
CO_2e	-	-	-	-	15,356.894

- 운영 시 LNG 사용량 : 7,092,972.0N㎥/년
- LNG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 CO_2 : 56,100 kg/TJ
  - CH_4 : 5 kg/TJ
  - N_2O : 0.1 kg/TJ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
  - CO_2(ton/년) = (7,092,972.0N㎥/년× 38.5MJ/N㎥ / 10^6 × 56,100 kg/TJ) / 10^3 = 15,319.756ton/년
  - CH_4(ton/년) = (7,092,972.0N㎥/년× 38.5MJ/N㎥ / 10^6 × 5 kg/TJ) / 10^3 = 1.365ton/년
  - N_2O(ton/년) = (7,092,972.0N㎥/년× 38.5MJ/N㎥ / 10^6 × 0.1 kg/TJ) / 10^3 = 0.027ton/년
  - CO_2e(ton/년) = 15,319.756CO_2(ton/년) × 1 + 1.365CH_4(ton/년) × 21 + 0.027N_2O(ton/년) × 310
    = 15,356.894CO_2e(ton/년)

[자료 1]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제5조제1항 관련)
[자료 2]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제91조제1항 관련)

■ 전력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대상지 내 전력사용량은 산정하기 위하여 「2017년도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 2018, 산업통상자원부」 의 주택단위 및 기타시설 단위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대상지 내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결과 12,542,989.95㎾h/년으로 예측되었음.

[전력사용량 예측]

구 분	전력사용면적(㎡)	단위전력량(㎾h/㎡ · 년)	전력사용량(㎾h/년)
공동주택	206,841.33	50.50	10,445,487.17
부대복리시설	5,073.60	199.00	1,009,646.40
근린생활시설	5,466.62	199.00	1,087,856.39
합 계	217,381.55	-	12,542,989.95

[주] 1. 전력사용면적은 용적률 최대 연면적의 합임
2. 공동주택의 단위전력량은 아파트의 평균값을 적용
3.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단위전력량은 상가의 난방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을 적용
[자료1] 온실가스 항목의 효율적 환경영향평가 방안, 2009.07, 환경부
[자료2] 2017년도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 2018, 산업통상자원부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

- 본 사업시행 완료 후 사용되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연간 5,845.03tonCO_2e/년이 배출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 운영시 전력사용량 : 12,542,989.95㎾h/년
- E = Q × EF
  - Q : 외부에서 공급받은 전력 사용량(㎿h)
  - EF : 전력 배출계수, 0.466 (tCO_2e/㎿h)
- 전력사용에 따른 CO_2배출량 산정

12,542,989.95㎾h/년 × 0.466tCO_2 / 1,000㎾h = 5,845.03tCO_2e/년

[자료] 1.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한국전력거래소)
2.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개정

■ 온실가스 총 배출량 산정결과

-본 사업시행에 따라 고정배출원에 의해 배출되는 CO_2e량은 난방에 의해 15,356.89tonCO_2e/년, 전기사용에 의해 5,845.03tonCO_2e/년으로 총 21,201.92tonCO_2e/년이 배출될 것으로 예측됨.

다. 저감방안

1) 공사 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4항에 관련한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준하여 세륜·측면살수시설, 살수, 방진망, 진입도로 포장, 차속제한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장비의 효율적인 투입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비산먼지 등의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임.

가) 공사차량 관리

■ 공사차량의 통행과 토사적치로 인한 비산먼지의 영향이 예상되므로 토사운반 차량은 흙더미 위에 덮개를 씌워 운반

■ 공사장에 적치한 토사가 인접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청소원 배치

■ 공사장 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0㎞/h로 규제

나)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공사부지 출입구에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 공사장 내에서 묻은 먼지를 완전히 제거한 후 통과할 수 있도록 계획

[세륜·측면살수시설]

구 분	자동식 세륜시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대기환경보전법상 세륜시설 기준	◦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지닌 자동살수장치를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이상 ◦ 수조의 깊이 : 20㎝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이 연속적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시설 설치
측면살수시설 (공 통)	◦ 살 수 높 이 : 운반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 수조의 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 수압 : 3㎏/㎠ 이상	
특 징	◦ 최소의 면적으로 설치가능(8㎡) ◦ 고장이 없고, 이동이 쉬워 누구나 편하게 사용가능 ◦ 완벽한 세륜, 세차가 가능	◦ 과다한 면적필요(40㎡) ◦ 고정 토목공사로 재사용 불가 ◦ 세척수 사용으로 2차공해 유발 ◦ 완벽한 세륜·세차미비
적 용	적 용 (■)	-

[자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

다) 주기적인 살수 및 진입도로 선포장

- 사업시행 시 차량출입에 의한 먼지 발생이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진입로 입구에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진입도로 선포장을 실시함으로써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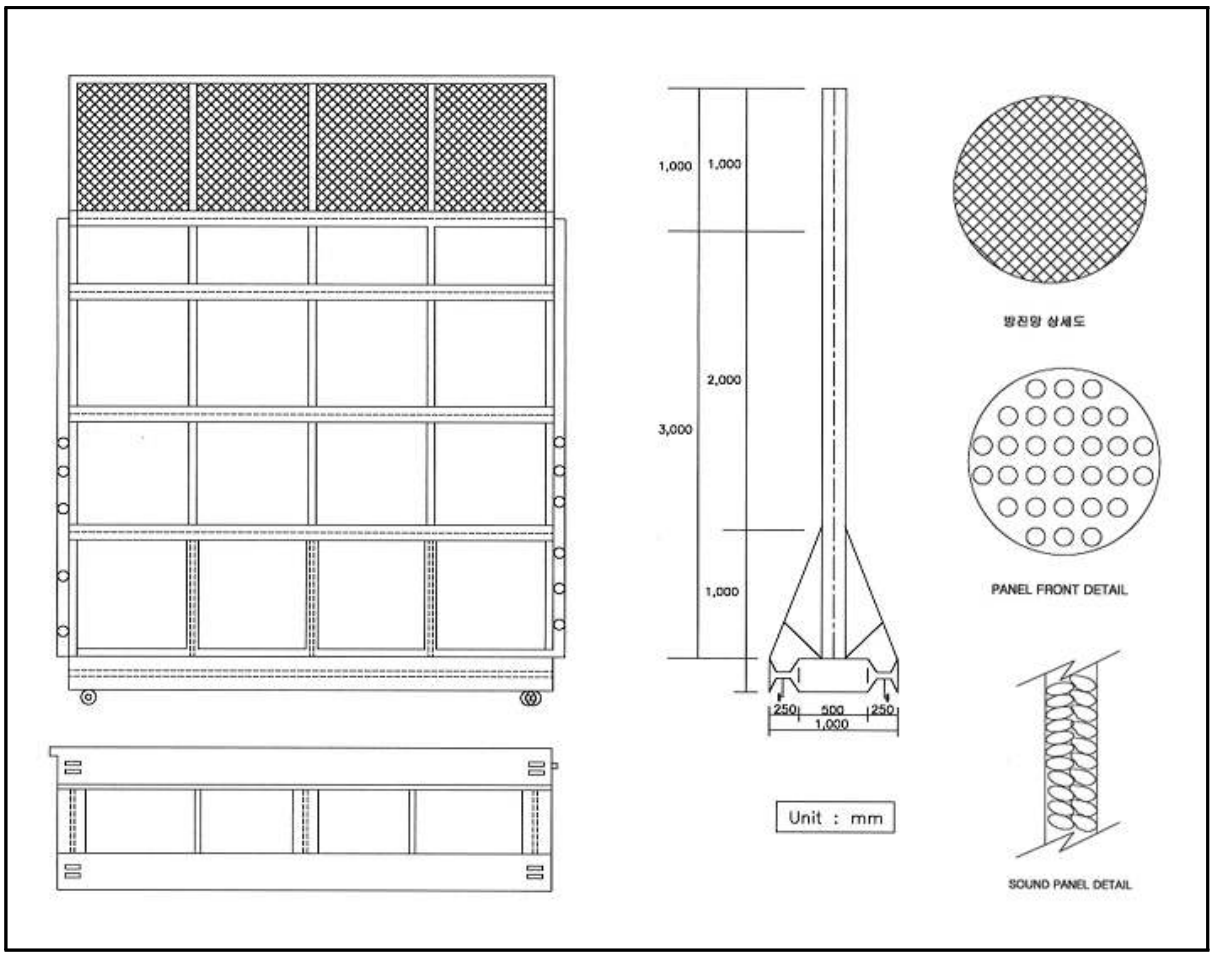
[살수차량 운영계획]

종 류	적재량 (TON)	대수 (대)	살수횟수 (회/일)	운 행 지 역	저 감 효 과
16ton 탱크로리	13.6	1	2회 이상	대상지 내부 및 진입로	비산먼지 발생량의 58%

라) 비산 방진망 설치

- 실제 공사 진행 시 주변 정온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비산 방진망을 설치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비산방진망]



마) 기타 공사 시 저감방안

- 작업대기시간대의 공사차량의 공회전 금지
- 공사 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노후건설장비 투입 시 건설장비 사용현황을 관리
- 정온시설 인근 공사 시 장비 집중투입을 억제하며 효율적인 작업공정 수립
- 발생되는 배출가스의 원활한 대기확산을 위하여 이른 아침, 야간에 작업 지양
- 공사 진행 중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거나, 사업부지 인근 대기자동측정소의 농도가 악화될 경우 비산먼지의 추가적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사를 일정시간 중단하여 사업부지 주변 피해대상지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2) 운영 시

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 대상지의 사용연료는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실시설계 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 건축물 설치계획(절전·절수기, LED 조명 사용, 고효율 단열재 사용 등)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한계자원인 토지, 화석연료 등의 소비를 최소화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절약형 개발 및 관리 추진

나) 녹지계획

- 대상지 내 녹지(조경녹지 및 완충녹지 등)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저감
- 환경 정화 능력이 강한 수종을 대상지 및 진입도로 변에 식재하는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환경 정화수종]

구 분		오염농도가 높은 곳에 알맞은 수종	오염농도가 심하지 않은 곳에 알맞은 수종
전국 분포	교 목	은행, 튜립, 양버즘, 은단풍, 가죽, 상수리, 졸참, 참느릅나무	느티, 팽, 오동, 배롱, 밤, 백목련, 벚, 서어, 칠엽수, 회화, 감, 때죽, 층층, 자두나무
	관 목	무궁화, 개나리, 낙상홍, 라일락, 산수유	매화, 박태기, 자목련
남부 지방 분포	교 목	소귀나무, 가시나무류, 태산목, 녹나무, 후박나무, 먼나무, 아왜나무	
	관 목	광광나무, 사철나무, 광나무, 협죽도, 차나무, 팔손이	

[자료] 식물사회학적 이론에 의한 생태모델숲 조성기법, 2007,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대기오염 정화수종]

구 분	수 종
SO_2에 내성이 강한 수종	라일락, 광나무, 팽나무, 박태기나무
SO_2에 내성이 약한 수종	벽오동나무, 무궁화, 병꽃나무, 대추나무, 산사나무, 모과나무, 미선나무
SO_2에 감수성이 강한 수종	미선나무, 조팝나무, 모과나무, 들메나무, 산사나무, 병꽃나무, 아왜나무, 마가목
SO_2에 감수성이 낮은 수종	라일락, 광나무, 박태기나무
대기중 황 축적성이 높은 수종	가죽나무, 양버즘나무, 은단풍나무, 산철쭉, 느티나무, 개나리, 벽오동나무, 자작나무, 조팝나무, 층층나무, 낙상홍, 백당나무, 산사나무
대기오염정화수종	자작나무, 가중나무, 양버즘나무, 수원포프라, 두충나무, 느티나무, 황금포도, 박태기나무, 광나무

[자료] 식물사회학적 이론에 의한 생태모델숲 조성기법, 2007,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제7장 기타

1. 일 조

- 일조란 태양광선이 구름이나 안개로 가려지지 않고 지상을 비치는 일을 말하며, 실제로 태양이 지상을 비친 시간을 일조시간이라고 함.
- 일조장해는 건축물이나 건조물이 직사 일사를 차폐해서 그 주변 거주자의 생활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부적합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함.

가. 현 황

1) 연평균 일조시간

- 대상지가 위치한 지역의 일조시간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기상대의 최근 10년간 기상자료(기상연보 2013~2022년)를 조사한 결과 연평균 총 일조시간은 2,449.0hr로 조사되었음.

[연평균 일조시간 (단위 : hr)]

구분	연도	일조시간	연도	일조시간	연도	일조시간
서울 기상대	2013년	2,418.7	2017년	2,621.8	2021년	2,196.1
	2014년	2,432.3	2018년	2,609.1	2022년	2,325.2
	2015년	2,579.3	2019년	2,545.6	평균	2,449.0
	2016년	2,497.8	2020년	2,263.7		

[자료] 기상연보(2013~2022년), 기상청

2) 월별·계절별 일조시간

- 월평균 일조시간이 최고인 달은 5월(264.4hr), 최저인 달은 7월(157.6hr)로 조사되었으며, 계절별 일조시간은 봄 726.2hr, 여름 552.4hr, 가을 602.5hr, 겨울 568.0hr로 조사되었음.

[월별·계절별 일조시간 (단위 : hr)]

구 분	총 계	봄			여 름			가 을			겨 울		
		3	4	5	6	7	8	9	10	11	12	1	2
서 울 기상대	2,449.0	231.3	230.5	264.4	217.7	157.6	177.1	204.2	223.8	174.5	185.1	193.0	189.9
		726.2			552.4			602.5			568.0		

[자료] 기상연보(2013~2022년), 기상청

나.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우리나라 지리적 특성상 일영은 시간별로 북서→북→북동 방향으로 발생하게 되며, 대상지는 최고층수 21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음.

■ 일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 내라고 할 것'이라는 법원의 일조권 분쟁 사건의 판례가 사용되고 있어 이를 준수할 계획임.

[일조시간 확보 기준]

구 분	내 용	비고
법원 판례①	•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8 부터 16시 사이에 총 4시간 이상 일조시간이 확보 되지 않으면 일조권 피해에 해당	
법원 판례②	•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 내라고 할 것이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곳에서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학교적용 일조기준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제1호라목2) 교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는 제외한다)에 동짓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가) 교사 -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나) 옥외 체육장 -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1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비고)3. 제1호라목2)가) 및 나)에 따른 기준시간은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경우 9시부터 13시까지, 중학교의 경우 9시부터 14시까지, 고등학교의 경우 9시부터 15시까지로 한다.	

[자료] 1. 법원 판례① : 서울고등법원(1996.03.29. 선고 94나11806, 판결
2. 법원 판례② : 서울동부지법(2004.02.12. 선고 2002가합2919, 판결
3. 학교적용 일조기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구 분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비고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1.「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개발행위변경신청지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구 분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비 고
건축법 시행령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구 분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비 고
건축법 시행령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④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서울시 건축조례(제35조)]

구 분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비고
서울시 건축조례	제35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축되는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 3배 2. 준주거지역 : 4배 3. 준공업지역 : 4배 ③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으로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한하여 같은 대지에서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6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계획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벽면의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다만, 시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한정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 이상 5.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0.5배 이상	

2. 에너지

가. 현황

1) 전력 사용현황

- 서울특별시의 용도별 전력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서비스업에서 59.4%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정용 29.8%, 공공용 7.6%, 산업용 3.1% 순으로 조사되었음
- 본 대상지가 위치한 양천구에서는 서비스업 58.4%, 가정용 36.9%, 공공용 3.8%, 산업용 0.9% 순으로 조사되었음.

[용도별 전력사용량]

구분		합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산업용
서울특별시	전력사용량(MWh)	48,788,677	14,550,105	3,701,630	29,004,080	1,532,863
	점유율(%)	100.0	29.8	7.6	59.4	3.1
양천구	전력사용량(MWh)	1,791,688	662,156	68,967	1,049,619	16,946
	점유율(%)	100.0	36.9	3.8	58.4	0.9

[자료1] 제63회 서울통계연보(2022.12.31기준), 2023, 서울특별시
[자료2] 제35회 양천구 통계연보(2022.12.31.기준), 2023, 양천구

2) 도시가스 이용현황

- 서울특별시의 도시가스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정용 94.1%, 일반용 4.1%, 업무용 1.8% 순으로 조사되었음
- 본 대상지가 위치한 양천구에서는 가정용 95.3%, 일반용 3.2%, 업무용 1.5% 순으로 조사되었음.

[도시가스 이용현황]

구분		합계	가정용	일반용	업무용	산업용	열병합	수송용
서울특별시	현황(개소)	4,727,618	4,449,865	191,559	84,423	964	737	70
	비율(%)	100.0	94.1	4.1	1.8	0.0	0.0	0.0
양천구	현황(개소)	184,729	176,136	5,819	2,756	10	6	2
	비율(%)	100.0	95.3	3.2	1.5	0.0	0.0	0.0

[주] 1. 가정용 : 취사/난방겸용 및 취사전용이 합쳐진 수치임
2. 수송용 : 버스업체수
[자료] 제63회 서울통계연보(2022.12.31기준), 2023, 서울특별시

3) 석유류 소비량

■ 서울특별시 전체 석유류 소비량은 총 33,479천배럴로 조사되었으며, 본 대상지가 위치한 양천구는 1,562천배럴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양천구 소비량 중 LPG가 29.8%를 차지하고 있으며, 휘발유 30.8%, 경유 2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석유류 소비량]

구분		합계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C유	LPG	기타
서울특별시	소비량(천배럴)	33,479	9,070	264	7,353	-	6,381	10,411
	비율(%)	100.0	27.1	0.8	21.9	-	19.1	31.1
양천구	소비량(천배럴)	1,562	481	5	334	-	466	276
	비율(%)	100.0	30.8	0.3	21.4	-	29.8	17.7

[주] 기타는 경질중유, 중유, 용제, 항공유, 부생연료유 등 포함
[자료] 제63회 서울통계연보(2022.12.31기준), 2023, 서울특별시

4)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서울특별시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는 총 325,737toe로 조사되었으며, 폐기물, 바이오, 연료전지, 태양광 등을 이용하여 생산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구분		합계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폐기물	지열	해양
서울특별시	생산량(toe)	325,737	561	55,298	81,875	45	132	93,510	76,416	17,900	-
	비율(%)	100.0	0.2	17.0	25.1	0.0	0.0	28.7	23.5	5.5	-

[주] 단위 toe(Tonnage of Oil Equivalent)는 각종 에너지의 열량을 석유 1톤당 열량값인 107Kcal로 환산한 것임
[자료] 제63회 서울통계연보(2022.12.31기준), 2023, 서울특별시

5) 에너지 소비량

■ 서울특별시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다음 표와 같이 13,405천toe이며, 석유와 도시가스, 전력 소비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에너지 소비량]

구분		공급권역 내소비량	석탄	석유	도시가스	전력	열에너지	신재생 및 기타
서울특별시	소비량(천toe)	13,405	33	4,538	3,975	4,075	478	306
	비율(%)	100.0	0.2	33.9	29.6	30.4	3.6	2.3

[주] 1인당 소비량 = 공급권역내 소비량/공급권역 내 인구수*1,000
[자료] 제63회 서울통계연보(2022.12.31기준), 2023, 서울특별시

나.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1) 연료사용량(난방연료)

■ 신축 건축물의 난방면적에 따른 난방열부하는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18-202호」 에 제시되어 있는 난방 면적비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시되어 있는 단위난방부하(㎉/㎡·hr)를 적용하여 산정함

[용도별 난방면적 비율]

구 분	세부 내역	난방면적비(%)
주택	아파트, 연립, 주상복합(주거부분)	80
상업시설	근린·일반·중심상업, 주상복합(주거제외) 등	70
업무시설	업무시설, 도시지원시설등	84
열공급설비	열공급설비	84

[자료]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18-202호)

[주택의 단위난방부하 기준]

구 분	난방면적(㎡)	단위난방부하(kcal/㎡ · hr)			
		A	B	C	D
아 파 트	85초과	41.9	38.6	**35.2**	33.0
	60~85이하	43.0	39.4	**36.2**	33.7
	60이하	44.7	41.1	**37.6**	35.2
연립주택	85초과	44.1	40.3	37.1	34.5
	85이하	46.9	42.8	39.5	36.8

[비고] A : 세종 · 양주 · 철원파주 · 남양주 · 예천 · 아산지역,
B : 안동 · 고양 · 춘천 · 대전 · 용인 · 안산 · 의정부 · 영월 · 서산 · 원주 · 경주 · 김포 · 의왕 · 순천 · 오산 · 이천 · 구리 · 하남 · 과천 · 전주 · 충주 · 수원 · 진주 · 구미 · 청주 · 평택지역,
C : 속초 · 화성 · 강릉 · 천안 · 대구 · 서울 · 시흥 · 군산 · 성남 · 안양 · 울진 · 울산 · 광명 · 인천 · 부천 · 광주 · 군포지역,
D : 포항 · 김해 · 양산 · 부산 · 여수 · 목포 · 창원지역,
상기 이외의 지역은 인근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제주도는 따로 정함
[자료]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18-202호)

[건축물의 단위난방부하 및 급탕부하 (단위 : ㎉/㎡·hr)]

건 물 용 도	단위난방부하		단위 급탕부하	비 고
	A	B		
공동주택	-	-	15	단위난방부하는 〈주택의 단위난방부하 기준〉 참조
근린생활시설	**86**	**110**	**5**	**관리사무소, 사회복지관, 아파트형공장 포함**
근린공공시설	89	110	7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파출소, 우체국 등
종교시설	115	135	2	
노유자시설	**86**	**105**	**7**	**유치원, 노인정**
의료시설	105	125	25	병원 급 이하
교육연구시설	89	115	5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업무시설(일반 · 공공)	**86**	**115**	**7**	
숙박시설	89	110	45	
판매시설	98	120	5	
위락시설(특수목욕탕)	110	120	80	목욕장이외의 시설은 판매시설기준 적용
관람집회시설	115	135	2	
전시시설	115	135	2	

[주] 1. A : 라디에이터, 콘벡터 및 팬코일유니트(FCU)가 주 난방인 경우 적용
2. B : 공기조화기(AHU 등)가 주 난방인 경우 적용
[자료]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18-202호)

■ 본 대상지 내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전용면적을 고려한 난방연료(도시가스(LNG) 가정) 사용량을 예측함.

■ 대상지는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28.46%, 용적률 249.98%로 계획되어 있으며 최대용적률 적용 시 연료 소요량은 809.70㎥/hr로 예상됨.

[최대난방부하 및 난방 연료 사용량 산정]

구분	세대수	전용 면적 (㎡)	용적률 최대 연면적(㎡)	난방면적 (㎡)	단위 난방 부하 (㎉/㎡·hr)	최대난방 부하량 (㎉/hr)	연료 사용량 (㎥/hr)
20평형	71	49.80	3,535.80	2,828.64	37.6	106,356.86	11.57
24평형	87	59.95	5,215.65	4,172.52	37.6	156,886.75	17.07
34평형	38	84.95	3,228.10	2,582.48	36.2	93,485.78	10.17
20평형	379	49.80	18,874.20	15,099.36	37.6	567,735.94	61.78
24평형	1,780	59.95	106,711.00	85,368.80	37.6	3,209,866.88	349.28
34평형	718	84.95	60,994.10	48,795.28	36.2	1,766,389.14	192.21
44평형	76	108.98	8,282.48	6,625.98	35.2	233,234.64	25.38
노유자시설	-	3,170.00	3,170.00	2,662.80	105.0	279,594.00	30.42
관리사무소, 경비실	-	315.00	315.00	220.50	110.0	24,255.00	2.64
작은도서관	-	420.00	420,.00	352.80	115.0	40,572.00	4.41
주민공동시설	-	2,625.00	2,625.00	1,837.50	110.0	202,125.00	21.99
근린생활시설	-	7,809.45	7,809.45	5,466.62	110.0	601,327.65	65.43
합 계	3,149	-	-	-	-	-	809.70

[비고] 1. 난방면적은 전용면적*세대수를 적용함
2. 단위난방부하 : 아파트(C),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노유자시설(B) 적용
3. LNG 발열량 : 9,910㎉/㎥
4. 노유자시설 :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유치원 면적을 적용

[자료]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제5조제1항 관련)

다. 에너지 저감대책

1) 일반사항

■ 자원절약형 개발 및 관리

- 한계자원인 토지와 화석연료 등의 소비를 최소화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 방안 검토
- 충분한 녹지조성, 투수성 포장재료의 사용 및 자연지반의 확대 등을 통해 도시 열섬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실시설계 시 에너지 효율관리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용 가능한 에너지 절약형 건축계획 수립

■ 신재생에너지 설비 검토

-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분석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을 검토할 계획임

2)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 대상지 내 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열부하 감소, 에너지 기기의 효율증대, 에너지 수송시스템에 대한 동력부하감소 등과 에너지 공급설비의 경우 건물 자동제어 시스템 채택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제한 및 절약이 이루어지도록 본 사업에 도입 가능한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건축물 실시설계 시 최대한 반영할 계획임.

- 에너지 절약형 재료사용 및 설비 아이템, 신자재 적용
- 자연요소를 극복 및 활용한 입면, 형태 계획을 유도(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창 등)
-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고려한 계획

■ 에너지사용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고효율 기자재 제품의 구입

■ 절전·절수기, 에너지 절약형 조명기기 사용, 고효율 단열재 사용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도입

[고효율 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제3조 관련)]

기 자 재	적 용 범 위
1.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 발생열매구분에 따라 증기보일러는 정격용량 20T/h이하, 최고사용압력 0.98MPa{10.0kg/㎠} 이하의 것 또한 온수보일러는 2,000,000㎉/h이하 최고사용압력 0.98MPa{10.0kg/㎠} 이하의 것으로 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는 것.
2. 펌 프	•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이하인 터보형 펌프
3. 스크류 냉동기	• 응축기, 부속냉매배관 및 제어장치 등으로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스크류 냉동기로서 KS B 6275에 따라 측정한 냉동능력이 1,512,000㎉/h{1,758.1㎾, 500USRT} 이하인 것
4. 무정전전원장치	1) 단상 : 단상 50 kVA이하는 KS C 4310 규정에서 정한 교류 무정전전원장치 중 온라인 방식인 것으로 부하감소에 따라 인버터 작동이 정지되는 것 2) 삼상 : 삼상 300 kVA이하는 KS C 4310 규정에서 정한 교류 무정전전원장치 중 온라인 방식인 것. 단, 부하감소에 따라 인버터 작동이 정지되지 않아도 됨
5. 인버터	• 전동기 부하조건에 따라 가변속 운전이 가능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인버터로 최대용량 220㎾ 이하의 것
6.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 가스, 기름을 연소하여 냉수 및 온수를 발생시키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로서 정격난방능력 2,466 ㎾ (2,121,000 ㎉/h), 정격냉방능력 2,813 ㎾ (800 USRT) 이하의 것
7. 원심식 송풍기	• 압력비가 1.3 이하 또는 송출압력이 30kPa 이하인 직동·직결 및 벨트 구동의 원심식 송풍기(이하, 송풍기 또는 팬이라 한다)로서, 그 크기는 임펠러의 깃 바깥지름이 160㎜에서 1,800㎜까지에 적용하며, 건축물과 일반공장의 급기·배기·환기 및 공기조화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
8. 터보압축기	• 압력비가 1.3 초과 또는 송출압력이 30 kPa를 초과하는 전동기 구동방식의 터보형압축기
9. LED 유도등	• LED(Light Emitting Diode)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유도등
10. 항온항습기	• 항온항습기 중 정격냉방능력이 6㎾{5160㎉/h} 이상 35㎾{30100㎉/h} 이하인 것
11. 가스히트펌프	•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 엔진에 의해서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히트 펌프식 냉·난방 기기이며, 실외기 기준 정격 냉방 능력이 23 ㎾ 이상인 것
12. 전력저장장치(ESS)	• 전지협회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 이차전지 인증을 취득한 '이차전지'를 이용하고, 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 'SPS-SGSF-025-4 전기저장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시험 요구사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완료한 PCS(Power conditioning system)로 제작한 전력저장장치. 단, 절연변압기는 포함하지 않음 • 이 기준에서 정한 전력저장장치의 정격 및 적용 범위는 정격 출력(㎾)으로 연속하여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은 2 시간 이상인 것
13. 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	• 최대수요전력제어에 사용되는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와 이와 함께 사용되는 주변장치(전력량 인출 장치, 동기 접속 장치, 외부 릴레이 장치, 원격 제어 장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규정하며, 제어전원은 AC 110 V ~ 220 V 및 DC 110 V ~125 V를 포함하는 Free volt, 통신방식은 RS232C, RS485, 및 Ethernet 통신이 모두 가능해야 하고, 직접 제어하는 접점(10 A, 250 V)이 8개 이상이고, 사용소비전력은 20 W 이하인 것

기 자 재	적 용 범 위
14. 문자간판용 LED모듈	• 문자 간판에 사용되는 DC 50 V 이하의 LED 모듈(광원)
15. 가스진공 온수보일러	• 보일러 내부가 진공상태를 유지하며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로서, 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며 정격난방용량 200만㎉/Hr이하, 급탕용량 200만㎉/Hr이하인 것
16.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 중저온의 가열용 온수를 1중 효용형의 가열원으로 사용하는 정격 냉동능력이 2,813 ㎾ (800 USRT) 이하인 중온수 흡수식냉동기로 중온수 1단 흡수식냉동기와 보조사이클을 추가한 중온수 2단 흡수식냉동기를 포함
17.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 KS R IEC 61851-23 또는 KC 61851-23에서 규정하는 전기자동차 전도성(Conductive) 직류 충전장치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인증을 득한 것
18. 등기구	1) 실내용 LED등기구 • AC 220 V, 60 ㎐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광원으로 사용하는 등기구 2) 실외용 LED등기구 • AC 220 V, 60 ㎐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광원으로 사용하는 등기구 3) PLS등기구 • 1000 V 이하의 ISM 대역의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700 W 또는 1000 W 등기구 4) 초정압방전램프용등기구 • AC 220 V, 60 ㎐에서 사용하는 150W 이하의 등기구 5)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 AC 220 V, 60 ㎐에서 사용하는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19. LED램프	1)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 램프전력이 22 W 이하이고 KC60061-1에 규정된 G13 캡과 KC20001에 규정된 D12 캡을 사용하는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와 이 램프를 구동시키는 LED컨버터를 포함 2)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컨버터내장형) • 이중 캡 및 단일 캡 형광램프를 대체하여 호환사용이 가능한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G13캡을 사용하는 형광램프 20W, 32W, 40W 대체형 LED램프, 2G11캡을 사용하는 형광램프 36W, 55W 대체형 LED램프)
20. 스마트LED 조명시스템	1) 스마트LED램프 • AC 220 V, 60 ㎐에서 유무선 통신(IR리모컨 제외)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조광제어가 가능하고 일체형 LED 광원 및 KS C 7651에 규정된 베이스를 적용한 일반 조명용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단, 150W 초과도 포함하고 별도의 아날로그 조광기로만 제어되는 제품은 제외) 2) 스마트LED등기구 • AC 220 V, 60 ㎐에서 유무선 통신(IR리모컨 제외)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조광제어가 가능하고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 광원을 적용한 등기구(단, 별도의 아날로그 조광기로만 제어되는 제품은 제외) 3)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 재실 또는 사물감지가 가능하고 조도 감지 센서가 포함되어 다음 필수 기능이 구현 가능한 조명제어시스템 ※ 필수 기능 : 재실 감지 또는 사물 감지, 조도 감지, 최대광속설정기능, 시간대제어, 구역설정, 대체제어, 에너지모니터링, 원격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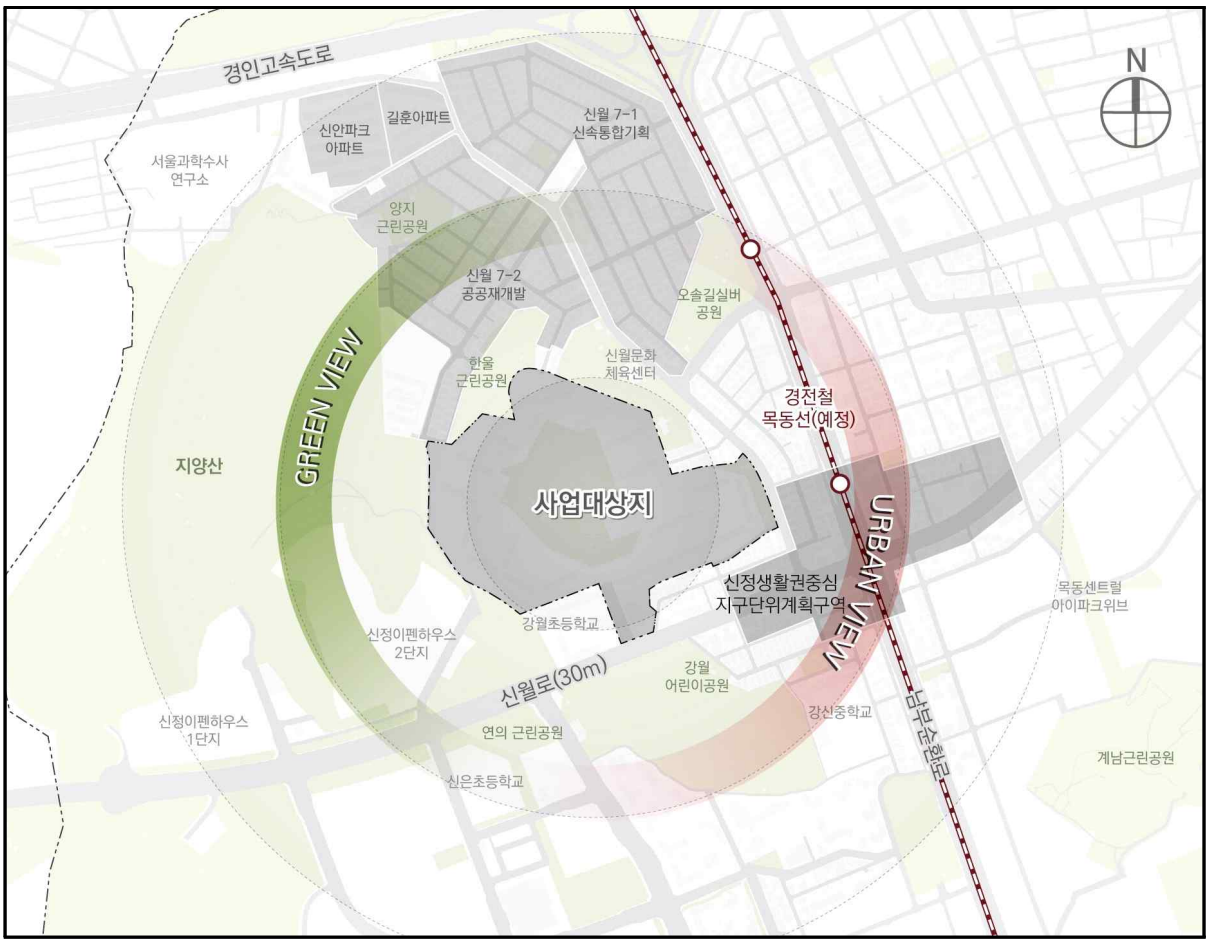
[자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66호)

3. 경관

가. 현황

■ 대상지 서측에 위치한 지양산을 비롯하여, 주변으로 오솔길 실버공원, 온수도시자연공원 등 다수의 자연녹지공간이 인접하므로, 주변 녹지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고려한 가로경관 조성

[현황종합분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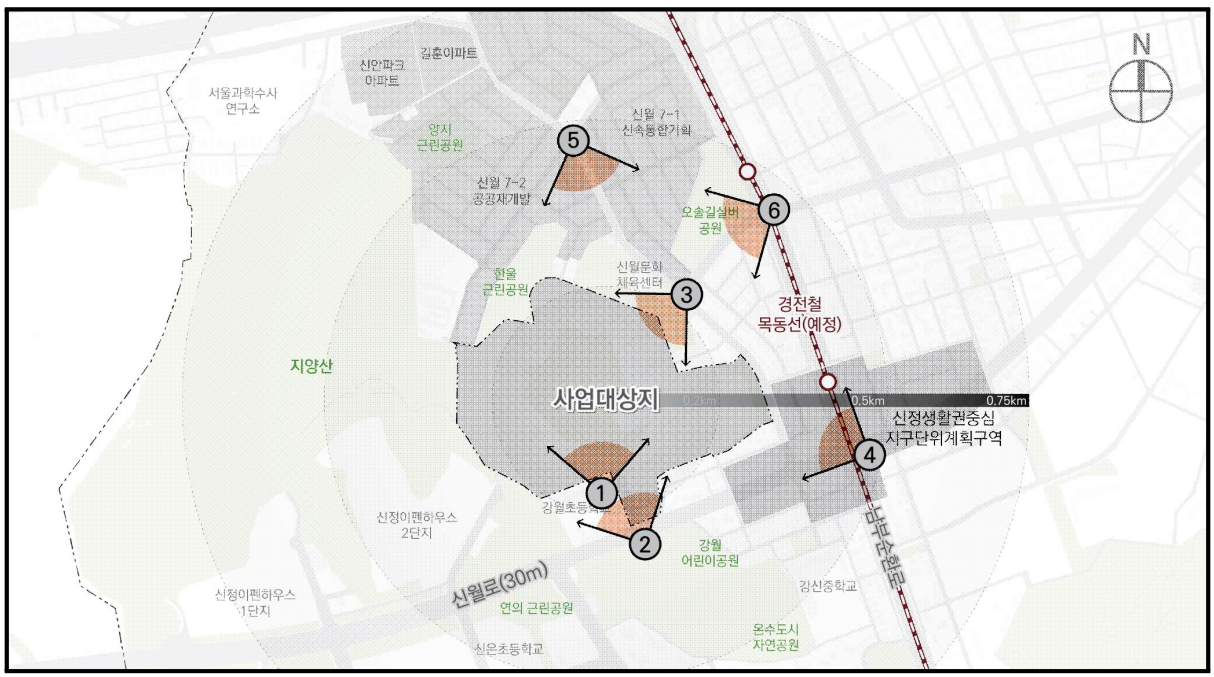


1) 경관시뮬레이션

- 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현장 확인을 통하여 주요 조망점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 후 근경, 중경, 원경으로 구분하여 조망점을 선정함
- 경관변화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는 기준이 되는 조망점 선정을 위하여 조사된 경관 자원의 분포특성과 경관적 가치, 거리, 조망방향 등을 판단하여 조망점을 선정
- 지명도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나 공원, 문화 공간 등 오픈스페이스가 조성된 장소, 대상지 주변지역을 통과하는 주요도로와 주요시설을 중심으로 선정
- 특별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나 가장 좋은 조망기회를 제공하는 장소 위주로 선정
- 대상지의 분위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가 확보되어 있는 장소로 선정
- 사업대상지를 중심을 기준으로 거리에 따라 근경(100m 이내), 중경(100~300m), 원경(300m이상)으로 구분하여 총 6개 지점을 조망점으로 선정

[조망점]

구 분		조사지점	이격거리
근경	조망1	강월초등학교	남측 약 30m
	조망2	신월로	남측 약 40m
중경	조망3	오솔길 실버공원	북동측 약 100m
	조망4	강월초교입구 사거리	동남측 약 200m
원경	조망5	우성상가	북측 약 300m
	조망6	과학수사연구원입구 사거리	북동측 약 320m



[조망점 위치도]

▌1번 조망점_근경 (강월초등학교 - 이격거리 남측 약 30m)

KEY MAP	경관분석
	• 대상지 주요 거점에서 바라본 조망으로 강월초등학교 배후로 대상지 전체가 조망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첩 경관을 형성하여 입면분절 및 색채계획, 투시형과 다채로운 재료 사용을 통한 시각적 위압감 및 차폐감 완화 유도

사 업 시 행 전



사 업 시 행 후



▌2번 조망점_근경 (신월로 - 이격거리 남측 약 40m)

KEY MAP	경관분석
	• 대상지 주요 진입로에서 바라본 조망으로 전반적인 형태 및 규모가 조망될 것으로 예상됨 • 중·상층부의 입면분절 및 색채계획을 통하여 보행자의 시각적 위압감 및 차폐감 완화 유도와 저층부 열린 경관 계획을 통한 안전한 보행로 조성 권장

사 업 시 행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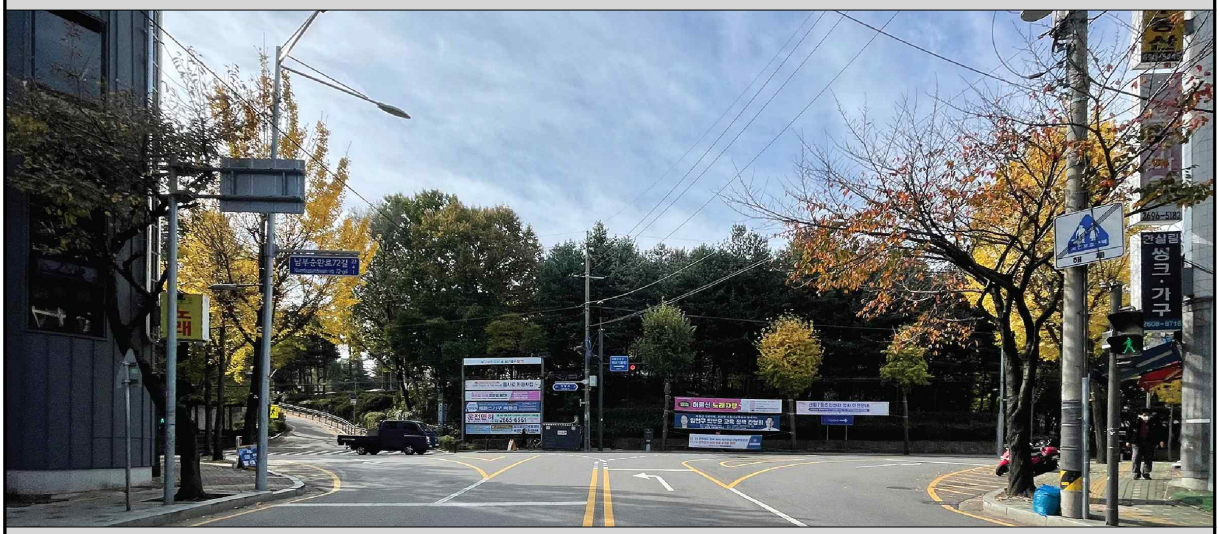
사 업 시 행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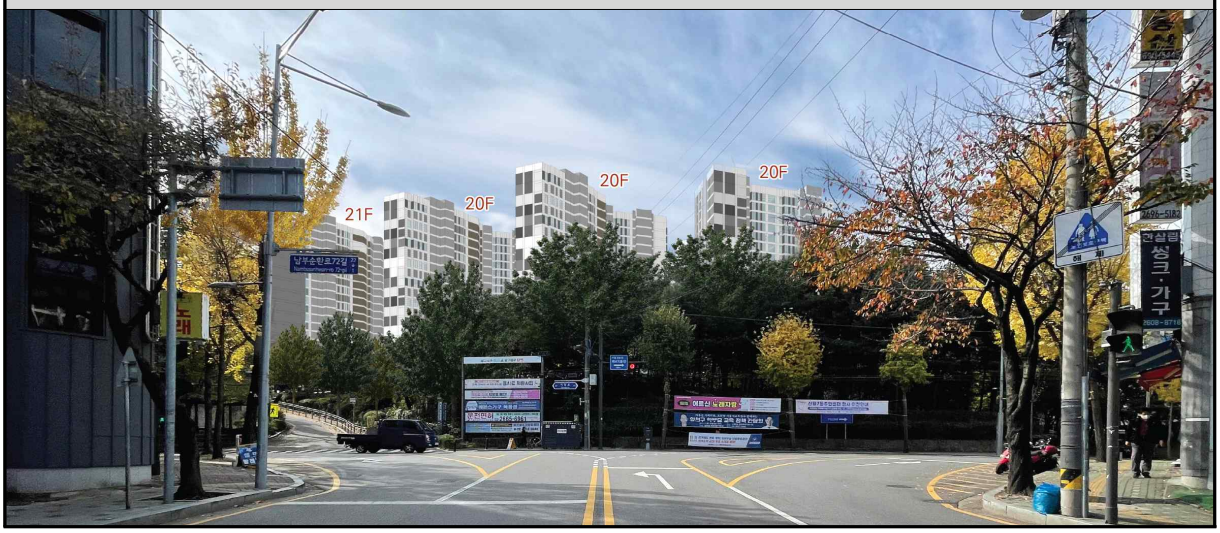
▌3번 조망점_중경 (오솔길 실버공원 - 이격거리 북동측 약 100m)

KEY MAP	경관분석
	• 인접 공원에 의해 저층부가 차폐되며, 중·상층부의 입면이 전반적으로 보여져 경관적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됨 • 비슷한 규모의 계획으로 인한 단조로운 기존 경관을 색채 및 입면특화계획을 통한 다채로운 경관 형성 유도

사 업 시 행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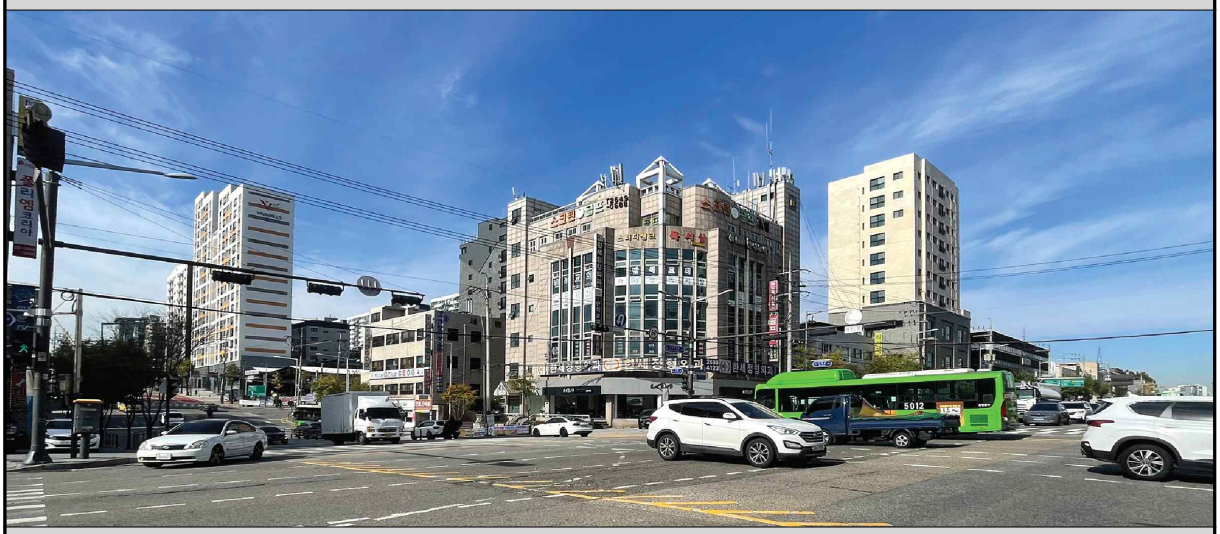
사 업 시 행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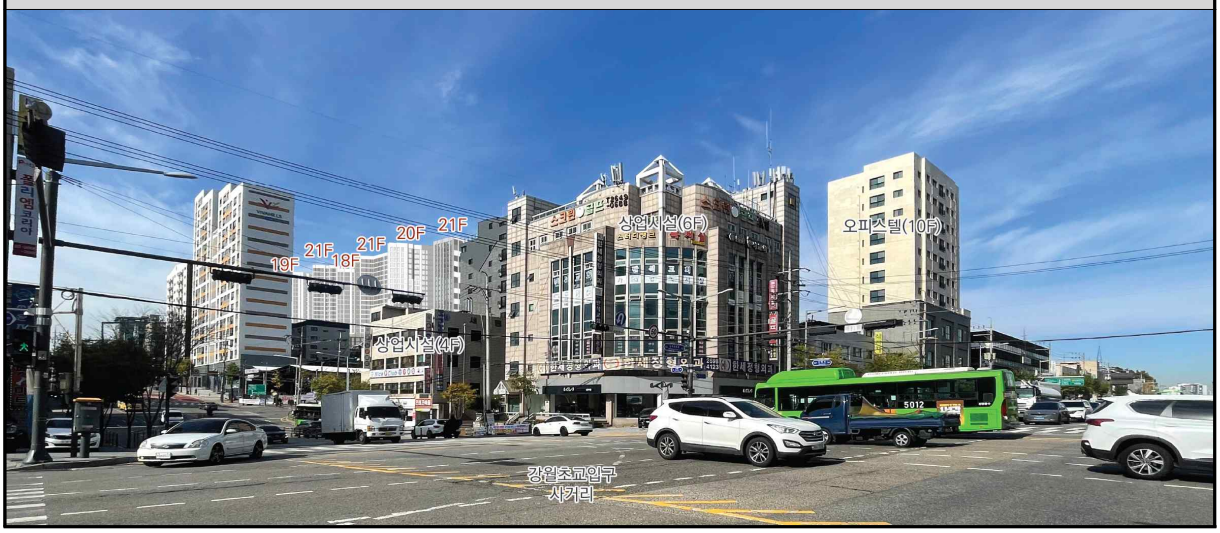
▌4번 조망점_중경 (강월초교입구 사거리 - 이격거리 동남측 약 200m)

KEY MAP	경관분석
	• 대상지 주요 진입도로에서 바라본 조망으로 인접 건축물에 의해 대부분이 차폐되나 기존 도심과의 조화로운 경관계획을 위한 입면계획이 요구됨

사 업 시 행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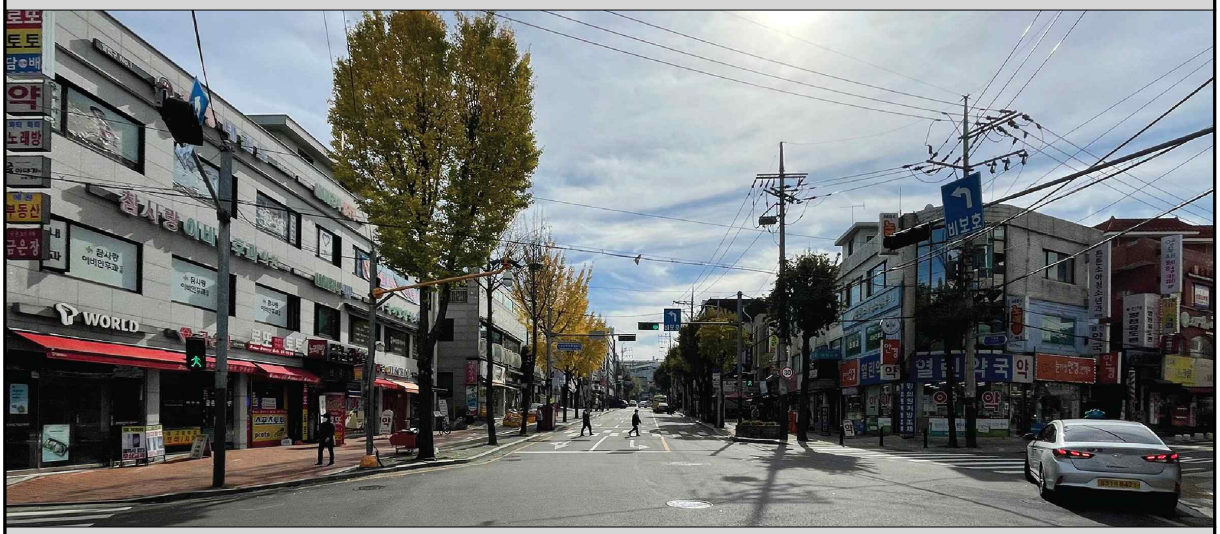
사 업 시 행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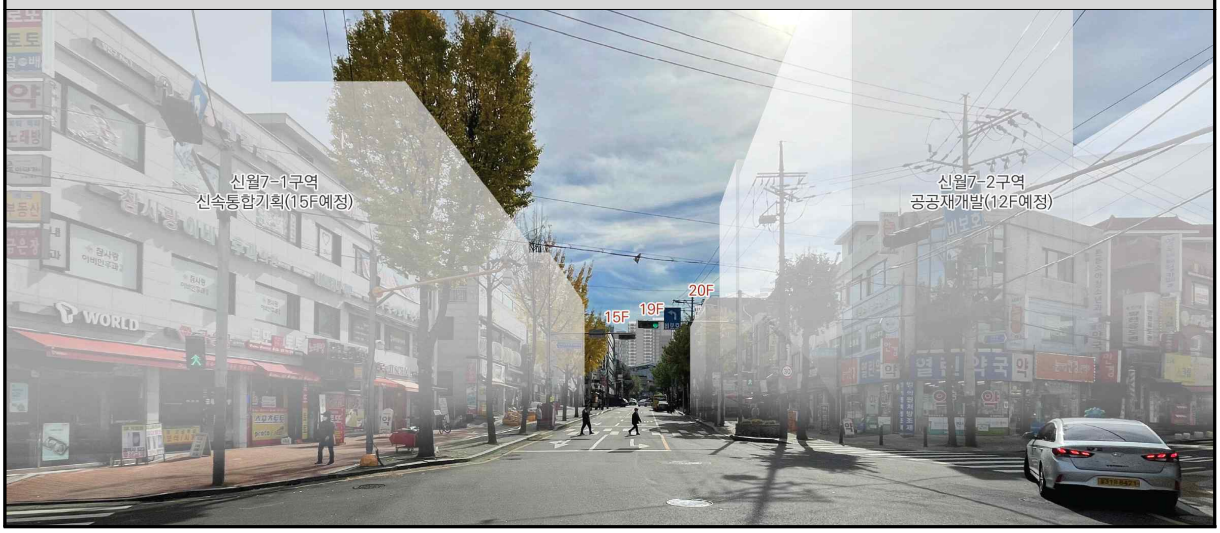
▌5번 조망점_원경 (우성상가 - 이격거리 북측 약 300m)

KEY MAP	경관분석
	• 추후 개발 예정지들과 함께 조망되며 조화로운 입면 및 색채계획이 요구되고 비슷한 규모의 계획으로 대상지 일부만 조망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사 업 시 행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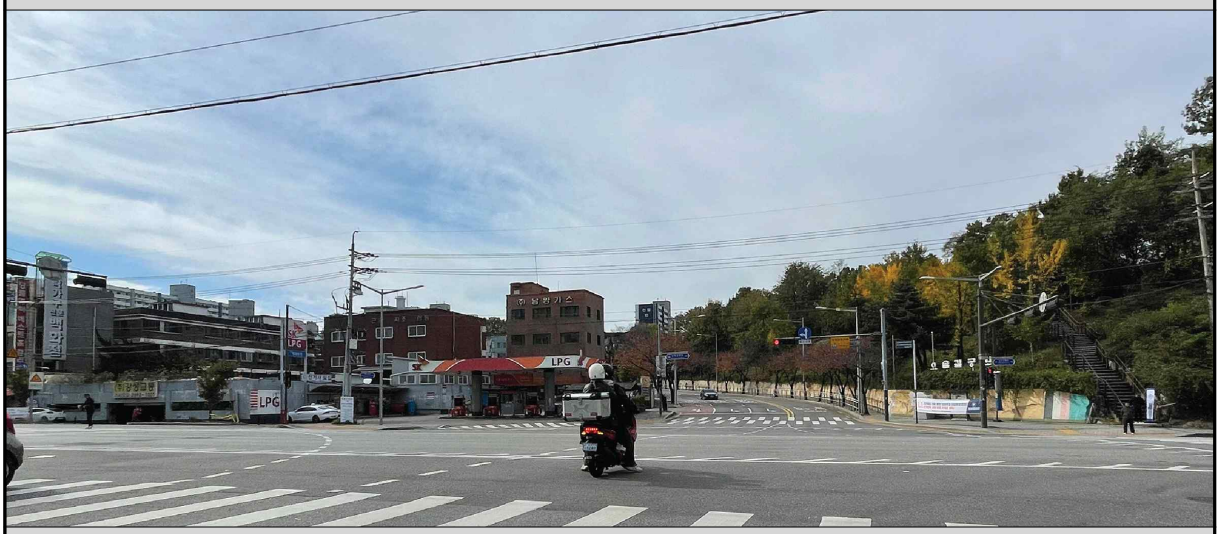
사 업 시 행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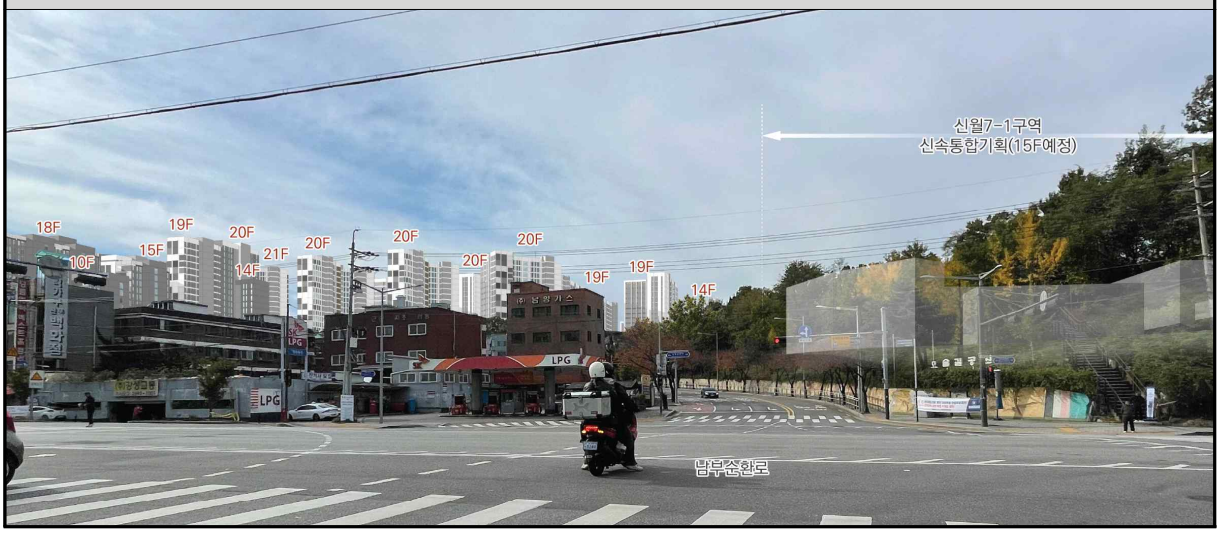
▌6번 조망점_원경 (과학수사연구원 입구 사거리 - 이격거리 북동측 약 320m)

KEY MAP	경관분석
	• 남부순환로를 기준으로 우측 개발 예정지가 위치하지만 오솔길 실버공원 조경에 의해 차폐되며, 대상지의 중첩 경관으로 인한 일률적인 입면은 지양하고 다채로운 경관 형성계획이 요구됨

사 업 시 행 전



사 업 시 행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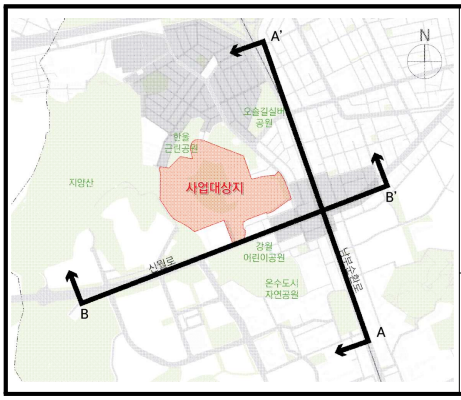


나.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주변지역 현황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지상 21층 이하로 계획함
- 다양한 높낮이의 층수계획을 통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계획
- 통경축 계획을 통해 가로경관 향상과 가로변 시각적 개방감을 고려한 건축 계획
- 조경녹지 공간을 확보하여 가로 조망을 중심으로 도로에서의 시각적 쾌적성 확보

4) 스카이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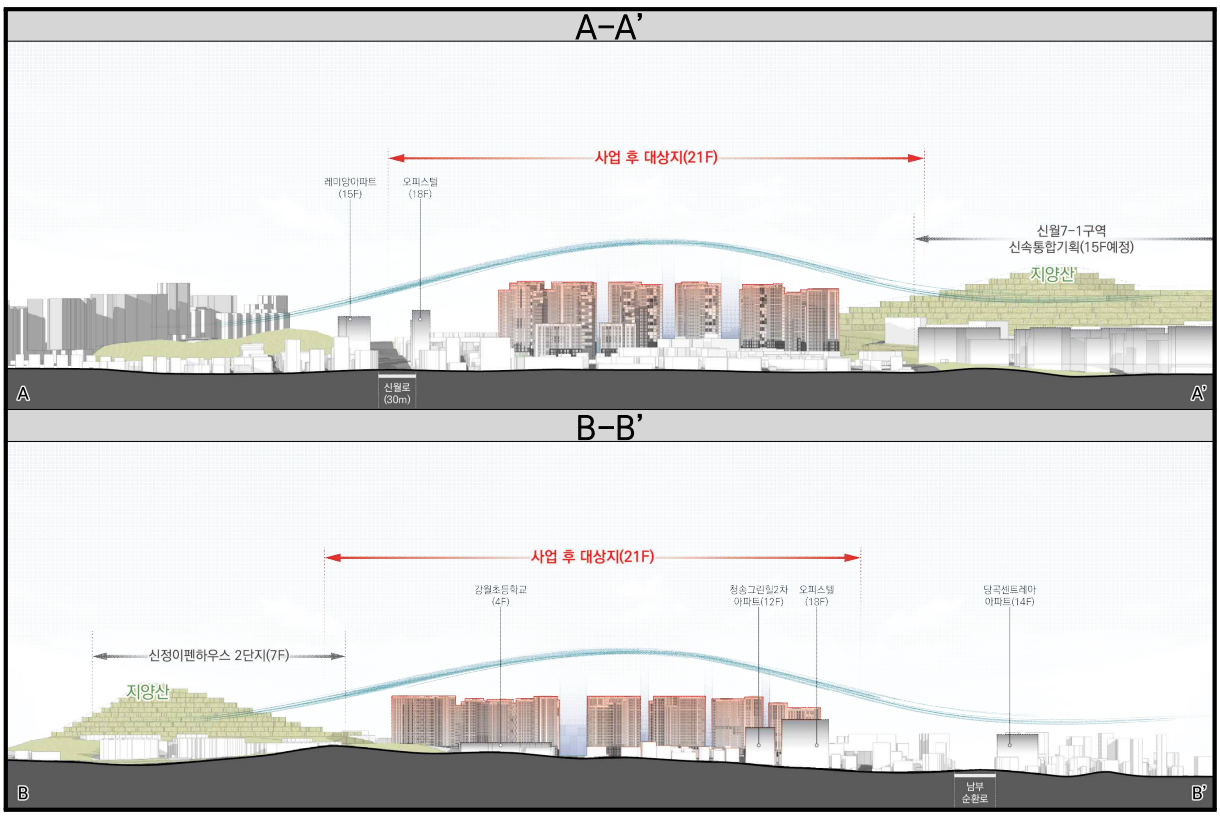
[스카이라인 키맵]



◦ A-A' | 고도제한으로 인해 단지 내 다소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 인접 건축물 및 배후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도시 스카이라인 계획

◦ B-B' | 인접 건축물과의 비슷한 규모 계획으로 조화로운 도시스카이라인 형성

[스카이라인 계획]



4. 휴식·여가공간 및 보행친화공간

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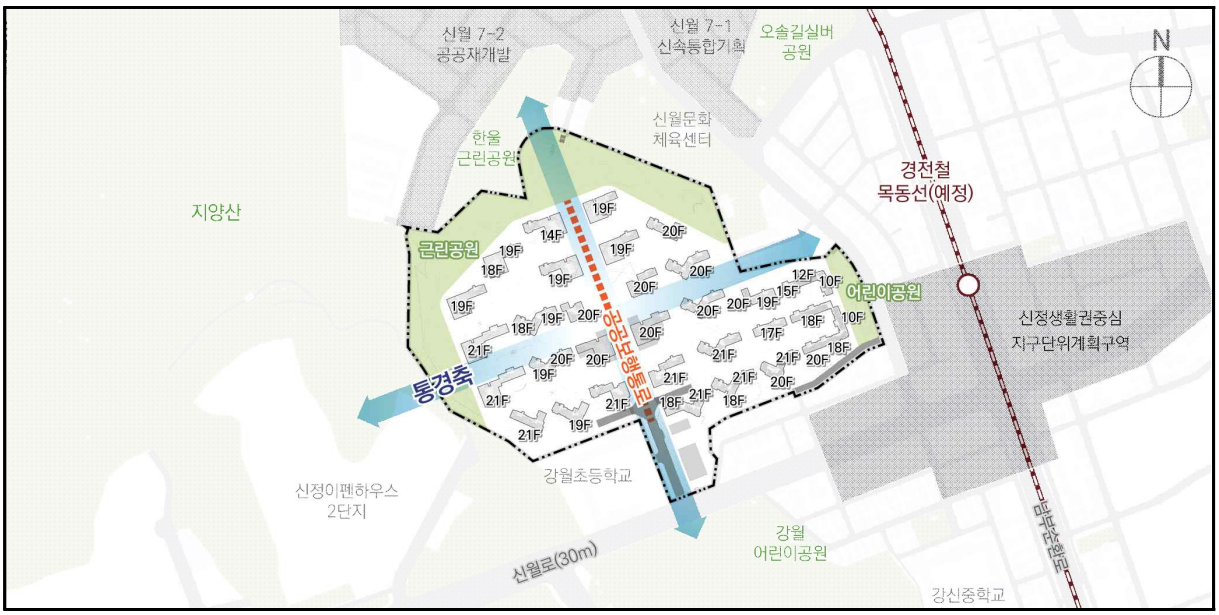
■ 대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공공이용 및 휴식공간 확보와 주변과 연계된 정비를 위하여 대상지 내 공원을 계획중임.

나.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1) 공공보행통로 구상

■ 공공보행통로 계획을 통해 주요시설 연계 보행공간 확보 및 생활가로 활성화 도모

[공공보행통로 계획]



2) 녹지구상 방안

■ 대상지 내 공원 면적 35,754.8㎡ 설정

■ 대상지 주변으로 한울근린공원, 독서공원, 오솔길 실버공원이 위치하여 대상지 내 공원을 조성하여 주변지역 및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등의 복합 공간으로 조성

■ 보행동선과 연계된 녹지 네트워크 형성

3) 조경계획 방안

■ 주변 현황을 분석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식재수종을 선택

■ 전통 수종을 식재수종으로 선택하여 이용자 및 외부로부터의 시각적 친근감 유도

■ 대상지 주변의 대기 정화를 위한 환경정화수종 식재

■ 그늘제공 및 미기후 조절을 위한 녹음/경관 식재

5. 폐기물

가. 현 황

1)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 양천구의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음.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구분	전체행정구역			관리구역현황			관리구역지정율	
	면적(㎢)	인 구(명)	동(읍·면)수	면적(㎢)	인 구(명)	동(읍·면)수	면적비(%)	인구비(%)
양천구	17.41	444,010	18	17.41	444,010	18	100.0	100.0

[자료]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3,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2)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가) 생활폐기물

■ 대상지가 위치한 양천구의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생활폐기물은 309.93ton/일이며, 1인당 배출량은 0.68㎏/인 · 일, 처리방법으로는 재활용 196.32ton/일, 소각 91.62ton/일, 매립 17.33ton/일, 기타 4.66ton/일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구분	청소구역 내 인구	배출량 (ton/일)	1인당 배출량 (㎏/인·일)	처리량 (ton/일)	처리방법(ton/일)				
					구 분		총계	혼합배출	분리배출	음식물
양천구	457,787	309.93	0.68	309.93	처리방법	총 계	309.93	133.80	88.03	88.10
						재활용	196.32	25.94	82.28	88.10
						소 각	91.62	85.87	5.75	-
						매 립	17.33	17.33	-	-
						기 타	4.66	4.66	-	-

[자료]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3,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나) 건설폐기물

■ 양천구의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총 발생량 423.15ton/일로 조사되었음.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구 분		발 생 량 (ton/일)	처리방법(ton/일)			
			불연성	가연성	가연성·불연성	기타
발 생 량		423.15	396.81	3.60	22.75	-
양천구	매 립	-	-	-	-	-
	소 각	0.01	-	0.01	-	-
	재활용	423.14	396.81	3.59	22.75	-

[자료]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3,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다) 분 뇨

■ 분뇨발생 및 처리현황

- 본 대상지가 위치한 양천구 분뇨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분뇨발생량은 411㎥/일로 1인 1일 발생량은 0.90L/인 · 일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분뇨발생 및 처리현황]

지 역	수거구역내 인 구(인)	발생량(m^3/일)			1인1일 발생량 (L/인·일)	처리량(m^3/일)		
		계	수거 분뇨	정화조, 오니		계	수거분뇨	정화조, 오니
양천구	457,787	411	1	410	0.90	411	1	410

[자료] 제35회 양천구 통계연보(2022.12.31.기준), 2023, 양천구

■ 분뇨처리시설 현황

- 양천구 내에는 분뇨처리시설이 위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발생되는 분뇨는 전처리 후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됨.

[분뇨처리시설 현황]

명 칭	위 치	시설 용량 (㎥/일)	처리방법	방류수역			
				지류	본류	수계	소권역
서남 물재생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4	1,630	기타표준활성 슬러지법	한강	한강	한강 서울	한강 본류

[자료] 2022 하수도통계, 2023,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라)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 매립시설

-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번지 일원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매립시설 현황]

명 칭	소 재 지	총매립 면적(천㎡)	총매립 용량(천㎥)	사용기간(년)
수도권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	15,277	289,329	1992 ~ 종료 시

[자료]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3,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나.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1) 공사 시

■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 건설현장 사무실 및 작업인력에 의해 생활폐기물과 분뇨의 발생이 예상되며, 이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공사 시 투입장비로 인한 폐유 발생

- 장비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투입장비로 인한 폐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공사장비에 의한 폐유발생량은 「건설표준품셈, 2024,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시된 투입장비의 종류, 장비의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현재 구체적인 설계 자료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투입장비를 선정하여 폐유발생량을 총 6.87L/일으로 예측함.

[폐유 발생량]

공 종	장비명	장비규격	장비대수 (대)	주연료 (L/hr)	잡재료 (주연료의 %)	폐유발생량 (L/일)
준비공 및 토 공	굴삭기	0.7㎥	1	11.6	22	2.04
	덤프트럭	15ton	1	15.9	38	4.83
합 계			2	-	-	6.87
폐 유 산 정 방 법			연료사용량 × 투입대수 × 1일 작업시간 × 잡재료 × 10%			

[주] 1일 작업시간 : 8hr 기준
[자료] 건설공사표준품셈, 2024, 국토교통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훼손수목으로 인한 임목폐기물 발생

- 개발계획 시행 시 대상지 내 편입되는 식물군락이 불가피하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대상지는 대부분 시가화 된 지역으로 산림식생 분포지역은 없으나 일부 식재수목 등의 훼손으로 임목폐기물의 발생이 예상됨.

■ 건축폐기물 발생

- 본 대상지 공사 시 기존의 지장물 철거로 인한 폐건축재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됨.

2) 운영 시

■ 사업시행 후 운영 시 계획인구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의 발생이 예상되며, 적절한 처리대책이 요구됨.

다. 저감방안

1) 공사 시

■ 공사 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공사 장비에 의한 폐유, 훼손 수목으로 인한 임목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으로 예상되며, 발생폐기물을 종류별 위탁·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각각의 처리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음.

■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 공사인부에 의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고철류, 의류 및 원단류 등의 폐기물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리수거하며, 기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별도로 수거한 후 관할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 분뇨 처리 대책

- 공사 작업장 주변에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량 위탁·처리 할 계획임.

■ 투입 장비에 의한 폐유 처리 대책

- 공사 시 투입장비에서 발생되는 폐유는 주로 폐윤활유이며, 무단방치 시 토양오염은 물론 인근 하천에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므로 투입 공사장비에 대하여 가동 전 철저하게 점검을 실시토록 할 것임.
- 공사장비의 정비, 오일 교환 및 세척은 지정된 정비업소를 이용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만 실시토록 하고, 이동성이 없는 장비나 정비소까지의 운행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유 저장소를 설치하여 공드럼에 수집 보관하고 일정량이 모아지면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할 계획임.
- 폐유저장소의 바닥은 Panel 등을 이용하여 용기가 지면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적치장 주변에 가배수로를 설치토록 하며, 측면에 포장을 하고 지붕을 덮어 빗물에 의해 유류가 주변지역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토록 할 계획임.

■ 훼손 수목으로 인한 임목폐기물 처리 대책

- 공사 중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폐기물의 분류상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포함되며, 이들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소각처리 하고,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중 재활용 후 남은 것은 전문처리업체 등을 통하여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있음.

■ 건설폐기물 처리대책

- 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활용, 매립처분 및 위탁처리 대상으로 분리· 보관토록 하며,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할 계획임.

2) 운영 시

■ 운영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의 자원화 및 감량화를 기본방침으로 하여 발생원별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분리수거한 후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 수거 · 운반계획

-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불연성, 재활용으로 분류하여 사업지구 내에 분산 배치하도록 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 수거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며 재활용품은 일정장소에 임시보관함을 설치 후 수거토록 함.

■ 최종처리계획

- 기타 소각 및 매립대상 폐기물(가연성, 불연성)은 지자체 쓰레기 처리계획에 의거 반출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임시 보관중인 재활용품은 일정 주기로 자원재생공사 및 기타전문재활용 업체에 매각처리하여 자원화 될 수 있도록 함.

[폐기물 분리수거함 분류 및 처리 계획]

구 분	분 류	폐기물 종류	처리계획
불연성폐기물	캔 류	각종 캔류	재 활 용
	유 리 류	병류	재 활 용
가연성폐기물	종 이 류	신문, 종이팩, 포장지 등	재 활 용
	합성수지류	플라스틱, 비닐류 등	재 활 용
	음 식 물 류	음식물, 채소류 등	위탁처리
	일반폐기물류	재활용이 불가능한 매립대상 폐기물	위탁처리

6. 소음 · 진동

가. 현황

■ 본 대상지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987-1번지 일원으로 현재 공동주택,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은 주거지,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위치하며 주변으로 신월로, 남부순환로가 위치함.

1) 환경소음 측정지점

■ 본 대상지 주변지역의 환경소음 측정치는 환경소음 측정망자료에서 대상지와 인접한 120동, 125동 소나무숲(서울시 양천구 목동 지역)의 자료를 인용 · 분석하였음.

[환경소음 측정망 위치]

측정망	측정지점	주소	법적	용도	비고
지방	120동, 125동 소나무숲	서울특별시 양천구	나	일반지역	-

[자료]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2) 환경소음 측정결과

■ 일반지역에서 주간은 평균 49.0~55.0dB(A), 야간 평균 43.0~48.0dB(A)로 조사됨.

[환경 소음 측정치 현황]

구 분		양천구 목동 120동, 125동 소나무숲 일반지역 '나' 지역(dB(A))							
		주간					야간		
		9시	12시	16시	20시	평균	23시	1시	평균
2023년	1분기	48.4	46.9	49.6	51.4	49.0	44.4	41.7	43.0
	2분기	54.9	44.6	57.8	50.4	52.0	45.9	40.7	43.0
	3분기	55.2	55.4	55.0	53.9	55.0	47.8	47.4	48.0
	4분기	46.9	48.2	52.5	48.9	50.0	46.0	40.0	43.0

[자료]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소음 환경기준]

지 역 구 분	적용대상지역	기준(Leq dB(A))	
		낮(06:00 ~ 22:00)	밤(22:00 ~ 06:00)
일 반 지 역	“가” 지역	50	40
	“나” 지역	55	45
	“다” 지역	65	55
	“라” 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 지역	65	55
	“다” 지역	70	60
	“라” 지역	75	70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7)「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나)「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도서관
   나. "나"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나.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1) 공사 시

■ 현재 세부적인 토공량 및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공사 시 일반적인 투입장비를 선정하여 부지정지 작업 시 발생되는 소음 · 진동도를 예측함.

가) 건설소음

■ 공사 시 투입장비에 의한 합성소음도를 산출한 결과, 단기간에 가장 많은 장비가 투입되는 토공의 소음도가 높게 산출됨에 따라 토공을 기준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을 점음원 거리감쇠식을 적용하여 예측함.

◎ 점음원의 거리감쇠공식

○ $SPL = SPL_0 - 20\log\frac{r}{r_0}$

◎ 합성소음도 산출공식

○ $SPL = 10 \times log(\sum_{i=1}^{n} 10^{SPL_i/10})$

- SPL : 기준지점(r)에서 소음도 (dB(A))
- SPL_0 : 예측지점(r0)에서의 소음도 (dB(A))
- SPL_i : 각 장비별 발생소음도 (dB(A))
- r : 소음원으로부터 예측지점까지의 거리(m)
- r_0 : 소음원으로부터 측정지점까지의 거리(15m)

■ 소음도 산출결과, 공사 시 주거지역 등의 생활소음규제기준(공사장)이 주간 65dB(A)임을 고려할 때 소음영향권은 공사지역으로부터 80m이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됨.

[공사 시 공종별 합성소음도]

공 종	장비명	장비대수	장비규격	소음도(15m)	합성소음도(dB(A))
준비공 및 토 공	굴삭기	1	0.7㎥	103.2	111.0
	덤프트럭	1	15ton	110.2	

[주] 건설기계류 소음 특성, 2003, 국립환경과학원

[공사 시 이격거리별 소음도]

이격거리	20m	40m	50m	70m	80m	90m	100m
소음도(dB(A))	77.0	71.0	69.0	66.1	64.9	63.8	63.0

[주] 건설기계류 소음 특성, 2003, 국립환경과학원

나) 건설진동

■ 공사 시 투입장비에 의한 진동도는 환경진동의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연구(Ⅰ)(1995, 국립환경연구원) 자료의 진동원 거리감쇠식과 합성진동레벨 산출공식을 적용하여 예측함.

◎ 진동원의 거리감쇠공식

○ $VL = VL_0 - 20\log(\frac{r}{r_0})^N$

◎ 합성진동레벨 산출공식

○ $VL_0 = 10 \times log(\sum_{i=1}^{n} 10^{VL_i/10})$

- VL : 기준지점(r)에서 진동레벨 (dB(V))
- VL_0 : 예측지점(r0)에서의 진동레벨 (dB(V))
- VL_i : 각 장비별 발생진동레벨 (dB(V))
- r : 소음원으로부터 예측지점까지의 거리(m)
- r_0 : 소음원으로부터 측정지점까지의 거리(15m)
- N : 기하감쇠정수(0.81, 건설 기계류별 진동의 거리감쇠에 따른 기하감쇠정수 평균치)

■ 공사 시 합성진동레벨이 높은 토공에 투입되는 장비를 기준으로 주변지역의 진동레벨을 예측한 결과 생활진동규제기준(주간)이 65dB(V)임을 고려해 볼 때, 진동영향권은 공사 지역으로 부터 4m이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됨.

[공사 시 공종별 합성진동도]

공 종	장비명	장비대수	진동레벨(15m)	합성진동레벨(dB(V))
준비공 및 토 공	굴삭기	1	33.5	36.4
	덤프트럭	1	33.3	

[공사 시 이격거리별 진동레벨]

이격거리	4m	5m	6m	7m	8m	10m
진동레벨(dB(V))	40.8	39.3	37.9	36.9	35.9	18.2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소음원 \ 시간대별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6. 삭제〈2019.12.31.〉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 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자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시간대별 / 대상 지역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자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교사 내의 소음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소음기준	교사내의 소음은 55dB(A) 이하로 할 것

[자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

2) 운영 시

- 본 사업완료 후 운영 시 대상지 주변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의한 도로교통소음의 영향이 예상되어 향후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계획임.

다. 저감방안

1) 공사 시

■ 일반적인 개발사업의 저감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개발이 수반되는 사업시행 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 관련법의 준수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를 준수하여 공사 시행, 관리
- 「소음 · 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 공사에 해당할 경우 사전신고 실시
- 작업차량 운전자의 수시교육을 통한 공사장 내 운행속도 20㎞/h 이내로 제한
- 경적사용 및 불필요한 고속운전과 공회전 금지

■ 공정관리

- 가급적 야간작업(조석 및 심야시간대)을 억제하고 주간에만 작업을 실시
- 가능한 저소음 건설기계 및 적정용량의 기계를 사용
- 장비불량에 따른 소음·진동의 발생억제를 위해 충분한 장비 정비 및 점검 실시
- 소음원이 되는 건설장비의 효율적 투입과 적정배치의 공정 관리 및 공정별 최소한의 장비투입

■ 엔진방음 커버 설치

- 엔진방음 커버 설치 시 4dB(A)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필요시 건설장비에 엔진방음 커버 설치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실제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관상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지 경계선에 차음효과를 충분히 갖춘 제품 중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

■ 건설장비의 진동 저감방안

- 저진동 공법 및 저진동 기계의 채택
- 각 공정별 장비의 효율적인 투입으로 진동발생 최대한 억제
- 진동음의 발생이 큰 장비 투입 시 지역주민에게 사전 공지 후 작업 실시
- 공사 중 진동영향이 우려될 시, 즉시 공사중지 후 적절한 조치

2) 운영 시

- 도로교통소음에 대한 소음원, 전파경로, 수음점별 저감대책은 아래 표와 같이 소음의 발생 및 전파특성 가지고 기술적 측면과 행정적 측면으로 구분되어지며, 향후 개발 시 대상지 현장여건에 적합한 기술적측면 및 행정적 측면의 저감대책을 시행하여 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 대상지 내 진·출입차량은 저속운행 될 수 있도록 대상지 내 차량 속도를 저속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지턱 등의 교통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속도 제한을 통한 소음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대상지 주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실시설계 단계에 대상지 주변에 완충기능 녹지 등 식재공간을 조성하여 주변지역의 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친근감과 안정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휴양과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임.

[교통소음 저감대책]

구 분	저 감 대 책	
	기술적 측면	행정적 측면
음원대책	· 음원특성의 결정 · 음원의 방사파워레벨 · 음원의 지향특성 · 노반설계 · 구조 및 설계	· 용도지역 지정 · 교통흐름의 조절 · 교통소음의 한도 강화
전달경로 대책	· 방음벽 설치 · 수림대 조성 · 성토 및 절토 ·방음터널 · 완충녹지 및 방음둑 설치	· 배치 및 건축계획 (교통시설변 건축물 한계선 적용) · 조경계획(방음둑 및 수림대 조성)
수음점 대책	· 건물외벽재료 규제 · 이중창 설치(차음성 향상) · 건물배치 및 공간배치 · 건축공간의 흡음설계	· 토지용도의 적정화 -교통시설변 일정거리내 토지용도 제한 -완충녹지 확보

■ 별첨

1. 토지등소유자별 개별분담금 추정
2.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1.토지등소유자별 개별분담금 추정

(단위:천원)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토지등소유자별 추정 분담금으로 향후 분양신청 대상 여부는 도시정비법, 조례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름										
1	987-1 외	1동 1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	987-1 외	1동 1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	987-1 외	1동 1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	987-1 외	1동 1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	987-1 외	1동 1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	987-1 외	1동 1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	987-1 외	1동 1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8	987-1 외	1동 1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9	987-1 외	1동 1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0	987-1 외	1동 1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1	987-1 외	1동 1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2	987-1 외	1동 2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3	987-1 외	1동 2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4	987-1 외	1동 2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5	987-1 외	1동 2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6	987-1 외	1동 2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7	987-1 외	1동 2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8	987-1 외	1동 2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9	987-1 외	1동 2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0	987-1 외	1동 2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21	987-1 외	1동 2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2	987-1 외	1동 2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3	987-1 외	1동 3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4	987-1 외	1동 3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5	987-1 외	1동 3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6	987-1 외	1동 3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7	987-1 외	1동 3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8	987-1 외	1동 3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9	987-1 외	1동 3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0	987-1 외	1동 3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1	987-1 외	1동 3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2	987-1 외	1동 3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3	987-1 외	1동 3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4	987-1 외	1동 4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5	987-1 외	1동 4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6	987-1 외	1동 4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7	987-1 외	1동 4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8	987-1 외	1동 4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9	987-1 외	1동 4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0	987-1 외	1동 4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1	987-1 외	1동 4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2	987-1 외	1동 4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43	987-1 외	1동 4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4	987-1 외	1동 4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5	987-1 외	1동 5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6	987-1 외	1동 5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7	987-1 외	1동 5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8	987-1 외	1동 5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9	987-1 외	1동 5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0	987-1 외	1동 5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1	987-1 외	1동 5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2	987-1 외	1동 5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3	987-1 외	1동 5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4	987-1 외	1동 5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5	987-1 외	1동 5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6	987-1 외	1동 6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7	987-1 외	1동 6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8	987-1 외	1동 6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9	987-1 외	1동 6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0	987-1 외	1동 6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1	987-1 외	1동 6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2	987-1 외	1동 6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3	987-1 외	1동 6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4	987-1 외	1동 6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65	987-1 외	1동 6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6	987-1 외	1동 6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7	987-1 외	1동 7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8	987-1 외	1동 7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9	987-1 외	1동 7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0	987-1 외	1동 7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1	987-1 외	1동 7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2	987-1 외	1동 7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3	987-1 외	1동 7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4	987-1 외	1동 7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5	987-1 외	1동 7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6	987-1 외	1동 7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7	987-1 외	1동 7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8	987-1 외	1동 8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9	987-1 외	1동 8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80	987-1 외	1동 8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81	987-1 외	1동 8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82	987-1 외	1동 8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83	987-1 외	1동 8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84	987-1 외	1동 8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85	987-1 외	1동 8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86	987-1 외	1동 8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87	987-1 외	1동 8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88	987-1 외	1동 8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89	987-1 외	1동 9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90	987-1 외	1동 9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91	987-1 외	1동 9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92	987-1 외	1동 9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93	987-1 외	1동 9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94	987-1 외	1동 9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95	987-1 외	1동 9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96	987-1 외	1동 9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97	987-1 외	1동 9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98	987-1 외	1동 9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99	987-1 외	1동 9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00	987-1 외	1동 10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01	987-1 외	1동 10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02	987-1 외	1동 10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03	987-1 외	1동 10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04	987-1 외	1동 10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05	987-1 외	1동 10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06	987-1 외	1동 10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07	987-1 외	1동 10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08	987-1 외	1동 10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09	987-1 외	1동 10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10	987-1 외	1동 10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11	987-1 외	1동 11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12	987-1 외	1동 11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13	987-1 외	1동 11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14	987-1 외	1동 11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15	987-1 외	1동 11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16	987-1 외	1동 11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17	987-1 외	1동 11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18	987-1 외	1동 11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19	987-1 외	1동 11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20	987-1 외	1동 11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21	987-1 외	1동 11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22	987-1 외	1동 12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23	987-1 외	1동 12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24	987-1 외	1동 12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25	987-1 외	1동 12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26	987-1 외	1동 12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27	987-1 외	1동 12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28	987-1 외	1동 12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29	987-1 외	1동 12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30	987-1 외	1동 12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31	987-1 외	1동 12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32	987-1 외	1동 12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33	987-1 외	2동 1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34	987-1 외	2동 1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35	987-1 외	2동 1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36	987-1 외	2동 1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37	987-1 외	2동 1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38	987-1 외	2동 1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39	987-1 외	2동 1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40	987-1 외	2동 1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41	987-1 외	2동 1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42	987-1 외	2동 1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43	987-1 외	2동 1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44	987-1 외	2동 2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45	987-1 외	2동 2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46	987-1 외	2동 2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47	987-1 외	2동 2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48	987-1 외	2동 2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49	987-1 외	2동 2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50	987-1 외	2동 2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51	987-1 외	2동 2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52	987-1 외	2동 2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53	987-1 외	2동 2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54	987-1 외	2동 2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55	987-1 외	2동 3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56	987-1 외	2동 3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57	987-1 외	2동 3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58	987-1 외	2동 3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59	987-1 외	2동 3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60	987-1 외	2동 3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61	987-1 외	2동 3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62	987-1 외	2동 3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63	987-1 외	2동 3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64	987-1 외	2동 3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65	987-1 외	2동 3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66	987-1 외	2동 4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67	987-1 외	2동 4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68	987-1 외	2동 4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69	987-1 외	2동 4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70	987-1 외	2동 4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71	987-1 외	2동 4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72	987-1 외	2동 4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73	987-1 외	2동 4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74	987-1 외	2동 4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75	987-1 외	2동 4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76	987-1 외	2동 4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77	987-1 외	2동 5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78	987-1 외	2동 5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79	987-1 외	2동 5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80	987-1 외	2동 5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81	987-1 외	2동 5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82	987-1 외	2동 5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83	987-1 외	2동 5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84	987-1 외	2동 5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85	987-1 외	2동 5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86	987-1 외	2동 5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87	987-1 외	2동 5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88	987-1 외	2동 6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89	987-1 외	2동 6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90	987-1 외	2동 6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91	987-1 외	2동 6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92	987-1 외	2동 6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93	987-1 외	2동 6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94	987-1 외	2동 6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95	987-1 외	2동 6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96	987-1 외	2동 6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97	987-1 외	2동 6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98	987-1 외	2동 6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199	987-1 외	2동 7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00	987-1 외	2동 7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01	987-1 외	2동 7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02	987-1 외	2동 7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03	987-1 외	2동 7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04	987-1 외	2동 7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05	987-1 외	2동 7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06	987-1 외	2동 7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07	987-1 외	2동 7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08	987-1 외	2동 7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09	987-1 외	2동 7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10	987-1 외	2동 8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11	987-1 외	2동 8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12	987-1 외	2동 8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13	987-1 외	2동 8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14	987-1 외	2동 8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15	987-1 외	2동 8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16	987-1 외	2동 8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17	987-1 외	2동 8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18	987-1 외	2동 8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219	987-1 외	2동 8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20	987-1 외	2동 8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21	987-1 외	2동 9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22	987-1 외	2동 9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23	987-1 외	2동 9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24	987-1 외	2동 9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25	987-1 외	2동 9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26	987-1 외	2동 9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27	987-1 외	2동 9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28	987-1 외	2동 9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29	987-1 외	2동 9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30	987-1 외	2동 9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31	987-1 외	2동 9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32	987-1 외	2동 10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33	987-1 외	2동 10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34	987-1 외	2동 10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35	987-1 외	2동 10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36	987-1 외	2동 10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37	987-1 외	2동 10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38	987-1 외	2동 10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39	987-1 외	2동 10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40	987-1 외	2동 10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241	987-1 외	2동 10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42	987-1 외	2동 10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43	987-1 외	2동 11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44	987-1 외	2동 11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45	987-1 외	2동 11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46	987-1 외	2동 11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47	987-1 외	2동 11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48	987-1 외	2동 11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49	987-1 외	2동 11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50	987-1 외	2동 11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51	987-1 외	2동 11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52	987-1 외	2동 11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53	987-1 외	2동 11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54	987-1 외	2동 12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55	987-1 외	2동 12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56	987-1 외	2동 12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57	987-1 외	2동 12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58	987-1 외	2동 12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59	987-1 외	2동 12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60	987-1 외	2동 12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61	987-1 외	2동 12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62	987-1 외	2동 12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263	987-1 외	2동 12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64	987-1 외	2동 12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65	987-1 외	3동 1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66	987-1 외	3동 1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67	987-1 외	3동 1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68	987-1 외	3동 1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69	987-1 외	3동 1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70	987-1 외	3동 1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71	987-1 외	3동 1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72	987-1 외	3동 1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73	987-1 외	3동 1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74	987-1 외	3동 1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75	987-1 외	3동 1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76	987-1 외	3동 2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77	987-1 외	3동 2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78	987-1 외	3동 2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79	987-1 외	3동 2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80	987-1 외	3동 2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81	987-1 외	3동 2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82	987-1 외	3동 2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83	987-1 외	3동 2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84	987-1 외	3동 2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285	987-1 외	3동 2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86	987-1 외	3동 2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87	987-1 외	3동 3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88	987-1 외	3동 3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89	987-1 외	3동 3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90	987-1 외	3동 3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91	987-1 외	3동 3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92	987-1 외	3동 3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93	987-1 외	3동 3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94	987-1 외	3동 3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95	987-1 외	3동 3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96	987-1 외	3동 3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97	987-1 외	3동 3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98	987-1 외	3동 4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299	987-1 외	3동 4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00	987-1 외	3동 4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01	987-1 외	3동 4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02	987-1 외	3동 4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03	987-1 외	3동 4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04	987-1 외	3동 4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05	987-1 외	3동 4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06	987-1 외	3동 4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307	987-1 외	3동 4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08	987-1 외	3동 4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09	987-1 외	3동 5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10	987-1 외	3동 5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11	987-1 외	3동 5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12	987-1 외	3동 5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13	987-1 외	3동 5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14	987-1 외	3동 5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15	987-1 외	3동 5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16	987-1 외	3동 5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17	987-1 외	3동 5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18	987-1 외	3동 5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19	987-1 외	3동 5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20	987-1 외	3동 6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21	987-1 외	3동 6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22	987-1 외	3동 6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23	987-1 외	3동 6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24	987-1 외	3동 6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25	987-1 외	3동 6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26	987-1 외	3동 6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27	987-1 외	3동 6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28	987-1 외	3동 6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329	987-1 외	3동 6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30	987-1 외	3동 6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31	987-1 외	3동 7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32	987-1 외	3동 7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33	987-1 외	3동 7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34	987-1 외	3동 7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35	987-1 외	3동 7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36	987-1 외	3동 7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37	987-1 외	3동 7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38	987-1 외	3동 7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39	987-1 외	3동 7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40	987-1 외	3동 7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41	987-1 외	3동 7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42	987-1 외	3동 8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43	987-1 외	3동 8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44	987-1 외	3동 8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45	987-1 외	3동 8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46	987-1 외	3동 8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47	987-1 외	3동 8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48	987-1 외	3동 8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49	987-1 외	3동 8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50	987-1 외	3동 8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351	987-1 외	3동 8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52	987-1 외	3동 8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53	987-1 외	3동 9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54	987-1 외	3동 9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55	987-1 외	3동 9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56	987-1 외	3동 9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57	987-1 외	3동 9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58	987-1 외	3동 9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59	987-1 외	3동 9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60	987-1 외	3동 9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61	987-1 외	3동 9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62	987-1 외	3동 9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63	987-1 외	3동 9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64	987-1 외	3동 10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65	987-1 외	3동 10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66	987-1 외	3동 10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67	987-1 외	3동 10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68	987-1 외	3동 10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69	987-1 외	3동 10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70	987-1 외	3동 10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71	987-1 외	3동 10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72	987-1 외	3동 10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373	987-1 외	3동 10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74	987-1 외	3동 10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75	987-1 외	3동 11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76	987-1 외	3동 11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77	987-1 외	3동 11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78	987-1 외	3동 11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79	987-1 외	3동 11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80	987-1 외	3동 11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81	987-1 외	3동 11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82	987-1 외	3동 11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83	987-1 외	3동 11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84	987-1 외	3동 11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85	987-1 외	3동 11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86	987-1 외	3동 12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87	987-1 외	3동 12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88	987-1 외	3동 12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89	987-1 외	3동 12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90	987-1 외	3동 12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91	987-1 외	3동 12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92	987-1 외	3동 12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93	987-1 외	3동 12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94	987-1 외	3동 12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395	987-1 외	3동 12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96	987-1 외	3동 12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97	987-1 외	4동 1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98	987-1 외	4동 1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399	987-1 외	4동 1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00	987-1 외	4동 1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01	987-1 외	4동 1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02	987-1 외	4동 1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03	987-1 외	4동 1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04	987-1 외	4동 1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05	987-1 외	4동 1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06	987-1 외	4동 1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07	987-1 외	4동 1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08	987-1 외	4동 2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09	987-1 외	4동 2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10	987-1 외	4동 2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11	987-1 외	4동 2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12	987-1 외	4동 2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13	987-1 외	4동 2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14	987-1 외	4동 2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15	987-1 외	4동 2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16	987-1 외	4동 2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417	987-1 외	4동 2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18	987-1 외	4동 2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19	987-1 외	4동 3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20	987-1 외	4동 3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21	987-1 외	4동 3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22	987-1 외	4동 3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23	987-1 외	4동 3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24	987-1 외	4동 3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25	987-1 외	4동 3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26	987-1 외	4동 3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27	987-1 외	4동 3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28	987-1 외	4동 3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29	987-1 외	4동 3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30	987-1 외	4동 4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31	987-1 외	4동 4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32	987-1 외	4동 4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33	987-1 외	4동 4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34	987-1 외	4동 4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35	987-1 외	4동 4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36	987-1 외	4동 4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37	987-1 외	4동 4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38	987-1 외	4동 4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439	987-1 외	4동 4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40	987-1 외	4동 4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41	987-1 외	4동 5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42	987-1 외	4동 5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43	987-1 외	4동 5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44	987-1 외	4동 5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45	987-1 외	4동 5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46	987-1 외	4동 5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47	987-1 외	4동 5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48	987-1 외	4동 5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49	987-1 외	4동 5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50	987-1 외	4동 5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51	987-1 외	4동 5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52	987-1 외	4동 6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53	987-1 외	4동 6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54	987-1 외	4동 6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55	987-1 외	4동 6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56	987-1 외	4동 6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57	987-1 외	4동 6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58	987-1 외	4동 6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59	987-1 외	4동 6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60	987-1 외	4동 6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461	987-1 외	4동 6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62	987-1 외	4동 6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63	987-1 외	4동 7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64	987-1 외	4동 7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65	987-1 외	4동 7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66	987-1 외	4동 7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67	987-1 외	4동 7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68	987-1 외	4동 7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69	987-1 외	4동 7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70	987-1 외	4동 7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71	987-1 외	4동 7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72	987-1 외	4동 7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73	987-1 외	4동 7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74	987-1 외	4동 8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75	987-1 외	4동 8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76	987-1 외	4동 8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77	987-1 외	4동 8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78	987-1 외	4동 8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79	987-1 외	4동 8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80	987-1 외	4동 8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81	987-1 외	4동 8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82	987-1 외	4동 8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483	987-1 외	4동 8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84	987-1 외	4동 8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85	987-1 외	4동 9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86	987-1 외	4동 9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87	987-1 외	4동 9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88	987-1 외	4동 9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89	987-1 외	4동 9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90	987-1 외	4동 9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91	987-1 외	4동 9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92	987-1 외	4동 9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93	987-1 외	4동 9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94	987-1 외	4동 9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95	987-1 외	4동 9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96	987-1 외	4동 10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97	987-1 외	4동 10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98	987-1 외	4동 10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499	987-1 외	4동 10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00	987-1 외	4동 10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01	987-1 외	4동 10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02	987-1 외	4동 10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03	987-1 외	4동 10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04	987-1 외	4동 10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505	987-1 외	4동 10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06	987-1 외	4동 10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07	987-1 외	4동 11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08	987-1 외	4동 11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09	987-1 외	4동 11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10	987-1 외	4동 11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11	987-1 외	4동 11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12	987-1 외	4동 11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13	987-1 외	4동 11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14	987-1 외	4동 11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15	987-1 외	4동 11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16	987-1 외	4동 11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17	987-1 외	4동 11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18	987-1 외	4동 12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19	987-1 외	4동 12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20	987-1 외	4동 12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21	987-1 외	4동 12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22	987-1 외	4동 12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23	987-1 외	4동 12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24	987-1 외	4동 12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25	987-1 외	4동 12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26	987-1 외	4동 12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527	987-1 외	4동 12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28	987-1 외	4동 12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29	987-1 외	5동 1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30	987-1 외	5동 1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31	987-1 외	5동 1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32	987-1 외	5동 1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33	987-1 외	5동 1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34	987-1 외	5동 1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35	987-1 외	5동 1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36	987-1 외	5동 1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37	987-1 외	5동 1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38	987-1 외	5동 1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39	987-1 외	5동 1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40	987-1 외	5동 2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41	987-1 외	5동 2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42	987-1 외	5동 2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43	987-1 외	5동 2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44	987-1 외	5동 2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45	987-1 외	5동 2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46	987-1 외	5동 2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47	987-1 외	5동 2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48	987-1 외	5동 2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549	987-1 외	5동 2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50	987-1 외	5동 2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51	987-1 외	5동 3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52	987-1 외	5동 3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53	987-1 외	5동 3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54	987-1 외	5동 3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55	987-1 외	5동 3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56	987-1 외	5동 3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57	987-1 외	5동 3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58	987-1 외	5동 3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59	987-1 외	5동 3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60	987-1 외	5동 3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61	987-1 외	5동 3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62	987-1 외	5동 4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63	987-1 외	5동 4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64	987-1 외	5동 4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65	987-1 외	5동 4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66	987-1 외	5동 4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67	987-1 외	5동 4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68	987-1 외	5동 4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69	987-1 외	5동 4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70	987-1 외	5동 4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571	987-1 외	5동 4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72	987-1 외	5동 4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73	987-1 외	5동 5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74	987-1 외	5동 5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75	987-1 외	5동 5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76	987-1 외	5동 5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77	987-1 외	5동 5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78	987-1 외	5동 5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79	987-1 외	5동 5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80	987-1 외	5동 5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81	987-1 외	5동 5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82	987-1 외	5동 5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83	987-1 외	5동 5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84	987-1 외	5동 6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85	987-1 외	5동 6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86	987-1 외	5동 6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87	987-1 외	5동 6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88	987-1 외	5동 6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89	987-1 외	5동 6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90	987-1 외	5동 6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91	987-1 외	5동 6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92	987-1 외	5동 6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593	987-1 외	5동 6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94	987-1 외	5동 6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95	987-1 외	5동 7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96	987-1 외	5동 7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97	987-1 외	5동 7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98	987-1 외	5동 7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599	987-1 외	5동 7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00	987-1 외	5동 7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01	987-1 외	5동 7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02	987-1 외	5동 7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03	987-1 외	5동 7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04	987-1 외	5동 7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05	987-1 외	5동 7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06	987-1 외	5동 8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07	987-1 외	5동 8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08	987-1 외	5동 8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09	987-1 외	5동 8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10	987-1 외	5동 8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11	987-1 외	5동 8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12	987-1 외	5동 8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13	987-1 외	5동 8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14	987-1 외	5동 8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615	987-1 외	5동 8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16	987-1 외	5동 8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17	987-1 외	5동 9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18	987-1 외	5동 9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19	987-1 외	5동 9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20	987-1 외	5동 9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21	987-1 외	5동 9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22	987-1 외	5동 9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23	987-1 외	5동 9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24	987-1 외	5동 9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25	987-1 외	5동 9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26	987-1 외	5동 9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27	987-1 외	5동 9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28	987-1 외	5동 10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29	987-1 외	5동 10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30	987-1 외	5동 10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31	987-1 외	5동 10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32	987-1 외	5동 10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33	987-1 외	5동 10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34	987-1 외	5동 10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35	987-1 외	5동 10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36	987-1 외	5동 10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637	987-1 외	5동 10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38	987-1 외	5동 10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39	987-1 외	5동 11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40	987-1 외	5동 11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41	987-1 외	5동 11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42	987-1 외	5동 11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43	987-1 외	5동 11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44	987-1 외	5동 11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45	987-1 외	5동 11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46	987-1 외	5동 11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47	987-1 외	5동 11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48	987-1 외	5동 11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49	987-1 외	5동 11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50	987-1 외	5동 12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51	987-1 외	5동 12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52	987-1 외	5동 12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53	987-1 외	5동 12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54	987-1 외	5동 12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55	987-1 외	5동 12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56	987-1 외	5동 12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57	987-1 외	5동 12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58	987-1 외	5동 12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659	987-1 외	5동 12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60	987-1 외	5동 12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61	987-1 외	6동 1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62	987-1 외	6동 1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63	987-1 외	6동 1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64	987-1 외	6동 1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65	987-1 외	6동 1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66	987-1 외	6동 1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67	987-1 외	6동 1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68	987-1 외	6동 1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69	987-1 외	6동 1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70	987-1 외	6동 1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71	987-1 외	6동 1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72	987-1 외	6동 2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73	987-1 외	6동 2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74	987-1 외	6동 2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75	987-1 외	6동 2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76	987-1 외	6동 2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77	987-1 외	6동 2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78	987-1 외	6동 2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79	987-1 외	6동 2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80	987-1 외	6동 2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681	987-1 외	6동 2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82	987-1 외	6동 2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83	987-1 외	6동 3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84	987-1 외	6동 3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85	987-1 외	6동 3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86	987-1 외	6동 3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87	987-1 외	6동 3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88	987-1 외	6동 3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89	987-1 외	6동 3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90	987-1 외	6동 3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91	987-1 외	6동 3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92	987-1 외	6동 3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93	987-1 외	6동 3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94	987-1 외	6동 4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95	987-1 외	6동 4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96	987-1 외	6동 4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97	987-1 외	6동 4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98	987-1 외	6동 4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699	987-1 외	6동 4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00	987-1 외	6동 4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01	987-1 외	6동 4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02	987-1 외	6동 4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703	987-1 외	6동 4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04	987-1 외	6동 4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05	987-1 외	6동 5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06	987-1 외	6동 5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07	987-1 외	6동 5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08	987-1 외	6동 5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09	987-1 외	6동 5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10	987-1 외	6동 5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11	987-1 외	6동 5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12	987-1 외	6동 5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13	987-1 외	6동 5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14	987-1 외	6동 5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15	987-1 외	6동 5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16	987-1 외	6동 6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17	987-1 외	6동 6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18	987-1 외	6동 6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19	987-1 외	6동 6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20	987-1 외	6동 6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21	987-1 외	6동 6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22	987-1 외	6동 6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23	987-1 외	6동 6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24	987-1 외	6동 6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725	987-1 외	6동 6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26	987-1 외	6동 6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27	987-1 외	6동 7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28	987-1 외	6동 7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29	987-1 외	6동 7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30	987-1 외	6동 7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31	987-1 외	6동 7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32	987-1 외	6동 7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33	987-1 외	6동 7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34	987-1 외	6동 7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35	987-1 외	6동 7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36	987-1 외	6동 7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37	987-1 외	6동 7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38	987-1 외	6동 8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39	987-1 외	6동 8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40	987-1 외	6동 8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41	987-1 외	6동 8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42	987-1 외	6동 8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43	987-1 외	6동 8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44	987-1 외	6동 8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45	987-1 외	6동 8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46	987-1 외	6동 8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747	987-1 외	6동 8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48	987-1 외	6동 8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49	987-1 외	6동 9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50	987-1 외	6동 9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51	987-1 외	6동 9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52	987-1 외	6동 9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53	987-1 외	6동 9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54	987-1 외	6동 9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55	987-1 외	6동 9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56	987-1 외	6동 9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57	987-1 외	6동 9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58	987-1 외	6동 9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59	987-1 외	6동 9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60	987-1 외	6동 10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61	987-1 외	6동 10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62	987-1 외	6동 10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63	987-1 외	6동 10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64	987-1 외	6동 10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65	987-1 외	6동 10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66	987-1 외	6동 10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67	987-1 외	6동 10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68	987-1 외	6동 10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769	987-1 외	6동 10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70	987-1 외	6동 10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71	987-1 외	6동 11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72	987-1 외	6동 11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73	987-1 외	6동 11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74	987-1 외	6동 11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75	987-1 외	6동 11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76	987-1 외	6동 11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77	987-1 외	6동 11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78	987-1 외	6동 11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79	987-1 외	6동 11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80	987-1 외	6동 11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81	987-1 외	6동 11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82	987-1 외	6동 120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83	987-1 외	6동 1202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84	987-1 외	6동 1203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85	987-1 외	6동 1204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86	987-1 외	6동 1205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87	987-1 외	6동 1206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88	987-1 외	6동 1207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89	987-1 외	6동 1208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90	987-1 외	6동 1209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791	987-1 외	6동 1210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92	987-1 외	6동 1211호	41.81	43.2	460,000	476,146	153,614	268,414	492,274	703,834
793	987-1 외	7동 1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794	987-1 외	7동 1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795	987-1 외	7동 1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796	987-1 외	7동 1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797	987-1 외	7동 1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798	987-1 외	7동 1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799	987-1 외	7동 1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00	987-1 외	7동 1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01	987-1 외	7동 1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02	987-1 외	7동 1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03	987-1 외	7동 2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04	987-1 외	7동 2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05	987-1 외	7동 2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06	987-1 외	7동 2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07	987-1 외	7동 2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08	987-1 외	7동 2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09	987-1 외	7동 2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10	987-1 외	7동 2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11	987-1 외	7동 2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12	987-1 외	7동 2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813	987-1 외	7동 3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14	987-1 외	7동 3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15	987-1 외	7동 3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16	987-1 외	7동 3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17	987-1 외	7동 3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18	987-1 외	7동 3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19	987-1 외	7동 3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20	987-1 외	7동 3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21	987-1 외	7동 3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22	987-1 외	7동 3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23	987-1 외	7동 4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24	987-1 외	7동 4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25	987-1 외	7동 4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26	987-1 외	7동 4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27	987-1 외	7동 4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28	987-1 외	7동 4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29	987-1 외	7동 4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30	987-1 외	7동 4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31	987-1 외	7동 4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32	987-1 외	7동 4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33	987-1 외	7동 5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34	987-1 외	7동 5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835	987-1 외	7동 5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36	987-1 외	7동 5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37	987-1 외	7동 5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38	987-1 외	7동 5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39	987-1 외	7동 5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40	987-1 외	7동 5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41	987-1 외	7동 5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42	987-1 외	7동 5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43	987-1 외	7동 6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44	987-1 외	7동 6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45	987-1 외	7동 6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46	987-1 외	7동 6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47	987-1 외	7동 6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48	987-1 외	7동 6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49	987-1 외	7동 6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50	987-1 외	7동 6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51	987-1 외	7동 6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52	987-1 외	7동 6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53	987-1 외	7동 7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54	987-1 외	7동 7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55	987-1 외	7동 7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56	987-1 외	7동 7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857	987-1 외	7동 7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58	987-1 외	7동 7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59	987-1 외	7동 7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60	987-1 외	7동 7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61	987-1 외	7동 7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62	987-1 외	7동 7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63	987-1 외	7동 8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64	987-1 외	7동 8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65	987-1 외	7동 8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66	987-1 외	7동 8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67	987-1 외	7동 8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68	987-1 외	7동 8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69	987-1 외	7동 8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70	987-1 외	7동 8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71	987-1 외	7동 8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72	987-1 외	7동 8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73	987-1 외	7동 9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74	987-1 외	7동 9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75	987-1 외	7동 9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76	987-1 외	7동 9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77	987-1 외	7동 9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78	987-1 외	7동 9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879	987-1 외	7동 9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80	987-1 외	7동 9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81	987-1 외	7동 9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82	987-1 외	7동 9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83	987-1 외	7동 10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84	987-1 외	7동 10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85	987-1 외	7동 10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86	987-1 외	7동 10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87	987-1 외	7동 10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88	987-1 외	7동 10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89	987-1 외	7동 10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90	987-1 외	7동 10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91	987-1 외	7동 10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92	987-1 외	7동 10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93	987-1 외	7동 11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94	987-1 외	7동 11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95	987-1 외	7동 11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96	987-1 외	7동 11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97	987-1 외	7동 11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98	987-1 외	7동 11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899	987-1 외	7동 11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00	987-1 외	7동 11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901	987-1 외	7동 11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02	987-1 외	7동 11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03	987-1 외	7동 12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04	987-1 외	7동 12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05	987-1 외	7동 12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06	987-1 외	7동 12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07	987-1 외	7동 12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08	987-1 외	7동 12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09	987-1 외	7동 12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10	987-1 외	7동 12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11	987-1 외	7동 12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12	987-1 외	7동 12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13	987-1 외	8동 1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14	987-1 외	8동 1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15	987-1 외	8동 1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16	987-1 외	8동 1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17	987-1 외	8동 1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18	987-1 외	8동 1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19	987-1 외	8동 1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20	987-1 외	8동 1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21	987-1 외	8동 1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22	987-1 외	8동 1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923	987-1 외	8동 2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24	987-1 외	8동 2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25	987-1 외	8동 2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26	987-1 외	8동 2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27	987-1 외	8동 2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28	987-1 외	8동 2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29	987-1 외	8동 2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30	987-1 외	8동 2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31	987-1 외	8동 2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32	987-1 외	8동 2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33	987-1 외	8동 3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34	987-1 외	8동 3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35	987-1 외	8동 3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36	987-1 외	8동 3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37	987-1 외	8동 3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38	987-1 외	8동 3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39	987-1 외	8동 3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40	987-1 외	8동 3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41	987-1 외	8동 3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42	987-1 외	8동 3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43	987-1 외	8동 4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44	987-1 외	8동 4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945	987-1 외	8동 4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46	987-1 외	8동 4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47	987-1 외	8동 4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48	987-1 외	8동 4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49	987-1 외	8동 4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50	987-1 외	8동 4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51	987-1 외	8동 4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52	987-1 외	8동 4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53	987-1 외	8동 5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54	987-1 외	8동 5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55	987-1 외	8동 5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56	987-1 외	8동 5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57	987-1 외	8동 5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58	987-1 외	8동 5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59	987-1 외	8동 5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60	987-1 외	8동 5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61	987-1 외	8동 5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62	987-1 외	8동 5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63	987-1 외	8동 6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64	987-1 외	8동 6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65	987-1 외	8동 6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66	987-1 외	8동 6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967	987-1 외	8동 6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68	987-1 외	8동 6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69	987-1 외	8동 6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70	987-1 외	8동 6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71	987-1 외	8동 6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72	987-1 외	8동 6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73	987-1 외	8동 7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74	987-1 외	8동 7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75	987-1 외	8동 7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76	987-1 외	8동 7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77	987-1 외	8동 7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78	987-1 외	8동 7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79	987-1 외	8동 7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80	987-1 외	8동 7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81	987-1 외	8동 7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82	987-1 외	8동 7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83	987-1 외	8동 8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84	987-1 외	8동 8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85	987-1 외	8동 8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86	987-1 외	8동 8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87	987-1 외	8동 8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88	987-1 외	8동 8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989	987-1 외	8동 8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90	987-1 외	8동 8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91	987-1 외	8동 8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92	987-1 외	8동 8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93	987-1 외	8동 9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94	987-1 외	8동 9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95	987-1 외	8동 9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96	987-1 외	8동 9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97	987-1 외	8동 9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98	987-1 외	8동 9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999	987-1 외	8동 9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00	987-1 외	8동 9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01	987-1 외	8동 9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02	987-1 외	8동 9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03	987-1 외	8동 10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04	987-1 외	8동 10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05	987-1 외	8동 10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06	987-1 외	8동 10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07	987-1 외	8동 10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08	987-1 외	8동 10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09	987-1 외	8동 10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10	987-1 외	8동 10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011	987-1 외	8동 10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12	987-1 외	8동 10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13	987-1 외	8동 11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14	987-1 외	8동 11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15	987-1 외	8동 11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16	987-1 외	8동 11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17	987-1 외	8동 11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18	987-1 외	8동 11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19	987-1 외	8동 11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20	987-1 외	8동 11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21	987-1 외	8동 11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22	987-1 외	8동 11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23	987-1 외	8동 12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24	987-1 외	8동 12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25	987-1 외	8동 12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26	987-1 외	8동 12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27	987-1 외	8동 12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28	987-1 외	8동 12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29	987-1 외	8동 12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30	987-1 외	8동 12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31	987-1 외	8동 12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32	987-1 외	8동 12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033	987-1 외	9동 1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34	987-1 외	9동 1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35	987-1 외	9동 1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36	987-1 외	9동 1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37	987-1 외	9동 1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38	987-1 외	9동 1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39	987-1 외	9동 1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40	987-1 외	9동 1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41	987-1 외	9동 1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42	987-1 외	9동 1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43	987-1 외	9동 2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44	987-1 외	9동 2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45	987-1 외	9동 2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46	987-1 외	9동 2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47	987-1 외	9동 2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48	987-1 외	9동 2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49	987-1 외	9동 2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50	987-1 외	9동 2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51	987-1 외	9동 2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52	987-1 외	9동 2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53	987-1 외	9동 3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54	987-1 외	9동 3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055	987-1 외	9동 3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56	987-1 외	9동 3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57	987-1 외	9동 3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58	987-1 외	9동 3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59	987-1 외	9동 3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60	987-1 외	9동 3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61	987-1 외	9동 3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62	987-1 외	9동 3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63	987-1 외	9동 4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64	987-1 외	9동 4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65	987-1 외	9동 4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66	987-1 외	9동 4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67	987-1 외	9동 4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68	987-1 외	9동 4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69	987-1 외	9동 4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70	987-1 외	9동 4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71	987-1 외	9동 4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72	987-1 외	9동 4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73	987-1 외	9동 5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74	987-1 외	9동 5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75	987-1 외	9동 5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76	987-1 외	9동 5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077	987-1 외	9동 5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78	987-1 외	9동 5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79	987-1 외	9동 5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80	987-1 외	9동 5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81	987-1 외	9동 5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82	987-1 외	9동 5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83	987-1 외	9동 6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84	987-1 외	9동 6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85	987-1 외	9동 6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86	987-1 외	9동 6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87	987-1 외	9동 6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88	987-1 외	9동 6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89	987-1 외	9동 6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90	987-1 외	9동 6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91	987-1 외	9동 6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92	987-1 외	9동 6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93	987-1 외	9동 7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94	987-1 외	9동 7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95	987-1 외	9동 7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96	987-1 외	9동 7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97	987-1 외	9동 7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098	987-1 외	9동 7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099	987-1 외	9동 7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00	987-1 외	9동 7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01	987-1 외	9동 7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02	987-1 외	9동 7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03	987-1 외	9동 8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04	987-1 외	9동 8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05	987-1 외	9동 8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06	987-1 외	9동 8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07	987-1 외	9동 8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08	987-1 외	9동 8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09	987-1 외	9동 8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10	987-1 외	9동 8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11	987-1 외	9동 8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12	987-1 외	9동 8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13	987-1 외	9동 9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14	987-1 외	9동 9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15	987-1 외	9동 9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16	987-1 외	9동 9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17	987-1 외	9동 9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18	987-1 외	9동 9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19	987-1 외	9동 9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20	987-1 외	9동 9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121	987-1 외	9동 9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22	987-1 외	9동 9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23	987-1 외	9동 10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24	987-1 외	9동 10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25	987-1 외	9동 10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26	987-1 외	9동 10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27	987-1 외	9동 10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28	987-1 외	9동 10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29	987-1 외	9동 10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30	987-1 외	9동 10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31	987-1 외	9동 10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32	987-1 외	9동 10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33	987-1 외	9동 11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34	987-1 외	9동 11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35	987-1 외	9동 11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36	987-1 외	9동 11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37	987-1 외	9동 11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38	987-1 외	9동 11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39	987-1 외	9동 11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40	987-1 외	9동 11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41	987-1 외	9동 11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42	987-1 외	9동 11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143	987-1 외	9동 12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44	987-1 외	9동 12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45	987-1 외	9동 12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46	987-1 외	9동 12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47	987-1 외	9동 12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48	987-1 외	9동 12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49	987-1 외	9동 12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50	987-1 외	9동 12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51	987-1 외	9동 12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52	987-1 외	9동 12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53	987-1 외	10동 1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54	987-1 외	10동 1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55	987-1 외	10동 1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56	987-1 외	10동 1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57	987-1 외	10동 1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58	987-1 외	10동 1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59	987-1 외	10동 1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60	987-1 외	10동 1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61	987-1 외	10동 1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62	987-1 외	10동 1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63	987-1 외	10동 2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64	987-1 외	10동 2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165	987-1 외	10동 2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66	987-1 외	10동 2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67	987-1 외	10동 2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68	987-1 외	10동 2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69	987-1 외	10동 2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70	987-1 외	10동 2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71	987-1 외	10동 2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72	987-1 외	10동 2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73	987-1 외	10동 3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74	987-1 외	10동 3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75	987-1 외	10동 3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76	987-1 외	10동 3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77	987-1 외	10동 3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78	987-1 외	10동 3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79	987-1 외	10동 3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80	987-1 외	10동 3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81	987-1 외	10동 3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82	987-1 외	10동 3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83	987-1 외	10동 4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84	987-1 외	10동 4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85	987-1 외	10동 4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86	987-1 외	10동 4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187	987-1 외	10동 4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88	987-1 외	10동 4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89	987-1 외	10동 4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90	987-1 외	10동 4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91	987-1 외	10동 4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92	987-1 외	10동 4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93	987-1 외	10동 5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94	987-1 외	10동 5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95	987-1 외	10동 5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96	987-1 외	10동 5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97	987-1 외	10동 5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98	987-1 외	10동 5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199	987-1 외	10동 5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00	987-1 외	10동 5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01	987-1 외	10동 5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02	987-1 외	10동 5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03	987-1 외	10동 6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04	987-1 외	10동 6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05	987-1 외	10동 6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06	987-1 외	10동 6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07	987-1 외	10동 6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08	987-1 외	10동 6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209	987-1 외	10동 6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10	987-1 외	10동 6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11	987-1 외	10동 6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12	987-1 외	10동 6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13	987-1 외	10동 7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14	987-1 외	10동 7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15	987-1 외	10동 7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16	987-1 외	10동 7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17	987-1 외	10동 7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18	987-1 외	10동 7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19	987-1 외	10동 7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20	987-1 외	10동 7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21	987-1 외	10동 7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22	987-1 외	10동 7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23	987-1 외	10동 8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24	987-1 외	10동 8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25	987-1 외	10동 8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26	987-1 외	10동 8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27	987-1 외	10동 8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28	987-1 외	10동 8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29	987-1 외	10동 8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30	987-1 외	10동 8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231	987-1 외	10동 8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32	987-1 외	10동 8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33	987-1 외	10동 9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34	987-1 외	10동 9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35	987-1 외	10동 9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36	987-1 외	10동 9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37	987-1 외	10동 9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38	987-1 외	10동 9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39	987-1 외	10동 9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40	987-1 외	10동 9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41	987-1 외	10동 9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42	987-1 외	10동 9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43	987-1 외	10동 10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44	987-1 외	10동 10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45	987-1 외	10동 10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46	987-1 외	10동 10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47	987-1 외	10동 10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48	987-1 외	10동 10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49	987-1 외	10동 10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50	987-1 외	10동 10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51	987-1 외	10동 10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52	987-1 외	10동 10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253	987-1 외	10동 11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54	987-1 외	10동 11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55	987-1 외	10동 11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56	987-1 외	10동 11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57	987-1 외	10동 11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58	987-1 외	10동 11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59	987-1 외	10동 11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60	987-1 외	10동 11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61	987-1 외	10동 11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62	987-1 외	10동 11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63	987-1 외	10동 12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64	987-1 외	10동 12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65	987-1 외	10동 12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66	987-1 외	10동 12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67	987-1 외	10동 12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68	987-1 외	10동 12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69	987-1 외	10동 12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70	987-1 외	10동 12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71	987-1 외	10동 12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72	987-1 외	10동 12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73	987-1 외	11동 1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74	987-1 외	11동 1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275	987-1 외	11동 1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76	987-1 외	11동 1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77	987-1 외	11동 1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278	987-1 외	11동 1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279	987-1 외	11동 1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280	987-1 외	11동 1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281	987-1 외	11동 2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82	987-1 외	11동 2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83	987-1 외	11동 2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84	987-1 외	11동 2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85	987-1 외	11동 2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286	987-1 외	11동 2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287	987-1 외	11동 2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288	987-1 외	11동 2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289	987-1 외	11동 3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90	987-1 외	11동 3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91	987-1 외	11동 3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92	987-1 외	11동 3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93	987-1 외	11동 3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294	987-1 외	11동 3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295	987-1 외	11동 3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296	987-1 외	11동 3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297	987-1 외	11동 4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98	987-1 외	11동 4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299	987-1 외	11동 4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00	987-1 외	11동 4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01	987-1 외	11동 4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02	987-1 외	11동 4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03	987-1 외	11동 4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04	987-1 외	11동 4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05	987-1 외	11동 5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06	987-1 외	11동 5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07	987-1 외	11동 5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08	987-1 외	11동 5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09	987-1 외	11동 5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10	987-1 외	11동 5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11	987-1 외	11동 5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12	987-1 외	11동 5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13	987-1 외	11동 6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14	987-1 외	11동 6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15	987-1 외	11동 6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16	987-1 외	11동 6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17	987-1 외	11동 6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18	987-1 외	11동 6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319	987-1 외	11동 6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20	987-1 외	11동 6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21	987-1 외	11동 7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22	987-1 외	11동 7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23	987-1 외	11동 7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24	987-1 외	11동 7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25	987-1 외	11동 7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26	987-1 외	11동 7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27	987-1 외	11동 7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28	987-1 외	11동 7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29	987-1 외	11동 8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30	987-1 외	11동 8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31	987-1 외	11동 8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32	987-1 외	11동 8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33	987-1 외	11동 8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34	987-1 외	11동 8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35	987-1 외	11동 8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36	987-1 외	11동 8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37	987-1 외	11동 9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38	987-1 외	11동 9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39	987-1 외	11동 9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40	987-1 외	11동 9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341	987-1 외	11동 9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42	987-1 외	11동 9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43	987-1 외	11동 9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44	987-1 외	11동 9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45	987-1 외	11동 10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46	987-1 외	11동 10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47	987-1 외	11동 10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48	987-1 외	11동 10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49	987-1 외	11동 10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50	987-1 외	11동 10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51	987-1 외	11동 10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52	987-1 외	11동 10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53	987-1 외	11동 11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54	987-1 외	11동 11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55	987-1 외	11동 11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56	987-1 외	11동 11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57	987-1 외	11동 11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58	987-1 외	11동 11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59	987-1 외	11동 11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60	987-1 외	11동 11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61	987-1 외	11동 12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62	987-1 외	11동 12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363	987-1 외	11동 12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64	987-1 외	11동 12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65	987-1 외	11동 12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66	987-1 외	11동 12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67	987-1 외	11동 12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68	987-1 외	11동 12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69	987-1 외	12동 1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70	987-1 외	12동 1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71	987-1 외	12동 1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72	987-1 외	12동 1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73	987-1 외	12동 1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74	987-1 외	12동 1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75	987-1 외	12동 1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76	987-1 외	12동 1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77	987-1 외	12동 2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78	987-1 외	12동 2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79	987-1 외	12동 2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80	987-1 외	12동 2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81	987-1 외	12동 2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82	987-1 외	12동 2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83	987-1 외	12동 2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84	987-1 외	12동 2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385	987-1 외	12동 3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86	987-1 외	12동 3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87	987-1 외	12동 3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88	987-1 외	12동 3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89	987-1 외	12동 3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90	987-1 외	12동 3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91	987-1 외	12동 3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92	987-1 외	12동 3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93	987-1 외	12동 4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94	987-1 외	12동 4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95	987-1 외	12동 4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96	987-1 외	12동 4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397	987-1 외	12동 4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98	987-1 외	12동 4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399	987-1 외	12동 4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00	987-1 외	12동 4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01	987-1 외	12동 5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02	987-1 외	12동 5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03	987-1 외	12동 5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04	987-1 외	12동 5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05	987-1 외	12동 5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06	987-1 외	12동 5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407	987-1 외	12동 5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08	987-1 외	12동 5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09	987-1 외	12동 6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10	987-1 외	12동 6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11	987-1 외	12동 6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12	987-1 외	12동 6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13	987-1 외	12동 6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14	987-1 외	12동 6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15	987-1 외	12동 6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16	987-1 외	12동 6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17	987-1 외	12동 7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18	987-1 외	12동 7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19	987-1 외	12동 7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20	987-1 외	12동 7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21	987-1 외	12동 7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22	987-1 외	12동 7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23	987-1 외	12동 7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24	987-1 외	12동 7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25	987-1 외	12동 8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26	987-1 외	12동 8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27	987-1 외	12동 8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28	987-1 외	12동 8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429	987-1 외	12동 8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30	987-1 외	12동 8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31	987-1 외	12동 8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32	987-1 외	12동 8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33	987-1 외	12동 9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34	987-1 외	12동 9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35	987-1 외	12동 9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36	987-1 외	12동 9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37	987-1 외	12동 9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38	987-1 외	12동 9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39	987-1 외	12동 9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40	987-1 외	12동 9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41	987-1 외	12동 10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42	987-1 외	12동 10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43	987-1 외	12동 10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44	987-1 외	12동 10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45	987-1 외	12동 10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46	987-1 외	12동 10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47	987-1 외	12동 10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48	987-1 외	12동 10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49	987-1 외	12동 11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50	987-1 외	12동 11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451	987-1 외	12동 11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52	987-1 외	12동 11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53	987-1 외	12동 11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54	987-1 외	12동 11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55	987-1 외	12동 11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56	987-1 외	12동 11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57	987-1 외	12동 12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58	987-1 외	12동 12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59	987-1 외	12동 12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60	987-1 외	12동 12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61	987-1 외	12동 12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62	987-1 외	12동 12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63	987-1 외	12동 12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64	987-1 외	12동 12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65	987-1 외	13동 1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66	987-1 외	13동 1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67	987-1 외	13동 1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68	987-1 외	13동 1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69	987-1 외	13동 1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70	987-1 외	13동 1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71	987-1 외	13동 1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72	987-1 외	13동 1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473	987-1 외	13동 2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74	987-1 외	13동 2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75	987-1 외	13동 2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76	987-1 외	13동 2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77	987-1 외	13동 2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78	987-1 외	13동 2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79	987-1 외	13동 2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80	987-1 외	13동 2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81	987-1 외	13동 3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82	987-1 외	13동 3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83	987-1 외	13동 3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84	987-1 외	13동 3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85	987-1 외	13동 3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86	987-1 외	13동 3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87	987-1 외	13동 3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88	987-1 외	13동 3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89	987-1 외	13동 4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90	987-1 외	13동 4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91	987-1 외	13동 4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92	987-1 외	13동 4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93	987-1 외	13동 4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94	987-1 외	13동 4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495	987-1 외	13동 4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96	987-1 외	13동 4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497	987-1 외	13동 5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98	987-1 외	13동 5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499	987-1 외	13동 5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00	987-1 외	13동 5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01	987-1 외	13동 5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02	987-1 외	13동 5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03	987-1 외	13동 5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04	987-1 외	13동 5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05	987-1 외	13동 6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06	987-1 외	13동 6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07	987-1 외	13동 6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08	987-1 외	13동 6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09	987-1 외	13동 6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10	987-1 외	13동 6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11	987-1 외	13동 6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12	987-1 외	13동 6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13	987-1 외	13동 7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14	987-1 외	13동 7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15	987-1 외	13동 7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16	987-1 외	13동 7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517	987-1 외	13동 7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18	987-1 외	13동 7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19	987-1 외	13동 7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20	987-1 외	13동 7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21	987-1 외	13동 8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22	987-1 외	13동 8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23	987-1 외	13동 8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24	987-1 외	13동 8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25	987-1 외	13동 8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26	987-1 외	13동 8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27	987-1 외	13동 8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28	987-1 외	13동 8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29	987-1 외	13동 9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30	987-1 외	13동 9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31	987-1 외	13동 9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32	987-1 외	13동 9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33	987-1 외	13동 9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34	987-1 외	13동 9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35	987-1 외	13동 9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36	987-1 외	13동 9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37	987-1 외	13동 10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38	987-1 외	13동 10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539	987-1 외	13동 10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40	987-1 외	13동 10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41	987-1 외	13동 10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42	987-1 외	13동 10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43	987-1 외	13동 10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44	987-1 외	13동 10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45	987-1 외	13동 11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46	987-1 외	13동 11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47	987-1 외	13동 11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48	987-1 외	13동 11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49	987-1 외	13동 11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50	987-1 외	13동 11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51	987-1 외	13동 11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52	987-1 외	13동 11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53	987-1 외	13동 12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54	987-1 외	13동 12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55	987-1 외	13동 12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56	987-1 외	13동 12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57	987-1 외	13동 12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58	987-1 외	13동 12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59	987-1 외	13동 12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560	987-1 외	13동 12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561	987-1 외	14동 1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62	987-1 외	14동 1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63	987-1 외	14동 1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64	987-1 외	14동 1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65	987-1 외	14동 1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66	987-1 외	14동 1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67	987-1 외	14동 1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68	987-1 외	14동 1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69	987-1 외	14동 1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70	987-1 외	14동 1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71	987-1 외	14동 2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72	987-1 외	14동 2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73	987-1 외	14동 2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74	987-1 외	14동 2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75	987-1 외	14동 2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76	987-1 외	14동 2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77	987-1 외	14동 2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78	987-1 외	14동 2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79	987-1 외	14동 2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80	987-1 외	14동 2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81	987-1 외	14동 3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82	987-1 외	14동 3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583	987-1 외	14동 3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84	987-1 외	14동 3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85	987-1 외	14동 3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86	987-1 외	14동 3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87	987-1 외	14동 3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88	987-1 외	14동 3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89	987-1 외	14동 3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90	987-1 외	14동 3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91	987-1 외	14동 4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92	987-1 외	14동 4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93	987-1 외	14동 4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94	987-1 외	14동 4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95	987-1 외	14동 4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96	987-1 외	14동 4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97	987-1 외	14동 4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98	987-1 외	14동 4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599	987-1 외	14동 4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00	987-1 외	14동 4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01	987-1 외	14동 5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02	987-1 외	14동 5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03	987-1 외	14동 5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04	987-1 외	14동 5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605	987-1 외	14동 5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06	987-1 외	14동 5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07	987-1 외	14동 5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08	987-1 외	14동 5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09	987-1 외	14동 5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10	987-1 외	14동 5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11	987-1 외	14동 6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12	987-1 외	14동 6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13	987-1 외	14동 6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14	987-1 외	14동 6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15	987-1 외	14동 6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16	987-1 외	14동 6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17	987-1 외	14동 6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18	987-1 외	14동 6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19	987-1 외	14동 6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20	987-1 외	14동 6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21	987-1 외	14동 7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22	987-1 외	14동 7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23	987-1 외	14동 7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24	987-1 외	14동 7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25	987-1 외	14동 7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26	987-1 외	14동 7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627	987-1 외	14동 7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28	987-1 외	14동 7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29	987-1 외	14동 7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30	987-1 외	14동 7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31	987-1 외	14동 8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32	987-1 외	14동 8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33	987-1 외	14동 8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34	987-1 외	14동 8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35	987-1 외	14동 8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36	987-1 외	14동 8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37	987-1 외	14동 8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38	987-1 외	14동 8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39	987-1 외	14동 8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40	987-1 외	14동 8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41	987-1 외	14동 9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42	987-1 외	14동 9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43	987-1 외	14동 9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44	987-1 외	14동 9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45	987-1 외	14동 9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46	987-1 외	14동 9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47	987-1 외	14동 9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48	987-1 외	14동 9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649	987-1 외	14동 9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50	987-1 외	14동 9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51	987-1 외	14동 10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52	987-1 외	14동 10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53	987-1 외	14동 10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54	987-1 외	14동 10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55	987-1 외	14동 10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56	987-1 외	14동 10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57	987-1 외	14동 10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58	987-1 외	14동 10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59	987-1 외	14동 10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60	987-1 외	14동 10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61	987-1 외	14동 11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62	987-1 외	14동 11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63	987-1 외	14동 11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64	987-1 외	14동 11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65	987-1 외	14동 11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66	987-1 외	14동 11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67	987-1 외	14동 11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68	987-1 외	14동 11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69	987-1 외	14동 11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70	987-1 외	14동 11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671	987-1 외	14동 12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72	987-1 외	14동 12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73	987-1 외	14동 12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74	987-1 외	14동 12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75	987-1 외	14동 1205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76	987-1 외	14동 1206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77	987-1 외	14동 1207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78	987-1 외	14동 1208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79	987-1 외	14동 1209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80	987-1 외	14동 1210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81	987-1 외	15동 1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82	987-1 외	15동 1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83	987-1 외	15동 1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84	987-1 외	15동 1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85	987-1 외	15동 1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686	987-1 외	15동 1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687	987-1 외	15동 1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688	987-1 외	15동 1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689	987-1 외	15동 2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90	987-1 외	15동 2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91	987-1 외	15동 2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92	987-1 외	15동 2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693	987-1 외	15동 2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694	987-1 외	15동 2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695	987-1 외	15동 2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696	987-1 외	15동 2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697	987-1 외	15동 3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98	987-1 외	15동 3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699	987-1 외	15동 3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00	987-1 외	15동 3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01	987-1 외	15동 3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02	987-1 외	15동 3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03	987-1 외	15동 3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04	987-1 외	15동 3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05	987-1 외	15동 4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06	987-1 외	15동 4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07	987-1 외	15동 4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08	987-1 외	15동 4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09	987-1 외	15동 4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10	987-1 외	15동 4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11	987-1 외	15동 4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12	987-1 외	15동 4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13	987-1 외	15동 5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14	987-1 외	15동 5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715	987-1 외	15동 5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16	987-1 외	15동 5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17	987-1 외	15동 5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18	987-1 외	15동 5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19	987-1 외	15동 5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20	987-1 외	15동 5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21	987-1 외	15동 6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22	987-1 외	15동 6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23	987-1 외	15동 6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24	987-1 외	15동 6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25	987-1 외	15동 6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26	987-1 외	15동 6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27	987-1 외	15동 6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28	987-1 외	15동 6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29	987-1 외	15동 7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30	987-1 외	15동 7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31	987-1 외	15동 7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32	987-1 외	15동 7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33	987-1 외	15동 7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34	987-1 외	15동 7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35	987-1 외	15동 7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36	987-1 외	15동 7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737	987-1 외	15동 8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38	987-1 외	15동 8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39	987-1 외	15동 8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40	987-1 외	15동 8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41	987-1 외	15동 8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42	987-1 외	15동 8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43	987-1 외	15동 8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44	987-1 외	15동 8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45	987-1 외	15동 9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46	987-1 외	15동 9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47	987-1 외	15동 9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48	987-1 외	15동 9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49	987-1 외	15동 9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50	987-1 외	15동 9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51	987-1 외	15동 9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52	987-1 외	15동 9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53	987-1 외	15동 10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54	987-1 외	15동 10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55	987-1 외	15동 10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56	987-1 외	15동 10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57	987-1 외	15동 10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58	987-1 외	15동 10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759	987-1 외	15동 10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60	987-1 외	15동 10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61	987-1 외	15동 11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62	987-1 외	15동 11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63	987-1 외	15동 11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64	987-1 외	15동 11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65	987-1 외	15동 11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66	987-1 외	15동 11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67	987-1 외	15동 11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68	987-1 외	15동 11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69	987-1 외	15동 12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70	987-1 외	15동 12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71	987-1 외	15동 12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72	987-1 외	15동 12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73	987-1 외	15동 12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74	987-1 외	15동 12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75	987-1 외	15동 12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76	987-1 외	15동 12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77	987-1 외	16동 1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78	987-1 외	16동 1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79	987-1 외	16동 1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80	987-1 외	16동 1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781	987-1 외	16동 1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82	987-1 외	16동 1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83	987-1 외	16동 1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84	987-1 외	16동 1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85	987-1 외	16동 2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86	987-1 외	16동 2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87	987-1 외	16동 2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88	987-1 외	16동 2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89	987-1 외	16동 2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90	987-1 외	16동 2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91	987-1 외	16동 2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92	987-1 외	16동 2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93	987-1 외	16동 3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94	987-1 외	16동 3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95	987-1 외	16동 3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96	987-1 외	16동 3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797	987-1 외	16동 3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98	987-1 외	16동 3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799	987-1 외	16동 3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00	987-1 외	16동 3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01	987-1 외	16동 4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02	987-1 외	16동 4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803	987-1 외	16동 4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04	987-1 외	16동 4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05	987-1 외	16동 4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06	987-1 외	16동 4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07	987-1 외	16동 4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08	987-1 외	16동 4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09	987-1 외	16동 5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10	987-1 외	16동 5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11	987-1 외	16동 5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12	987-1 외	16동 5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13	987-1 외	16동 5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14	987-1 외	16동 5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15	987-1 외	16동 5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16	987-1 외	16동 5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17	987-1 외	16동 6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18	987-1 외	16동 6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19	987-1 외	16동 6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20	987-1 외	16동 6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21	987-1 외	16동 6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22	987-1 외	16동 6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23	987-1 외	16동 6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24	987-1 외	16동 6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825	987-1 외	16동 7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26	987-1 외	16동 7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27	987-1 외	16동 7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28	987-1 외	16동 7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29	987-1 외	16동 7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30	987-1 외	16동 7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31	987-1 외	16동 7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32	987-1 외	16동 7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33	987-1 외	16동 8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34	987-1 외	16동 8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35	987-1 외	16동 8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36	987-1 외	16동 8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37	987-1 외	16동 8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38	987-1 외	16동 8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39	987-1 외	16동 8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40	987-1 외	16동 8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41	987-1 외	16동 9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42	987-1 외	16동 9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43	987-1 외	16동 9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44	987-1 외	16동 9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45	987-1 외	16동 9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46	987-1 외	16동 9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847	987-1 외	16동 9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48	987-1 외	16동 9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49	987-1 외	16동 10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50	987-1 외	16동 10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51	987-1 외	16동 10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52	987-1 외	16동 10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53	987-1 외	16동 10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54	987-1 외	16동 10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55	987-1 외	16동 10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56	987-1 외	16동 10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57	987-1 외	16동 11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58	987-1 외	16동 11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59	987-1 외	16동 11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60	987-1 외	16동 11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61	987-1 외	16동 11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62	987-1 외	16동 11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63	987-1 외	16동 11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64	987-1 외	16동 11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65	987-1 외	16동 12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66	987-1 외	16동 12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67	987-1 외	16동 12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68	987-1 외	16동 12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869	987-1 외	16동 12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70	987-1 외	16동 12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71	987-1 외	16동 12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72	987-1 외	16동 12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73	987-1 외	17동 1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74	987-1 외	17동 1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75	987-1 외	17동 1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76	987-1 외	17동 1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77	987-1 외	17동 1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78	987-1 외	17동 1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79	987-1 외	17동 1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80	987-1 외	17동 1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81	987-1 외	17동 2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82	987-1 외	17동 2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83	987-1 외	17동 2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84	987-1 외	17동 2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85	987-1 외	17동 2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86	987-1 외	17동 2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87	987-1 외	17동 2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88	987-1 외	17동 2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89	987-1 외	17동 3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90	987-1 외	17동 3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891	987-1 외	17동 3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92	987-1 외	17동 3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93	987-1 외	17동 3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94	987-1 외	17동 3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95	987-1 외	17동 3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96	987-1 외	17동 3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897	987-1 외	17동 4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98	987-1 외	17동 4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899	987-1 외	17동 4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00	987-1 외	17동 4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01	987-1 외	17동 4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02	987-1 외	17동 4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03	987-1 외	17동 4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04	987-1 외	17동 4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05	987-1 외	17동 5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06	987-1 외	17동 5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07	987-1 외	17동 5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08	987-1 외	17동 5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09	987-1 외	17동 5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10	987-1 외	17동 5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11	987-1 외	17동 5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12	987-1 외	17동 5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913	987-1 외	17동 6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14	987-1 외	17동 6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15	987-1 외	17동 6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16	987-1 외	17동 6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17	987-1 외	17동 6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18	987-1 외	17동 6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19	987-1 외	17동 6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20	987-1 외	17동 6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21	987-1 외	17동 7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22	987-1 외	17동 7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23	987-1 외	17동 7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24	987-1 외	17동 7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25	987-1 외	17동 7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26	987-1 외	17동 7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27	987-1 외	17동 7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28	987-1 외	17동 7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29	987-1 외	17동 8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30	987-1 외	17동 8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31	987-1 외	17동 8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32	987-1 외	17동 8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33	987-1 외	17동 8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34	987-1 외	17동 8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935	987-1 외	17동 8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36	987-1 외	17동 8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37	987-1 외	17동 9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38	987-1 외	17동 9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39	987-1 외	17동 9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40	987-1 외	17동 9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41	987-1 외	17동 9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42	987-1 외	17동 9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43	987-1 외	17동 9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44	987-1 외	17동 9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45	987-1 외	17동 10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46	987-1 외	17동 10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47	987-1 외	17동 10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48	987-1 외	17동 10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49	987-1 외	17동 10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50	987-1 외	17동 10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51	987-1 외	17동 10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52	987-1 외	17동 10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53	987-1 외	17동 11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54	987-1 외	17동 11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55	987-1 외	17동 11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56	987-1 외	17동 11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957	987-1 외	17동 11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58	987-1 외	17동 11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59	987-1 외	17동 11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60	987-1 외	17동 11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61	987-1 외	17동 12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62	987-1 외	17동 12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63	987-1 외	17동 12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64	987-1 외	17동 12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1965	987-1 외	17동 12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66	987-1 외	17동 12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67	987-1 외	17동 12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68	987-1 외	17동 12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69	987-1 외	18동 101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70	987-1 외	18동 102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71	987-1 외	18동 103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72	987-1 외	18동 104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73	987-1 외	18동 1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74	987-1 외	18동 1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75	987-1 외	18동 1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76	987-1 외	18동 1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77	987-1 외	18동 201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78	987-1 외	18동 202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1979	987-1 외	18동 203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80	987-1 외	18동 204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81	987-1 외	18동 2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82	987-1 외	18동 2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83	987-1 외	18동 2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84	987-1 외	18동 2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85	987-1 외	18동 301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86	987-1 외	18동 302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87	987-1 외	18동 303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88	987-1 외	18동 304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89	987-1 외	18동 3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90	987-1 외	18동 3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91	987-1 외	18동 3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92	987-1 외	18동 3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93	987-1 외	18동 401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94	987-1 외	18동 402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95	987-1 외	18동 403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96	987-1 외	18동 404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97	987-1 외	18동 4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98	987-1 외	18동 4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1999	987-1 외	18동 4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00	987-1 외	18동 4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2001	987-1 외	18동 501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02	987-1 외	18동 502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03	987-1 외	18동 503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04	987-1 외	18동 504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05	987-1 외	18동 5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06	987-1 외	18동 5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07	987-1 외	18동 5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08	987-1 외	18동 5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09	987-1 외	18동 601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10	987-1 외	18동 602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11	987-1 외	18동 603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12	987-1 외	18동 604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13	987-1 외	18동 6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14	987-1 외	18동 6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15	987-1 외	18동 6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16	987-1 외	18동 6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17	987-1 외	18동 701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18	987-1 외	18동 702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19	987-1 외	18동 703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20	987-1 외	18동 704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21	987-1 외	18동 7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22	987-1 외	18동 7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2023	987-1 외	18동 7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24	987-1 외	18동 7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25	987-1 외	18동 801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26	987-1 외	18동 802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27	987-1 외	18동 803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28	987-1 외	18동 804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29	987-1 외	18동 8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30	987-1 외	18동 8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31	987-1 외	18동 8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32	987-1 외	18동 8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33	987-1 외	18동 901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34	987-1 외	18동 902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35	987-1 외	18동 903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36	987-1 외	18동 904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37	987-1 외	18동 9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38	987-1 외	18동 9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39	987-1 외	18동 9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40	987-1 외	18동 9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41	987-1 외	18동 1001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42	987-1 외	18동 1002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43	987-1 외	18동 1003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44	987-1 외	18동 1004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2045	987-1 외	18동 10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46	987-1 외	18동 10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47	987-1 외	18동 10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48	987-1 외	18동 10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49	987-1 외	18동 1101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50	987-1 외	18동 1102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51	987-1 외	18동 1103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52	987-1 외	18동 1104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53	987-1 외	18동 11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54	987-1 외	18동 11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55	987-1 외	18동 11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56	987-1 외	18동 11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57	987-1 외	18동 1201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58	987-1 외	18동 1202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59	987-1 외	18동 1203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60	987-1 외	18동 1204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61	987-1 외	18동 12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62	987-1 외	18동 12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63	987-1 외	18동 12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64	987-1 외	18동 12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65	987-1 외	19동 1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066	987-1 외	19동 1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2067	987-1 외	19동 1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068	987-1 외	19동 1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069	987-1 외	19동 1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70	987-1 외	19동 1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71	987-1 외	19동 1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72	987-1 외	19동 1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73	987-1 외	19동 2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074	987-1 외	19동 2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075	987-1 외	19동 2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076	987-1 외	19동 2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077	987-1 외	19동 2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78	987-1 외	19동 2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79	987-1 외	19동 2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80	987-1 외	19동 2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81	987-1 외	19동 3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082	987-1 외	19동 3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083	987-1 외	19동 3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084	987-1 외	19동 3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085	987-1 외	19동 3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86	987-1 외	19동 3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87	987-1 외	19동 3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88	987-1 외	19동 3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2089	987-1 외	19동 4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090	987-1 외	19동 4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091	987-1 외	19동 4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092	987-1 외	19동 4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093	987-1 외	19동 4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94	987-1 외	19동 4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95	987-1 외	19동 4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96	987-1 외	19동 4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097	987-1 외	19동 5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098	987-1 외	19동 5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099	987-1 외	19동 5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100	987-1 외	19동 5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101	987-1 외	19동 5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02	987-1 외	19동 5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03	987-1 외	19동 5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04	987-1 외	19동 5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05	987-1 외	19동 6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106	987-1 외	19동 6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107	987-1 외	19동 6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108	987-1 외	19동 6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109	987-1 외	19동 6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10	987-1 외	19동 6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2111	987-1 외	19동 6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12	987-1 외	19동 6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13	987-1 외	19동 7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114	987-1 외	19동 7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115	987-1 외	19동 7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116	987-1 외	19동 7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117	987-1 외	19동 7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18	987-1 외	19동 7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19	987-1 외	19동 7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20	987-1 외	19동 7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21	987-1 외	19동 8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122	987-1 외	19동 8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123	987-1 외	19동 8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124	987-1 외	19동 8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125	987-1 외	19동 8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26	987-1 외	19동 8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27	987-1 외	19동 8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28	987-1 외	19동 8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29	987-1 외	19동 9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130	987-1 외	19동 9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131	987-1 외	19동 9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132	987-1 외	19동 9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2133	987-1 외	19동 9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34	987-1 외	19동 9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35	987-1 외	19동 9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36	987-1 외	19동 9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37	987-1 외	19동 10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138	987-1 외	19동 10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139	987-1 외	19동 10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140	987-1 외	19동 10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141	987-1 외	19동 10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42	987-1 외	19동 10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43	987-1 외	19동 10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44	987-1 외	19동 10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45	987-1 외	19동 11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146	987-1 외	19동 11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147	987-1 외	19동 11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148	987-1 외	19동 11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149	987-1 외	19동 11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50	987-1 외	19동 11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51	987-1 외	19동 11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52	987-1 외	19동 11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53	987-1 외	19동 1201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154	987-1 외	19동 1202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2155	987-1 외	19동 1203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156	987-1 외	19동 1204호	49.05	50.67	530,000	548,603	81,157	195,957	419,817	631,377
2157	987-1 외	19동 12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58	987-1 외	19동 12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59	987-1 외	19동 12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60	987-1 외	19동 12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61	987-1 외	20동 101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62	987-1 외	20동 102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63	987-1 외	20동 103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64	987-1 외	20동 104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65	987-1 외	20동 1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66	987-1 외	20동 1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67	987-1 외	20동 1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68	987-1 외	20동 1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69	987-1 외	20동 201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70	987-1 외	20동 202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71	987-1 외	20동 203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72	987-1 외	20동 204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73	987-1 외	20동 2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74	987-1 외	20동 2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75	987-1 외	20동 2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76	987-1 외	20동 2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2177	987-1 외	20동 301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78	987-1 외	20동 302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79	987-1 외	20동 303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80	987-1 외	20동 304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81	987-1 외	20동 3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82	987-1 외	20동 3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83	987-1 외	20동 3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84	987-1 외	20동 3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85	987-1 외	20동 401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86	987-1 외	20동 402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87	987-1 외	20동 403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88	987-1 외	20동 404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89	987-1 외	20동 4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90	987-1 외	20동 4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91	987-1 외	20동 4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92	987-1 외	20동 4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93	987-1 외	20동 501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94	987-1 외	20동 502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95	987-1 외	20동 503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96	987-1 외	20동 504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97	987-1 외	20동 5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198	987-1 외	20동 5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2199	987-1 외	20동 5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00	987-1 외	20동 5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01	987-1 외	20동 601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02	987-1 외	20동 602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03	987-1 외	20동 603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04	987-1 외	20동 604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05	987-1 외	20동 6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06	987-1 외	20동 6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07	987-1 외	20동 6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08	987-1 외	20동 6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09	987-1 외	20동 701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10	987-1 외	20동 702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11	987-1 외	20동 703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12	987-1 외	20동 704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13	987-1 외	20동 7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14	987-1 외	20동 7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15	987-1 외	20동 7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16	987-1 외	20동 7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17	987-1 외	20동 801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18	987-1 외	20동 802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19	987-1 외	20동 803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20	987-1 외	20동 804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2221	987-1 외	20동 8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22	987-1 외	20동 8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23	987-1 외	20동 8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24	987-1 외	20동 8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25	987-1 외	20동 901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26	987-1 외	20동 902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27	987-1 외	20동 903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28	987-1 외	20동 904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29	987-1 외	20동 9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30	987-1 외	20동 9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31	987-1 외	20동 9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32	987-1 외	20동 9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33	987-1 외	20동 1001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34	987-1 외	20동 1002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35	987-1 외	20동 1003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36	987-1 외	20동 1004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37	987-1 외	20동 10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38	987-1 외	20동 10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39	987-1 외	20동 10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40	987-1 외	20동 10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41	987-1 외	20동 1101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42	987-1 외	20동 1102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연번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전용49㎡ (20평형)	전용59㎡ (24평형)	전용84㎡ (34평형)	전용108㎡ (44평형)
2243	987-1 외	20동 1103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44	987-1 외	20동 1104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45	987-1 외	20동 11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46	987-1 외	20동 11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47	987-1 외	20동 11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48	987-1 외	20동 11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49	987-1 외	20동 1201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50	987-1 외	20동 1202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51	987-1 외	20동 1203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52	987-1 외	20동 1204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53	987-1 외	20동 1205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54	987-1 외	20동 1206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55	987-1 외	20동 1207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2256	987-1 외	20동 1208호	57.58	59.49	610,000	631,411	-1,651	113,149	337,009	548,569

구분	지번	동 호수	토지 (㎡)	건물 (㎡)	종전자산 추산액	기준가액 (103.51%)	추정분담금 [환급(-), 분담(+)]
							종후상가 전체 기준
아파트 外	987-1 외	상가동 외	3647.71	3,749.9	29,158,707	30,182,178	2,281,676

2.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심의일자 : 2025. 04. 28.

▌개최결과 : 수정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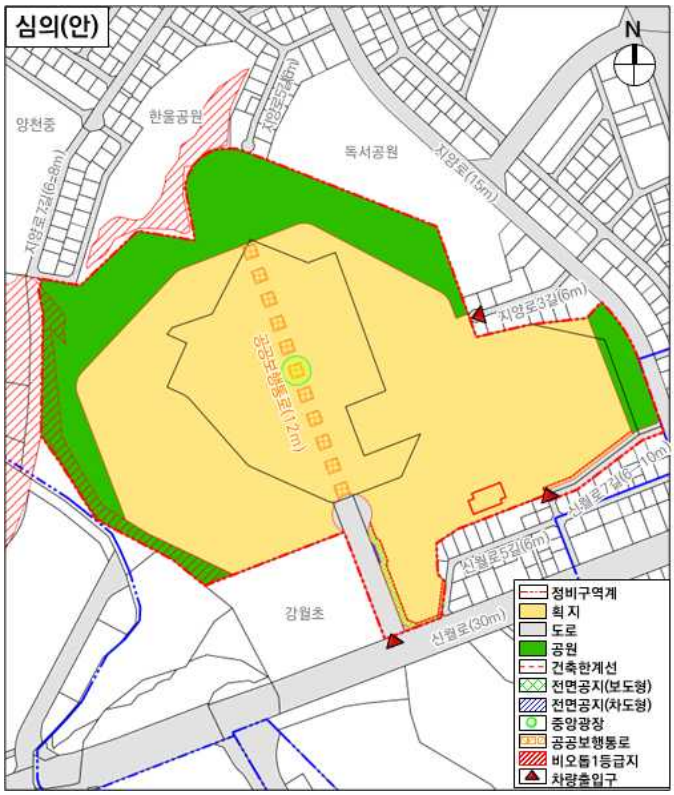
❑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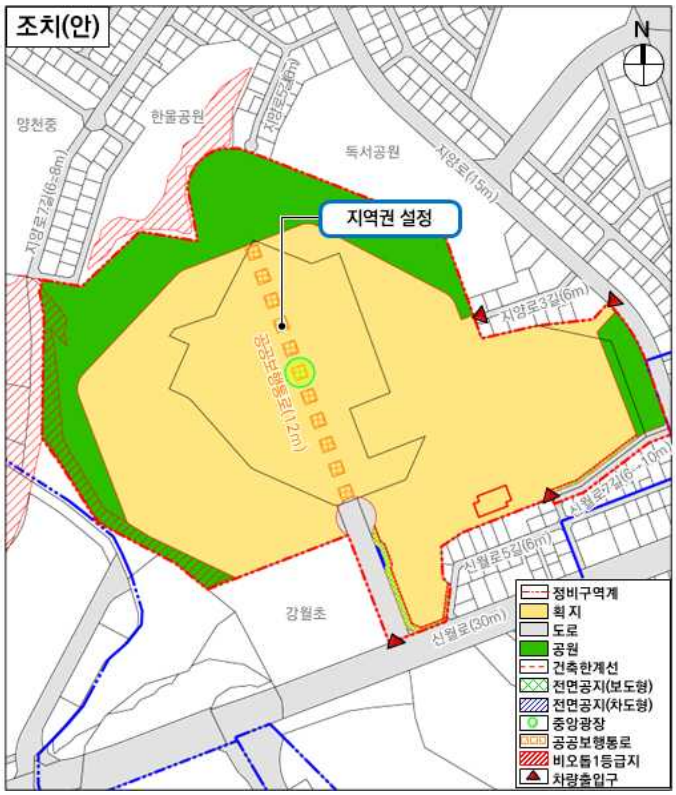
<table>
<tr><th>연번</th><th>심의의견</th><th>조치계획</th><th>비고</th></tr>
<tr><td>수정
사항</td><td>•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순부담 계획, 정비계획, 건축계획, 주택공급계획, 공동이용시설 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교통처리계획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td><td>•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순부담 계획, 정비계획, 건축계획, 주택공급계획, 공동이용시설 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교통처리계획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안)을 반영하였음</td><td>반영</td></tr>
<tr><td rowspan="2">조건
사항</td><td>•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지역권 설정 등 향후 일반 시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담보 방안 제시</td><td>•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용이 담보될 수 있도록 아래 단서조항을 달고 지역권 설정을 등기에 명시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에 대한 담보방안을 제시하겠음
- ‘공공보행통로 상부에 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며, 24시간 개방을 통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사업시행
인가</td><td>• 인센티브 인정여부 및 이행조건 확인
- 공공보행통로 지역권 설정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td></tr>
<tr><td>분양공고
또는
관리처분
계획 등</td><td>•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공고 시 지역권 설정에 대한 권리사항 고지 및 분양계약서, 관리처분계획 등에 반영</td></tr>
<tr><td>착공 및
준공</td><td>• 지역권 설정 계약 및 등기 완료 등 인센티브 제공 결정사항 이행
• 지역권 설정 기간은 건축물의 존속 기한으로 한정</td></tr>
<tr><td>관리 및
운영</td><td>• 지역권 등기를 통해 공공보행통로 유지·관리</td></tr>
</table></td><td>반영
[별첨1]</td></tr>
<tr><td>• 대상지 규모 및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동측변 차량진출입구 추가 설치 방안 검토</td><td>• 현재 공사 중인 금실어린이공원 조성에 영향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동측 출입구를 추가하였으며, 향후 교통영향평가 시(사업시행인가 시) 세부적인 교통처리계획을 수립·결정하겠음</td><td>반영
[별첨2]</td></tr>
</table>

별첨1	공공보행통로 지역권 설정

•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용이 담보될 수 있도록 아래 단서 조항을 달고 지역권 설정을 등기에 명시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에 대한 담보방안을 제시하겠음
  - '공공보행통로 상부에 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며, 24시간 개방을 통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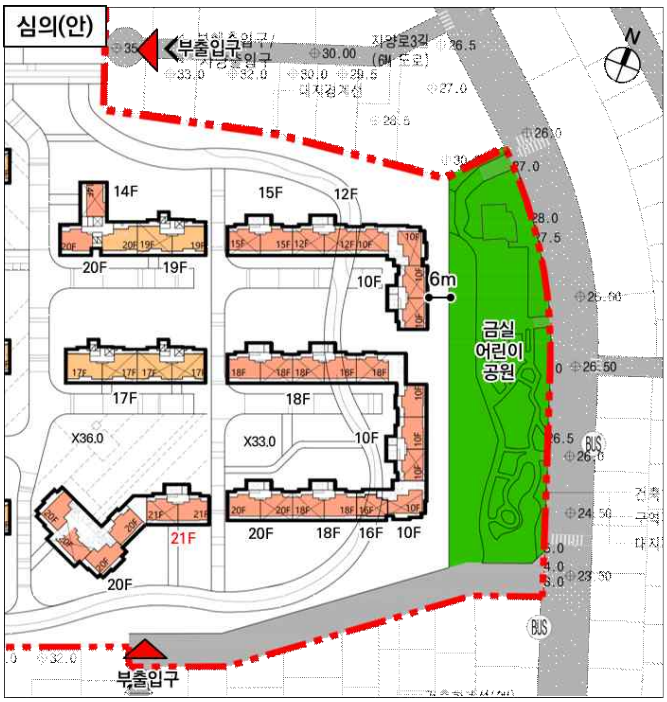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업시행인가	• 인센티브 인정여부 및 이행조건 확인 - 공공보행통로 지역권 설정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
분양공고 또는 관리처분계획 등	•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공고 시 지역권 설정에 대한 권리사항 고지 및 분양계약서, 관리처분계획 등에 반영
착공 및 준공	• 지역권 설정 계약 및 등기 완료 등 인센티브 제공 결정사항 이행 • 지역권 설정 기간은 건축물의 존속 기한으로 한정
관리 및 운영	• 지역권 등기를 통해 공공보행통로 유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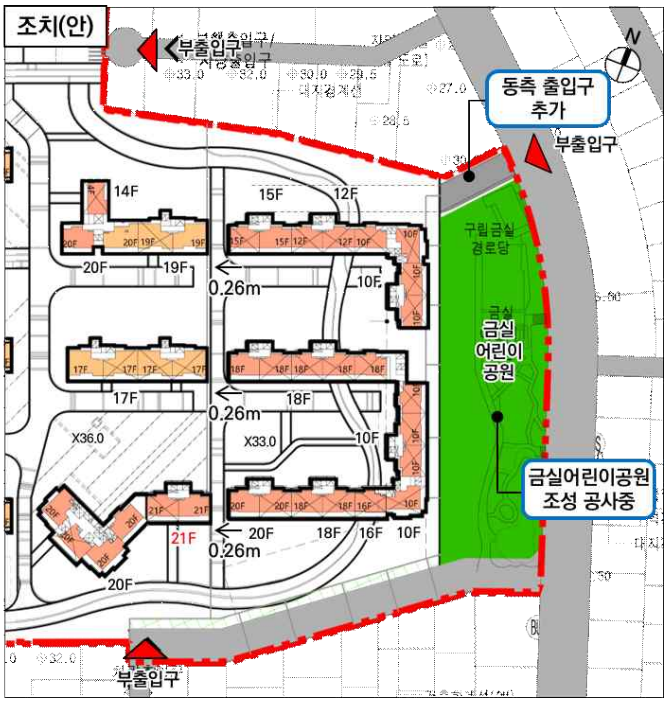




별첨2 동측 출입구 계획

• 현재 공사 중인 금실어린이공원 조성에 영향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동측 출입구를 추가하였으며, 향후 교통영향평가 시(사업시행인가 시) 세부적인 교통처리계획을 수립·결정하겠음





별첨2 교통처리계획도



